정책연구 2020_07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조현성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정책연구 2020-07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Mid-to-long Term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of the Disabled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최보연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정병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전동일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김윤경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요

1. 연구개요

1-1. 연구 목적

연구목적은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체계성·지속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제시하려 한다. 연구결과는 장애인 문화예술 종합계획뿐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세부 정책사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1-2. 연구 내용 및 범위

가. 연구 내용

연구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보고서 목차와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장애인(정책)과 문화예술(정책) 측면에 의미를 찾아보고, 외국의 논의를 살펴본다. 덧붙여 비장애인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한다(2장 1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는가? 창작-향유-교육 측면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살펴본다(2장 2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의미와 활동을 정리하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특징을 추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2장 3절).

둘째,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렀는가? 장애인 정책에서의 문화예술, 문화예술정책에서의 장애인을 살펴본다(3장 1절).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사업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장문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이외에 문체부 및 타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살펴본다. 분석의 틀을 개략적으로 설정하여 진행한다(3장 2절).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사업의 특징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3장 3절).

셋째,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진흥정책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4장 1절).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토대로 정책사업을 제시한다. 사업개요, 단계별 사업내용, 정책 추진 기관을 제시한다. 다만 예산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는다(4장 2절~4절).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이다. 다만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의미를 살펴볼 때, 그리고 추진과제와 유사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몇몇 외국 사례를 참조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내용(목차)별로 다르다. 장애인 문화예술 종합계획을 위한 추진과제의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다.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기존 통계 분석, 면담조사를 통해 수행했다(〈표 1〉 참조).

〈표 1〉 연구 방법

조사명 및 조사방법		내용(보고서 목차)	대상
문헌조사		보고서 전영역	
기존 통계조사 분석		장애 예술인 활동,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보고서 2장	장애 예술인, 장애 비예술인
장애인 예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설문조사) 2020년 8월		장애인 예술활동(예술교육활동)의 일반 실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인식, 장문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후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 2장 및 3장	장애 예술인(단체): 73명 장애인 복지관 담당자: 80명
면담조사(서면조사 포함) 2020년 6월~9월		장애 예술인(단체) 활동 실태, 장문원 사업 및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 2장 및 3장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 장애 예술인(단체) 및 연구자: 22명
장문원 조사 2020년 4월	설문조사	비장애인의 장애인의 문화활동 인식	비장애인 1,000명
	초점집단면담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인식	사회복지사, 예술강사, 장애인 및 부모 22명
	자문회의	장애인 예술정책에 대한 인식 및 방향 보고서 전체	장애 예술인[단체], 장애인 정책 및 문화정책 연구자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정책 분석

2-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분석과 시사점

가. 담론 활성화 및 정책목표 설정

장애인 관련 연구 및 정책의 최근 동향을 보면, 장애예술의 핵심어는 포용예술, 장애 정체성 표현예술이다. 장애 연구의 발달과정에 조응하면서 포용성·정체성·다양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문화예술-사회복지-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 예술의 본질·의미와 장애인 예술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장(場) 마련이 필요하다.

나. 사회·정책환경 변화 대응, 현실을 고려한 정책 수립

현 시점에서 시대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사안은 직업으로서의 장애 예술인, 장애인 예술의 인식 개선, 기술발전과 조응하는 장애인 예술 등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 예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영국·미국·일본은 각각 자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장애예술 정책을 특화한다. 정보 인프라 구축(영국), 아동·청소년 장애 예술인 양성(미국), 복지와 결합하되 탈복지적 성격의 사업(일본)이 그렇다. 외국의 우수 정책사례를 좇아야겠지만,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사회·정책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그리고 세계의 추세를 따르지만, 현실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는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 해당되고, 예술강사와 사회복지사 모두에 해당되며, 장애 예술인(단체)과 비장애 예술인(단체) 모두에 해당된다. 장애인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인지하려면 장애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요구된다.

라. 장애인 예술 지원정책의 유연화

장애인 예술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지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할지'는 결정하기 쉽지 않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 지원이 아니라 탄력적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 예술인 창작지원의 총론뿐 아니라 각론이 필요한데, 이것이 탄력적 장애 예술인 지원정책이며, 맞춤형 정책이다.

마. 장애인 예술향유 격차 해소

장애인의 예술향유 격차—비장애인과 격차, 장애인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 비장애인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뿐 아니라 예술향유에서 장애인이 강점을 보이는 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거주지역, 경제력, 연령, 단체 가입여부, 장애유형에 따라 예술 향유에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장애인 예술향유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장애인을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여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애 예술인 창작지원의 유연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향유지원 역시 탄력적이어야 한다.

2-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분석과 시사점

가. 장애인 체육정책 전개과정 벤치마킹

장애인 체육정책이 빠른 시간 내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는 정책집행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역할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체육과(課)의 적절한 업무 수행이다. 장애인체육과의 업무는 장애인 체육정책 모두를 포괄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체육정책과 다른 측면이 많지만, 적어도 정책체계 구축, 곧 문체부 관련부서의 포괄적 업무·집행기관 역할·전문가 체육과 생활체육 조화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나. 장애인 예술(정책) 담론 및 목표 설정

현재 장애인 예술정책의 분명한 목표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다. 관련 정책사업은 장애예술의 사회적 관점·평생교육으로서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혼재되어 있

고, 포용적·문화적 시각이 사업에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장애인 예술정책의 담론 활성화 및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이 사회적 어젠다가 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장애인-비장애인-문화예술관계자-복지관계자-교육관계자의 의견교환의 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장애인 예술 정책의 목표를 단계적이지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장문원) 사업 개선

장문원은 일부의 직접사업을 제외하고는 간접지원, 곧 장애 문화예술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간접지원 사업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1) 조사통계업무 강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사업은 위탁용역이 아닌 직접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실제조사 자체는 조사전문기관에 위탁하지만 기획단계부터 장문원이 담당해야 한다. 덧붙여 현재 제출된 실적보고서의 통계수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2) 통합정보 제공

많은 장애인 예술단체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예술단체는 각자 예술활동을 하기에 바쁘다. 면담조사를 해보면 지난 6월 제정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다. 온-오프라인 통합정보를 제공하여 장애 예술인(단체)가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3) 기획·홍보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장애인 예술단체가 아직 필요성을 잘 느끼지는 않지만 장애인 예술의 지속 발전에 필요한 게 기획·홍보·마케팅 능력 제고다. 현재 진행 중인 모니터링 사업의 확대를 통해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서 기획·홍보에 대한 구체적 컨설팅업무까지 수행해야 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3-1. 비전과 목표 설정

장애인의 예술활동은 일상적이지 않다. 일상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것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창작활동을 원하는 장애인은 관련 교육을 받아서 예술활동을 하고, 공연이 보고 싶은 장애인은 이동의 어려움이 없이 공연장에 가서, 관람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 활동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이 장애인 문화예술이 실현됐을 때의 모습이다. 그래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비전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장애인의 일상'으로 설정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비전에 다다르기 위한,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체계 구축: 공감과 소통'이다. 포괄적 지원정책 체계가 구축돼야 비로소 장애인 문화예술은 지속발전하고 심화될 수 있다. 목표는 정책체계 구축 자체가 아니다. 정책체계 구축은 결과이자 과정이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소통해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 공감해야 정책 추진력이 생기고,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도약할 수 있다. 정책목표는 그래서 '소통과 공감: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체계 구축'이다.

3-2. 추진전략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네 가지—① 목표 지향적 구상, ② 단계적·현실적 기획, ③ 협력과 공존의 과정, ④ 당사자 중심의 정책구현—로 설정한다.

[그림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비전·목표·추진전략·전략과제

4.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추진과제

전략과제는 세 가지—①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 ② 장애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활성화, ③ 장애 문화예술 발전 기반 구축—로 설정한다.

첫 번째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따라 창작 장애 예술인 지원 확대와 다원화 관련 과제다. 두 번째는 전문 예술이 아니라 장애인 일반의 예술향유(교육포함) 기회 제공을 위한 과제이다. 세 번째는 정책의 제도화, 장애인 예술의 인식 개선, 그리고 예술행사의 방향성 관련 과제다. 3대 전략과제는 29개 세부과제로 나뉜다.

전략과제 ①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의 세부사업이 13개, ②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활성화'의 세부사업이 7개, ③' 장애 문화예술 발전 기반 구축'의 세부사업이 9개다. 장애인 예술진흥은 장애 예술인(단체)의 활발한 창작·발표활동과 장애인의 예술향유(교육 포함)의 적극적 참여를 의미한다.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전자(장애 예술인 창작 및 발표)의 세부과제가 많은 것은, 〈장애예술인지원

법〉 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창작·발표 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한 데서 비롯된다. 29개 과제의 수준(차원)이 균질하지는 않은데, 창작 및 발표 관련해서는 세부사업을 자세히 제시하여 과제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29개 세부과제의 연차별 사업내용과 사업 추진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세부과제 주요 내용과 사업추진기관

전략과제	세부사업	주요내용			추진기관
		1~2년	3~4년	5년차 이상	
장애예술인 및 단체 창작 지원 다원화	1. 장애 예술인 일자리 창출	네 가지 유형 일자리 관련 여건 파악 공공영역 일자리사업 문화예술 직무개발 및 특화형 일자리 창출	민간영역 일자리 사업 신규 일자리 사업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속을 위한 사업 양질의 일자리 탐색 장기적으로 국립 및 공립 장애인 예술단 설립 검토	문체부-장문원이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협력, 지자체-학교-공공기관 협력
	2. 장애인 예술 시장 및 마케팅 지원	공공 문화 시설 쿼터제, 공공에서 구매하여 공공기관 대여(기증)	장애인 아트마켓 장애인 예술작품 아카이빙 장애 예술인(단체) 마케팅 능력 컨설팅 장애인 예술 범주를 문화산업으로 확장 한국메세나협의회 협력	장기적으로 국립 및 공립 장애인 예술단 설립 검토, 장애 예술인 작품시장 온라인플랫폼	문체부: 공공문화시설 쿼터제, 아트마켓, 아카이빙, 예술범주의 문화산업 확장, 메세나협의회 협력, 국립 장애인 예술단 설립 검토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장문원, 한국예술위원회): 작품구매 후 공공기관 대여, 장애 예술인(단체)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운영
	3-1. 장애 예술인 전용(대표) 문화공간 건립	공연장 기능설정 및 공연장 설계	공연장 건립공사	준공 및 개관 장애인 예술작품 오프라인 아카이빙 역할 담당	문체부가 담당하며, 장애인 예술정책 관련 기관은 운영방식 설정 이후 참여할 수 있음
	3-2. 장애 예술인의 문화시설 및 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전국문화시설 내 장애 예술인 편의성 조사	광역지자체 단위 기존 문화시설 2개 이상 리모델링	모든 광역지자체에 장애인 대표 문화공간 조성	문체부에서 조사 및 체크리스트 작성 시설 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협력
	3-3.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	기초지자체 단위 작업공간 건립지역 선정	시범사업으로 작업공간 건립·운영·평가	시범사업 시설의 종합시설화 신규 사업 진행 장기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지역(거점) 센터의 공간으로 활용	문체부에서 시범사업 지역 선정 작업공간 예산은 지자체 공동부담 작업공간 운영주체는 기초지자체 문화재단

전략과제	세부사업	주요내용			추진기관
		1~2년	3~4년	5년차 이상	
	4-1. 장애 예술인 전문공연단체 육성	장문원 지원 및 비지원단체 성과분석(1년차)	공연예술단 지원사업 차등지원, 공모사업 참여단체 특화지원(2~3년차) 새로운 형태의 공모사업 진행 검토(4년차)	간접지원 중심의 차등지원 및 특화지원 지속	문체부: 성과분석 문체부-장문원: 차등지원 및 특화지원
	4-2. 장애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문화시설별 장애인 레지던시(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각 2개)	장애인복지관-장애인 거주시설 레지던시 시범사업	장애인 레지던시 전용공간 설립검토	문화시설 레지던시: 문체부와 지자체 복지기관 레지던시: 문체부와 지자체, 복지부 협력 전용레지던시 공간: 문체부
	4-3. 장애 예술인과(단체) 국공립기관(단체) 협업	국립단체 선정 국립예술단체-장애예술인 협업(2년차) 유명 예술작가 모집 선정	유명작가-장애 예술인 협업(3년차) 지역 내 공립단체 협력(4년차)	지역 내 공립예술단체협력	국립단체는 문체부에서 사업기획 유명작가 및 공립예술단 협력은 예술단체(협회) 및 지자체 협력
	5-1. 장애 아동·청소년 전문교육	특수학교(급)의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1년) 특수학교-복지관 내 '문화예술 특화교실' 시범공모사업(2~3년)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다년도 지원 변경(2~3년) 광역단위 '문화예술 특화교실'(4년)	국내 예술중고교 내 특수학급 설치 검토, 예술계 특수학교 설치 검토	예술계 특수학교(교육부) 운영에 도움(문체부) 특화교실은 교육진흥원 주도(교육청-지자체-복지관협회 협력)
	5-2. 예술전공 장애 대학생 지원	예술대학 재학 장애인 실태 및 인식 파악 대학에 장애 예술인 특별전형 홍보 특수학교 전공과 지원(국내외 예술단체 협업)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예술전공 대학생 지원	장애인 예술대학 설립 검토	현재 대학은 교육부 업무임 문체부는 대학 예술전공학과 장애인 학생 충원 시 국립단체 협력, 장애 대학생을 위한 예술공간 및 시설 정비사업 실시
	5-3. 장애 예술인 역량 강화(재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내 새로운 사업군(群) 신설: 역량강화 교육 예술강사 대상 교육 및 문화예술 매개자 교육에 장애 예술인(단체) 참여	비장애인 예술단체 협업 장애인 예술 관련 포럼 진행	지역(거점)센터에서 관련 사업 진행	장문원 공모사업 신규 사업군 형성 비장애인 예술단체 협업 및 문화예술 매개자교육 참여는 문체부가 역할 담당 토론회는 민간(장애) 예술단체-장애인 시민단체-연구단체에서 진행

전략과제	세부사업	주요내용			추진기관
		1~2년	3~4년	5년차 이상	
	6-1. 청년·지역·단체 비소속 장애 예술인 지원	청년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군(群) 마련 비수도권 및 읍면지역 장애 예술인 쿼터제 지원 사업에서 단체와 개인 구분	문체부(지자체)의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 내 장애인 쿼터제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 운영지원 단체지원사업에서 비소속 예술인 협업 유도	청년 장애 예술인 인턴제	장문원에서 공모사업 신규사업 진행 장애 청년 예술인 쿼터 및 인턴제는 문체부-유관기관-지자체 협력으로 진행 지역-단체 비소속 장애 예술인 쿼터제 기준은 문체부에서, 실행은 장문원
	6-2. 풀뿌리·지역 장애인 예술 단체 지원	풀뿌리단체 지원 사업군(群)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공모사업 비수도권 및 읍면지역 장애인 예술단체 쿼터제	기존단체와 풀뿌리 단체 협력 비공모 사업 지자체 연계 시범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 운영 지원	공모사업 및 비공모 사업 재구조화	문체부에서 공모사업 신규사업 기획 기존단체-풀뿌리단체 협력 비공모사업을 위한 논의는 시민단체에서 주관 지자체협력사업에는 문화재단과 장애인 복지관 참여 지역 단체 지원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담당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활성화	1. 장애인 문화예술 바우처 도입 및 확대	현재 문화누리카드 비대상 장애인(4~5세, 비저소득층) 바우처 이용 모셔가는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사용	현재 문화누리카드 이용 장애인 지원액 증액	장애인 문화예술 바우처 지원액 증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 복권위원회 협의
	2.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예술강사-복지관 및 학교 담당자의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이해 교육 의무화 및 확대, 문화예술 매개자교육에 장애 예술인(단체) 참여	문화예술교육사 및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내 장애인 예술 관련 내용 포함 장애인 기획홍보마케팅 인력 교육 실시	교육과정 이수자 일자리 창출 교육 전담 기관 설립 검토	예술강사-학교 및 복지관 담당자 교육은 교육진흥원 담당(교육청 및 복지관협회 협력) 기획홍보 인력 교육은 장문원-장애인 예술단체-예술경영지원센터 협력
	3-1.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파악 및 지원 기준 변경: 네트워크 활동 전제조건 (1년차)	네트워크 활동 장애인 예술동호회에 '매개인력'의 도움 장애 예술인 작업 공간 활용(2~4년)	전문단체 전환 시, '장애인 예술 매개인력' 1년 정도 업무 지원	장문원-지자체 관련 사업 진행 네트워크는 장애인 예술단체 및 (비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협력 장애인 예술 매개인력 지원예산은 장문원과 지자체 분담

전략과제	세부사업	주요내용			추진기관
		1~2년	3~4년	5년차 이상	
	3-2.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의 참여형 프로그램 욕구파악 국공립기관 장애인 작품관람 접근성 제고 시범사업 진행	예술 장르별로 1개 이상 국공립기관에서 체험 프로그램 진행. 지역순회 또는 모셔오는 프로그램 진행 지역문화시설에서 장애인 실감형 예술 프로그램 진행	광역지자체 단위 실감형 실감형 예술 공간 2~3개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 종합체험관 건립 검토	국공립기관 콘텐츠 개발은 문체부와 유관기관 담당 모셔오는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장애인 실감형 예술 프로그램은 문체부와 지자체(문화시설) 협의
	4-1. 특수학교(급)-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개선	복지관 자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향상 예술강사-특수학교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강화	복지관 및 특수학교 문화예술 프로램 분화(전문가형, 표현과정, 감상과정 등) 복지관-학교 문화예술 특화교실 진행	교육 프로그램 심화	강사교육 및 문화예술 특화교실은 교육진흥원에서 진행 감상교육은 지역 내 문화시설과 협력하여 교육진흥원이 진행
	4-2.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 확대·개선	장애인 거주시설 프로그램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기존 찾아가는 사업 진행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걸맞은 시범사업 진행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통합 논의	교육진흥원에서 담당 장문원 및 지자체와 협력
	5.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 친화적 문화시설 조성	민간문화시설 BF 인증비용 일부 지원 문화시설별 장애인 이용자 실태조사 및 장애인 이용 가이드라인 개발 작품관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구사업와 아이디어 공모전	공공 문화기관 BF 인증 가산점 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른 모니터링사업 진행(국립시설) 연구사업 및 아이디어 공모전 이후 장애유형 및 예술장르별 개선사업 실시	장문원 사업자 선정 시, 작품관람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	BF 인증(지원)은 문체부에서 담당하되 실무는 장문원 또는 장애인 예술단체 담당. 한국장애인개발원 같은 기관과 업무협약 모니터링은 문체부에서 평가단 구성하여 진행 작품관람 접근성 제고사업은 문체부에서 총괄
	1-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담당부서 및 기관의 역할 정립	문체부와 장문원 업무영역 명확화 문체부 내 장애인 예술정책과(課) 또는 장애인 예술정책팀 신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위원회' 설치 장문원은 특히 장애예술인(단체)의 기획·마케팅·홍보 능력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	지역의 장애인 문화예술(거점)센터지원 장문원 법정기관화 및 조직개편	장애인 문화·예술·여가·관광·체육을 포괄하는 부서 검토(문체부 내)	문체부-장문원 유기적 협력관계, 장문원의 전문성 확보 (기획·마케팅·연구·조사·정보시스템)

전략과제	세부사업	주요내용			추진기관
		1~2년	3~4년	5년차 이상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기반 구축	1-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단위) 사업 연계성 및 공정성 강화	문체부의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사업의 세부자료 분석 장문원의 지정 및 공모사업 세부분석(지정사업은 공통점, 공모사업은 창작-향유-국제교류의 차이점 중심 분석)	문체부 관련 사업의 유사·중복사업 통합 및 사업 간 연계 (2~3년차) 장문원 공모사업 재구조화(창작-향유-국제교류의 통합 및 연계), 비공모사업 재구조화 (조정, 공모사업 전환 등)	장문원 공모사업의 단계별 연계 (4~5년차)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체계 전면 재구조화 (문체부 장애인 관련 포괄 조직신설, 장문원 법정기관화 연계)	문체부-장문원 협력, 지정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현재 참여단체와 논의
	1-3.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장애인 복지 정책의 연계	교육진흥원의 장애인 복지관 자체 예술 교육 컨설팅 민간에서 장애 예술인 고용 시, 문체부 차원에서 문화예술 인센티브 제공(찾아가는 예술행사, 국립기관 관람료 할인)	장애 예술인의 예술 활동소득 인정액에서 제외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시, 예술인 활동지원 연계 예술활동 보조기기 보급·수리·대여	관련 정책사업 지속	문체부(유관기관)-교육부(유관기관)-복지부(유관기관)-자지체 협의체 구성 민간 협의체 구성(복지관협회, 장총련, 장예총, 풀뿌리단체 연합기구)
	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과학기술(4차 산업혁명) 연계	4차산업혁명과 장애인 예술에 관련 토론회 장애 예술인 보조기기 국내외 사례분석 및 수요조사, 제안요청서 도출하여 실용화 준비	4차 산업혁명 관련 장애 예술인 정책 실현 보조기기 활용사례 추가발굴, 사용법 유투드 공개, R&D 지속	관련 정책사업 지속	4차산업혁명과 장애인 예술의 공론화는 시민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담당 보조기기 기획은 문체부가 장애인예술계 인사 및 장애인복지기관 협력, 제작은 국립재활원 및 보건사업진흥원 담당
	3-1. 장애인 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현재 운영중 플랫폼 안정화 및 질 관리 (관련 서적 서비스, 문화예술정보시스템 연계), 비장애 문화예술정보시스템 연동	지역생활권 단위 문화예술 프로그램 소개(지역문화시설 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 시범사업으로 일자리연계(예술인력시장) 장애인 예술작품 온라인 아카이브 역할	플랫폼 고도화 장애인 예술시장 역할	장문원 고유사업 지역문화시설 관련해서는 지자체(문화시설)협력 작품거래 및 예술시장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장애인 예술단체, 장애인 고용공단 협력
	3-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도서 발간	장애인 예술 가이드북(안내서) 발간, 장문원 지원사업 백서 발간	장문원 지원사업뿐 아니라 문체부 장애인 정책사업 백서 발간 우수사례 소책자 발간	가이드북(안내서)과 백서 내 우수사례를 예술로 재현	장문원 고유사업 책자발간을 위해 전문가 준비단 구성

전략과제	세부사업	주요내용			추진기관
		1~2년	3~4년	5년차 이상	
	4-1. 지역 간 장애인 예술 격차 해소: 장애인 문화 예술 지역 (거점)센터 운영	지역 내 장애인 문화 예술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장애인 문화 예술 지역(거점)센터 운영안 도출	시범사업(장애인 문화예술 지역센터 운영): 수도권 3개, 비수도권 7개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확대방안 제시 장기적으로 광역지역센터, 기초지자체 연합 지원센터 운영	지역센터 사업운영모델 개발은 문체부-장문원-장애인 예술단체 협력 지역센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 의사결정은 지역 내 공공기관 협의체에서 담당 장문원은 지역센터 지원 역할 담당
	4-2. 장애인 예술의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활성화	'국제 장애인 예술 주간행사'를 통해 국제네트워크를 강화 남북교류 계획수립 및 북한단체 접촉 및 통일부 승인신청	2025년 국제행사 준비 북한단체 접속 및 승인신청 지속	2025년 국제행사 개최 2025년 국제행사에 북한과 공동사업	국제행사는 장문원 담당, 남북교류는 장예총 또는 전문 장애인 예술단이 주관
	5. 장애인 예술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내 장애인 예술단체 참여	장애인 대상 장애인 예술 인식개선 사업, 공공시설과 지역단위에서 장애인 예술 관련 토론회 개최	방송국 협력하여 장애인 예술관련 프로그램 제작 방영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대상 교육: 장애인 예술단체, 장애인시민 단체 협력 장애예술 공론장: 지자체 및 지역 장애인 단체

목차

제1장 머리말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1. 연구 내용 6
2. 연구 범위 7
3. 연구 방법 7

제3절 용어 정리 및 선행연구 검토 9

1. 용어 정리 및 장애인 인구 현황 9
2. 선행연구 검토 11

제2장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의미와 실태 ····· 15

제1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의미 17

1. 장애인 (정책) 관점 17
2. 문화예술 (정책) 관점 20
3. 비장애인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인식 25
4. 외국의 장애인 예술 담론 및 지원정책 29

제2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 분석 55

1. 장애 예술인(단체) 활동 현황 55
2.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현황 67
3.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85

제3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특징과 시사점 106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의미와 특징 106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특징 110
3. 장애인 예술정책 방향 설정의 시사점 122

제3장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및 사업 분석 ····· 125

제1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전개 127

1. 장애인 정책과 문화예술 127

2. 문화예술정책과 장애인 133

제2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사업 분석 140

1. 분석기준 설정 140

2.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141

2-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 143

2-2. 장애인복지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174

3. 보건복지부 사업 및 복지시설 서비스 179

제3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184

1. 정책과 사업의 특징 184

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시사점 193

제4장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 ····· 199

제1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비전과 목표 201

1. 비전과 목표 설정 201

2. 추진전략 203

3. 전략과제 206

제2절 장애 예술인(단체)의 창작지원 다원화 208

1. 장애 예술인 일자리 창출 208

2. 장애인 예술시장 및 마케팅 지원 213

3.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 215

3-1. 장애 예술인 전용(대표) 문화공간 건립 215

3-2. 장애 예술인의 문화시설 및 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217

3-3.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 220

4. 장애 예술인(단체) 전문성 심화 221

4-1. 장애 예술인 전문공연단체 육성 222

4-2. 장애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224

4-3. 장애 예술인(단체)과 국·공립기관(단체) 협업 226

5. 장애 예술인 교육체계 구축 228

5-1. 장애 아동·청소년 전문교육 229
5-2. 예술전공 장애 대학생 지원 232
5-3. 장애 예술인 역량 강화(재교육) 프로그램 234
6. 장애인예술계의 주변부 지원 확대 236
6-1. 청년·지역·단체 비소속 장애 예술인 지원 236
6-2. 풀뿌리·지역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239
7. 세부사업: 요약 및 관계자 의견 242

제3절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활성화 248
1. 장애인 문화예술바우처 도입 및 확대 248
2.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 251
3. 참여형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확대 254
3-1.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254
3-2.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255
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재구조화 257
4-1. 특수학교(급)-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개선 257
4-2.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확대·개선 260
5.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 친화적 문화시설 조성 262
6. 세부사업: 요약 및 관계자 의견 269

제4절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 구축 274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고도화 274
1-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담당 부서 및 기관의 역할 정립 274
1-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단위)사업 연계성 및 공정성 강화 277
1-3.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계 280
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과학기술(4차 산업혁명) 연계 282
3.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및 확대 286
3-1. 장애인 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286
3-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도서 발간 289
4.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지역화 및 세계화 291
4-1. 지역 간 장애인 예술 격차 해소: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 운영 291
4-2. 장애인 예술의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활성화 294
5. 장애인 예술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 297
6. 세부사업: 요약 및 관계자 의견 299

제5장 맺음말 ····· **305**

제1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추진과제 요약 307

1. 단계별 세부과제 내용 307

2. 세부과제 진행과 고려사항 314

제2절 연구의 의미와 향후 연구과제 316

참고문헌 / 319

ABSTRACT / 325

표 목차

〈표 1-1〉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예산(함께누리+기금)(2013~2020) 3
〈표 1-2〉 연구 방법 8
〈표 1-3〉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관련 선행연구 11
〈표 1-4〉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방안」(2007)의 주요 내용 12
〈표 1-5〉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2018): 주요 내용 12
〈표 1-6〉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주요 내용 12
〈표 2-1〉 비장애인의 장애인 예술 관람 경험(2020):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27
〈표 2-2〉 장애인 차별에 대한 비장애인 인식: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27
〈표 2-3〉 존 F. 케네디센터 VSA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프로그램 46
〈표 2-4〉 아뜰리에 야마나미 장애인 지원 활동 50
〈표 2-5〉 스윙 NPO의 장애인 활동 52
〈표 2-6〉 장애 예술인의 주된 활동 예술 분야(2018 실태조사) 56
〈표 2-7〉 예술활동 참여경로: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57
〈표 2-8〉 예술활동 중심 형태(1순위):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57
〈표 2-9〉 3년간 예술발표 활동: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57
〈표 2-10〉 예술활동 관련 작업 공간 보유: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58
〈표 2-11〉 예술활동 관련 지원 받은 경험: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58
〈표 2-12〉 예술활동 관련 지원 내용(중복응답):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59
〈표 2-13〉 예술활동 관련 발표 기회: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60
〈표 2-14〉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어려운 점(1순위):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60
〈표 2-15〉 예술정책 전반적 만족도: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61
〈표 2-16〉 예술정책 내용별 만족도: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62
〈표 2-17〉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장애 예술인(단체) 설문조사(2020) 62
〈표 2-18〉 장애 예술인(단체) 면담조사 개요 63
〈표 2-19〉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2000년~2017년(장애인실태조사) 68
〈표 2-20〉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2005년~2017년(장애인실태조사) 69
〈표 2-21〉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2014년 vs. 2017년(장애인실태조사) 70
〈표 2-22〉 장애인의 예술행사 관람의 어려움: 2014년 vs. 2017년(장애인실태조사) 71

〈표 2-23〉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관람의향률: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72
〈표 2-24〉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72
〈표 2-25〉 문화예술행사 참여와 참여의향: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73
〈표 2-26〉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73
〈표 2-27〉 문화예술공간 이용실태와 만족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74
〈표 2-28〉 문화 동호회 참여율: 장애인과 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75
〈표 2-29〉 특수교육대상자 현황(2020) 85
〈표 2-3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특수학교 지원 및 선정현황(2019~2020) 86
〈표 2-3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특수학교)의 장르(2019~2020) 87
〈표 2-32〉 장애아동의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의 참여형태(유경험자, 2012) 87
〈표 2-33〉 장애아동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획득 경로(유경험자, 2012) 88
〈표 2-34〉 학부모의 장애아동 문화예술교육 참여이유(2012) 88
〈표 2-35〉 장애인복지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시설 및 강사 수(2018~2020) 89
〈표 2-36〉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장애인 강사 수(2018~2020) 90
〈표 2-37〉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 문화예술교육(2013) 91
〈표 2-38〉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 문화예술교육 추이(2011~2015) 91
〈표 2-3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도 인식(2016) 92
〈표 2-40〉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93
〈표 2-41〉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비중(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94
〈표 2-42〉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자의 장애 유형(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95
〈표 2-43〉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운 점(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96
〈표 2-44〉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요건(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97
〈표 2-45〉 장애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의 걸림돌(중복응답, 2012) 118
〈표 2-46〉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수업 내용(2013) 119
〈표 2-47〉 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선사항(2014) 120
〈표 2-48〉 장애인 복지기관 예술강사 연수 내용(2015~2019) 121
〈표 2-49〉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121
〈표 3-1〉 장애인 종합발전계획(1차~5차) 내 문화예술 분야 129
〈표 3-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132
〈표 3-3〉 「창의한국」(2003):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권 신장: 장애인 부문 133
〈표 3-4〉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136
〈표 3-5〉 기초지자체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수(數) 137
〈표 3-6〉 지자체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정연도 순) 137
〈표 3-7〉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분석기준 141
〈표 3-8〉 문체부의 장애인 관련 사업예산(2017~2020) 142

〈표 3-9〉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2019~2020) 144
〈표 3-10〉 함께누리지원사업 예산(2019~2020) 146
〈표 3-11〉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문화예술사업 지원 예산(2019~2020) 147
〈표 3-12〉 함께누리지원사업(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공모사업 신청건수 및 선정률(2019) 149
〈표 3-13〉 함께누리지원사업(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비공모사업 수행단체 및 예산(2019) 149
〈표 3-14〉 함께누리지원사업(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기획 공모사업 추진기관 및 예산(2019) 149
〈표 3-15〉 함께누리지원사업(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비공모사업 수행단체 및 예산(2019) 150
〈표 3-16〉 국민체육진흥기금: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2018~2020) 152
〈표 3-17〉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일반공모) 예산 및 지원대상(2020) 155
〈표 3-18〉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158
〈표 3-19〉 3년 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 예술인(단체)(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159
〈표 3-20〉 장문원 사업 참여 만족도(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162
〈표 3-2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도(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165
〈표 3-22〉 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장르 174
〈표 3-23〉 문화시설 편의시설 실태(2019) 179
〈표 3-24〉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예시 180
〈표 3-25〉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2015) 181
〈표 3-26〉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 프로그램 실적(2017) 182
〈표 3-27〉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2011, 2014, 2017) 184
〈표 3-28〉 장문원 세부사업의 내용비교 188
〈표 3-29〉 함께누리지원사업 성과지표(2016~2020) 189
〈표 3-3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애인체육과 194
〈표 4-1〉 장애 예술인 일자리 영역 209
〈표 4-2〉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 세부과제: 주요내용 242
〈표 4-3〉 시설유형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문화기반시설 수 263
〈표 4-4〉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활성화 세부과제: 주요 내용 269
〈표 4-5〉 장애인보조기구 품목 중 범용 문화예술보조기기 284
〈표 4-6〉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구축 세부과제: 주요 내용 299
〈표 5-1〉 세부과제 주요 내용과 사업추진기관 307

그림 목차

[그림 2-1] 우리 사회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도: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25
[그림 2-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없는 이유: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26
[그림 2-3]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와 사회적 여건: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28
[그림 2-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와 영향: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28
[그림 2-5] 장애인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의향: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29
[그림 2-6] 영국 2012 런던하계올림픽 오프닝-Unlimited 영상 33
[그림 2-7]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 Let's Create(2020-2030) 35
[그림 2-8]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 Let's Create(2020-2030)의 3대 전략목표 36
[그림 2-9] ACE 다양성을 위한 창조적 사례 프로그램 37
[그림 2-10] ACE의 다양성 및 장애 관련 분석 및 가이드북 38
[그림 2-11] 영국 국립장애예술 컬렉션 및 아카이브 39
[그림 2-12] 영국 언리미티드(Unlimited) 40
[그림 2-13] 영국문화원 장애예술 인터내셔널 플랫폼 41
[그림 2-14] 미국 NEA지원 프로젝트를 위한 접근성 요건 튜토리얼 43
[그림 2-15] 미국 NEA가 제공하는 접근성 관련 핸드북 및 자가진단 자료 44
[그림 2-16] 장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및 재정지원 자료집(케네디센터): Accessibility Tipsheet 47
[그림 2-17] 아뜰리에 야마나미: 작업실 전경 및 장애인 예술작품 51
[그림 2-18] 스윙 NPO 홈페이지 53
[그림 2-19] 복지관 내 주요 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의 지속 참여 여부(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95
[그림 2-20]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도(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97
[그림 3-1] 제5차 장애인 종합계획정책(2018~2022) 비전도 130
[그림 3-2] 함께누리지원사업 예산구분: 공모, 지정, 자체사업(2020) 154
[그림 3-3] 예술지원 공모사업 내 장애 예술인(단체) 차별 인식(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161
[그림 3-4] 장문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163
[그림 3-5] 장애인 예술사업 지원기관 선호도(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164
[그림 3-6]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도(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165
[그림 3-7] 복지기관(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175
[그림 4-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비전·목표·추진전략·전략과제 206

[그림 4-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전략과제·세부과제 207
[그림 4-3]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 세부사업 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245
[그림 4-4]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 세부사업(중요도와 시급성):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246
[그림 4-5]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 세부사업(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vs. 장애인복지관 담당자(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247
[그림 4-6]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활성화 세부사업 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271
[그림 4-7]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활성화 세부사업(중요도와 시급성):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272
[그림 4-8]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활성화 세부사업(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vs. 장애인복지관 담당자(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273
[그림 4-9]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구축 세부사업 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301
[그림 4-10]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구축 세부사업(중요도와 시급성):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302
[그림 4-11]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구축 세부사업(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vs. 장애인복지관 담당자(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303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의 필요성이 문화정책 및 복지정책 영역에서 제기된다. 2008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문예진흥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법률에 규정된 해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개원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사업 전문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고(2015),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 두 차례(2016, 2018) 발의됐다.

2020년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분기점이 된 해다.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 본회의(5.20)를 통과했다. 법률 제1741호로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12월 10일 시행된다. 이처럼 지난 15년 동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확대됐다.

이것은 예산에서도 그렇다.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사업(함께누리지원사업)은 2008년 예산 500백만원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다. 2020년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13,975백만원)은 2013년 대비 3.3배 증가했다.

〈표 1-1〉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예산(함께누리+기금)(2013~2020)

(단위: 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	4,200	11,300	22,100	21,300	7,000	11,722	12,383	13,975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은 국정과제에도 두 차례 포함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 예술창작 지원센터 조성 등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등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이 세부사업으로 포함됐다. 2017년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장애인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가 포함된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예술정책 계획인 〈새예술정책〉(2018~2022)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은 8대 전략과제 가운데 하나다. 여섯 번째(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의 대표사업 12개 가운데 1개(디아스포라 문학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애인 예술활동 진흥사업이다. 장애인 정책을 포괄하는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3차 계획(2008~2012)부터 5차 계획(2018~2022)까지 장애인 문화활동 확대를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이 체계화되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장애 예술인의 정책만족도는 47.7점(2018 실태조사)[1]이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76.4%) 한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0)[2]. 이것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함께누리사업은 창작-교육-향유-교류 등으로 구분하기, 곧 유형화하기가 쉽지 않고, 지원방식(공모, 비공모) 설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중앙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사업은 복지시설에서 수행되는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못하고, 문체부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도 주관기관이 다르면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

장애인 정책과 문화예술정책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1) 박근화 외(2019),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뒤에서도 많이 인용되는데 「2018 실태조사」로 줄여 쓴다.

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2020년 4월 비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장애인의 문화활동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비장애인 대상 조사」를 의미한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0 또는 장문원 2020으로 줄여 쓴다.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연구목적은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체계성·지속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제시하려 한다. 연구결과는 장애인 문화예술 종합계획뿐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세부 정책사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보고서 목차와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장애인(정책)과 문화예술(정책) 측면에 의미를 찾아보고, 외국의 논의를 살펴본다. 덧붙여 비장애인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한다(2장 1절).

둘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는가? 창작-향유-교육 측면에서 장애인 예술활동을 살펴본다. 장애 예술인(단체)과 장애인복지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당초 심층 면담조사만을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관 담당자와 이용자 대상 면담조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가능하여 설문조사로 대신했다. 기존 설문조사의 경우(창작과 향유),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가능하면 비장애인 대상 조사와 비교한다(2장 2절).

셋째, 장애인 예술활동의 의미와 활동을 정리하고, 장애인 예술활동의 특징을 추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2장 3절).

넷째,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렀는가? 장애인 정책에서의 문화예술, 문화예술정책에서의 장애인을 살펴본다(3장 1절).

다섯째,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사업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장문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이외에 문체부 및 타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살펴본다. 분석의 틀을 개략적으로 설정하여 진행한다(3장 2절).

여섯째,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사업의 특징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3장 3절).

일곱째,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진흥정책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4장 1절).

여덟째,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토대로 정책사업을 제시한다. 사업개요, 단계별 사업내용, 정책 추진기관을 제시한다. 다만 예산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는다(4장 2절~4절).

2. 연구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이다. 다만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의미를 살펴볼 때, 그리고 추진과제와 유사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몇몇 외국의 사례를 참조한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분석(2장)에서 활용하는 신규 설문조사(장애 예술인[단체]와 장애인복지관 대상 조사)와 기존 설문조사는 전국단위다. 면담조사(장애 예술인 및 단체, 장애인 예술 연구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다. 상대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장애 예술인 및 단체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수도권 방문이 불가하여 방문·면담조사를 수도권에 한정해 진행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내용(목차)별로 다르다. 먼저 장애인 문화예술 종합계획을 위한 추진과제의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다. 활동현황 분석은 가장 최근 실태조사(통계표 작성)와 진행사업(면담 및 설문조사)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면 가능 시점부터 비교를 실시한다. 정책의 전개과정은 대체로 2000년대 이후가 되겠지만, 2000년 이전에도 유관 정책사업은 간략히 다룬다. 정책사업 분석은 가장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예산은 2020년, 사업내용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하려 한다. 다만 자세한 자료가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근 시점의 사업을 분석한다.

3. 연구 방법

연구는 문헌조사, 기존 통계 분석, 설문조사, 면담조사를 통해 수행한다.

문헌조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의미, 활동현황, 정책전개 및 정책사업 분석, 방향 및 추진과제 제시 등 모든 영역에서 시도된다. 관련 기존 통계는 보고서에 수

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지만, 로우 데이터(raw data) 입수가 가능하면 별도 분석을 실시하기도 한다.

설문조사(장애인 예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는 장애 예술인(단체)과 장애인복지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장애인 예술활동(예술교육활동)의 일반적 실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 장문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후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다. 면담조사(서면조사 포함) 대상은 장문원 사업 참여 (의향) 장애 예술인(단체)과 장애인 예술 연구자다. 면담내용은 활동현황(기획부터 보고까지), 장문원 사업 및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이다.

한편, 장문원에서 2020년 4월 실시한 설문조사, 초점집단면담조사, 자문회의를 활용한다. 연구원과 장문원은 연구 기획단계부터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장애인 문화활동에 대한 인식조사: 비장애인 대상), 초점집단면담조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복지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사회복지사], 예술강사, 장애인 및 부모), 자문회의(장애인 예술[단체] 담당자, 장애인 정책 연구자, 문화예술정책 연구자)를 진행했다.

〈표 1-2〉 연구 방법

조사방법		내용(보고서 목차)	대상
문헌조사		보고서 전영역	
기존 통계조사 분석		장애 예술인 활동,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보고서 2장	장애 예술인, 장애 비예술인
장애인 예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설문조사) 2020년 8월		장애인 예술활동(예술교육활동)의 일반 실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인식, 장문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후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 2장 및 3장	장애 예술인(단체): 73명 장애인 복지관 담당자: 80명
면담조사(서면조사 포함) 2020년 6월~9월		장애 예술인(단체) 활동 실태, 장문원 사업 및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 2장 및 3장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 장애 예술인(단체) 및 연구자: 22명
장문원 조사 2020년 4월	설문조사	비장애인의 장애인의 문화활동 인식	비장애인 1,000명
	초점집단면담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인식	사회복지사, 예술강사, 장애인 및 부모 22명
	자문회의	장애인 예술정책에 대한 인식 및 방향 보고서 전체	장애 예술인[단체], 장애인 정책 및 문화정책 연구자

제3절 용어 정리 및 선행연구 검토

1. 용어 정리 및 장애인 인구 현황

가. 용어 정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은 세 가지—① 장애인이 직접(간접) 창작하는 행위, ②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관람, 동호회 포함)하는 행위, ③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배우고 학습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장애 예술인을 위한 교육(전문교육, 창작교육)과 비예술 장애인을 위한 교육(일반교육, 향유 및 참여교육)으로 구분된다.

보통 장애인 문화예술 작품은 다음의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첫 번째는 장애인이 직접(간접) 창작하거나 발표한 작품이다. 두 번째는 장애를 소재(주제)로 한 예술작품이다. 세 번째는 창작자의 장애 여부, 주제(내용)의 장애인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비장애와 '다른 경험'을 미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3)]

장애 예술인은 장애를 지닌 예술가를 말한다. 2018년~2019년 장문원 설문조사에서는 장애 예술인과 장애예술 활동가를 구분하기도 한다. 이때 장애예술 활동가는 단체(협회, 기관)에서 예술활동에 참여한, 하지만 개인 단위 예술활동은 없는 잠재적 장애 예술인이다. 연구에서 장애 예술인은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한다.

3) 한편, 보고서에서는 주로 '장애인 예술'이라고 쓰지만, 문맥에 따라서 '장애예술'이라고 쓰기도 한다. 영국과 미국 사례는 주로 '장애예술'로 쓴다.

나. 장애인 인구 현황[4)]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사업 개발을 위해서 장애인 을 간략 정리한다. 2018년 기준 등록장애인은 2,585,876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다. 2009년 이후 장애인구 비중은 4.8%~5.0%다. 2018년 인구 전체 증가율은 0.1%인데 반하여 장애인구 증가율은 1.6%이며, 65세 이상 장애인 비중은 46.7%로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중 14.8%를 훨씬 상회한다. 이는 장애인 비율과 고령 장애인이 지속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관련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장애유형은 15개로 나눠지는데, 지체장애가 53.2%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 9.8%, 청각장애 13.2%, 지적장애 8.0%, 자폐성 장애 1.0% 등이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하는데 비율이 9.0%다.

장애인 거주 지역은 서울 15.2%, 경기 21.2%, 인천 5.5%로 수도권 거주 장애인이 41.9%다. 장애인이 한국 인구의 지역별 분포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전체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2018년 기준 49.8%)보다 약간 낮음을 의미한다. 장애인구 수(數)로 보면 수도권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수 있지만, 장애인구 비율로 보면 비수도권에서 활발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장애인구가 지속 증가한다. 2018년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46.7%로, 2009년(35.8%), 2014년(41.4%)보다 각각 10.9%p, 5.3%p 증가했다. 장애유형별 70세 이상 비율은 지체(36.4%), 청각(64.5%), 뇌병변(43.5%), 시각(39.1%), 발달(2.2%) 등이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에서 신체적 장애가 많아짐을 보여준다. 반면에 발달장애(지적, 자폐성)는 20세 미만이 25.7%, 20대가 24.7%로 정신적 장애의 연령층이 신체적 장애와 다름을 보여준다. 한편, 장애인의 성별은 남성(57.9%), 여성(42.1%)이며, 장애정도는 중증(32.3%), 경증(67.7%)다.

---

4) 아래의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 눈에 보는 2019 장애인통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따른다.

2.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범위(내용)는 네 가지—① 종합계획 연구, ② 장애 예술인 (창작) 지원, ③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④ 장애인 문화예술관련 실태조사—로 나눠볼 수 있다.

〈표 1-3〉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
종합계획	문화관광부(2007),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진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애 예술인 (단체) 지원	전병태 외(2007),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병태(2010),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병태(2014), 「장애인 예술 장르별 지원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병태(2017), 「장애인 대표 공연예술단체 육성 지원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8. 8),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연구진행: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전병태 외(2010), 「공공 문화예술기관 장애인 서비스 개선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병태(2015),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 외(2017),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연구진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태조사	문화관광부(2007),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연구진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12.1 2),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진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8. 5),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연구진행: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 5),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연구진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종합계획연구는 정책방향을 다섯 가지—①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② 창조역량 강화, ③ 문화예술교육 강화, ④ 인프라(시설) 정비 및 확충, ⑤ 법제도 정비—로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세부과제가 현재 시행중이다.

장애 예술인 (창작) 지원 연구의 주된 내용은 2007년 연구에 잘 나타난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제언인 '문예진흥법 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문 포함'은 2008년 법률개정으로 구체화됐다. 나머지 정책 제언들은 현재까지 유효하다(아직 수행되지 못했다). 한편, 2018년 연구에서는 기반구축, 역량제고, 창작발신 등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정책사업을 제언한 게 특징이다. 그리고 2017년 연구는 장애 예술인이 아니라 장애인 예술단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게 다른 연구와 다른 점이다.

〈표 1-4〉「장애인 예술활동 지원방안」(2007)의 주요 내용

구분	정책 제언
장르 공통	문예진흥법 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문 포함, 문화예술 지원 예산의 장애인 할당(2~3%에서 시작하여 4~5%), 접근성 보장(시범사업: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리모델링,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창작 스튜디오 구성),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화(학생이 강사로), 장애인 교류협력(가칭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국제장애인문화예술교류 축전),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협력(보건복지부 관련 시설의 프로그램 조사, 사회복지사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력), 문화부 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협력단 설치
장르별	문학(장애인 문예지 지원, 동인 활동 지원, 맞춤형 창작 강의 활동 지원, 도서 및 정보 지원, 작업 공간 지원, 창작 하드웨어 지원), 미술(전시회 지원, 재료비 구매 지원, 공간 지원: 폐교 활용), 공연(문예회관 편의시설, 공공 공연장 리모델링, 공연활동 지원)

〈표 1-5〉「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2018): 주요 내용

구분	정책 제언
기반구축	지역 거점 센터, 매개자 장애 감수성 증진을 위한 워크숍, 장애예술 기획자 교육
역량제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매체 실험실, 농인 예술가 창작 무대 및 동영상 아카이빙, 접근성 활용 공연 창작, 장애-비장애 협력 프로그램: 감각의 교차, 청년 장애예술가를 위한 예술 및 리더십 프로그램, 청년 장애 예술가 국내외 네트워킹 지원, 발달장애인이 쓰는 스토리텔링 공동창작, 지역 내 장애-비장애 통합예술 프로그램, 장애 예술인 동시대 예술 소통, 장애예술창작 융복합 예술: 메이커빌리티, 장애예술과 사회적 가치의 연계
창작 발신	비평과 연구, 장애예술 아카이브, 지역사회 발달장애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장애 예술인의 학교예술강사 파견, 장애 예술인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관련해서는 2017년에 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분석했다. 장애인복지시설 13곳(15개 프로그램)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유관기관(사회복지관)과 비교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표 1-6〉「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주요 내용

구분	정책 제언
목표 및 계획	- 장애유형이 15개 달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기획 및 진행 - 참여가능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에 따라 사업 진행 - 운영신청서에 반드시 참여(의향) 장애인의 장애유형이 포함되도록 함
운영 및 진행	- 현재 장애인복지관 중심의 교육사업 다원화(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속 참여아동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 없음 - 장애아동의 경우는 교육 장르(분야) 설정에서 보호자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참여비율이 높은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적합한 교육분야 논의

구분	정책 제언
	- 장애인복지시설 담당자의 단순한 수업참관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보조강사는 강사와 협의하되 복지시설에서 선정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음 - 지역 내 유관기관의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수집
참여자 및 만족도	- 비자발적 참여아동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 참여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등급, 정서 및 심리상태, 복지시설 이용기간, 유사 프로그램 참여 정도 등 파악 - 만족도조사에서 참여가능 3개 장애인복지시설별 차이점 분석 - 만족도조사에서 참여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아동 vs. 성인 장애인)별 분석을 실시하고, 양적 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참여자의 개별 속성별 차이 분석 - 참여 장애아동의 연속 참여를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개별 복지시설에서 수립하면 운영주체가 이를 수용하는 게 바람직함

실태조사는 장애 예술인 대상 조사를 수행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2012년 연구에서는 장애 예술인 591명 대상 설문조사, 2018년에는 장애 예술인 416명, 장애인 예술활동가 584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에 관한 설문조사는 2007년에 한 번 실시됐다. 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비장애인과 문화향유실태와 비교하기 위해 「문화향수실태조사」 설문항을 활용했다. 이후 장애인 문화향유와 관련된 대규모 설문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다만 2018년부터 「문화향수실태조사」(현재는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 배경문항에 장애 여부를 질문하여 장애인의 향유실태를 파악 가능하도록 했지만 장애인 응답자 수가 적다(2018년 320명, 2019년 203명).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안)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책방안이 반복·제시된다. 둘째, 제안된 정책사업이 자세하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중점을 둔다. 넷째, 장애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반복·제시는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 한다. 첫째, 정책·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에 제안된 정책방안을 재검토할 뿐 아니라 신규사업을 개발한다. 둘째, 장애 예술인 창작뿐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까지 폭넓게 다루려 한다. 셋째, 추진과제를 제시할 때는 사업개요뿐 아니라 단계별(2021~2025) 사업내용과 사업진행 기관을 적시한다.

제2장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의미와 실태

제1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의미

1. 장애인 (정책) 관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은 장애인과 문화예술활동이 합해진 복합명사다. '장애인'에 강조점을 두면 문화예술활동의 주체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에 '문화예술활동'을 강조하면 활동 주체의 성격이 엷어지면서, 포용성이 강조된다. 2006년 UN 제61차 총회에서 192개국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포용성을 강조한다. 장애인 (정책) 관점에서 문화예술은 세 가지 관점—① 전통적 관점, ② 사회적 관점, ③ 사회포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가. 전통적 관점: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

문화예술활동 주체로서 장애인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이나 인간승리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리한 여건을 이겨내고, 사회와 맞서 싸워 이긴 승자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시각은 장애인을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people of different abilities)'으로 지칭한다. 이것은 특별히 문화예술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다. 이 같은 접근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아 왔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을 다른 차원의 능력자로 이미지화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 일반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성공한 장애인 기업가도 있지만 실패한 기업가도 있다. 물론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실패한 기업가의 비율이 높을 것이지만 말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 같은 스테레오 타입 이미지는 장애인식 개선 또는 장애인인식 변화 운동에 걸림

돌이 되기도 한다.

둘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다수 장애인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된다.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성공했기에 노력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메시지를 준다. 하지만 이들은 소수다. 장애극복 미담은 다수의 장애인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좌절을 안겨주기도 한다. 참고로 1997년부터 장애인의 날에 대통령상으로 표창하던 '올해의 장애 극복상'이 인식의 편협성을 이유로 2009년부터 '올해의 장애인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셋째,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 노력 부족으로 전환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배제시킨다. 장애인에 대한 추가 비용 지출이나 고용 기회 박탈 같은 사회환경을 무시하고 장애인 개인에게 노력만을 강조한다.

나. 사회적 관점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시각이다. 영국에서 제기된 사회적 관점은 '사회적 장애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로도 불린다. 예를 들어, 이동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에게 휠체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물 내에 경사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같은 시각은 문화예술영역에서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문화예술정책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 입안·형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술은 자유의 영역일지라도, 예술정책은 사회 영역, 곧 공통의 규칙을 정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장애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처럼, 예술도 그렇다는 것이다. 예술의 자유가 강조되더라도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면 법률에 규정된 바를 준수해야 하는 데 장애인 예술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관점은 장애를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전환시켰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에 두기에 변화와 지원의 대상은 자연스럽게 사회가 된다.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서 접근성 향상(편의시설 설치, 화면자막 제공 등)이나 인식개선사업 등이 중심이 되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대한 개별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모델은 신체적 장애 중심의 논의로 이해될 수 있다.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적용하는 데 치밀하지 못하며, 당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다. 사회포용

장애인의 다른 능력, 장애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서 '장애인'에 초점을 둔다. 반면 포용적 관점은 '문화예술활동'에 강조점을 둔다. 문화예술활동을 강조하면 주체가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아동이든 노인이든 관련 없다. 이 같은 시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사회통합(integration)을 지향한다. 최근에는 사회통합보다 사회포용(social inclusion)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사회포용 관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도록 차별금지와 접근성 확보를 통해 실현하려 한다.

사회포용 관점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계기로 강조된다. 2006년 채택된 협약은 2020년 5월 10일 기준으로 181개국이 비준했다(한국 2008년, 일본 2014년, 북한 2016년). 제30조는 '문화예술,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등에 대한 참여'다. 이 조항은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해야 함을 규정하고, 문화예술향유를 기본권 성격으로 명문화한 데 의미가 있다. 이밖에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해서 눈여겨 볼 점이 있다. 접근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 자료(a), TV, 영화, 연극 등(b),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과 여행과 같은 문화 행사 또는 서비스와 유적지와 유물(c)을 나열하고 향유를 위해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21조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규정한다. 협약 당사국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도록 수단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을 의무로 부여한다는 사적 영역을 포함하며,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대우, 곧 장애인 차별 관점에서 접근권(제9조)을 설명한다.

그런데 포용적 관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려면 장애 특정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법령이 반드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를 다녀

야 한다.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을 폐지하고, 기존 조항은 개별법에 포함시키는 스웨덴식 입법 형식을 따르는 것도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 이해당사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투트랙 접근(two-track approach) 개념이 나온다. 장애 포용적 관점이 확산돼야 하지만, 차별적 환경으로 인해 장애 특정적 관점을 당장에 폐지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에 따른 것이다. 투트랙 접근이란, 주류화된 경로와 함께 장애특성이 반영된 경로를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5)]

2. 문화예술 (정책) 관점

앞서 보았듯이 장애인 (정책) 시각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의미는 세 가지(다른 능력, 사회적 관점, 포용적 관점)로 나눠진다. 문화예술 (정책) 시각에서도 역시 세 가지—① 예술치료, ②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교육, ③ 장애인의 정체성 및 다양성 표현(장애학 관점)—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정책)과 문화예술(정책)이 온전히 배타적이지는 않기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가. 예술치료

문화예술은 모든 인간의 지적·정신적·미학적 발전의 전체적인 과정으로 논의되지만(Williams. 1983), 실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주된 인식은 장애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다. 음악치료·미술치료·문학(독서)치료 등으로 대표되는 예술치료(arts therapy)는 예술을 매개로 한 정신적·심리적 치료 효과에 주목한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예술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됐는데,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예술활동을 실시했더니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잘 적응하고 퇴원율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술활동 참여가 혈압, 맥박, 호흡, 뇌파 등의 생리적 측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자연치유력과 면역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현재 예술치료는 주로 정신질환자·장애인·노인 등에 적용된다.

---

5) 이 같은 접근은 장애 포용적 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공적개발원조(ODA)원칙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처럼 예술치료는 객관적·치료적 효과에 주목하여 예술활동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치료'라는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심리학자이자 예술치료가인 보드너(Ana Bodnar)는 예술활동이 의료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예술활동은 신체적 차원에서 개인을 현재 속에 존재하게 만들고, 정서적 차원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외면화하여 긴장과 스트레스를 이완시키고, 정신적 차원에서 전망을 조직하고 창조하게 한다(ABFRS, 2012:8, 이영주, 2013:15에서 재인용).

따라서 예술치료는 현재의 제한된 기능을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바람직한 상태'란 사고, 정서, 행동의 제한점을 개선·향상시킨다는 의미이다(소현지, 2013). 예술치료는 예술활동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정서적·심리적·정신적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서구에서는 예술치료가 심리치료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심리치료가 언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반면, 예술치료는 비언어적 접근을 하므로 연령·장애·질병 등에 따른 제한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도화시킨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목적으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음악치료와 미술치료가 포함된다.

그런데 기능 중심의 예술치료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차별구조를 생산한다. 문화예술이 장애인의 사회성 기능 향상,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적응을 도와주는 수단이 되지만 문화예술의 고유한 창의성은 주변화 될 수 있다. 기능 중심의 예술치료는 예술이 본래 담지하고 있는 의미와 성취지향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을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김용득 편, 2012).

또한 기능 중심의 예술치료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수동적으로 인식한다.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보다 비장애인에 의해서 장애라는 특수성을 근거로 판단되고 가치가 부여된다(주윤정, 2006). 서덜랜드(Sutherland, 1997)가 강조했듯이 장애인 문화예술에서 주인(이 되는 것)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장애에 대한 장애인의 생각과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치료적 관점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은 이 점을 놓치고 있다.

나. 평생교육과 문화예술 활동

지식정보사회는 구성원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을 요구한다. 지식과 기술의 활용은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를 높여주고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장애인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에서 장애인도 비켜가서는 안되며, 장애인 평생교육은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유형이 다양해진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문화예술 기술과 행위를 숙련하는 평생교육이다. 더욱이 문화예술은 경험재의 특성을 지니므로, 다양한 경험을 해 보는 기회가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기초 문화예술교육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은 전 생애주기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활동을 말한다.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전문예술가의 양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창의성과 문화적 해득력(cultural literacy)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도 포함된다. 장애인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문화예술 창작과 감성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유와 감성을 확장함으로써 더 넓은 세계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2004년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문화예술교육활성화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개념이 정립되었고, 각급 학교 및 기관에 예술강사가 파견되었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커다란 흐름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전담기구로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으로 줄여씀)이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관에 음악, 미술,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분야의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현행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예술강사와 장애인이 창작자로서 수평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수학교 또는 장애인복지관에 파견된 예술강사는 교육자의 지위를 갖는 반면, 장애인은 학습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라는 수동적인 존재로 대상화될 수 있다.

또한 파견된 예술강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참여하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참여자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교육의 계획 및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담당자(사회복지사)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역할 비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예술강사와의 원활한 협력 체계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전병태, 2015; 조현성 외, 2017).

다. 정체성 및 다양성 표현

197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장애인 운동이 시작되었고, 장애인 운동과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이 나타났다. 장애인 운동에 참여했던 일부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통해 대중동원을 지원하거나 장애인 운동을 미학적으로 표현했다. 장애인 운동의 전개로 인해 199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인의 시민권과 평등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다가 장애인의 사회적, 문화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인식되면서 장애인 운동의 쟁점이 정치와 권리에서 문화예술로 전환됐다(방귀희, 2014).

장애인 운동이 활발한 영국과 미국에서는 장애를 학문적으로 개념화하려는 시도로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이 활성화됐다. 장애학은 기본적으로 장애의 의료적 모델을 거부하고 사회적 모델·문화적 모델을 강조한다.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신체적 손상 또는 결여, 그에 따른 개인의 비극으로 간주한다.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서 억압과 차별에 의한 구조적 문제로 보는 관점을 말한다. 곧, 개인이 처한 환경과 구조적 맥락에 따라서 개인의 '손상'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므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는 가변적이다(Shakespeare, 2013).

문화적 모델에서는 장애를 미학적·정치적·문화적 관념으로 전제하고, 장애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제도, 사람과 조직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둘러싼 환경의 산물이라고 인식한다. 장애에 대한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장애인에게 잠재하는 창조적 요소를 언급하면서 장애인을 하나의 존재 양상으로 간주한다(김도현, 2013). 따라서 장애인의 잠재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여기서 잠재된 창조적 요소와 다양한 능력 개발에 문화예술 활동이 포함된다.

장애를 사회적 모델·문화적 모델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장애가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으로까지 고양되며,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존재 양식'으로 정의된다(주윤정 외, 2018). 그래서 장애인이 장애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차이를 새로운 미학의 가능성으로 재서술하는 장애인 예술이 존재한다. 장애인 예술은 장애인의 삶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됨에 대해 깊이 탐구하게 하며, 장애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말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장애예술(disability arts)은 단순히 장애를 소재로 하는 예술 또는 장애인에 의해서 생산된 예술에 그치지 않는다. 장애예술은 예술을 통해서 비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왜곡, 곧 정상, 다수자, 표준이라는 기준점에 저항하고 흔들어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부족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험을 하는데, 장애예술은 이러한 '다른' 경험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표현이다. 나아가 장애예술은 장애라는 다름과 차이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에 기반하는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주윤정 외, 2018).

3. 비장애인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인식

장문원은 2020년 4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비장애인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비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장애인의 문화활동에 대한 인식조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의미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도다. 물론 장애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통해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1차적으로 비장애인 조사에 한정했다.

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과 차별정도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을 때, 10명 가운데 약 6명(64.6%)이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전혀 관심이 없다 8.9%+별로 관심이 없다 55.7%).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35.4%(매우 관심이 많다 1.1%+약간 관심이 있다 34.3%)에 불과했다.

[그림 2-1] 우리 사회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도: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Base: 전체, N=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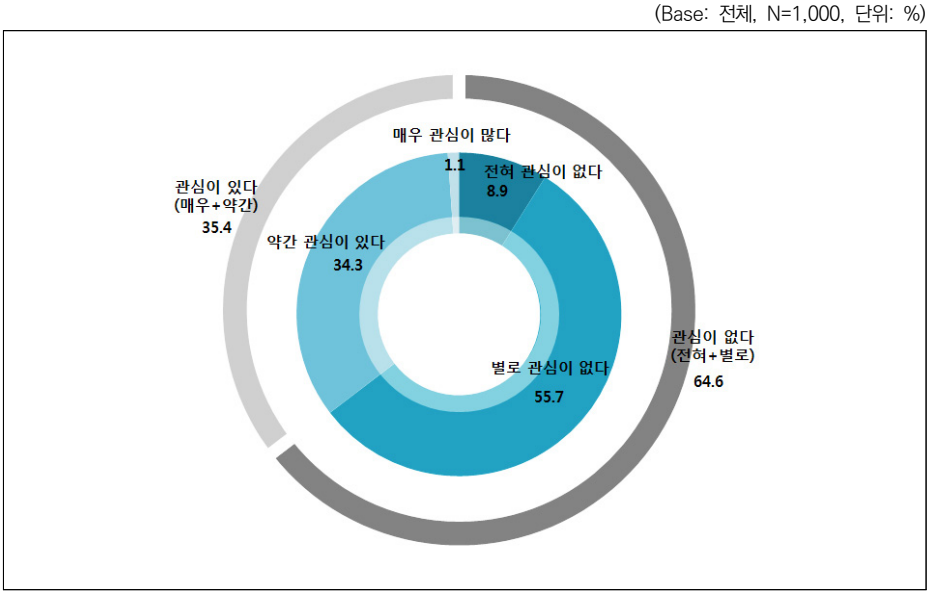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심 없는 이유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646명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에서 관심이 없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2명 가운데 1명꼴(52.3%)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은 신체조건상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9.5%, '장애인을 차별/무시하기 때문에' 10.7%,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활동보다 중요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2-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없는 이유: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Base: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 없음' 응답자, N=64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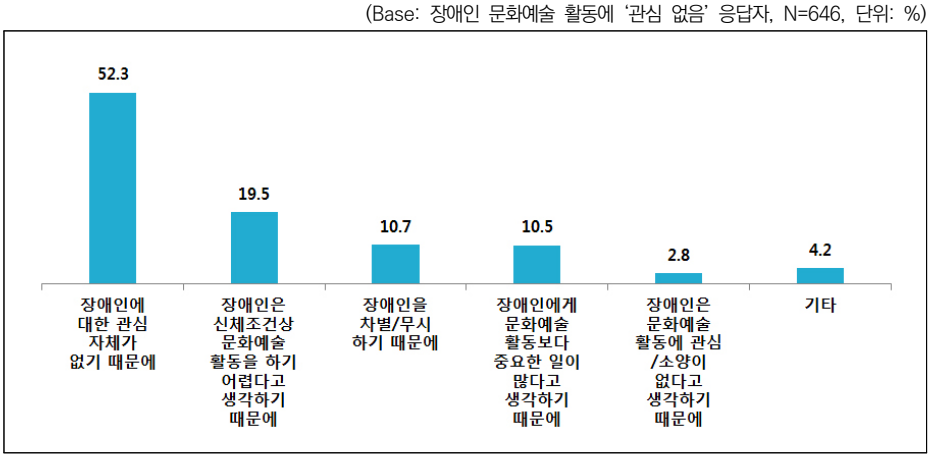

3) 장애 예술인의 창작작품 관람 경험

최근 3년 동안 장애 예술인이 창작하여 발표한 예술행사(작품) 관람 경험률은 14.0%였다. 서울 지역 거주자의 관람률이 17.2%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한편, 장애인 가족이 있는 집단의 경험률이 22.3%로 장애인 가족이 없는 집단의 경험률(11.8%)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장애 예술인의 창작 작품 관람을 유료와 무료로 나눠보면, 유료 관람자는 전체의 5.7%, 무료 관람자는 전체의 8.3%였다.

4) 장애를 주제(소재)로 한 작품 관람 경험

최근 3년 동안 장애를 주제(소재)로 한 예술행사(작품)를 관람한 경험률은 15.3%였다. 장애 예술인의 예술행사(작품) 관람률(14.0%)과 큰 차이는 없었다.

〈표 2-1〉 비장애인의 장애인 예술 관람 경험(2020):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있다	없다	계
장애 예술인의 발표(창작)	14.0	86.0	100.0
장애 소재(주제) 발표(창작)	15.3	84.7	100.0

5)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차별 인식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 질문했을 때, '차별이 많다'는 의견이 전체의 76.4%(차별이 매우 많다 10.8%+차별이 많은 편이다 65.6%)로, '차별이 적다' 23.6%(차별이 매우 적다 1.3%+차별이 적은 편이다 22.3%)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이 아니라 장애인 교육·고용·사회생활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다.

〈표 2-2〉 장애인 차별에 대한 비장애인 인식: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많다	적다	계
교육, 고용, 사회생활에서 장애인 차별	79.9	20.1	100.0
문화예술활동에서 장애인 차별	76.4	23.6	100.0

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기회에 대한 인식

장애인이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여건과 환경을 14가지 항목으로 나눠 질문했는데, 모든 항목에서 장애인의 참여 여건이 열악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장애인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의견이 9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 예술가가 평소에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가 91.3%,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가 89.3%,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축제/이벤트가 많지 않다'가 8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와 사회적 여건: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Base: 전체, N=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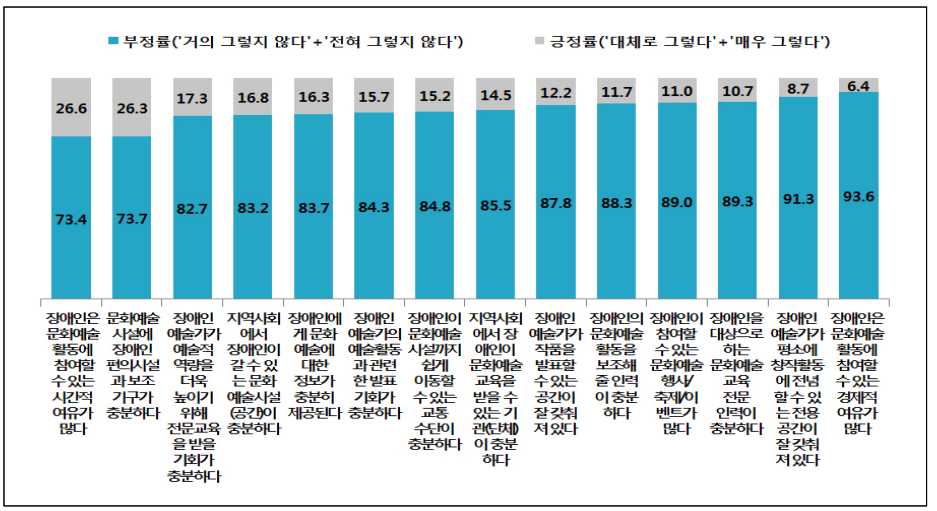

다. 장애인 문화예술의 의미와 효과

장애인 문화예술의 의미를 11가지 항목으로 나눠 질문했는데, 모든 항목에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 참여하는 것이 장애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예술 측면에서 모두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2-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와 영향: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Base: 전체, N=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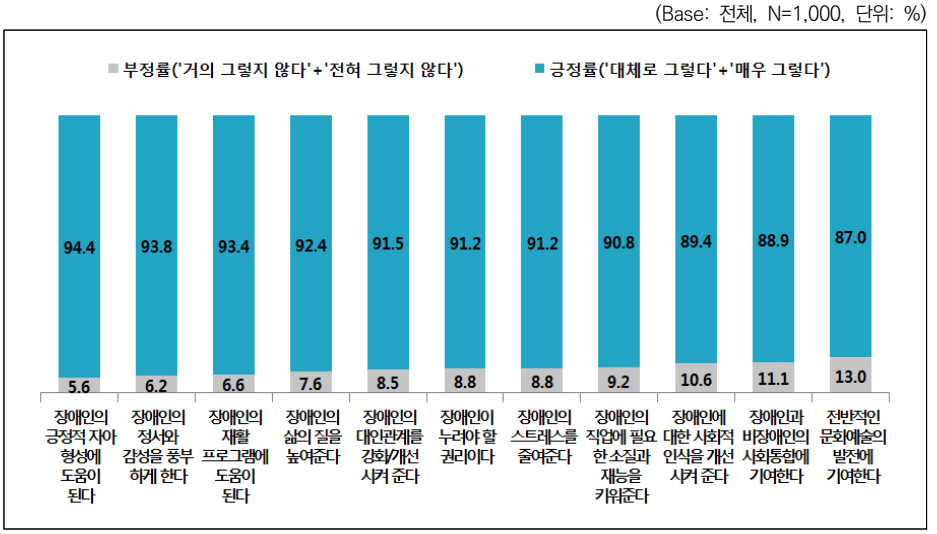

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참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 참여, 장애 예술인 작품관람 의향, 그리고 장애인 전용 문화시설 등을 6가지 항목으로 나눠 질문했는데,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주변에 장애인 전용 예술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찬성한다'와 '주변에 장애인 전용 문화예술 전문시설이 설립되는 것을 찬성한다'에 대한 긍정률이 각각 85.7%, 84.9%로 장애인 예술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찬성했다. 반면에 '장애인과 함께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를 할 기회가 되면 참여할 것이다'에 대한 긍정 응답이 57.4%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림 2-5] 장애인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의향: 비장애인 설문조사(2020)

(Base: 전체, N=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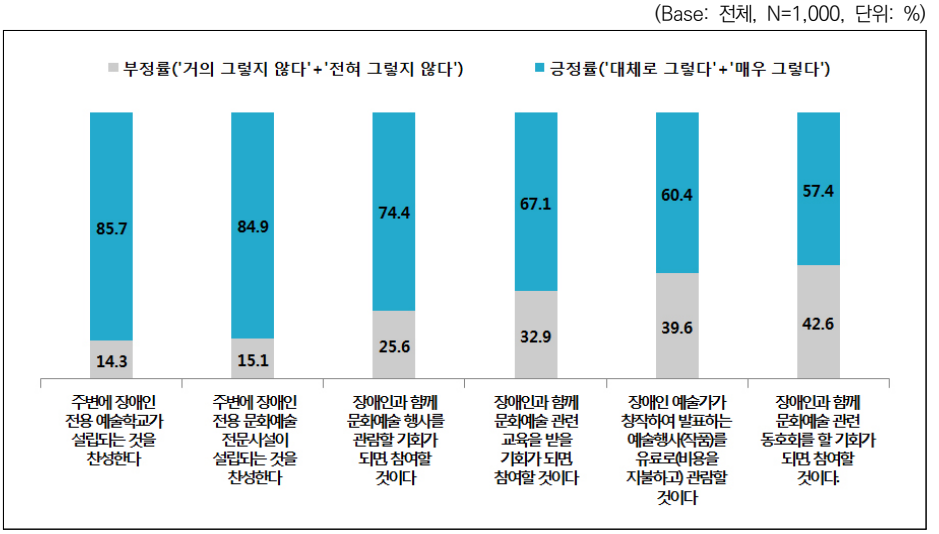

4. 외국의 장애인 예술 담론 및 지원정책

가. 국제기구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문화적 권리를 강조하는 '국제인권규약'에도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가 명시돼 있다.[6] '장애인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s, 1975)'에서 문화적 권리는 문화생활에

서 차별 금지와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한다.[7] 유엔은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를 선포하여 유엔 가입국에게 장애인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규정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연합은 2003년을 '장애인의 해(European Year of the Disabled)'로 선언하고, 유럽연합 가입국에서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국제적 차원에서 장애인 권리(문화적 권리 포함)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다.[8] 협약은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초의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다. 협약은 특수한 범주로서 장애인권리가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서 장애인권리를 주장하며, 보편적 인권에 뿌리를 두면서 장애인에게 특수하게 적용되는 권리를 다룬다. 협약에서는 장애인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다양한 문화적 자료, 문화활동 및 관련 서비스, 문화적 명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제시했다. 이 같은 권리가 장애인에게 차별없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문화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지고, 수화·점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곧,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장애인을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규정하면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을 공식적으로 비준했다는 것이다(주윤정 외, 2018: 127).

---

6)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실질적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법의 제도적 도입은 1966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두 개의 국제 인권규약이 채택되고, 1976년 발효됐다. 두 규약은 각각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으로 한국은 1990년 두 조약에 모두 가입하여 국내 효력이 발생했다.

7) '장애인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s)'은 국제연합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심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를 담은 선언으로 197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회복지용어백과사전, https://www.welfare24.net/ab-welfare_dic_v-3655(2020년 7월 27일 검색). 선언 원문은 UN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참조.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89608(2020년7월 27일 검색).

8)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objects)이 아닌 주체(subjects)로서, '사회의 적극적 구성원이자 자신의 자유롭고 인지된 동의에 기초하여 삶을 결정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천명하였다(주윤정 외, 2018:127 재인용).

나. 영국

1) 영국 장애예술 발전과정: 사회정치적 운동에서 포용적 미학 관점 수용[9)]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예술정책의 발전과정 및 예술운동 전개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가장 두드러진 활동과 성과를 보인 국가다. 영국 문화예술정책 발전과정에 있어 장애인 관련 예술운동이 공진화될 수 있었던 토대는 1960년대 후반 영국 사회의 신사회운동의 맥락과 연계된다(정종은, 2018).[10)]

영국에서 '장애인 운동'은 1960년대 후반 서구사회에서 강력히 대두된 '신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전개되는데, 그 핵심은 장애를 일종의 결핍(deficit)이나 신체나 정신 일부의 오작동(malfunction) 차원으로 바라보던 의학적 모델에 대한 문제제기다(정종은, 2018).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동정과 보호, 궁극적으로는 치료대상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사회적 모델(social model)'은 사회에서 장애인 배제 등의 문제가 발현되는 것이 개인의 결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와 '불평등한 환경'의 결과물"로서 이해한다.

이후 영국에서 장애인 의제는 지속 확장되어 1995년에는 〈장애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2010년에는 〈평등법 Equality Act 2010〉이 제정된다.[11)] 제도적 진화는 모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사회 성원이 되는 데 주안점을 두되, 사회적 영역 전반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도적으로 촉구하는 토대가 됐다. 〈장애차별금지법〉이 직접차별만을 금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평등법〉은 간접차별과 복합차별까지도 규제대상으로 포용하였으며, 장애에 대한 차별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변화는 영국 장애인 문화예술운동에

---

9) 장애예술(Disability Arts), 장애인 예술(Artist with a Disabilities), 장애와 예술(Arts & Disability) 등 장애예술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영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장애예술(Disability Arts)'라는 용어가 통용되어, '장애예술(Disability Arts)'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10) 정종은(2018), "영국 장애인 예술정책 및 사례: 다양성과 창조성, 혁신의 자산으로." 「웹진 이음」 2018년 11월 1호로 트렌드 리포트, http://ieumzine.kr/archives/73010(2020년 7월 27일 검색). 1960년대 말 이후 '신사회운동'은 기존 계급운동과 차별적으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복합성 증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발현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당시 서구 이론가들은 "시민사회의 잠재력을 중심으로 '권리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를 추구를 강조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평화운동, 여성운동, 생태운동, 지역자치운동, 흑인운동 등을 들 수 있으며(조돈문, 1995: 이행봉 1994), 소수자 운동의 하나로 '장애인 운동' 역시 '권리'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신사회운동의 주요한 축으로 작동했다"(주윤정, 2018:126 재인용).

11) 1995년에 제정되었던 〈장애차별금지법〉은 2010년 〈평등법〉 제정을 기점으로 흡수통합되었는데, 주윤정 외(2018: 127)는 이러한 변화가 '제도화의 후퇴'가 아닌 기존 법령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이자 내적 정합성을 갖춘 '차별금지법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해석한다.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장애인 주도 예술단체 및 옹호그룹의 증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동했다.

이후 장애예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기점은 영국 신노동당 정부시기(1997~2010)다. 신노동당 정부는 'Creative Britain'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우며 창조산업을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공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 역시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정부는 전통적으로 특정 계급이나 계층이 선호하는 고급예술 중심이 아닌, 영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 및 정체성을 가진 모든 이들의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려는 정책기조를 강조했다. 이러한 예술정책 담론은 사회정책 차원에서 당시 강조되던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배제의 해소라는 정책의제와 맞닿아 있다.

신노동당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10여 년 간 지원했던 창의교육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s)'은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이란 개념 부상, 그리고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예술적 실천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Hall, 2007). 신노동당 시기의 장애예술은 장애를 바라보는 데 있어 창조적 모델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확산을 함께 견인했었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정종은, 2018).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주변부와 비주변부에 존재하는 이들 간의 예술적 촉진과 협업을 통한 창조적 기회 발현 및 확산에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 문제를 정치운동 차원을 넘어 다양성과 창조성의 관점에서 혁신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창조적 모델 도입으로 이어졌다. 창조적 모델 도입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의학적 모델'이나 사회환경 및 권력의 문제로 보는 '사회적 모델'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장애인의 신체를 심미적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정종은, 2018).[12)]

창조적 모델 관점에서 장애인 예술은 사회적 포용 관련 사회담론, 더불어 예술계 내에서의 포용적 예술 개념과 연계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당시 예술(정책)계에서 논의된 포용적 예술 개념은 곧바로 장애예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장애예술을 포함하되, 예술계에서 비주류로 인식되던 대상이나 집단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표현과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자는 거시적 차원의 담론적

12) 정종은(2018)은 이 두 모델을 "양립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장애를 심미적 자산이자 전략으로 활용하는 창작활동의 경우 사회적 운동 어젠다와 결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논의를 포괄한 것이다(Fox & Macpherson, 2015:23).[13] 당시 영국에서 포용적 예술담론은 장애예술 의제와 관련하여 많은 진전을 이뤘다. 영국 브라이튼 대학의 앨리스 폭스(Alice Fox)교수는 '포용적 예술활동(Inclusive Arts Practice)'이란 개념을 통해 그간 주류 예술의 미학적 관점이나 기준에 종속되어 있던 '장애예술'에 관한 새로운 미학적 전략을 제시했다고 평가 받는다. 폭스(Fox)는 장애인 예술단체인 로켓 아티스트(Rocket Artists)와 수년 간 협업프로젝트 및 연구를 진행하면서 장애예술을 위한 대안적 미학전략을 탐구하고 제시하는 활동을 했다. 장애예술 관점에서 폭스가 말하는 포용적 예술활동은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사회적 맥락에 위치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과정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예술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Fox & Macpherson, 2015).[14]

[그림 2-6] 영국 2012 런던하계올림픽 오프닝-Unlimited 영상

자료: 2012 런던 하계올림픽 문화올림피아드 Unlimited(Unlimited: London 2012 Cultural Olympiad 유튜브 공식채널 영상 발췌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unlimited+disability+arts+2012+olympics+opening (2020년 7월 27일 검색)

13) Fox, Alice & Macpherson, Hannah(2015), Inclusive Arts Practice and Research: A Critical Manifesto(Routledge). 포용예술이 그 자체로 장애인예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배경은 호주 장애인 예술단체인 Arts Access Victoria가 발간한 보고서 *Beyond Access: the Creative Case for Inclusive Arts Practice: Literature Review*(2015)의 영향이 크다.

14) 폭스(Fox)가 제시하는 포용적 예술활동(Inclusive Arts Practice)은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 학습에 어려움을 가진 장애 예술인과 숙련된 비(非)학습/발달 장애 예술인 간의 공동작업에 한정하여 접근하는 특성이 있다. 여기서 비장애 예술인은 장애 예술인을 가르치거나 치료, 또는 돕는 역할이 아니라 공동협력, 공동창작을 진행하는 협업자로 규정된다. 협업을 통해 장애 예술인은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창작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비장애 예술인은 쌍방향적이면서도 장애 예술인과 다양한 의사소통방식을 통해 획득되는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창작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영국의 장애예술은 폭스(Fox)가 주장하는 관점에서의 포용적 예술활동이 아니더라도 이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다양성과 예술적 역량을 발현하고 있었다. 2012년 런던올림픽 개·폐막식에서 선보인 '언리미티드(Unlimited)' 프로그램을 통한 영국의 장애예술의 수준 높은 발전상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15] 단순히 정치나 인권운동을 넘어선, 일종의 포용적 미학 차원에서의 '장애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시혜적 관점이 아닌 장애 예술 그 자체에 내재된 예술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지지하는 영국의 장애예술 담론 및 일련의 실천적 움직임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선진적 사례다.

2) 영국의 장애예술 지원 현황[16]

①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다뤄지는 장애예술 의제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이하 ACE)는 지난 2020년 1월, 향후 10년간의 예술지원정책 비전서인 *Let's Create: Introducing Our Vision 2020~2030* 발표를 통해 향후 3개의 핵심목표(outcomes)와 4개 원칙(principles)을 제시했다.[17]

세 개의 목표는 '창조적 사람들', '문화적 커뮤니티', '창조적·문화적인 나라'로, 이들은 각각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속에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문화에 대한 협업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마을, 타운, 도시를 풍요롭게' 만들며, '혁신과 협업에 기반을 둔 잉글랜드의 문화분야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15) 〈에이블 뉴스〉(2015년 6월 29일), "장애는 창조 화수분, 영국 장애예술의 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1506291648284850 32(2020년 7월 27일 검색)

16) 4개의 지역국가(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영국의 예술지원은 예술위원회(Arts Council)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바, 여기서는 대표적인 영국 잉극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를 중심으로 다룬다.

17) 이 비전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기보다는 일종의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10년 간 추진할 구체적 계획은 2021년 3월에 후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림 2-7]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 *Let's Create(2020-2030)*

자료: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rtscouncil.org.uk/letscreate (2020년 7월 27일 검색)

이들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4대 원칙은 각각 'Ambition & Quality', 'Dynamism', 'Environmental Responsibility'와 'Inclusivity & Relevance'로, 예술적 수월성 외에도 새로운 시대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유연한 역동성, 환경에 대한 책임성, 문화다양성 차원에서의 포용을 뜻한다. ACE의 새로운 방향성은 지난 2010년 발표된 10개년 계획서 *Achieving Great Arts and Culture for Everyone*에 비해 일상적 삶 속에서 예술에 대한 접근성 확장, 문화적 다양성 가치의 보다 적극적인 반영과 구현이 전제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비전서는 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지난 수십년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술이 특정한 집단이나 계급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장애인, 소수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 있어 접근성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향후 정책지원의 방점을 한정된 몇몇 장소에서의 수월성이 아닌 모든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술향유 기회가 발현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다.

[그림 2-8]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 *Let's Create(2020-2030)*의 3대 전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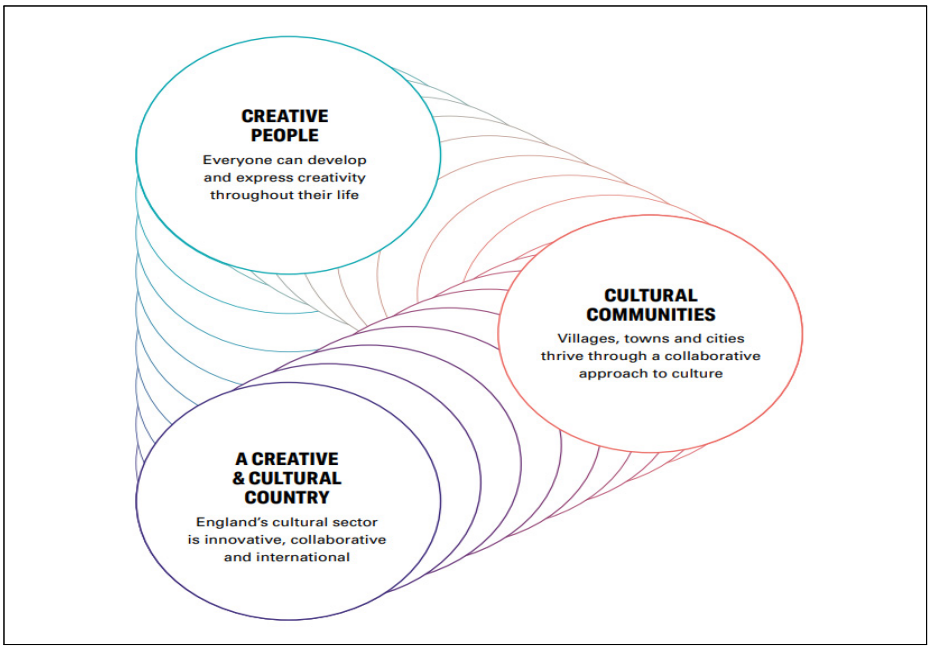

자료: ACE(2020: 28), *Let's Create: Strategy 2020-2030*

장애예술 관련 의제는 특히 4대 원칙 가운데 'Inclusivity & Relevance'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ACE가 첫 지원을 시작했던 사업 '다양성을 위한 창조적 사례(Creative Case for Diversity)' 프로그램이 장애예술을 비롯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양한 이들의 정체성 및 이들의 문화적 표현을 적극 반영해오는데 기여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향후 예술창작 지원에 있어 장애인을 비롯하여, 인종적 소수집단, 여성,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배경을 가진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ACE 2020:26).

더불어 평등법(The Equality Act 2010)에 의거, ACE 기관 자체를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의 기관이 장애인 고용 비율을 준수토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림 2-9] ACE 다양성을 위한 창조적 사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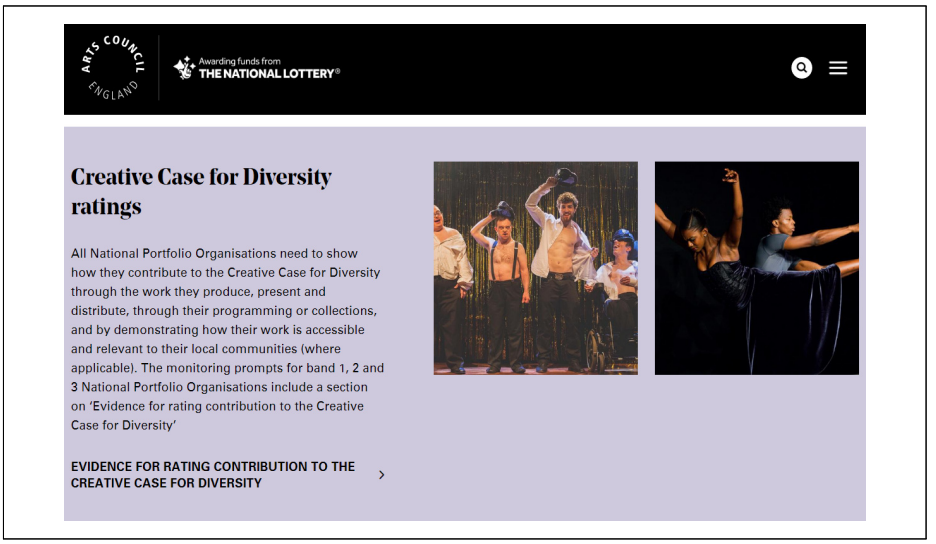

자료: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 홈페이지 '다양성을 위한 창조적 사례' 프로그램, http://www.artscouncil.org.uk(2020년 7월 28일 검색)

② 평등과 다양성 계획(Equality and Diversity Plan) 및 가이드라인 제공

2010년 평등법 제정 이후, ACE는 예술지원과 관련된 "Equality and Diversity Plan"을 3년마다 발표하여 관련 의제들이 예술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운영에 적극 반영될 것을 강조해오고 있다. 가령 '2015-2018 Equality and Diversity Plan'의 경우, 다양성 관점에서 흑인 및 소수인종 중심 기관 및 장애인 중심 기관의 정의를 제시하는데, ACE의 NPO지원을 받는 예술기관이나 박물관·미술관에 있어 이사회와 고위관리직에 있어 흑인 및 소수인종, 또는 장애인 비율이 51%를 넘을 경우 인정해 준다.[18]

ACE의 지원을 받는 National Portfolio Organization의 기관운영에 평등(equality) 의제 반영을 위한 액션플랜 가이드 등도 책자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Equality Analysis를 수행하여, 향후 중장기 계획(*Let's Create: 2020-2030*)에 반영할 의제 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19]

18) 다양성 중심 기관의 정의 소개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 홈페이지, https://www.artscouncil.org.uk/diversity-and-equality/consultation-defining-diverse-led-organisations(2020년 8월 4일 검색)

특히 장애예술과 관련하여 지난 2018년에는 잉글랜드 지역 내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 중 장애인과 관련된 실태 및 현황 분석 보고서 *Making a Shift Report*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림 2-10] ACE의 다양성 및 장애 관련 분석 및 가이드북

자료: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 홈페이지, http://www.artscouncil.org.uk(2020년 8월 4일 검색)

③ 국립 장애예술 콜렉션 및 아카이브(National Disability Arts Collection & Archive)

'국립 장애예술 콜렉션 및 아카이브(National Disability Arts Collection & Archive)'는 약 백만 파운드의 예산투입을 기반으로 영국 장애예술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기관이다.

복권기금 및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를 비롯하여 민간재단인 조셉 론트리 재단(Joseph Rowntree Foundation)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언리미티드(Unlimited)의 운영기관인 셰이프아츠(Shape Arts)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 3,500개의 이미지와 구술인터뷰 영상, 교육자료 및 애니메이션, 기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20]

19) Equality Analysis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 홈페이지, https://www.artscouncil.org.uk/sites/default/files/download-file/Equality%20Analysis%20-%2010%20year%20strategy%202020-30.pdf 참조

20) 영국 국립 장애예술 콜렉션 및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the-ndaca.org/about/(2020년 8월 4일 검색)

[그림 2-11] 영국 국립장애예술 컬렉션 및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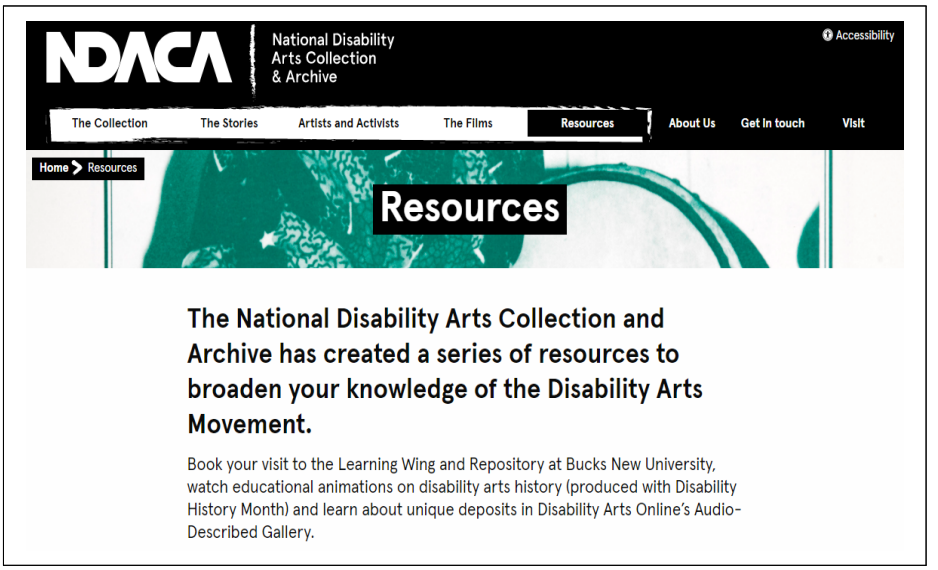

자료: The National Disability Arts Collection & Archive(영국 국립 장애예술 콜렉션 및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the-ndaca.org/resources/(2020년 7월 28일 검색)

④ 언리미티드 (Unlimited)

2012년 런던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문화올림피아드' 행사를 통해 국제적 명성을 획득한 '언리미티드(Unlimited)'는 장애예술과 관련된 별도 조직이 아닌 공모사업(commissioning programme)이다.[21] 장애예술과 관련된 유망 아티스트와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리서치부터 작품제작, 공연, 전시 등을 지원하고 이를 선별하여 국제적 플랫폼인 언리미티드 페스티발(Unlimited Festival)을 통해 소개하는 프로그램 전반을 모두 일컫는다. 장애예술단체인 셰이프아츠(Shape Arts)와 Artsadmin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언리미티드 페스티발은 2년마다 런던 사우스뱅크아트센터에서 열린다. 한국에 알려진 캔두코무용단(Candoco Dance Company)이나 연극단체 그라이아이(Graeae) 등 유수의 장애예술 관련 단체와 기관들도 '언리미티드 페스티발'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21) 영국 언리미티드(Unlimited) 홈페이지, https://weareunlimited.org.uk/(2020년 7월 27일 검색)

[그림 2-12] 영국 언리미티드(Unlim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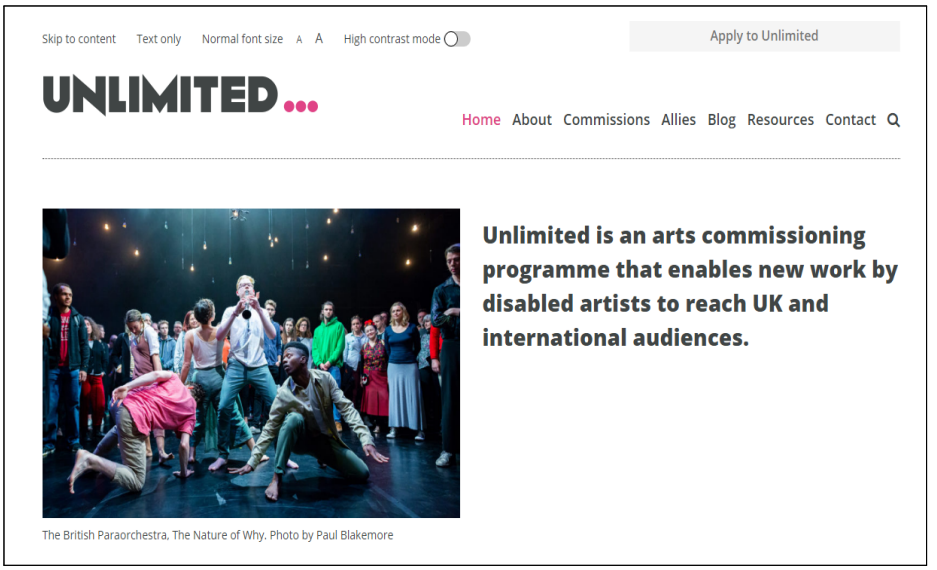

자료: 영국 언리미티드(Unlimited) 홈페이지, https://weareunlimited.org.uk/(2020년 8월 4일 검색)

⑤ ‘장애예술 인터내셔널’ 플랫폼(Disability Arts International)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이 운영하는 ‘장애예술 인터내셔널(Disability Arts International)’은 장애예술 관련 주요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2013년 EU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인 ‘언리미티드 액서스(Unlimited Access)’ 와의 협력 하에 만들어졌다. 장애예술 인터내셔널의 목적은 ‘탁월한 장애예술가와 장애예술단체, 포용적 예술기관들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예술기관의 관객이자, 방문객으로서 장애인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데 있다. 곧, 창작자로서의 장애 예술인, 그리고 향유자로서의 장애인들이 다양한 예술적 활동에 평등하게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정보, 뉴스 방법론 등을 널리 소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장애 예술계에서 장애예술 영역의 독특하고 새로운 접근이나 창의적 시도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두 영역(비장애+장애 예술계) 간에 상호배움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영국 예술계 전반을 풍성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다.

[그림 2-13] 영국문화원 장애예술 인터내셔널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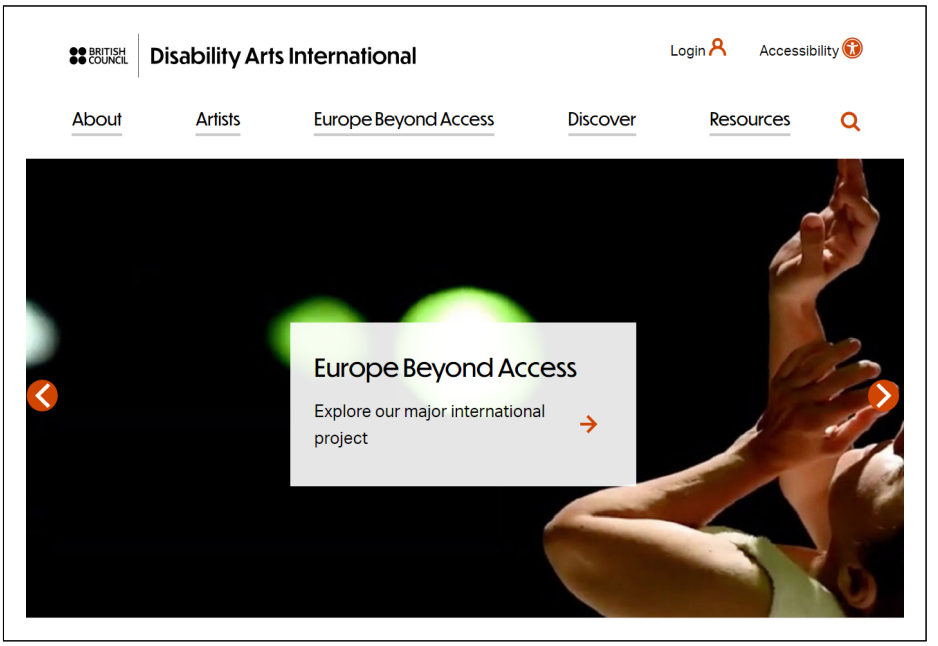

자료: 영국문화원 홈페이지, https://weareunlimited.org.uk/(2020년 8월 4일 검색)

다. 미국

1) 미국 장애예술 발전과정: '시민권' 차원에서 접근성 강조

미국에서 장애예술 논의는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를 복지가 아닌 '시민권(Civil Rights)' 관점에서 접근한 특성을 갖는다. 1973년 제정된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1975년 제정된 〈장애아동교육법, Education of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하 ADA〉 등은 모두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가운데 '시민권(Civil Rights)' 구현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22]

장애를 시민권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실제로 미국 예술지원에서의 핵심기관인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이 발간하여 배포하는 *접근성을 위한 설계: 문화행정가들을 위한 핸드북, Design for Accessibility: A*

22) NEA 홈페이지, https://www.arts.gov/sites/default/files/Design-for-Accessibility.pdf 참조 (2020년 7월 27일 검색)

*Cultural Administrator's Handbook*에서도 드러난다. 첫 장에는 1776년 독립선언 이후부터 1990년 미국장애인법(ADA) 제정까지 장애인들이 동등한 시민권 인정을 위해 투쟁했던 역사를 연대기별로 기록·제시하고 있으며, 서문의 첫 문장부터 "접근성에 관한 그 어떤 논의도 '시민권으로서의 접근성'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완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미국 장애예술 지원 현황

미국 장애예술 지원 관련 현황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미국 내 예술지원 체계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65년 설립된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on the Arts, 이하 NEA)과 연방 주별로 설치된 주립예술진흥원(State Arts Agencies, 이하 SAAs) 중심으로 구성되는 공공지원이 한 축, 개인을 비롯한 민간(재단 등) 후원으로 구성되는 민간지원이 또 다른 축이다. 공공 지원의 경우 NEA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 민간영역에서 주목되는 사례를 함께 검토한다.

① NEA 접근성 가이드라인 적용 및 전담부서(Accessibility Office) 운용

NEA의 예술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각각 'Art Works'와 'Challenge America'로, 전자는 규모가 큰 대신 지원대상이 개인이 아닌 프로젝트 단위이며, 중소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중요한 것은 지원사업 자체가 아니라 어떤 지원사업에 수혜를 받더라도 사전에 프로젝트 관련 접근성 테스트를 먼저 자가진단하고, NEA 가이드라인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NEA가 '접근성' 관련 별도 전담부서(접근성 사무소 Office of Accessibility)'를 운영하는 데 있다.

접근성 전담부서는 〈미국장애인법〉 및 NEA 내규(NEA Section 504)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참전용사, 시설 거주자(장애 및 사회복지 등) 등 소외집단, 또는 계층에 대한 예술창작 및 향유기회 제공과 예술계 내에서의 커리어 등 예술지원 전반에서 접근성 의제가 주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방기관, 비영리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관련 이슈를 이해하고 사업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기회도 제공할 뿐 아니라, NEA 지원사업 수혜자(예

술가 개인 및 단체 등)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과 그룹 대상의 의제와 문제를 예술작업과 실천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역시 수행한다.

NEA 접근성 부서가 담당하는 가장 큰 역할은 바로 NEA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이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NEA는 유튜브 및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자들이 사전에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래 그림과 같은 동영상 튜토리얼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그림 2-14] 미국 NEA지원 프로젝트를 위한 접근성 요건 튜토리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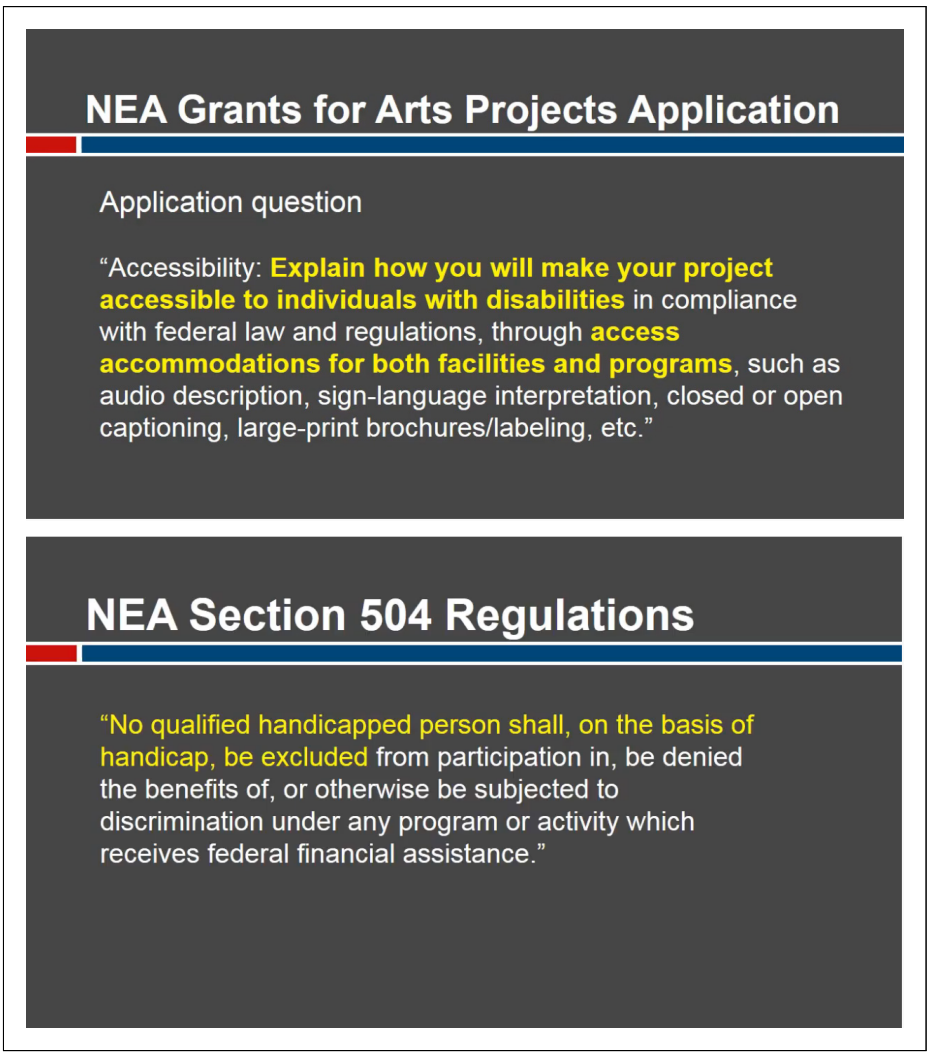

자료: NEA 유튜브 계정에서 이미지 발췌, https://www.youtube.com/watch?v=xxi-1y2QmfM(2020년 8월 4일 검색)

[그림 2-15] 미국 NEA가 제공하는 접근성 관련 핸드북 및 자가진단 자료

자료: NEA 홈페이지, https://www.arts.gov/sites/default/files/SECTION504Workbook.pdf, https://www.arts.gov/publications/design-accessibility-cultural-administrators-handbook (2020년 8월 4일 검색)

지원사업 신청자(단체)는 프로젝트 지원서 제출 시, 프로젝트에 참여할 장애인 창작자나 관객의 접근성이 적절한지, 예를 들어 연극 등 공연의 경우 공연장 접근성이 충족되는지,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모두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체가 단체나 기관인 경우, 지원금을 통해 진행하는 프로그램 관련 통역사(수어 등) 등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내부시설의 정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곧, 기관 자체적으로 접근성 관련 설비 등을 마련토록 독려하는 것이다. 다만 열악한 예술단체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자원연계' 차원에서 타 기관과의 연결 등도 접근성 부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② 미국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의 VSA(Very Special Arts) 및 접근성 부서[23)]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존 F. 케네디센터의 'VSA 및 접근성 부서(The Kennedy Center Office of VSA and Accessibility)'는 당초 '예술과 장애에 관한 국제 조직(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arts and disbility)'의 성격으로, 1974년 진 케네디 스미스(Jean Kennedy Smith) 대사에 의해 설립됐다. 설립 당시 '장애인들을 위한 예술(Arts for the Handicapped)'이란 기관명을 사용하다가 1985년 '매우 특별한 예술(Very Special Arts, 이하 VSA)'로 명칭을 변경했고, 2010년부터는 'VSA'라는 기관명을 사용한다. 이후 2011년 존 F. 케네디센터 소속의 접근성 부서(Office on Accessibility)와 병합되면서 'VSA 및 접근성 부서(the Department of VSA and Accessibility)'로 통합·재편됐다.

현재 세계 52개 국제연계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VSA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든 연령대를 막론하고 매년 7만명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분야 등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VSA는 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4개의 원칙을 제시한다.

- 장애를 가진 모든 젊은이들은 수준높은 예술교육 경험을 받을 자격이 있다.
- 학교에서 활동하는 모든 예술가들과 예술교육가들은 프로그램 지도에 있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 청소년, 성인은 문화시설과 활동에 있어 완전한 접근성(complete access)을 가져야 한다.
- 예술계에서의 커리어를 희망하는 장애를 가진 모든 개인은 이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기술을 숙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자료: 케네디센터 VSA 및 접근성 부서 홍보 홈페이지, https://vsainternational.wordpress.com/about/(2020년 7월 27일 검색)

VSA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특성은 바로 아동·청소년·청년들이 장애예술가로서 진로와 경력 개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지원은 크게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2개 분야로 나뉘어 접근되며, 각 분야별로 2개 프로그램이 구성되는데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 VSA 관련 설명은 케네디센터 홈페이지 https://www.kennedy-center.org/visit/accessibility/vsa/(2020년 7월 27일 검색)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표 2-3〉 존 F. 케네디센터 VSA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프로그램

구분	지원사업(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공연예술 분야	VSA 극작가 발견 프로그램 (VSA Playwright Discovery Program)	- 장애청소년, 청년들의 극작가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 미국 국적의 장애청소년(6-12학년) 및 비시민권자 중 11~18세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장애경험을 반영한 '10분짜리 스크립트' 제출, 학년별 3개 그룹(초·중·고등) 내 경합하는 방식으로 진행 - 그룹별 수상자는(초등/중등) 케네디센터 홈페이지 소개, 고등수상자는 '케네디센터 대학 연극페스티발(The Kennedy Centre American College Theater Festival)' 참여기회 제공(연극계 전문가와 협업)
	VSA 국제 영 솔로이스츠 어워드 프로그램 (VSA International Young Soloists Award Program)	- 14~25세 사이의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장애청소년(청년)을 선정함 - $2,000 상금 수여 및 케네디 센터에서의 공연기회를 제공(클래식, 재즈, 힙합, 락 등 다양한 장르 포괄)
시각예술 분야	VSA 국제 미술 교육 프로그램 (VSA International Art Program: Yo Soy...Je Suis...I am)	- 장애유아(유치원)~12학년까지 미술에 재능을 가진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개인 및 단체 지원이 가능하나 단체의 경우 모든 참여자들이 장애청소년이어야 함 - 매년 주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미술작품을 출품토록 하고, 이들 작품을 전시
	VSA 유망 아티스트 프로그램 (VSA Emerging Young Artists Program)	- 미국에 거주하는 16~25세 장애청소년 중 15명을 선정, 총 $60,000의 상금을 수여(대상은 $20,000) - 수상작들은 1년간 전국 투어 전시에 참여, - 수상자들은 워싱턴 D.C.에서 전 비용이 지원되는 전문 진로개발 워크숍에 참여하게 됨

자료: 케네디센터 홈페이지 VSA 프로그램 소개 섹션, 재구성, https://www.kennedy-center.org/education/opportunities-for-artists/competitions-and-commissions/vsa-international-art-program-for-children-with-disabilities/(2020년 8월 4일 검색)

VSA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을 보면 장애를 가진 젊은 예술가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되, 이들이 예술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지원하고,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참여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장애예술가로서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강화될 수 있는 숙련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VSA에 있어 주목되는 또 다른 부분은 예술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 지원과 장애인예술 '연구'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24] 케네디센터의 '접근성' 업무란 모든 행사, 공연 및 프로그램을 위한 건축이나 통신, 프로그램 접근 등에 있어 장애인들이 배제되지 않고 포용될 수

24) 케네디센터와 합병 이후 원래 센터기능 가운데 하나인 접근성 부서와 병합되어 관련 업무도 진행한다.

있도록 감독하는 일을 포괄한다. 단순히 ADA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케네디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직원), 자원봉사자, 예술가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기회 제공을 자신들의 업무 중 하나로 인식토록 하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케네디센센터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를 위한 공연예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VSA는 예술과 장애 관련 다양한 연구를 지원, 축적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출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장애예술이나 장애와 교육, 예술 등 세 분야가 중첩되는 분야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가령, 장애학생들이 장학금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합 가이드라인 책자 등을 제공하는 한편[25], 교육자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가이드 자료들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6] 장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및 재정지원 자료집(케네디센터): Accessibility Tip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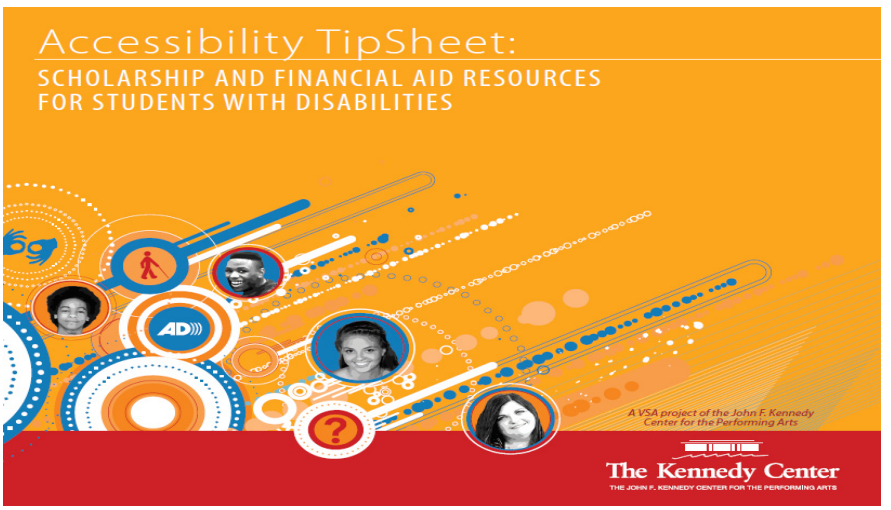

자료: 케네디센터 홈페이지: 연구 및 자료 섹션 참조, https://www.kennedy-center.org/globalassets/education/networks-conferences—research/research—resources/vsa-resources/tipsheet_scholarship.pdf(2020년 8월 4일 검색)

25) Accessibility Tipsheet에는 신체적 장애(청각, 시각, 지체) 뿐 아니라, 발달장애, 자폐, 뇌전증, 정신질환, 뇌수종, 낭포성섬유종 등 다양한 질환별로 접근 가능한 장학금 및 재정지원 기관 등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네디 센터 홈페이지, https://www.kennedy-center.org/globalassets/education/networks-conferences—research/research—resources/vsa-resources/tipsheet_scholarship.pdf(2020년 8월 4일 검색) 참조

라. 일본

1) 일본 장애예술 발전과정: 발달된 복지제도와 결합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일본의 정책변화가 본격화된 것은 1993년 유엔의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표준규칙'에서부터다. 1995년 발표된 '장애인 플랜-정상화 7개년 계획' 및 '자치구장애인계획책정지침'은 장애인의 예술제와 전시회 지원, 지자체의 장애인예술 지원 지침과 장애인의 예술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문화진흥시책을 도모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2001년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의 기본 시책이었던 '고령자, 장애인 등의 문화예술 활동의 충실'이 정책적으로 강조되면서 장애인 예술활동이 전개되는 기반으로 작동했다.

한국에 일본 장애인 문화예술은 아트센터 하나(민들레의 집)를 중심으로 하는 '에이블아트(Able Art) 운동'을 통해 알려져 있다. 에이블아트(Able Art)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비정상적이거나 부족한 활동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과 표현의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 일종의 시민문화운동이다(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2006). 1970년대 시작된 에이블아트는 당시 일본이 놀라운 경제발전을 경험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고도성장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태동됐다. 나라(奈良)지역의 작은 복지시설에서 시작된 운동은 단순히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다. 장애인의 표현활동을 통해 존엄을 획득하고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며, 장애인의 생생하고 감성 넘치는 표현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관과 가치관을 창조하여 사회 전반을 바꾼다는 인식 변화를 모색한다. 에이블아트 운동은 '예술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이란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비정상의 인간이 아니라, 다른 감수성과 미감을 기초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하고, 예술을 통해 사회와 통합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을 추구'하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주윤정, 2016).[26]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단순한 시혜적 복지 혹은 교육 프로그램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작품세계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의 장르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에서 장애인 예술활동이 발현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주요한 기반은 바로

---

26) 주윤정(2016), "에이블아트(Ableart), 차이와 소통의 예술," 「SNUAC」(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6년 9월, 12호) http://snuacnews.snu.ac.kr/?p=6072 (2020년 8월 11일 검색)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구축됐다는 점이다.[27] 특히 최근 일본의 장애인 예술활동은 다양한 양상을 지닌다고 평가되는데, 연구자들은 그 원인이 장애 예술인이 창작지원을 받기 이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복지차원에서의 연금제도 등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국내가 월 23~30만원 정도라면, 일본의 경우는 60~160만원의 장애인 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다(주윤정 외, 2018: 199). 일본의 경우, 예술활동에 개입하기 이전에 이미 장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28] 또한 일본에서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수첩' 발급을 받아 의료비 경감 외에 휠체어와 보청기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주윤정 외 2018:199).

하지만 에이블아트의 가장 큰 특징은, 장애인 예술 관련 논의가 복지중심적인 (기존) 관점에 머물지 않고, 장애인 예술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자율적 힘을 기반으로 주도된 장애인 예술운동"이라는 점이다(한지연 외 2016:301).[29] 이 같은 시민운동의 발전에 따라 최근 일본 장애예술에서 주목할 현상은 예술계 쪽에서 장애인 예술이 확장되는 것보다, 기존 복지시설 등에서 예술적 관점과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 이슈와 결합되는 예술의 양상이 장애인을 표현의 주체로서 상정하되 이들이 표현하는 예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과 사회참여 간의 관계를 확대시키기 위한 공동체 운동의 성격으로 나아가고 있다(방귀희 외, 2012). 곧, 예술창작을 작품 중심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 실천 속에서의 창작과 창의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인간이 주변의 세계와 맥락 속에 살아가면서 맺는 다양한 관계와 실천이 모두 예술창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단기적 성과보다 꾸준한 창작

---

27) 아래의 일본의 장애인 복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주윤정 외(2018) 연구에서 다룬 일본 사례 분석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28) 한국도 장애인 연금의 현실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과 비교할 때 아직은 미약하다고 평가된다. 정부는 장애인연금에서 기초급여액 30만원 지원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데일리〉(2020년 07월 20일), "기초연금 내년부터 확대...소득하위 70%에 월 30만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25686625836488&mediaCodeNo=257&OutLnkChk=Y(2020년 8월 11일 검색)

29) 한지연·심경순(2016).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역량강화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4(3), 296~324쪽. http://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7045222 (2020년 8월 11일 검색)

활동의 지속성에 의미를 두면서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삶 속의 예술로 자리 잡아가도록 노력한다. 이를 통해 사회관계 속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는 방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을 매개로 만나 새로운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둔다.

2) 일본 장애예술 현황[30]

① 아뜰리에 야마나미(Atelier Yamanami)[31]

1986년 '산맥 공동작업소'로 시작된 '아틀리에 야마나미(이하 야마나미)'는 시가현(滋賀県)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사회복지법인 산맥위원회가 운영한다. 이곳은 본래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설운영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혹은 보호작업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예술적 매개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20~70대 장애 예술인 41명(2018년 기준)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전시참여를 통해 창작 작품들을 선보인다(주윤정 외 2018:202). 야마나미에서는 현재 장애인들의 '생활지원 활동'과 함께 '취업 계속 지원활동'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표 2-4〉 아뜰리에 야마나미 장애인 지원 활동

구분	주요 내용	주요업무
생활지원활동	- 생활에 관한 상담이자 일상적 지원 - 창작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 기회 제공 - 기타 신체기능이나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폐지회수, 폐트병 뚜껑회수, 재활, 산책, 회화, 도예
취업 계속 지원활동	- 생산활동 및 기타 활동의 기회 제공 -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향상 관련 훈련 등	점토, 그림, 바느질, 자수, 유지보수, 찻집 영업

자료: 야마나미 공방 홈페이지, http://a-yamanami.jp/(2020년 8월 11일 검색)

야마나미의 경우, 장애인 개개인의 관심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려고 노력한다. 아뜰리에에서 장애인이 매일 창작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산책을 하거나 드라이브·운동·노래 등 다양한 경험 가운데 개인의 속도와 의욕에 맞춘 활동을 지향한다. 5개

30) 일본 장애예술 관련 사례는 주윤정 외(2018:199-215)「장애인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연구」에 소개된 일본 사례 중 일부를 기반으로 하되, 추가 자료수집을 통해 재작성했음을 밝힌다.

31) 야마나미 공방 홈페이지, http://a-yamanami.jp/(2020년 8월 11일 검색)

의 그룹활동은 코로봇쿠루 점토와 회화를 중심을 하는 'Atelier', 코튼 자수와 회화 중심 활동을 기반으로 쿠키 만들기나 유리실습을 하는 'Studio', 체력만들기를 적극적으로 하되 그림이나 다른 취향을 살리는 제품제작을 하는 '프렌댐', 다양한 재료 기반 창작활동을 하되 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모락모락', 폐지 회수나 페트병 뚜껑 회수를 하면서 점토와 회화작업 등에 참여하는 '타이어' 등이다.

[그림 2-17] 아뜰리에 야마나미: 작업실 전경 및 장애인 예술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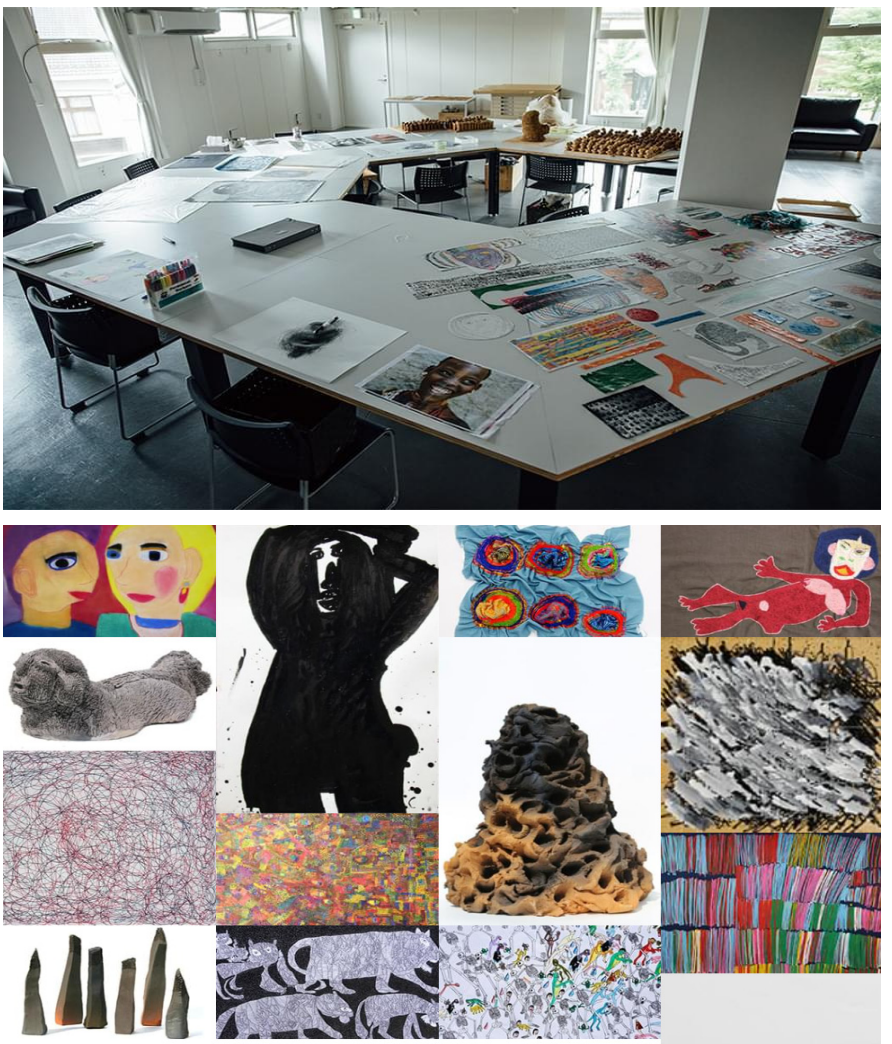

자료: 야마나미 공방 홈페이지, http://a-yamanami.jp/(2020년 8월 11일 검색)

이 같은 활동은 최소한의 프로그램 형식을 갖춰 이뤄진다. 야마나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의 구체적 내용보다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의 표현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이다(주윤정 외, 2018: 201). 스태프는 동등한 입장에서 장애인의 관심과 요구에 세심하게 대하려고 하고, 장애 예술인들이 자발적 의지에 따라 풍부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런데 야마나미에 있어 특이한 점은 비장애 예술인 또는 아트 서포터즈처럼 예술관련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주윤정 외, 2018: 203). 예술적 교육을 실시하기보다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유지하여 창작이 자연스럽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② NPO 법인 스윙 (SWING)[32]

교토에 있는 스윙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장애인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NPO다. 장애인을 복지 틀에 가두지 않는 것은 물론, 에이블 아트와 같이 장애인의 예술활동이 일종의 장르화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이 펼쳐지도록 하는데 힘쓴다. 운영철학은 "'Enjoy! Open!! Swing!!!"으로, 활동내용이 유쾌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경향이 크다(주윤정 외, 2018: 204). 스윙은 '장애인 종합지원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사업을 하는 시민단체로 정부지원을 받는다. 상근직원은 8명으로 이들 가운데 예술창작 관련 전공자는 3명이다. 이들이 참여하는 활동은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스윙 NPO의 장애인 활동

구분	주요 내용	
Shiki Olioli (박스접기)	- 박스접기는 전국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스윙 내에서는 공식활동으로 진행되는 데, shiki(박스), 접기접기(Olioli)라는 재미난 이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점을 강조함	
우리는 표현족	- 2008년부터 시작한 시설 기반 예술창작 활동. 기관 내 작업공간이나 타 공간 등에서 자유롭게 진행되는데, 참여자들은 고정된 시간이 아닌 자신들의 스케줄에 따라 작업에 참여함	

32) NPO 법인 스윙 홈페이지, http://www.swing-npo.com/intro/index.html(2020년 8월 11일 검색)

구분	주요 내용		
Oyss 프로젝트	- 2008년부터 시작한 활동으로 뮤지션 Cocco의 '쓰레기 제로 대작전'에서 영감을 받음. '아름다운 교토를 더 아름답게'라는 슬로건으로 교토 지역 중심으로 활동 - 파란색 옷을 입고 퍼포먼스하며 동네청소를 함		

자료: 야마나미 공방 홈페이지, http://a-yamanami.jp/(2020년 8월 11일 검색)

이 같은 활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윙은 장애인의 일상 또는 기존 업무와 연결된 활동을 예술적 기획을 통해 확장하고 있다. 길거리와 전시회 등에서 장애인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운영철학으로 제시하는 유머와 즐거움의 요소를 활동에 적극적 반영한다. 스윙은 이들이 진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예술'이라는 말로 규정하기보다는 장애인의 삶을 '예술적 기획'의 방식을 통해 드러내고 표현하는 일종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림 2-18] 스윙 NPO 홈페이지

자료: NPO 법인 스윙 홈페이지, http://www.swing-npo.com/(2020년 8월 11일 검색)

스윙의 대표 마사유키에 따르면(주윤정 외, 2018:206), 스윙 활동에 있어 예술관련 전공자가 장애인의 창작활동에 함께 하지만, 이들은 예술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의 활동이 예술이라서 중요해지거나 또는 예술은 마치 대단한 것이라고 오해될 수 있기 때문, 그리고 오인(誤認)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 자체의 의미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윙은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단체 내에서의 기획 활동과 연계하는 한편, 비장애인 예술가와 협업함으로써 독자적인 (예술)창작의 개념을 만들어 간다. 스윙의 사례는, "장애를 바라보는 기존의 사회적 시선을 향해 질문던지기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한다"(주윤정 외, 2018: 206) 지적에서 보듯이, 사회와 관계성을 모색하는 동시대의 예술 지향과도 맞닿아 있다.

제2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 분석

1. 장애 예술인(단체) 활동 현황

가. 장애 예술인(단체) 활동 ①: 기존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장애 예술인(단체) 활동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장문원에서 실시한 「2018 실태조사」에 비교적 잘 나타난다. 장애 예술인에 대한 최초의 본격조사로, 모집단 설정부터 방문면담조사까지 수행했다. 조사는 장애 예술인과 장애인 예술활동가를 구분하는데, 전자(장애 예술인)는 다섯 가지 기준[33]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하는 장애인이며, 후자(장애인 예술활동가)는 1년 동안 기관(협회, 단체)에서 주관한 창작(발표)활동 참여자다.

모집단은 2,119개 장애인 관련기관(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장애인 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가운데 9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장애 예술인은 5,972명을, 장애인 예술활동가는 25,722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했다. 모집단 설정 이후, 활동 장르·장애유형에 따라 층화표집하여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했다(장애 예술인 416명, 장애인 예술활동가 584명). 이번 보고서에서는 장애 예술인을 중심으로 설문 결과를 기술한다.

1) 활동 분야

장애 예술인의 활동 예술 분야는 '서양음악'(38.3%)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학' 분야(18.0%), '미술' 분야(17.2%) 순이었다. 지체장애 예술인은 문학(32.7%),

33) ① 본인을 예술가로 인식, ②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 증명) 등록, ③ 기관(협회, 단체) 활동 이외 지속적 예술활동, ④ 장애인 및 예술관련 협회, 전국단위 행사 수상 경험, ⑤ 장애인 및 예술관련 협회, 전국단위 행사 초청 경험

서양음악(24.3%)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각장애 예술인은 서양음악(53.8%), 청각/언어장애 예술인은 문학(36.7%), 지적장애 예술인과 자폐성장애 예술인은 서양음악(38.5%, 69.0%)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장애 예술인[34]과 비교하여, 서양음악과 문학 분야 참여 예술인이 많은 특성을 보인다(서양음악-장애 38.3%, 비장애 6.8%; 문학-장애 18.0%, 비장애 8.1%). 반면에 미술, 대중음악, 연극 등에서는 장애 예술인의 참여가 적다.

〈표 2-6〉 장애 예술인의 주된 활동 예술 분야(2018 실태조사)

(단위: %)

구분		문학	미술	공예	사진	서양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기타
장애 예술인		18.0	17.2	4.1	0.5	38.3	3.3	5.3	4.2	2.6	6.6
장애 유형별	지체장애	32.7	14.9	5.6	1.0	24.3	3.2	2.7	2.6	1.3	11.8
	시각장애	3.2	7.5	1.3	0.0	53.8	10.0	16.4	0.0	2.0	5.7
	청각/언어장애	36.7	20.1	3.2	2.0	18.2	2.9	4.2	10.8	0.0	1.9
	지적장애	12.5	18.3	4.2	0.3	38.5	2.8	6.0	6.2	3.9	7.4
	자폐성장애	5.2	17.5	0.0	0.3	69.0	2.1	4.1	1.4	0.5	0.0
	뇌병변장애	27.7	26.7	2.3	1.7	18.9	2.1	4.6	5.1	6.6	4.2
	기타	34.2	18.1	17.6	0.0	22.9	3.1	0.0	4.1	0.0	0.0
장애예술 활동가		3.4	19.0	14.0	2.7	22.0	12.9	6.1	6.5	3.8	9.5
비장애 예술인		8.1	25.4	2.3	6.5	6.8	14.2	7.8	3.5	10.7	14.7

2) 예술활동

① 예술활동 참여경로

예술 분야에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교육 프로그램(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포함)'이라고 응답(68.5%)했다. 자폐성장애 예술인(38.8%)과 지적장애 예술인(14.5%) 그리고 서양음악 분야 활동 예술인(27.1%)에서는 '개인교습'을 통해 예술 분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보였다.

34)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실태조사」 결과를 의미한다.

〈표 2-7〉 예술활동 참여경로: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단위: %)

구분	교육 프로그램 (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포함)	개인교습	동호회 활동	그룹지도	기타
장애 예술인	68.5	13.5	7.5	6.3	4.2
장애예술 활동가	94.1	0.1	2.0	3.7	0.1

② 예술활동의 내용

현재 주된 예술활동을 질문한 결과, 대부분 '창작 및 실연'이라고 응답했으며(90.9%), '교육'이란 응답이 7.3%였다. 청각/언어장애 예술인(14.2%)과 지적장애 예술인(11.3%)은 '교육'을 중심으로 예술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보였다.

〈표 2-8〉 예술활동 중심 형태(1순위):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단위: %)

구분	창작 및 실연	교육	기술	기획/경영	기타
장애 예술인	90.9	7.3	1.0	0.6	0.3
장애예술 활동가	83.5	13.8	1.6	0.3	0.1

③ 최근 3년간 발표활동(출판, 발표, 공연, 전시 등)

최근 3년간 예술활동 횟수는 10.6회로 국내 활동이 10.4회, 해외활동이 0.3회다. 장애 예술인의 특성은 개인 활동보다 단체활동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국내활동 10.4회 가운데 개인활동은 1.8회인데 반하여 단체활동은 8.5회다. 개인활동이 많은 집단은 시각장애인이 유일하다(국내 개인 9.6회, 국내 단체 6.9회).

〈표 2-9〉 3년간 예술발표 활동: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단위: 회)

구분			소계			소계	전체
	국내 개인	국내 단체		해외 개인	해외 단체		
장애 예술인	1.8	8.5	10.4	0.0	0.2	0.3	10.6
장애예술 활동가	0.1	2.7	2.9	0.0	0.0	0.0	2.9

3) 창작활동 여건 및 외부 지원 경험

① 예술활동 작업 공간

예술활동 관련 작업 공간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가 절반 이상(65.4%)으로 나타났으며, 작업 공간을 보유한 응답자는 자택 외 작업 공간 보유자(22.1%)가 자택 내 작업 공간 보유자(12.5%)보다 많았다. 지체장애 예술인은 자택 내 작업 공간을 보유한 비율(26.7%)이, 시각장애 예술인은 자택 외 작업 공간을 보유한 비율(46.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학 분야 활동 장애 예술인이 관련 작업 공간을 보유하였다는 응답이 많았다(67.4%).

〈표 2-10〉 예술활동 관련 작업 공간 보유: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단위: %)

구분	자택(주거지) 내 작업 공간을 가지고 있다	자택 외 공간에 작업 공간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장애 예술인	12.5	22.1	65.4
비장애 예술인	22.5	27.0	50.5

② 예술활동 관련 지원 받은 경험

예술활동 관련 지원받은 경험은 38.0%였다. 공공지원을 받은 장애 예술인은 29.2%, 민간지원을 받은 장애 예술인은 12.0%였다.

시각장애 예술인(44.7%)과 청각/언어장애 예술인(42.9%)은 공공지원을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뇌병변장애 예술인(86.6%)과 지체장애 예술인(70.0%)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2-11〉 예술활동 관련 지원 받은 경험: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단위: %)

구분		공공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민간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장애 예술인		29.2	12.0	62.0
장애 유형별	지체장애	22.9	8.7	70.0
	시각장애	44.7	15.5	45.2
	청각/언어장애	42.9	0.0	57.1
	지적장애	35.0	10.9	57.9
	자폐성장애	26.5	27.2	51.4
	뇌병변장애	8.0	5.4	86.6
	기타	10.3	0.0	89.7

구분		공공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민간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주 활동분야별	문학	24.9	6.4	68.8
	미술	17.2	7.0	75.8
	공예	33.7	0.0	66.3
	사진	65.4	3.9	30.7
	서양음악	38.1	20.1	46.9
	대중음악	21.7	22.2	65.0
	국악	28.8	6.4	64.8
	무용	42.1	18.7	57.9
	연극	17.7	0.0	82.3
	기타	14.7	1.6	85.3
장애예술 활동가		12.6	3.8	83.6

③ 예술활동 관련 지원 내용

예술활동 관련 지원받은 경험자(170명)의 지원 받은 내용은 창작활동 지원이 79.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창작 공간 지원 30.1%, 창작관련 인력지원 27.6%, 역량강화 지원(교육 및 연수) 20.1%였다. 창작공간 지원은 시각장애 예술인(59.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인력지원은 청각/언어장애 예술인(89.9%), 시각장애 예술인(49.1%), 미술과 문학분야(각각 40.1%, 36.1%)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역량강화 지원은 청각/언어장애 예술인(42.7%), 공예분야(66.3%)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2-12〉 예술활동 관련 지원 내용(중복응답):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단위: %)

구분	창작활동 지원 (기금 등)	창작 공간 지원	창작 관련 인력 지원	교육/연수 등 역량강화 지원	기타
장애 예술인	79.0	30.1	27.6	20.1	1.3
장애예술 활동가	72.4	38.5	22.6	14.4	4.3

4) 장애 예술인의 인식

① 예술활동 관련 발표 기회

예술활동 관련 발표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40.6%로 '충분하다'는 의견에 비해(20.0%) 두 배 정도로 많았다. 미술 분야(62.8%), 사진 분야(61.1%)에서 예술활동 관련 발표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2-13〉 예술활동 관련 발표 기회: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단위: %)

구분	①+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⑤ 충분하다	평균 (점)	100점 평균(점)
장애 예술인	40.6	39.4	20.0	2.7	43.0
장애예술 활동가	38.6	38.4	23.0	2.8	45.9

②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어려운 점

창작 및 발표 활동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발표/전시/공연 시설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29.9%), 다음으로 '연습/창작공간 부족'(21.6%), '장애 예술인 관련 시설/장비 부족'(13.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시각장애 예술인은 '향유층 부족'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으며(36.2%), 뇌병변장애 예술인(46.5%)과 자폐성장애 예술인(27.4%)은 '연습 공간 및 창작 공간 부족'을 가장 어려움 점으로 응답했다.

〈표 2-14〉 창작 및 발표 활동의 어려운 점(1순위):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단위: %)

구분		작품 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 부족	연습 공간 및 창작 공간 부족	장애 예술인 관련 시설/장비 부족	향유층(관람객, 독자, 관객 등) 부족	지역(행정 당국)의 관심 부족	관련 정보 부족	작품 창작에 필요한 기자재 부족	작품 창작에 필요한 인력 부족	작품 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 낙후	정보 시스템의 부족	기타	어려운 점 없음
장애 예술인		29.9	21.6	13.7	9.1	5.8	5.1	3.0	2.9	2.8	0.5	1.2	4.4
장애 유형별	지체장애	42.0	11.0	16.3	2.2	8.7	4.3	1.0	2.8	0.2	1.2	1.5	8.8
	시각장애	22.3	8.7	19.1	36.2	2.7	4.7	3.3	0.0	0.8	0.0	0.8	1.3
	청각/언어장애	58.4	14.3	1.6	5.3	0.0	2.1	0.0	11.0	0.0	2.0	2.2	3.1
	지적장애	28.1	25.5	11.9	10.2	4.2	3.7	4.1	3.8	5.1	0.3	0.5	2.6
	자폐성장애	19.0	27.4	17.4	8.0	7.6	12.9	0.0	1.4	2.4	0.0	3.6	0.5
	뇌병변장애	16.9	46.5	9.2	8.2	1.3	2.7	5.4	2.2	2.7	0.0	0.0	5.0
	기타	31.0	9.5	9.7	0.0	16.4	4.1	11.4	0.0	0.0	0.0	0.0	17.9

구분		작품 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 부족	연습 공간 및 창작 공간 부족	장애 예술인 관련 시설/장비 부족	향유층(관람객, 독자, 관객 등) 부족	지역(행정 당국)의 관심 부족	관련 정보 부족	작품 창작에 필요한 기자재 부족	작품 창작에 필요한 인력 부족	작품 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 낙후	정보 시스템의 부족	기타	어려운 점 없음
주 활동분야별	문학	41.6	22.3	13.6	0.0	9.1	7.2	2.6	3.0	0.3	0.0	0.3	0.0
	미술	22.6	25.2	3.1	4.3	4.5	10.6	2.3	4.5	10.0	0.0	2.4	10.3
	공예	21.8	10.2	7.8	0.0	8.7	7.2	7.2	14.4	0.0	0.0	0.0	22.7
	사진	24.7	11.0	9.6	35.0	0.0	0.0	0.0	0.0	0.0	9.2	10.4	0.0
	서양음악	32.6	18.8	18.5	14.7	6.4	2.3	2.1	0.6	2.5	0.7	0.7	0.0
	대중음악	25.6	24.2	17.6	7.3	0.0	5.0	14.6	0.0	0.0	3.8	0.0	2.0
	국악	31.5	15.5	7.8	21.2	3.3	5.2	2.1	4.6	0.9	0.0	2.1	5.7
	무용	22.4	41.3	0.0	16.7	4.2	6.3	0.0	1.8	0.0	0.0	6.0	1.3
	연극	20.5	34.3	17.2	16.6	5.9	5.4	0.0	0.0	0.0	0.0	0.0	0.0
	기타	15.5	20.4	28.8	0.9	1.6	0.0	7.2	6.0	0.0	0.0	0.0	19.7
장애예술 활동가		**29.9**	**21.6**	**13.7**	**9.1**	**5.8**	**5.1**	**3.0**	**2.9**	**2.8**	**0.5**	**1.2**	**4.4**

③ 예술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장애 예술인의 예술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47.7점이다. 청각/언어장애 예술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평균 56.5점), 자폐성장애 예술인(평균 41.1점), 뇌병변장애 예술인(평균 42.3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활동분야별로는 사진분야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2-15〉 예술정책 전반적 만족도: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단위: %)

구분	①+② 불만족	③ 보통	④+⑤ 만족	평균 (점)	100점 평균(점)
장애 예술인	35.0	39.2	25.8	2.9	47.7
장애예술 활동가	24.8	42.6	32.7	3.1	52.4

④ 예술정책 내용별 만족도

장애 문화예술정책을 8개로 나누어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50점을 넘지 못했다. 8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41.3점에서 46.5점 사이에 분포했다.

〈표 2-16〉 예술정책 내용별 만족도: 장애 예술인(2018 실태조사)

(단위: 점)

구분	장애인 예술 활동 직접 지원사업의 기회 확대	예술활동 결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수준 강화	장애인 예술활동과 관련된 시설 확충 및 정비	장애인 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와 콘텐츠가 있는 포털사이트 운영	창작발표의 기회 확대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 기회 확대	장애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제고	장애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재교육) 증대
장애 예술인	46.3	41.3	45.4	43.8	46.5	45.4	42.9	43.2
장애예술 활동가	45.8	43.6	46.3	44.5	46.1	47.6	44.9	48.3

나. 장애 예술인(단체) 활동 ②: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1) 설문조사 주요결과

① 설문조사 개요

2018년~2019년 장문원 공모사업에 참여한(하고자 한) 장애 예술인(단체), 그리고 일부 비장애인(단체)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장애 예술인(단체)의 일반 현황 및 장애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현황, 장문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는 2020년 8월에 온라인 웹조사 형식으로 진행했고, 실제조사는 ㈜글로벌리서치에서 담당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예술단체(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한다.

〈표 2-17〉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장애 예술인(단체) 설문조사(2020)

구분	내용
조사 대상	2018~2020 장문원 공모사업에 참여한(하고자 한) 장애 예술인(단체), 일부 비장애인 단체
표본 수	73명
표본 추출	편의표집
조사 방법	온라인 웹조사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Editing - Coding - Punching - Clean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 SPSS 13.0 for Windows로 분석함
실사기간	8월 17일(월)~8월 31일(월)
조사기관	(주)글로벌리서치
조사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② 장애 예술인(단체)의 일반 및 사업현황

장애인 예술단체 현황 관련 결과를 간략히 살펴본다. 첫째, 장애인 예술단체 내 장애인 구성원 중, 평균적으로 27.1%가 수급권자였다. 문화예술 단체 중 수급권자인 장애인 구성원이 한 명도 없는 단체는 26.5%, 수급권자의 비율이 40% 이하인 단체는 44.1%, 40%를 초과하는 단체는 전체의 29.4%이다.

둘째, 장애 예술인(단체)은 작년(2019)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평균 7.5건 진행했다. 아예 진행하지 않은 곳은 5.5%, 1건 진행한 곳은 23.3%, 2건 진행한 곳은 13.7%, 3~5건 진행한 곳은 37.0%로 가장 많았으며, 6건 이상 진행한 곳은 20.5%이다. 2020년에는 8월까지, 장애 예술인(단체)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평균 4.6건 진행했다. 아예 진행하지 않는 곳은 16.4%, 1건 진행한 곳은 23.3%, 2건 24.7%가 가장 많았으며, 6건 이상 진행한 곳도 13.7% 수준으로 적지 않은 편이었다.

장애 예술인(단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건수를 작년(2019)과 비교해보면 작년(2019) 평균 7.5건에서 올해(2020) 4.6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0년을 12개월(1년)로 환산해보면, 6.9건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 취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애 예술인(단체) 가운데, 2020년 기준으로 재정 지원 없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는 32.8%였다.

넷째, 장애 예술인(단체)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장문원에서 지원을 받은 횟수는 '1건 이하'가 54.8%로 가장 많았다. '2~3건'이 39.7%, '4건 이상'이 5.5%였다.

2) 면담조사 주요결과

〈표 2-18〉 장애 예술인(단체) 면담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2019~2020 장문원 공모사업 및 지정사업 참여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대상자 수	장애 예술인(단체) 22명
조사 방법	일대일 면담(일부 일대다 면담, 서면조사)
조사기간	6월 17일(월)~9월 25일(금)

① 장애예술의 의미와 범주: 예술 그 자체 vs. 장애 정체성 표현

장애 예술인(단체)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을 사회 구성원으로 차별없이 누려야 할 권리, 그리고 장애 예술인의 삶이라고 인식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은 장애에 맞춰 특화된 것도 있겠지만, 장애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구성원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하는 활동을 차별없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장애인 예술단체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은 장애 예술인 당사자에게는 그 자체가 삶인 거죠. 그리고 장애예술을 통해 이웃, 모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행복 같은 거 아닐까요?" (장애인 예술단체 2)

다만 장애인 예술의 의미와 범주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차이가 있다. 하나의 시각은 예술 일반, 곧 비장애인 예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예술이라는 것이다. 주로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단체의 시각이다. 이 같은 입장에서는 장애인의 예술 표현력보다는 장애인이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비장애 예술과의 질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장애 예술인이 비장애 예술인 못지않게 수준 높은 예술활동을 한다고 말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범위는 없어요. 예술은 장애와 비장애가 나누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장애인 예술단체 3)

"내가 생각하기에 문화예술 예산은 사회적 약자에게, 그 중에서도 약자인 장애인에게 집중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장애인 예술단체 4)
"국내 최고라고 생각해요. 다른 예술단과 달리 전문적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대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 예술단체 5)

다른 하나는 장애라는 정체성을 내보이는 것, 기존 예술을 전복시키는 것이 장애 예술이라고 인식하는 입장이다. 창작을 주로 하는 장애인 예술단체의 입장인데, 창작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예술표현 능력이 특화돼 있다고 인식한다. 곧, 다른 표현을 통해 기존 예술과 차별화된 영역이 장애인 예술이라고 인식한다.

"장애예술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전복하고 뒤집는 거 이것이 장애예술인 거죠. 장애인(예술인)은 예민하고 뛰어나기도 하지요." (장애인 예술연구자 1)

"장애인 문화는 마이너리티를 정체성의 한 측면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마이너리티는 소멸하거나 다른 정체성으로 대체 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로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장애예술은 제도를 답습하는 예술이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예술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은 전체 예술, 또는 문화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자유에 기여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장애인 예술단체 6)

"예술은 다른 영역과 달리 장애인의 진입이 쉬운 측면이 있어요. 훈련이 쉬운 측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장애인은 표현과 몸짓을 잘 표현해 냅니다. 물론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장애인 예술은 새로운 이슈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이들의 예술 활동을 통한 표현은 다양하고 의미 있습니다…"(장애인 예술단체 7)

② 장애 예술인 전문 교육체계의 필요성

장애 예술인(단체)의 창작환경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전문적 교육체계의 부재라고 인식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첫 번째는 경제적 지원, 특히 장애 아동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 전문교육기관, 전문강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현재는 장애 예술인이 예술인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장 어려운 점은 예술가들과 동일하게 예술교육을 받아 예술가적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장애 예술인들이 전문적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래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장애 아동들의 예술 교육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장애인 예술단체 8)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성장보다는 기회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는 단발성이니까 그런 기회보다는 사실 뭔가 비용을 지원해줘서 장애인 예술가들이 전문 아카데미에 갈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요." (장애인 예술단체 9)

"개인적으로 저희는 강사분들, 전문가 강사가 없다는 게 저희 교육의 문제였어요. 비장애 예술인 교육 관련해서 (교육) 받은 것을 장애인들한테 가르치니까 이 친구들이 습득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대학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대학에서 무슨 과가 있는지는 문제가 아닌데 장애인 예술가를 누가 가르쳐 주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 예술단체 10)

③ 장애인 예술의 시장진입 필요성

창작 전문단체, 비교적 규모가 큰 장애인 예술단체 입장에서는 장애예술 활성화는 예술작품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공공지원은 한계가 있기에, 장애 예술인(단체)이 자생력을 지니려면 판매될 수 있게 하는 간접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같은 직접 지원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역할, 그리고 이를 위한 마케팅과 홍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장애 예술인의 미술작품을 공공에서 구매해서 미술은행 식으로 공공기관에 임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장애인 예술단체 11)

"장애 예술인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작품의 상업적 거래가 어렵습니다. 작품 거래의 루트를 안다고 해도 상업적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지요. 그러므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선 다른 직업에 의존해야 하며 그에 따라 작품의 경쟁력도 저하됩니다. 앞으로의 환경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먼저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기능을 기관이 직접하기 힘들다면 장문원 같은 기관에서 출자한 온라인 마켓의 운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 제도와 시장이 외면하는 작품의 거래를 활성화 하는 것이 지원금의 직접지원보다 경쟁력과 생존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장애인 예술단체 6)
"장애 예술인의 재능발굴이 가장 중요하지요. 재능있는 장애 예술인에게 무대를 만들어주고, 판로도 개척해주는 일, 특히 판로를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해요." (장애인 예술단체 11)

"이미 저희가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디자인과 홍보 부분이에요. 장애예술이라고 해서 떨어지고 그런 것보다 좋은 디자인회사에 문의해서라도 이것이 포장될 수 있게, (비장애인 예술작품과)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있게 신경 쓰는 것이 디자인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요." (장애인 예술단체 12)

④ 기존 예술단체와 풀뿌리(소규모) 단체의 시각 차이

기존 장애인 예술단체에서는 장애인 예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은 소규모 단체가 장문원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고 인식한다. 소규모 단체는 예술단체라기보다는 인권(운동)단체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반면에 소규모 단체에서는 기존 장애인 예술단체는 협회의 성격이 강하지, 실제 예술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정반대의 입장이지만, 실제로 장애인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아져야 한다는 인식은 동일하다. 문제는 어떤 단체를 장애인 예술단체로 인식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전문 예술단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은 같지만, 누가 전문예술단체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른 것이다.

"장문원 공모사업에 복지부단체가 들어와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비예술 장애인 단체가 많이 공모에 참여하는 거죠. 심사과정에서 전문성이나 예술의 가치 이런 것이 중요시 되지 않고, 선정되는 면이 있어요." (장애인 예술단체 4)

"예술위에서 장문원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기존 대규모 장애인 예술단체의 입김이 많아졌다고 봐요. 장문원 예산은 늘었지만 대규모 장애인 예술단체는 기획형 프로젝트를 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소규모, 풀뿌리 단체는 쉽지 않아요. 여전히 대규모 장애인 예술단체의 입김이 세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 이 단체들은 협회의 성격이 강하지, 순수 예술단체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실제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장애인 예술단체 7)

2.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현황

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①: 기존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실태는 장애인실태조사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사회조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사라는 장점이 있으나, 비장애인과의 비교가 어렵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비장애인과의 비교가 가능하나 장애인이 과소표집된 단점이 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를 시계열로 살펴보고,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비장애인과 비교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시계열 비교: 장애인실태조사

1-1) 조사 개요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3년 단위 표본조사로 장애인 대상 조사 가운데, 가장 오래됐고 규모가 크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인구센서스를 모집단으로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문화예술활동과 관련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여섯 번의 조사 시계열을 비교했다. 2005년은 모집단과 표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2005년은 등록장애인, 비비례 표집), 단순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질문과 답변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문항도 있어(중복응답이지만 모든 항목에 응답하는 경우와 1~3순위만 응답하는 경우), 정확한 비교보다 추이를 중심으로 이해하려 한다.

1-2) 주요 결과

① 문화·여가활동 참여

장애인 문화예술 관람률은 6.4%, 문화예술참여율은 3.5%, 창작적 취미 활동률은 6.2% 수준이다. 문화예술 관람률은 2000년 2.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 정점(7.1%)이며, 2017년에 6.4%였다.

〈표 2-19〉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2000년~2017년(장애인실태조사)

(단위: %)

<table>
<tr><th>구분</th><th>2000년</th><th>2005년</th><th>2008년</th><th>2011년</th><th>2014년</th><th>2017년</th></tr>
<tr><td>문화예술 관람(연극, 영화 등)</td><td>2.7</td><td>3.5</td><td>2.6</td><td>6.0</td><td>7.1</td><td>6.4</td></tr>
<tr><td>TV시청(유선방송, 비디오 포함)</td><td>92.7</td><td>95.2</td><td>83.4</td><td>96.0</td><td>96.0</td><td>96.6</td></tr>
<tr><td>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td><td>10.7</td><td>19.7</td><td>10.1</td><td>27.3</td><td>29.1</td><td>30.5</td></tr>
<tr><td>승부놀이(바둑, 당구, 경마 등)</td><td>7.6</td><td>5.7</td><td>…</td><td>7.0</td><td>5.6</td><td>4.2</td></tr>
<tr><td>문화예술참여</td><td>…</td><td>…</td><td>…</td><td>…</td><td>…</td><td>3.5</td></tr>
<tr><td>창작적 취미</td><td>14.9</td><td>3.2</td><td>6.4</td><td rowspan="2">4.5</td><td rowspan="2">4.0</td><td rowspan="2">6.2</td></tr>
<tr><td>자기계발활동</td><td>…</td><td>…</td><td>1.4</td></tr>
<tr><td>독서, 신문이나 잡지 읽기</td><td>…</td><td>33.7</td><td>…</td><td>30.4</td><td>25.0</td><td>…</td></tr>
<tr><td>스포츠 관람</td><td rowspan="2">4.5</td><td rowspan="2">4.9</td><td>0.7</td><td rowspan="2">8.0</td><td rowspan="2">9.5</td><td rowspan="2">8.5</td></tr>
<tr><td>스포츠 활동</td><td>8.0</td></tr>
<tr><td>학습활동(영어, 한문, 교양강좌 등)</td><td>…</td><td>5.2</td><td>…</td><td>4.3</td><td>3.9</td><td>…</td></tr>
<tr><td>사회봉사</td><td>…</td><td>3.5</td><td>1.6</td><td>5.3</td><td>3.9</td><td rowspan="2">17.8</td></tr>
<tr><td>종교 활동</td><td>…</td><td>…</td><td>21.3</td><td>…</td><td>…</td></tr>
</table>

구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여행(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	12.2	7.8	4.1	9.2	9.8	6.8
해외여행				4.1	3.9	5.5
사교(친구·친척만남, 모임 등)	50.9	54.2	27.4	57.5	56.1	51.4
자조모임	…	…	…	…	…	2.5
가족관련 일(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12.2	16.0	…	37.4	34.1	34.3
가사잡일(장보기 포함)	31.3	45.2	24.5	57.8	58.5	…
휴식(사우나 등)	23.4	14.4	69.0	35.4	29.0	44.3
기타	2.2	6.1	14.2	0.8	1.3	0.9

주) 2005, 2011, 2014, 2017년: 모두 선택하는 문항, 지난 1주일 동안
2008년: 1,2,3순위 선택하는 문항

②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문화·여가활동 만족도는 긍정(매우만족+약간만족)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2005년에 저점을 찍은 후, 2011년 39.5%, 2014년 42.9%, 2017년 49.3%로 계속 만족도가 높아진다.

③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이유

문화·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를 2017년 조사 결과 중심으로 살펴보면, '건강과 체력 부족(29.4%)', '경제적 부담'(28.0%), '시간부족'(10.6%) 순이었다. '건강과 체력'과 '경제적 부담'은 하락 추세에 있는 반면, '시간부족'은 상승 추세를 나타냈다.

〈표 2-20〉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2005년~2017년(장애인실태조사)

(단위: %)

구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	39.5	36.4	41.6	32.1	29.4
경제적 부담	42.7	35.9	32.2	30.7	28.0
시간의 부족	6.9	9.5	9.2	10.5	10.6
이동의 불편	1.1	0.7	0.7	2.5	8.5
도우미가 없어서	…	3.2	2.7	3.4	3.1
여가시설의 부족	1.6	1.5	1.2	2.1	1.5
여가시설내 편의시설 부족	1.2	2.3	1.4	1.5	0.9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1.0	2.4	1.3	2.1	2.8
적당한 취미의 부재	5.4	8.0	9.6	9.2	9.9
의사소통의 어려움	…	…	…	5.8	5.1
기타	0.6	0.2	0.1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장르별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를 살펴보면, 영화 관람 횟수가 가장 높았고, 다른 장르는 거의 관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2-21〉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2014년 vs. 2017년(장애인실태조사)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없음	1~3회	4~6회	7회 이상	없음	1~3회	4~6회	7회 이상
문학행사	97.8	1.8	0.2	0.3	98.1	1.5	0.2	0.1
미술 전시회	97.1	2.2	0.3	0.3	97.5	2.0	0.3	0.3
서양음악	98.8	1.0	0.1	0.1	98.9	0.9	0.1	0.1
전통예술	98.5	1.2	0.2	0.1	98.5	1.3	0.1	0.1
연극	98.0	1.7	0.2	0.1	98.1	1.8	0.1	0.0
뮤지컬	98.0	1.8	0.1	0.1	97.5	2.3	0.1	0.0
무용	99.7	0.2	0.1	0.0	99.8	0.2	0.0	-
영화	76.9	13.9	5.4	3.9	76.0	13.5	6.1	4.4
대중음악, 연예	97.8	1.8	0.2	0.2	97.8	2.2	0.1	0.0

⑤ 예술행사 정보취득 방법

장애인은 TV와 라디오(35.2%), 웹사이트(30.1%), 주변사람(19.2%) 등을 통해서 예술행사 정보를 얻는다고 나타났다. 전통적인 홍보 매체인 TV와 라디오, 신문과 잡지로부터 정보 습득률은, 2014년에 비해 2017년도가 낮다.

⑥ 예술행사 관람의 걸림돌

장애인들은 예술행사를 관람할 때 비용(36.5%), 시간(18.4%), 근거리 시설(10.4%) 요인들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간요인은 2014년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7.8%p)한 반면, 프로그램 부족은 2014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5.6%p).

〈표 2-22〉 장애인의 예술행사 관람의 어려움: 2014년 vs. 2017년(장애인실태조사)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비용이 많이 든다	36.8	36.5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10.6	18.4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다	11.0	10.4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15.6	10.0
편의시설이 불편하다	3.8	6.2
함께 관람할 사람이 없다	5.2	5.0
관련정보가 부족하다	6.4	4.6
교통이 불편하다	8.8	3.9
편의지원이 부족하다(화면해설서비스 등)	…	3.9
기타	1.8	1.0
계	100.0	100.0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차이: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1) 조사 개요

국민의 문화예술 현황과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표본조사다. 2019년 이전의 「문화향수실태조사」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조사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됐다. 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장애 식별 코드를 포함한다. 책자에는 장애인이 등록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로 구분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미)등록 장애인(203명)의 향유실태를 파악했다.

2-2) 주요결과

① 문화예술행사 관람 및 관람 의향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의 장애-비장애 격차는 22.1%p였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58.1%인 반면, 비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0.2%였다. 또한 관람 의향률도 20.6%p의 격차가 있었다. 특이하게 전통예술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관람률과 의향률 모두 높았다.

〈표 2-23〉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관람의향률: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단위: %, %p)

구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문화예술행사 관람의향률		
	장애인	비장애인	격차	장애인	비장애인	격차
전체	58.1	80.2	22.1	65.0	85.6	20.6
문학행사	3.9	6.9	3.0	3.9	8.2	4.3
미술전시회	5.4	13.7	8.3	6.9	15.2	8.3
서양음악	2.0	6.8	4.8	1.5	8.1	6.6
전통예술	18.2	10.4	△7.8	18.2	11.6	△6.6
연극	7.4	14.2	6.8	7.9	19.3	11.4
뮤지컬	8.9	12.5	3.6	7.4	21.4	14.0
무용	1.0	2.5	1.5	1.5	4.5	3.0
영화	45.3	75.6	30.3	52.2	80.7	28.5
대중음악/연예	17.2	22.3	5.1	21.2	29.0	7.8

②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낮아서 격차가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전통예술과 대중예술에서는 장애인의 관람률이 약간 높은 특성을 보였다. 한편, 만족도는 장르별로 차이가 있지만, 장애인 집단이 약간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2-24〉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단위: %, %p)

구분	매체 이용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매체 이용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장애인	비장애인	격차	장애인	비장애인	격차
문학행사	3.2	4.5	1.3	5.3	5.1	△0.2
미술전시회	3.7	4.6	0.9	5.6	5.3	△0.3
서양음악	3.7	8.4	4.7	5.3	5.4	0.1
전통예술	14.8	13.4	△1.4	5.6	5.4	△0.2
연극	1.6	5.3	3.7	5.0	5.5	0.5
뮤지컬	3.7	5.1	1.4	5.1	5.7	0.6
무용	1.6	3.2	1.6	5.7	5.6	△0.1
영화	61.4	84.4	23.0	5.6	5.6	0.0
대중음악/연예	93.1	88.2	△4.9	5.9	5.7	△0.2

③ 문화예술행사 직접 참여 활동

문화예술행사 직접 참여율은 장애인(6.4%)에 비해 비장애인(10.5%)이 4.1%p 높았다. 문화예술행사 참여 의향률은 차이가 더 벌어졌다(7.5%p). 직접 참여는 향유라기보다는 창작에 가까운데, 장애인이 예술창작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표 2-25〉 문화예술행사 참여와 참여의향: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단위: %, %p)

구분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문화예술행사 참여의향률		
	장애인	비장애인	격차	장애인	비장애인	격차
전체	6.4	10.5	4.1	11.3	18.8	7.5
문학행사	2.5	2.1	△0.4	2.0	2.9	0.9
미술전시회	2.5	2.9	0.4	3.9	4.7	0.8
서양음악	0.5	2.1	1.6	0.0	3.2	3.2
전통예술	1.5	2.0	0.5	2.5	3.0	0.5
연극	0.5	1.2	0.7	1.5	2.8	1.3
뮤지컬	1.0	0.7	△0.3	2.0	3.0	1.0
무용	0.0	0.5	0.5	1.0	1.6	0.6
영화	0.0	2.0	2.0	2.5	4.8	2.3
대중음악/연예	0.0	2.4	2.4	2.0	5.5	3.5

④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의향

문화예술교육 경험률과 의향률은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높았다(각각 3.0%p, 4.1%p).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전통예술, 연극의 교육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6〉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단위: %, %p)

구분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문화예술교육 의향률		
	장애인	비장애인	격차	장애인	비장애인	격차
계	6.9	9.9	3.0	18.7	22.8	4.1
문학	0.0	1.4	1.4	4.4	3.8	△0.6
미술	0.5	2.7	2.2	5.4	5.3	△0.1
서양음악	0.0	2.5	2.5	4.4	4.0	△0.4
전통예술	2.0	1.1	△0.9	3.4	2.9	△0.5
연극	1.5	0.8	△0.7	0.5	1.5	1.0
뮤지컬	0.5	0.7	0.2	2.0	2.0	0.0
무용	1.0	0.8	△0.2	1.5	2.3	0.8
영화	0.0	1.1	1.1	1.0	5.1	4.1
대중음악/연예	1.5	1.4	△0.1	3.9	4.7	0.8

⑤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과 만족도

비장애인(70.2%)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공간 이용경험률이 높았다(6.2%p). 이것은 장애인이 주민자치센터와 복지회관을 많이 찾기 때문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주민자치센터(장애인 49.8%, 비장애인 34.9%)와 민간공연장(장애인 21.2%, 비장애인 25.1%)을 많이 찾았다. 장애인은 복지회관(12.8%) 이용률이 높은 반면, 비장애인은 도서관(14.2%), 박물관(12.0%), 시·군·구민회관(10.0%) 같은 공간의 이용률이 높았다. 공간·환경 만족도와 프로그램 만족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거의 없었다.

〈표 2-27〉 문화예술공간 이용실태와 만족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단위: %, 점/7점)

구분	문화예술 공간이용률			문화예술 공간/환경 만족도			문화예술 프로그램 만족도		
	장애인	비장애인	격차	장애인	비장애인	격차	장애인	비장애인	격차
계	76.4	70.2	△6.2	5.7	5.6	△0.1	5.6	5.5	△0.1
시·군·구민회관	6.9	10.0	3.1	5.6	5.5	△0.1	5.7	5.3	△0.4
문예회관	7.4	5.8	△1.6	5.5	5.6	0.1	5.9	5.7	△0.2
복지회관	12.8	5.7	△7.1	5.6	5.5	△0.1	5.8	5.6	△0.2
청소년회관	1.5	2.7	1.2	4.3	5.3	1.0	5.0	5.2	0.2
문화원	1.0	1.9	0.9	4.5	5.1	0.6	-	5.4	5.4
도서관	4.9	14.2	9.3	5.3	5.6	0.3	5.4	5.6	0.2
박물관	2.0	12.0	10.0	5.3	5.6	0.3	5.3	5.7	0.4
문학관	0.0	0.9	0.9	-	5.4	5.4	-	5.5	5.5
생활문화센터	0.5	2.5	2.0	4.0	5.3	1.3	6.0	5.5	△0.5
문화의집	0.0	0.7	0.7	-	5.3	5.3	-	5.5	5.5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3.0	1.5	△1.5	5.3	5.4	0.1	6.7	5.7	△1.0
사설문화센터	1.5	5.7	4.2	6.7	5.5	△1.2	7.0	5.7	△1.3
주민자치센터	49.8	34.9	△14.9	5.9	5.7	△0.2	5.8	5.5	△0.3
민간공연장	21.2	25.1	3.9	5.8	5.8	0.0	5.3	5.6	0.3

주: 만족도는 이용자 대상

⑥ 문화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동아리 활동은 장애인 5.9%, 비장애인 8.3%였다. 장애인은 문학과 미술 동아리에, 비장애인은 미술과 서양음악 동아리 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미하지만 문학행사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참여율이 높았다.

〈표 2-28〉 문화 동호회 참여율: 장애인과 장애인 비교(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단위: %, %p)

구분	문화 동호회 참여율		
	장애인	비장애인	격차
계	5.9	8.3	2.4
문학행사	2.0	1.4	△0.6
미술전시회	2.0	2.3	0.3
서양음악	0.5	2.1	1.6
전통예술	1.0	1.4	0.4
연극	0.5	0.7	0.2
뮤지컬	0.0	0.3	0.3
무용	0.5	0.4	△0.1
영화	0.5	1.1	0.6
대중음악/연예	0.0	0.6	0.6

나.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②: 면담조사 및 FGI 결과를 중심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교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장소와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 참여자를 면담조사하고자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행사와 프로그램이 취소되어 방문 면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장애 예술인(단체) 면담조사, 그리고 장문원에서 실시한 초점집단면담조사(장애인 복지관 담당자, 강사, 참여자) 결과 등을 요약한다.

1) 면담조사 결과: 장애 예술인(단체)의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인식

①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정보량과 친절함은 늘었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는 예전보다 많아졌다. 정보가 많고, 공연장(전시장) 직원들도 친절하다. 하지만 여전히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적어도 정보량과 친절함은 늘었지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창작이 아닌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어려움은 많이 줄었어요." (장애인 예술단체 6)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유를 위해 예전에 비해 다양한 정보를 기관이나 온라인을 통

해 편히 알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가면 많은 양보와 배려를 해주셔서 불편하지 않기도 하고요. 장애인이 문화예술향유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인식 개선이 되었다고 뉴스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지금도 좋아졌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장애인이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를 제공 받고 도움을 받는 건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오래된 공연장이나 전시회장에 가보면, 계단이 너무 많거나 휠체어가 다니기 힘들고, 장애인 화장실 이용 시 손잡이 등을 엉망으로 달아놔 아예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움직임의 불편이 대부분이라 주변이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쉽게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갈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인들의 시간이 길었으면 하고 특히 장애인 특장차 이용이 쉬웠으면 해요." (장애인 예술단체 3)

"문화예술 향유시설에는 장애인 예술가와 관객을 위한 편의 시설이 필수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해요." (장애인 예술단체 8)

② 단체 비소속 장애인의 향유 기회 부족

장애 예술인, 개인이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대부분 복지관 이용자나 학생은 상대적으로 정보도 많고, 찾아오는 프로그램도 적지 않지만, 탈(脫)시설 장애인은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향유의 기회가 적어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기관에 소속되거나, 기관에서 D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특정한 장애인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요. 장애인 서비스는 점점 기관중심에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변하는 데 말이에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장애인들도 지자체 단위의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장애인 예술단체 1)

③ 사회적 인식 부족

아직까지 장애인이 문화예술 향유를 한다는 점에 있어 사회적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당연한데도 마치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현재의 장애인 문화예술 환경이 문화예술의 논리

가 아니라 복지의 논리에서 만들어졌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당연함, 혹은 권리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크게 고민하거나 사고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아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영화와 공연을 관람하고, 음악회와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예술의 미학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다를 것 같고, 다른 삶을 살 것 같은 인식의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거고요." (장애인 예술단체 8)

"지금은 인식개선이란 말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장애이해'라는 용어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모두 인식 이전의 인식을 만드는 구조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 환경적 구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구조라면, 예를 들어 모든 건축물이 경사로를 만들고 대체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비상 시설을 설치한다면, 그리고 모든 도로가 연결되는 경사형 구조이며 제한속도를 낮추는 데 동의 한다면, 굳이 장애인식 개선을 앞세워 장애인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 가지 과도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배려라고 홍보하는 기관들의 보여주기식 행정 말입니다." (장애인 예술단체 6)

2) 장애인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장문원은 2020년 4월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 대상 초점집단면담조사를 실시했다(복지관 담당자=사회복지사 6명, 예술강사 6명, 장애학생 부모 6명, 장애인 4명). 먼저 장애인 4명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고,[35] 관계자의 의견을 요약한다.

2-1) 장애인 4명 면담조사 결과

	A	B	C	D
장애유형	시각	시각	지체	지체
연령	30대 초반	30대 초반	20대 초반	10대 후반
성별	여	여	남	여
직업	특수학교교사	헬스 키퍼	대학생	고교생

35) 코로나 19 유행으로 장애인 모집이 쉽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면담이 용이한 시각 장애인 2명, 지체 장애인 2명이 참여했다.

① 음악미술 적극 참여형(A)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지금은 지적 장애인 특수학교의 교사인 30대 초반의 시각 장애 여성이다. 그는 문화예술, 특히 음악과 미술을 좋아하고 배우기를 즐겨한다. 그가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학교 때 미술을 하면서 작품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오는 성취감을 느끼면서부터다. 시각 장애인으로서 공예작품을 완성한다는 것에서 큰 성취감을 얻었고 그 성취감이 미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한 동기로 작용한 것이다.

"중학교 때 예전에는 CA라고 했었는데 특별활동 공예반에 들어갔어요. 미술시간이랑 특별활동을 하면서 작품이 완성되면 성취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는 취업 이후, 장애인 복지관에서 미술을 배우는데,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정서적 안정을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문화예술 활동은 경쟁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족인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좋아하는 활동하면서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쪽은 꾸준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는 미술뿐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악기도 접했다. 어릴 때는 피아노를 배웠고, 요사이는 플루트를 배우고 있다. 그에게 음악과 미술활동 참여는 활력이고 성취감의 원천이다. 이처럼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일찍이 악기와 미술을 접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교사)인 그에게 문화예술 활동은 자연스런 생활이다.

"악기는 피아노는 어렸을 때부터 쳤었고 최근 들어서 플루트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거 시작하면서 느끼는 활력 같은 것도 있고 그거를 배우면서 느끼는 성취감이나 스트레스 해소되고 그게 큰 것 같아요."

② 독서 적극 참여형(A)

시각장애인 학교를 마치고 지금은 기업체에서 헬스 키퍼(직원 상대 안마)로 일하

는 30대 초반의 여성이다. 그는 특수학교를 다닐 때는 클라리넷을 조금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독서를 좋아해서 북 콘서트에 자주 간다. 그가 문학작품 읽기를 좋아한 건, 중학교 특별활동(CA) 시간 때 문예활동을 하면서부터다.

"글쓰기 창작 문예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을 했어요."

그가 참여하는 북 콘서트는 서점이 아니라 복지관 내 행사다. 그가 서점의 행사에 가지 못하는 것은 비장애인 중심이기도 하고, 동행자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보문고의 북 콘서트가 있어도) 저희가 참석하기에는 아무래도. 비장애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혼자 가기도 그렇고."

"저희는 아무래도 혼자 다니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아는 길이 아닌 이상 어떻게든 안내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 가려면 누구랑 같이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시간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요."

복지관 북 콘서트에 가서, 평소 좋아하던 작가를 직접 보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에게는 큰 즐거움이다. 그는 북 콘서트 개최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통신망에 공지 사항에서 보았다고 한다. 그는 복지관에서 주최한 릴레이 독서에 참여해서 책을 읽는 경험을 할 정도로 책 읽기를 좋아한다.

"북 콘서트를 한다거나 작가님을 초청하는 그런 것도 갔었던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북 콘서트) 그런 사업들을 하면 관심 있는 것들은 가고 싶더라고요."

"작가분들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좋은 거 같아요."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통신망이 있거든요. 통신망에 그런 공지사항이 뜨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책을 배정받고 읽고 나중에는 릴레이 독서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읽고 이 사람이 다 읽으면 저 사람이 읽고 저희는 돌려가면서 만나기 어려우니까 연락을 해 주면 그다음 사람이 찾아서 읽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독서뿐 아니라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가는 그는 어릴 적 학교에서의 경험이 현재까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원동력이다.

"콘서트 같은 거 보러 가는 거 좋아해요. 김동률 콘서트, 김연우 콘서트, 다비치 콘서트 등 되게 다양하게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연극 뮤지컬 이런 것도 좋아하고"

③ 음악치료 참여형(C)

근육위축증을 앓고 있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그는 고등학교 시기에는 문화예술을 접한 적이 거의 없지만, 초등학교 때는 하모니카를, 중학교 때는 음악치료를 받았다.

중학교 때 음악치료를 받자는 어머니의 권유를 받고 자신의 장애가 새삼 부각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중2병'을 넘어가는 데에 음악치료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중2병'으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고 친구들과도 대화가 단절되고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음악치료로 인해서 자기 속에 응어리진 것도 해소하고 자기표현도 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밖으로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엄마가 시켰을 때)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지?' 했는데 그 당시는 장애에 대해서 갑자기 확 인식이 되다 보니까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음악 치료한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가 장애인이라는 거를 인식하면서 하필 중2병이 왔었어요. 그때 감정적으로 너무 휘둘려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랑 잘 얘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도 싫고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음악 치료나 그런 거를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풀리게 되고 긍정적인 말도 많이 해 다른 애들이랑 소통이 원활하기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가끔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려 하지만,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고 한다. 휠체어 석은 예매 사이트에서 예약이 안 되고, 그래서 동행자와 좌석이 떨어져 있어야 하고, 휠체어 석은 불편한데 티켓값이 비싸다는 것이다.

"뮤지컬을 보러 갈 때마다 휠체어석을 예매하려고 하면 항상 기획사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휠체어석 필요합니다'라고 전화를 해서 그쪽이랑 별도로 결제를 해야 해요. 그런 것들이 불편해요. 저희 둘만 가면 그렇게 예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둘 말고 다른 가족이 같이 갈 때는 일반석이랑 휠체어석이랑 예매를 같이 끊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C학생 어머니)

"대체로 뮤지컬 보러 가면 휠체어석이 항상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비용은 R석으로 다 똑같이 내거든요. 물론 할인을 받지만 그런 걸로 보면 '할인을 해준다'라는 이유로 제일 뒤에 배정을 해주나, 장애인은 항상 맨 뒤에서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C학생 어머니)

음악치료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공연장에도 가는 대학생인 그에게 문화예술은 어머니가 시켜서 한 것이지만,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됐다. 그리고 그는 현재도 어머니와 공연장에 간다.

④ 음악치료 참여형(D)

고등학교 2학년으로 근육위축증을 앓고 있는 지체장애인인 그는 중학교 때와 최근 2년 동안 음악치료를 받고 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어머니가 치료 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게 1:1로 음악치료 수업을 받는다. 음악 치료에 관련된 정보는 학교 엄마들 혹은 학교의 특수교육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얻는다.

어머니는 그가 음악치료를 받으면서 감정이 풍부해졌고 자신감과 자존감도 올라갔다고 말한다.

"일단 감정이 더 풍부해졌고 학교에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네가 좋아하는 곡을 DJ처럼 네가 선곡을 해서 틀어줘!' 하면 얘가 노래 선곡을 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활동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D학생 어머니)

그의 어머니에 따르면, 음악치료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지만, 지체장애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적고, 있는 프로그램도 발달장애 친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지체장애인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중심의 그룹 음악치료를 기피했는데 1:1 음악치료가 있어서 아이가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일반 학교에서 그랬을 때는 모든 문화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에서도 지체 쪽에 활동들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발달 장애라든지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발달 장애 친구들이 많기는 하지만 학교에 지체 장애 친구들도 많거든요. 앞으로도 지체 장애 친구들이 계속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예전에 음악 치료를 했었는데 그룹 수업이다 보니까 얘와 맞지 않고 그래서 안 했었어요. 그런데 ‘노래 부르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어머니, 여기도 개별 수업도 해요’ 해서 시켰어요.” (D학생 어머니)

한편, 그는 공연장에 가끔 가는데, 그의 어머니는 주관처가 무신경하다고 얘기하고, 공연이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열려서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 앞전에 연극을 보러 갔는데 그분들의 의식이 그만큼 낮다라는 게 분명히 지체 장애인 표가 나갔으면 온다 라는 거를 알 텐데 그러면 상시 엘리베이터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닫혀 있더라고요……폴킴을 얘가 좋아해서 거기 콘서트를 가려고 했는데 가까이서는 안 하더라고요. 서울이나 저 지방으로 가 버리니까 표도 못 끊었고 그렇다고 저 지방까지 가기에도 힘들고. 이런 가까운 데서 접할 수가 있는 기회가 없어요.” (D학생 어머니)

2-2) 사회복지사(예술강사)와 장애인 학부모 의견

① 문화예술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낮음

사회복지사, 예술강사, 장애인(학부모) 모두 장애인 예술향유 여건이 열악하다고 말한다. 이동하기 어렵고, 문화시설을 방문해도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행자와 적절한 교통편이 없으면 예술현장에 접근하기 어렵다. 예술현장에 가더라도 휠체어 좌석은 예술향유에 적합하지 않다. 장애인 예술향유의 접근성은 물리적 접근성 이외에도 정보 접근성, 정서적 접근성 등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동성(물리적 접근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어렵죠. 발달 장애 친구들은 혼자서 공연 관람 못 가거든요. 물론 극소수 기능 좋은 친구들은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못 가요 복지관에서 같이 단체로 가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휠체어 좌석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동이 편해야 하고

그런게 중요하겠죠" (서울 E복지관)

"또 하나는 인력인 거죠. 과연 누가 같이 가냐. 같이 갈 수가 있는, 활동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고 지원이 있어 주면 그래도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동네 CGV 가서 영화 한번 보고 하지 않을까." (경기 A복지관)

"제 동생 조카가 발달 장애에요. 동생이 저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공연이든 전시든 무용이든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디 지역 센터에서 하거나 문화센터에서 하면 부모들이 다 데리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원하는 거는 딱 그거에요.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애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음악강사 1)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찾아가는 예술 여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장애 아동이나 장애 성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복지관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은 어쨌든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공연을 보러 가면 셔틀버스를 무료로 대여를 해준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용강사 2)

"일단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뭘 (영화를) 보더라도 (휠체어석이) 앞에 아니면 맨 뒤니까 앞에도 불편하고 맨 뒤에도 불편하거든요. 소극장 같은 데는 못 들어가죠. 입구부터 사람도 간신히 들어가는데 되겠어요? 또 지하에 있기도 한데. 그래서 큰 공연 밖에 못 봐요…전시회도 휠체어 타서 보면 그 시선이 안 보이거든요. 약간 기울어지거나 아예 큰 화면이면 나은데, 각도나 배치하는 게 늘 아쉬웠던 부분 같아요." (학부모 1)

② 장애인이 즐길만한 예술행사 부족

물리적 접근성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이 즐길만한 작품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다. 실제 성인 장애인이 볼 만한 게 많지 않아서, 아동용 공연이나 영화를 많이 보기도 한다. 이 같은 인식은 특히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사들이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곧 장애인이 볼만한 예술작품(행사)이 적다는 것을 예술강사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 강사는 수업을 진행하지 예술관람을 함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문제의식에 특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거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비장애인도 미술관 가서 미술 잘 안 보잖아요. 장애인분들이 안 간다고 장애인분들이 문화예술 향유를 안 한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연극, 뮤지컬 등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이해)할 수 있는 것을 봐야 하는데 참 애석하게도 어중간한 눈높이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문화예술 영역 수업할 때 보물섬 같은 아동 뮤지컬 보러 다녀요.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경기 A복지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화나 연극을 한 편 본다고 하면 이 내용을 친구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까?" (서울 D복지관)

"발달장애인 분들이 영화 보러 가면 애니메이션을 많이 봅니다. 성인 장애인들조차도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그분들 수준을 고려하는 거가 있지만 사실 실무자로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무난하죠. 15세 이상 관람 영화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부분들에 이 친구들이 노출되었을 때 혹시나 이 친구한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담당자도 부담감이 있거든요." (서울 E복지관)

③ 장애인 부모: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현재 문화예술바우처인 통합문화이용권 수급자는 저소득층이다(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의 소득일반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낮기에 상대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수급자가 많을 것이다. 장애인(부모)은 통합문화이용권 제도의 확대를 원한다. 곧, 초점집단면담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아니지만 통합문화이용권을 원하는 요구가 많다.

"저는 공연을 다녀 보니까 공연비가 굉장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장애인은) 예술의전당 같은 큰 무대에 가야 편하잖아요. 주차부터 되어야 하고 엘리베이터 있어야 하고 휠체어 들어가야 하고. 이런 게 되려면 갈 수 있는 데가 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연은 굉장히 비싸요." (학부모 4)

"바우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치료 바우처도 끝나고 하는 게 없으니까 음악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바우처를 다 해줬으면." (학부모 3)

"문화누리 카드라고 저소득층 장애인들한테 발급되는 그런 게 있는데 문턱을 더 낮춰서 (발급해 주면) 그러면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죠." (D학생 어머니)

3.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참여 ①: 기존 조사 및 문헌을 중심으로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교육도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춰서 수요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한다. 학령기 장애인은 특수교육이라는 공적 체계에 있는 반면, 성년기 장애인은 약 30%가 취업에 성공하고 약 70%는 장애인복지관 또는 주간보호시설에서 보호받거나 집에 머문다. 학령기에는 교과과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성인기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학령기와 성인기를 구분하여 문화예술교육 실태를 살펴본다.

1) 학령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학령기는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유치원(영유아 포함)부터 고등학교(전공과 포함)까지를 의미하는데, 2019년 기준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은 92,958명이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비율은 약 3:7이며, 2016년 이후 일반학교 재학 비중이 약간 증가했다. 특수학교에 26,084명,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50,812명,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15,687명이 재학 중이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75명이 소속되어 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6,521명(7.0%), 초등학교 41,091명(44.2%), 중학교 18,462명(19.9%), 고등학교(전공과 포함) 26,884명(28.9%)이다.

〈표 2-29〉 특수교육대상자 현황(2020)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일반학교	전체 (명, %)
2015	26,094 (29.6)	61,973 (70.1)	88,067 (100.0)
2016	25,961 (29.5)	61,989 (70.5)	87,950 (100.0)
2017	26,199 (29.3)	63,154 (70.7)	89,353 (100.0)
2018	26,337 (29.0)	64,443 (71.0)	90,780 (100.0)
2019	26,459 (28.4)	66,499 (71.6)	92,958 (100.0)

자료: 국립특수교육원(2020), 「특수교육통계」(교육부)

2008년부터 특수교육과정의 창의적 재량활동이 전체 학년에 걸쳐서 주당 평균 2시간 이상을 운영하도록 확대되면서 개별 학교의 실정에 맞춰 재량활동 교과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의 재량활동 과정에 문화예술교육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증가했다.

한편, 교육진흥원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특수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며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보면, 특수학교는 신청을 하면 모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선정률은 100%인데, 모든 특수학교가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학교 대비 지원율은 85.9%(2019), 80.8%(2020)다. 특수학교는 교육진흥원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특수학교에서 예술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은 217개(2009)와 201개(2020)로 한 학교에서 평균 1.4개의 수업이 개설된다. 특수학교의 지원(선정) 장르는 무용과 국악이 가장 많다. 무용 수업이 전체의 34.6%(2019), 34.8%(2020)이며, 국악 수업이 전체의 30.9%(2019), 31.3%(2020)로 두 개 장르가 전체 수업의 65% 정도를 차지한다. 무용과 국악 선호도가 높은 것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국악강사풀제에서 시작하여 국악이 상대적으로 많고, 무용의 경우에는 강사가 2명 파견되는 것이 하나의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수학교 예술강사 가운데 장애인은 4명으로 전체 학교 예술강사(4,986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표 2-3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특수학교 지원 및 선정현황(2019~2020)

(단위: 개교)

구분	2019	2020
전체 학교 수	177	182
지원 학교 수	152	147
선정 학교 수	152	147

전체 학교 수: 교육통계서비스홈페이지 내 '주제별 공개 데이터'(해당년도 4월 1일 기준)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표 2-3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특수학교)의 장르(2019~2020)

(단위: 건)

구분	2019	2020
국악	67	63
연극	18	18
영화	2	4
무용	75	70
만화/애니	2	1
공예	32	28
사진	15	10
디자인	6	7
계	217	201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① 학교 수업과 복지관 프로그램 중심

장애학생 부모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변경희 외, 2012), 최근 3년간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을 접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30%를 차지하였고, 유경험자 가운데 문화예술을 경험한 통로로 '학교 수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복지관 프로그램'이었다. 문화예술의 참여 통로가 학교와 복지관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지역에서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설학원, 문화센터 등은 비중이 적다. 이러한 문화예술 참여통로는 관련 정보획득 통로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어서 학교·선생님 소개로 얻는 경우가 약 30%, 장애인복지관(복지센터)을 통하는 경우가 약 20%이며, 같은 장애학생 부모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도 약 20%에 달한다. 이처럼 장애학생 부모 간 비공식 정보교환이 장애인복지관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2-32〉 장애아동의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의 참여형태(유경험자, 2012)

응답 범주	학교 수업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기관 활동	개인 레슨	문화센터 포로그램	가족/ 지인	기타	전체
명 (%)	165 (43.4)	112 (29.5)	18 (4.7)	33 (8.7)	10 (2.6)	29 (7.6)	13 (3.4)	380 (100.0)

자료: 변경희 외(2012),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사) 몸짓과소리)

〈표 2-33〉 장애아동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획득 경로(유경험자, 2012)

응답 범주	학교/교사 소개	장애인 복지관	다른 장애 아동 부모	인터넷	가족/친구 소개	장애관련 단체	기타	전체
명 (%)	120 (31.7)	80 (21.1)	76 (20.1)	38 (10.0)	32 (8.4)	27 (7.1)	6 (1.6)	380 (100.0)

자료: 변경희 외(2012),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사) 몸짓과소리)

한편, 교육진흥원의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학령기 아동뿐 아니라 성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주로 3장 2절에서 다룬다.

② 학부모의 교육목적

부모가 장애 자녀에게 문화예술을 시키는 이유는 다양한 체험, 스트레스 해소, 취미생활이 약 60%로서 문화예술 자체를 즐기고 향유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기능향상, 신체 건강, 대인관계 향상과 같이 어떤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예술의 기능적 효과를 취하려는 경우는 약 25%다. 한편, 문화예술적 소질 개발, 자녀의 흥미를 위해서는 약 12%로, 미래를 내다보거나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문화예술을 접하기보다는 즐기고 향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장애유형별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는 다양한 체험과 소질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반면, 지체장애는 신체건강과 기능향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발달장애는 대인관계 향상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발달장애의 특성인 사회성 부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과 사회통합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34〉 학부모의 장애아동 문화예술교육 참여이유(2012)

참여 이유	%	참여 이유	%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21.8	자녀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6.4
자녀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19.1	문화예술적 소질 개발을 위해서	5.7
자녀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17.9	학교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1.9
소근육 등의 기능향상을 위해서	9.5	주위의 다른 아동들이 많이 하니까	0.7
자녀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9.0	기타	0.1
자녀의 대인관계를 좋게 하려고	8.1	전체	100.0

자료: 변경희 외(2012),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사) 몸짓과소리)

2) 성인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장애인복지관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36]은 가장 대표적인 성인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례다. 기본적으로 공급주체(예술강사, 장애인복지관협회)와 수요자(장애인)를 연결하는 과업을 중심으로 조직된다. 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장애인복지관에 예술강사가 파견되어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를 신장시키고 미래의 문화시민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지방 소재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고, 문화예술 기획·운영하는 자체 역량이 미비한 상황인데,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지원사업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최근 3년 간 교육진흥원의 장애인복지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기준으로 참여 복지관[37]은 277개, 개설 강좌는 367개, 강사는 172명이다. 장애인복지관의 약 85%가 참여하며, 강사의 전문분야는 미술, 국악, 무용, 연극 순이다.

〈표 2-35〉 장애인복지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시설 및 강사 수(2018~2020)

(단위: 개, 명)

	시설 수	반(班) 수	강사 수						
			전체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
2018	208	408	190	43	38	51	27	13	18
2019	209	406	193	44	37	53	27	16	16
2020	277	367	172	40	36	46	23	10	17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한편, 강사 가운데 장애인은 매년 8명 정도이다.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장애인복지관뿐 아니라 노인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시행되는데, 장애인 강사는 아동과 노인대상 교육에 참여하기도 한다.

3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포함),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에 (사회) 예술강사가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37) 장애인복지관뿐 아니라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참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이 참여한다.

〈표 2-36〉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장애인 강사 수(2018~2020)

구분	대상	분야	유형	등급	활동연도		
					2018	2019	2020
1	아동	영화	비영구*	-	-	-	○
2	노인	연극	지체	4급	○	○	○
3	노인	사진	지체	4급	-	○	-
4	장애인	국악	시각	6급	○	○	○
5	장애인	국악	비영구	-	○	○	-
6	장애인	국악	시각	심하지 않은	-	-	○
7	장애인	무용	지체	5급	○	○	○
8	장애인	무용	시각	6급	○	○	○

*비영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019년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 정도 두 가지로 구분: -(장애 정도가 심함),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음)
2020년의 경우 4월 30일 기준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이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문화예술교육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김두영 외, 2013), 평생교육 영역 중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곳이 약 60%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곳에서 문화예술교육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38]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김두영 외, 2017) 역시 문화예술교육의 비중이 높고, 비수도권의 문화예술교육 비중이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높다. 비수도권의 장애인 문화예술 환경은 수도권, 특히 서울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은 편이다.

그런데 비수도권 복지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것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하나는 수도권에서는 직업능력교육에 상대적으로 역점을 두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비중이 낮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수도권에서 문화예술 환경의 열악함을 인지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떤 해석이 적합한지는 심층 면담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38)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이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전담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 실천을 주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초지자체 평생학습관, 학교의 평생교육시설,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등이 속한다.

〈표 2-37〉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 문화예술교육(2013)

	수도권(개, %)	비수도권(개, %)	전체(개, %)
기초문해교육	20(6.5)	19(5.8)	39(6.1)
학력보완교육	5(1.6)	1(0.3)	6(0.9)
직업능력향상교육	32(10.3)	15(4.6)	47(7.4)
문화예술교육	171(55.2)	213(64.7)	384(60.1)
인문교양교육	77(24.8)	70(21.3)	147(23.0)
시민참여교육	5(1.6)	11(3.3)	16(2.5)
	310(100.0)	329(100.0)	639(100.0)

자료: 김두영 외(2013),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13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현재 평생교육은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기초문해 및 학력보완 교육,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 시민참여교육, 기타로 구분함.

〈표 2-38〉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 문화예술교육 추이(2011~2015)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기초문해교육	18(15.0)	1(0.9)	3(2.3)	1(1.4)	1(1.4)	24(4.7)
학력보완교육	8(6.7)	1(0.9)	6(4.7)	1 (1.4)	1 (1.4)	17(3.4)
직업능력향상교육	21(17.5)	14(12.6)	13(10.2)	8(10.8)	7(9.5)	63(12.4)
문화예술교육	46(38.3)	58(52.3)	77(60.2)	43(58.1)	45(60.8)	269(53.1)
인문교양교육	23(19.2)	37(33.3)	29(22.7)	20(27.0)	20(27.0)	129(25.4)
시민참여교육	4(3.3)	0(0.0)	0(0.0)	1(1.4)	0(0.0)	5(1.0)
	120(100)	111(100)	128(100)	74(100)	74(100)	507(100)

자료: 김두영 외(2017),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 현황 및 패턴 분석 -2011~2015 평생교육통계 자료를 중심으로,"「통합교육연구」
현재 평생교육은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기초문해 및 학력보완 교육,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 시민참여교육, 기타로 구분함.

3) 발달장애인과 문화예술교육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발달장애의 '다름', '차이'를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것이 비장애인의 눈으로는 '쓸모없음' 또는 '무의미'로 느껴지더라도 예술적으로 독특한 결과가 나온다.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사회성 부족으로 매우 협소한 대인관계망 안에 놓여서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발달장애인은 부모 등과의 동반을 통한 예술치료 참여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문화·여가로서 '창작적 취미활동' 참여율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취업률이 저조하고 지역사회에 이용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자기표현과 타인과의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생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김두영 외, 2016).

〈표 2-3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도 인식(2016)

영역	평균(5점 기준)		중영역(프로그램)	평균(5점 기준)
기초문해교육	2.78			
학력보완교육	2.03			
직업능력향상교육	2.98	↱	여가스포츠	3.35
문화예술교육	3.25	├→	문화예술 향유	3.37
인문교양교육	2.87	↳	문화예술 숙련	3.04
시민참여교육	2.67			

자료: 김두영 외(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부모의 인식," 「특수교육연구」 248-249

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참여 ②: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1) 설문조사

① 설문조사 개요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지관 내 문화예술교육 실태, 그리고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39] 조사는 2020년 8월에 온라인 웹조사 형식으로 진행했고, 실제조사는 ㈜글로벌리서치에서 담당했다.

39)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은 4장에서 기술한다.

〈표 2-40〉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의 장애인 복지관 243개(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가입)
표본 수	80개
표본 추출	편의표집
조사 방법	온라인 웹조사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Editing - Coding - Punching - Clean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 SPSS 13.0 for Windows로 분석함
실사기간	8월 17일(월)~8월 31일(월)
조사기관	(주)글로벌리서치
조사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② 주요결과

②-① 응답자 특성

80개 응답 장애인복지관 가운데 67개(83.8%)의 복지관이 교육진흥원 사업(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했고,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복지관은 70개(87.5%)였다.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 복지관(70개)의 주된 장르는 음악과 미술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각각 24개 복지관, 34.3%).

②-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해(201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평균적으로 4.8건 진행하였다. 진행하지 않은 곳 17.5%, 1건 7.5%, 2건 15%, 3건 22.5%이며, 4~10건 진행한 곳이 30%로 가장 많았다. 11건 이상 다수 진행한 복지관도 7.5%였다. 2020년 기준(계획 포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건수는 평균 3.9건이다. 진행하지 않는 곳 16.3%, 1건 진행한 곳 26.3%, 2건 18.8%, 3건 10.0%, 11건 이상 진행 복지관은 7.5%다. 2019년과 2020년 비교해보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 3.9건(2020년, 계획 포함), 12개월 평균 4.8건(2019년)을 비교해보면 그렇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올해(202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평생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1.9%이다(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13개군데 제외).[40] 5% 이

40) 평생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 비중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복지관 담당자 면담조사에서는 20~30%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하인 곳 13.4%, 6~10%인 곳 11.9%, 11~20%인 곳 17.9%, 21~30%인 곳 19.4%, 30% 초과인 곳 37.3%다.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읍면지역, 발달장애인 많은 복지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비중이 높았다.

한편, 복지관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관심과 참여도는 평균 4.19점(5점 평균)이었다.

〈표 2-41〉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비중(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N=67, 단위: %)

		사례수	5% 이하	6~10%	11~20%	21~30%	30% 초과	계	평균
전체		(67)	13.4	11.9	17.9	19.4	37.3	100.0	31.9
진흥원 사업 참여여부	참여	(67)	13.4	11.9	17.9	19.4	37.3	100.0	31.9
지역	수도권	(30)	16.7	10.0	20.0	30.0	23.3	100.0	28.4
	서울	(20)	20.0	10.0	25.0	20.0	25.0	100.0	26.3
	인천·경기	(10)	10.0	10.0	10.0	50.0	20.0	100.0	32.5
	비수도권	(37)	10.8	13.5	16.2	10.8	48.6	100.0	34.8
지역규모	대도시의 동	(42)	16.7	14.3	23.8	16.7	28.6	100.0	26.6
	일반시의 동	(15)	13.3	13.3	6.7	20.0	46.7	100.0	34.0
	읍면부	(10)	0.0	0.0	10.0	30.0	60.0	100.0	51.0
참여사업 예술 분야	음악	(23)	8.7	8.7	8.7	17.4	56.5	100.0	37.6
	미술	(23)	8.7	26.1	26.1	21.7	17.4	100.0	27.2
	기타	(21)	23.8	0.0	19.0	19.0	38.1	100.0	31.0
구성원 장애유형 (1순위 기준)	지체	(16)	18.8	12.5	12.5	25.0	31.3	100.0	29.9
	발달장애	(37)	8.1	10.8	21.6	18.9	40.5	100.0	34.6
	기타	(14)	21.4	14.3	14.3	14.3	35.7	100.0	27.2
2020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빈도	1-2건	(36)	22.2	22.2	19.4	5.6	30.6	100.0	25.8
	3-10건	(25)	4.0	0.0	16.0	36.0	44.0	100.0	36.0
	11건 이상	(6)	0.0	0.0	16.7	33.3	50.0	100.0	51.7
2020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비중	10% 이하	(17)	52.9	47.1	0.0	0.0	0.0	100.0	6.5
	11~20%	(12)	0.0	0.0	100.0	0.0	0.0	100.0	19.6
	21~30%	(13)	0.0	0.0	0.0	100.0	0.0	100.0	28.1
	30% 초과	(25)	0.0	0.0	0.0	0.0	100.0	100.0	57.2

②-③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복지관 내 주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생 수는 평균 16.5명, 주된 연령대는 20대(27.1%), 50대(18.6%), 60세 이상(18.6%), 유초등생(17.1%)였다. 반면에 중고생은 2.9%, 40대 7.1%, 30대 8.6%였다. 예술교육 참여 장애인이 주된 장애 유형은 발달장애 54.3%(38개), 지체장애 25.7%(18개), 기타 20.0%(14개)였으며, 수강생은 신규 참여자보다는 계속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표 2-42〉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자의 장애 유형(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N=70, 단위: %)

		사례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	계
전체		(70)	25.7	4.3	8.6	4.3	48.6	5.7	2.9	100.0
진흥원 사업 참여여부	참여	(67)	23.9	4.5	9.0	4.5	49.3	6.0	3.0	100.0
	미참여	(3)	66.7	0.0	0.0	0.0	33.3	0.0	0.0	100.0
지역	수도권	(32)	25.0	6.3	9.4	3.1	50.0	6.3	0.0	100.0
	서울	(20)	20.0	10.0	15.0	5.0	45.0	5.0	0.0	100.0
	인천·경기	(12)	33.3	0.0	0.0	0.0	58.3	8.3	0.0	100.0
	비수도권	(38)	26.3	2.6	7.9	5.3	47.4	5.3	5.3	100.0
지역규모	대도시의 동	(42)	19.0	4.8	14.3	4.8	50.0	7.1	0.0	100.0
	일반시의 동	(18)	33.3	5.6	0.0	5.6	50.0	5.6	0.0	100.0
	읍면부	(10)	40.0	0.0	0.0	0.0	40.0	0.0	20.0	100.0
참여사업 예술 분야	음악	(24)	16.7	8.3	16.7	0.0	50.0	4.2	4.2	100.0
	미술	(24)	41.7	0.0	0.0	8.3	41.7	4.2	4.2	100.0
	기타	(22)	18.2	4.5	9.1	4.5	54.5	9.1	0.0	100.0

[그림 2-19] 복지관 내 주요 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의 지속 참여 여부(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N=7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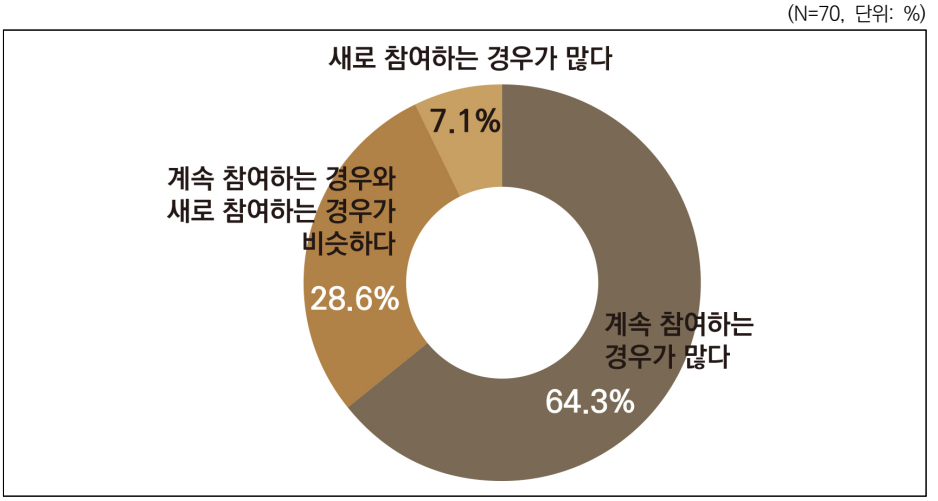

②-③ 복지기관 담당자의 문화예술교육 인식과 만족도

자신의 업무 가운데 문화예술교육 투입비중이 31.4%인 사회복지사들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목적을 '여가시간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보내기'(43.8%),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재활-치료-치유'(22.5%),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11.3%)로 인식한다. 한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설목적 달성도는 평균 4.13점(5점 평균)이라고 인식한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에서 어려움 점은 '장애인에 특화된 문화예술강사를 찾기 어렵다'(55.0%)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22.5%)였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1순위는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는 의견(37.5%)과 '장애유형, 장애인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한다'(35.0%)는 의견이 많았다.

〈표 2-43〉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운 점(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N=80, 단위: %)

		사례수	장애인에 특화된 문화예술 강사를 찾기 어렵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복지관 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복지관 프로그램 가운데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복지관 회원들이 관심이 없다	계
전체		(80)	55.0	22.5	7.5	7.5	6.3	1.3	100.0
진흥원 사업 참여여부	참여	(67)	55.2	20.9	9.0	6.0	7.5	1.5	100.0
	미참여	(13)	53.8	30.8	0.0	15.4	0.0	0.0	100.0
지역	수도권	(35)	57.1	28.6	5.7	2.9	5.7	0.0	100.0
	서울	(20)	50.0	35.0	10.0	5.0	0.0	0.0	100.0
	인천·경기	(15)	66.7	20.0	0.0	0.0	13.3	0.0	100.0
	비수도권	(45)	53.3	17.8	8.9	11.1	6.7	2.2	100.0
지역규모	대도시의 동	(44)	47.7	34.1	9.1	4.5	4.5	0.0	100.0
	일반시의 동	(24)	62.5	4.2	8.3	12.5	12.5	0.0	100.0
	읍면부	(12)	66.7	16.7	0.0	8.3	0.0	8.3	100.0
참여사업 예술 분야	음악	(24)	45.8	16.7	12.5	12.5	12.5	0.0	100.0
	미술	(24)	58.3	29.2	8.3	0.0	4.2	0.0	100.0
	기타	(22)	63.6	13.6	4.5	9.1	4.5	4.5	100.0
구성원 장애유형 (1순위 기준)	지체	(18)	61.1	16.7	5.6	11.1	0.0	5.6	100.0
	발달장애	(38)	52.6	18.4	13.2	2.6	13.2	0.0	100.0
	기타	(14)	57.1	28.6	0.0	14.3	0.0	0.0	100.0

〈표 2-44〉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요건(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N=80, 단위: %)

		사례수	문화예술 교육 강사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문화예술 교육 강사의 문화예술 전문성이 높아야 한다	장애유형, 장애인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한다	교육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복지관 담당자의 관심과 노력이 많아야 한다	지역 내 문화시설과 협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계
전체		(80)	37.5	12.5	35.0	7.5	2.5	5.0	100.0
진흥원 사업 참여여부	참여	(67)	38.8	10.4	37.3	6.0	1.5	6.0	100.0
	미참여	(13)	30.8	23.1	23.1	15.4	7.7	0.0	100.0
지역	수도권	(35)	40.0	22.9	28.6	2.9	0.0	5.7	100.0
	서울	(20)	40.0	15.0	40.0	0.0	0.0	5.0	100.0
	인천·경기	(15)	40.0	33.3	13.3	6.7	0.0	6.7	100.0
	비수도권	(45)	35.6	4.4	40.0	11.1	4.4	4.4	100.0
지역규모	대도시의 동	(44)	38.6	11.4	40.9	0.0	0.0	9.1	100.0
	일반시의 동	(24)	41.7	12.5	29.2	12.5	4.2	0.0	100.0
	읍면부	(12)	25.0	16.7	25.0	25.0	8.3	0.0	100.0
참여사업 예술 분야	음악	(24)	50.0	0.0	37.5	4.2	4.2	4.2	100.0
	미술	(24)	41.7	20.8	29.2	0.0	0.0	8.3	100.0
	기타	(22)	22.7	13.6	40.9	18.2	0.0	4.5	100.0
구성원 장애유형 (1순위 기준)	지체	(18)	38.9	16.7	33.3	5.6	0.0	5.6	100.0
	발달장애	(38)	31.6	13.2	36.8	7.9	2.6	7.9	100.0
	기타	(14)	57.1	0.0	35.7	7.1	0.0	0.0	100.0

한편, 장애인복지관 관계자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3.56점(5점 만점)으로 불만족(3.8%), 보통(46.3%), 만족(50.0%)의 분포를 보였다.

[그림 2-20]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도(2020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N=80, 단위: %,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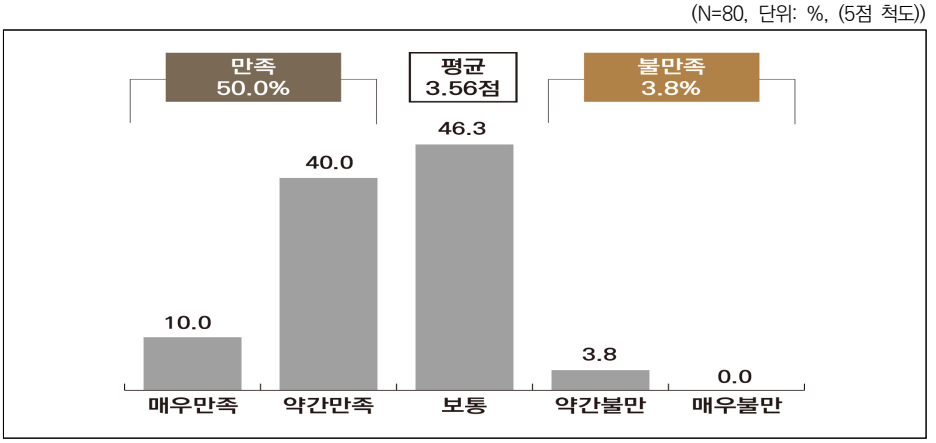

2) 면담조사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교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장소와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 참여자를 면담조사하고자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행사와 프로그램이 취소되어 방문 면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장애 예술인(단체) 면담조사, 그리고 2020년 장문원에서 실시한 초점집단면담조사(장애인 복지관 담당자, 강사, 참여자) 결과 등을 요약한다.

2-1) 장애 예술인(단체) 면담조사 결과

① 전문 예술강사 부재

장애 아동에 한정한다면, 문화예술교육이 학교 내에서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장애 어린이가 (방과후) 수업을 포함한 학교 교육 체계 내에서 예술교육을 받듯이, 장애 어린이 역시 일단은 학교에서 전문가에게서 예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은 특수학교의 경우, 담당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도맡아 진행하고 계신 것이 현재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예술교육은 예술적 함양 외 심리적인 치료의 목적과 신체 운동의 효과 등 다른 요인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이끌기 위해선 전문적 인력의 투입이 필요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죠. 비장애 어린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통해 선택적으로 예술가들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듯, 장애 어린이들에게도 예술가 혹은 전문가들의 예술 교육이 공교육 속에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예술단체 8)

"또한 장애인들은 빠른 습득이나 이해가 되지 않기에, 장애인들과 오래 소통을 해오신 전문강사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상담 전문가들이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하여 장애인 예술가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장애인 예술단체 3)

② 교육 객체로서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한 가지는 교육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넘어서 양자가 교호하는 데 있다. 그렇게 될 때, 교육 참여자의 표현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데 장애인

예술은 그 같은 측면이 더욱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인 예술을 구성하는 정체성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을 교육 대상자로만 인식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를 결여, 비정상, 잘못된, 어려움, 갈등, 치유되야 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는 부정적 장애인식에서 도출되는 개조적 교육관입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위계감에는 지식의 위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교육의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사회적 위계가 존재합니다. 지금의 장애인 교육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가 없는 사람의 위치에 복귀시켜 사회적 임무를 부과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장애를 무능력과 무질서로 인식하는 근본적 몰이해로부터 비롯됩니다……앞으로의 장애예술교육은 장애인이 교육의 주체로 등장해야 합니다. 장애인 스스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 전반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맡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장애예술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하며 내부적인 자생력을 키울 것입니다." (장애인 예술단체 6)

③ 장애 예술인 양성교육 부재

전문 장애 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관과 공공영역의 문화예술교육은 향유능력 고양을 넘어서, 전문 예술인 육성과도 연계될 수 있다. 「2018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장애 예술인은 복지관 교육을 통해 예술계에 진입한다. 반복적이고 기초적인 교육만이 수행되는데, 이제는 전문 장애 예술인 양성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란 의견이다.

"현재 전국 장애인복지관과 지자체 등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문원의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모두 경제적으로 자립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더욱이 전문적인 예술인으로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장애인 예술단체 8)

"장애인들의 예술 교육은 전문적 교육 기관이 별로 없고 대부분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아도 기초과정에서 끝나는게 대부분입니다…… 장애인 예술교육을 통해 인정받는 전문 장애인 예술가를 양성하게 되면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리라 봅니다." (장애인 예술단체 3)

2-2)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장문원에서 4월 진행한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복지관 담당자=사회복지사 6명, 예술강사 6명, 장애학생 부모 6명, 장애인 4명) 대상 초점집단면담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복지관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태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가운데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복지관별로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20~30%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41] 물론 문화예술 프로그램 비중이 50%에 달하는 기관도 있고, 강남장애인복지관처럼 문화예술에 특화된 기관도 있다.

"체육도 빼고 다른 활동 하는 거 빼고 문화예술 자체로만 보면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20~30%." (서울 C 복지관)

"발달장애인의 즐거운 낮 생활이 대두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낮 시간을 즐겁게 하려고 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도 20% 정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문화예술 분야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20% 정도." (서울 B 복지관)

"50% 이상은 문화예술 쪽이에요. 왜냐하면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취미 여가 생활이 그런 욕구들을 나타내고 쉼과 회복 힐링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50% 이상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D 복지관)

"기관마다 특성이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장애인복지관은 문화예술로 특화된 복지관이에요. 거기는 문화예술 쪽으로 특화되어서 홈페이지 자체도 들어가면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복지관이고요." (서울 E복지관)

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복지관 관장의 의지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다만 복지관장들은 문화예술 담당자 의견을 상당히 수용하려 한다. 다시 말해서, 관장의 관심이 많으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만 관장의 관심이 많지 않다 해도, 담당자

41)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의 비중은 31.9%였다.

의 욕구가 있으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복지관을 대표하시는 관장님의 마인드, 주력하고자 하는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서울 E복지관)

"관장님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쪽으로 사업을 늘리거나 할 때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 D복지관)

"관장님이 특별하게 여기에 관심이 엄청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고, 또 하면 즐거워 하니까 그럴 때는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정보도 주시고 하는 편이에요." (서울 C복지관)

또한 복지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에서 중요한 변인은 장애유형과 회원의 연령대다.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인과 젊은층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젊은층에서도 중고등학생 연령대에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이들은 입시를 준비하거나 또는 초등학생처럼 복지관에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파악하려면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해야 한다는 의미, 다시 말해서 복지관 예술교육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적장애이신 분들만 이용하시는 복지관인데 (지적장애인은) 다운 증후군 특성상 굉장히 흥이 많습니다. 음악적인 어떤 음감도 있고 리듬감도 있고 흥도 많고 댄스도 좋아해서 복지관 특성상 다운 증후군 친구들의 욕구를 반영해 주로 댄스, 음악 쪽에 프로그램이 발달했고 그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서울 E복지관)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를 봤을 때 지체장애인이 지금 현재로 많거든요. 70% 정도 되는데 (그래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적어요)." (서울 A복지관)

"연령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연령층이 다양하게 편차가 있어요. 하지만 주로 이용하시는 타겟은 2, 30대 젊은 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서울 D복지관)

"지체장애인분들이 많아요. 지체장애인분들은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문화예술은

(내가 이거 해서)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 이거는 몸에 좋거든요." (경기 A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중고생 대상 프로그램이 문화예술에는 없어요." (서울 C복지관)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비어요." (서울 A복지관)

"저희는 보통 중고등학생은 비어요." (경기 A복지관)

② 예술교육 목표 인식의 차이: 사회복지사 vs. 예술강사

예술강사는 복지관 기관장(담당자)과 학부모의 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다고 말한다. 예술강사는 복지관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목표를 치유에 집중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역시 예술교육의 목표를 예술기능 습득이나 치유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표현이라고 인식한다. 곧, 예술강사는 장애인의 표현과 삶의 질에 중점을 둔다면, 사회복지관에서는 예술기능·치유·자기표현 모두를 지향한다.

"복지관 담당자가 치료랑 교육의 정의를 명확히 알고 구분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결과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애들한테 뭐가 중요한지 파악하지 못하니까 저희랑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사 채용 면접 때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갈거다' 라고 같이 합의를 해야지 저희한테 무작정 결과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공연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음악강사 2)

저는 (강의를 듣는 장애인이) 진흥원 지원사업 35시간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는 게 목표고, '아이들이 함께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신체를 움직이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해요.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너의 목표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기능적인 것을 조금 더 올려놨으면 좋겠어' 하는 목표를 가지죠. 그런데 담당자가 그 차이를 조정해 주면 좋은데 그 역할을 조정해 주지 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무용강사 2)

"댄스 영역을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 표현하는 것에 주저하고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발달 장애 친구들 중에. 이 친구들이 댄스 프로그램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표현이 늘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태도가 달라지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향후에는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또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부분을 마련해 주는 거죠." (서울 E복지관)

"연극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큰 소리로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었어요." (서울 D복지관)

③ 학부모의 예술강사의 장애 이해도에 대한 두 가지 평가

학부모들은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이 장애인 자녀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긴다. 비용도 저렴하지만 적어도 다른 곳의 강사보다 수준이 높고,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강사가 자주 바뀌어서 맞춤형 수업이 어렵다는 인식, 그리고 강사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교육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강사 수준이 학교 방과 후가 제일 밑인 거 같고 그나마 복지관이 제일 나은 거 같아요." (학부모 3)

"방송 댄스를 복지관에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복지관에 와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맞춤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동작을 해도 하나하나 전부 다 애들한테 맞춰서 그냥 방송 댄스가 아니라 우리 애들이 따라 할 수가 있고 우리 애들이 즐길 수가 있고 우리 애들이 맘껏 느껴서 동작이 제대로 되건 안 되건 관계없이 수업 진행을 하셨는데." (학부모 2)

"이분이 계속 있지 않고 바뀌면 또 어떤 선생님이 오면 고리가 없어지고 단절되니까 연속성이 없는 거죠……복지관 강사 선생님이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고 요일별로 출근하고 시간별로 출근해서 오늘도 동그라미 (그리라고 주고) 내일도 와서 1년 전, 2년 전 계속 같은 동그라미 주면 엄마로서는 그만둬야 하나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 1)

④ 공간과 시설 부족

사회복지사, 강사, 장애인(부모) 모두 다른 곳보다 장애인복지관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다고 여긴다. 장애인복지관이란 공간,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사의 장애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 예술교육을 실현한 만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저희 복지관은 큰 공간이 없어서 무용 같은 대근육 활동을 하는 큰 활동의 예술 활동을 못 해요.” (서울 A복지관)

“저희도 공동 화장실에서 물감 팔레트를 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위에 물감이 번지고 물이 떨어지는 등) 난리가 나는 거죠. 비닐을 막 깔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갖출 거는 갖추지만 그래도 조심한다고 해도 많이 묻거든요.” (미술강사 1)

“피아노가 센터 같은 데 없을 때는 키보드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런 시설이 너무 없는 데도 있고.” (음악강사 1)

“교육 기관들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복지관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갈 데가 복지관밖에 없단 얘기에요. 복지관조차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질이나 여건이나 안 되어 있잖아요. 또 그 안의 내용도 질이 떨어져요.” (학부모 4)

⑤ 장애아동 예술역량 강화: 개인교습과 전문단체 활동

장애인 자녀가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경우, 부모는 자녀의 소질을 살려 주기 위해 개인교습을 시킨다. 무엇보다 강의 수준이 높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관 교육이 같은 내용의 반복인 데 비해서 개인교습은 장애인의 수준에 맞춰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향상 속도에 따라 더 진전된 강의를 해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육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나아가 장애인 자녀의 예술적 재능을 살려 주고 성취감을 얻게 하려고 외부 공연단체에서 활동하게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은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장애 예술인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모들은 공공에서 전문 예술인 양성기관이 운영되기를 희망하다.

“복지관은 선생님 질이 그렇게 낮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아무래도 시간도 짧고 횟수도 제한적이고 하니까 효과적인 면에서는 사설 학원을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피아노에 관심을 많이 보여서 동네에 가까운 선생님들을 찾아서 일반 피아노 교습소로 보냈는데 그때 수준이 확 올라간 것 같아요.” (학부모 3)

“복지관에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지도를 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도 짧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활동면에서도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딱 활동을 하고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개인 레슨을 하고.” (학부모 5)

“확실히 느껴지는 게 장애인 당사자이거나 그 부모만큼은 아니어도 일정 정도의 장애 유형에 대한 인식들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게 가장 안타까운 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 4)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개인 레슨을 하고 다 같이 오케스트라를 함께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단체나 기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음악에 전문적인 단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조금 더 폭 넓은 활동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학부모 5)

“장애인이면서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취미 활동 수준에서 학교나 기관에서 수업하고 교육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겠어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기 위해서, 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해주는 중간 단계가 (공공영역)에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똑똑한 부모 만나고 본인들의 의지와 의욕과 재능을 갖추고 있으면, 어떻게든 뚫고 그 세계로 진출하지만 말이에요.” (학부모 4)

제3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특징과 시사점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의미와 특징

가. 장애인 문화예술 담론의 핵심어: 포용성과 다양성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은 장애인(정책) 영역과 문화예술(정책) 영역에서 수렴이 이뤄진다. 그것의 키워드는 사회적 포용, 포용적 예술, 다양성이다.

현재 장애인(정책)에서 문화예술은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른 능력',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지원'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과 비장애인 문화예술의 구분을 없애려는 포용적 관점'으로 담론이 진행된다. 문화예술(정책)에서 장애인은 '예술치료 참여자', '평생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그리고 '예술행위를 통한 정체성 표현자'로 논의가 진행된다. 각각 세 가지 관점이 온전히 배타적이라 보기 어렵고, 시기적으로 겹치기도 한다. 장애계와 문화예술계의 입장 역시 배타적이지는 않다.

포용성과 장애 정체성, 곧 다양성이 담론 차원에서는 드러나지만 정책사업 수준에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한국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문화적 관점과 현재성 부족

한국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수행을 위한 담론이나 이론이 충분히 개진되지 않는다. 새예술정책의 여섯 번째 전략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는 포용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책사업은 여러 가지 접근 방식과 관점이 혼재돼 있다. 능력이 있는 장애인 창작자 지원(전통적 관점), 장애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시설 개보수(사회적 접근), 예술치료와 평생교육 대상으로의 장애인(의료적 접근, 교육적 접근), 그리고 일부 선언적 의미로의 포용예술이 혼재한다. 관점과 시각이 다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장애학과 포용사회 담론이 파생된 정책 및 사회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장애인 자기표현으로서의 문화예술, 그리고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포용성에 대한 논의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특정하고 고유한 존재양식의 하나인 장애(인)의 예술을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같은 문제에 질문과 답변이 활발하지 않다.

다. 외국 사례: 국가·사회의 의제와 연동, 정책범주의 확대

외국정책 사례에서 주목한 점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은 포용적 예술 관점의 도입, 언리미티드로 대표되는 예술활동 지원,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시민권으로서의 장애인 예술 강조, 문화예술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의 제도화를 시도한다. 일본은 복지제도와 결합된 장애인 예술, 가능성의 장애인 예술을 강조하다. 여기서 공통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주체와 범위를 협소화하지 않고 열어 놓은 것이다.

1) 영국: 국가 정책의제와 연계한 포용예술, 정보·지적 인프라 구축

1960년대 후반 신사회운동의 하나로 장애인운동이 활발해졌는데, 이것은 장애(인) 인식이 전통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 장애예술에서는 의료적 모델(치유, 건강)에서 사회적 모델(장애인 예술활동 활성화)로 전환한다. 1970년대 후반부터 적지 않은 장애인 예술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장애인 예술의 본격화는 신노동당 정부 시기(1997~2010)다. 문화정책에서 강조한 창조산업·창의교육 내에서 그리고 포용적 예술 담론 아래서 장애인 예술정책이 펼쳐진다. 장애예술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미학으로 거듭난다. 대표사례가 2012년 런던올림픽의 '언리미티드' 프로그램이다.

영국의 장애예술 정책은 국가적 정책의제와 사회의 주요 담론과 연동되어 진행됐다. 신사회운동, 〈장애차별금지법〉(1995), 〈평등법〉(2010), 〈Creative Partnerships〉, 그리고 ACE의 〈2015-2018 Equality and Diversity Plan〉, 〈Let's Create: Introducing Our Vision 2020-2030〉 등이 대표사례다. 이 같은 정책은 장애인에 한정된 게 아니고 소수자, 곧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 눈여겨 볼 점은 장애예술에 대한 정보·지적 인프라 구축이다. 〈Making a Shift Report〉(2018)는 잉글랜드 문화예술 종사가 가운데 장애예술인을 분석한 책자다. '국립 장애예술 컬렉션 및 아카이브(National Disability Arts Collection & Archive)'는 영국 장애예술 운동의 역사를 기록·보관한다. 영국문화원은 장애예술 플랫폼인 '인터내셔널(Disability Arts International)'을 운영한다.

2) 미국: 장애 예술(인)의 접근성 제도화,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NEA는 '접근성' 전담부서(접근성 사무소 Office of Accessibility)를 운영한다. 〈미국장애인법; ADA〉과 NEA 내규(NEA Section 504)에 따른 것으로 접근성 보장 대상은 장애인·노인·참전용사·시설 거주자(장애 및 사회복지 등) 등이다. NEA 접근성 전담부서는 지원사업의 '접근성 가이드라인' 충족 여부를 살펴본다. NEA 사업 참여의향자는 계획서 작성 이전에 장애 예술인과 장애인 관객의 접근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NEA는 지원사업 예산에서 수어통역사 비용을 허용하지만 지원사업 참여기관 내부시설의 접근성을 위한 예산은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문화기관과 협력하는 것이다.

워싱턴 D.C.의 존 F. 케네디센터에는 'VSA 및 접근성 부서(The Kennedy Center Office of VSA and Accessibility)'가 있다. VSA는 장애인(청소년, 성인)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 장애 예술인 육성에 역점을 두는 것, 그리고 장애예술 연구를 진행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일본: 복지체계와 연계되지만, 복지적 시각을 넘어선 장애인 문화예술

일본의 장애인 예술은 에이블아트로 알려져 있는데, 에이블아트는 일종의 시민문화운동으로 시작했다. 복지시설에서 시작된 운동은, 에이블이란 말 그대로 시혜와 교육이 아닌 장애 예술인의 작품을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예술작품 자체로 인정한다. 일본의 장애예술이 영국·미국과 다른 점은 장애인 복지체계 내에서 정책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에이블아트가 복지적 시각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소통을 강조하는 문화적 관점을 취한다.

일본에서 눈여겨 볼 점은 NPO 단체의 활동이다. 교토의 시민단체 '스윙'은 〈장애인 종합지원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을 하는 시민단체다. 정부지원을 받지만, 상근직원 8명 가운데 3명이 예술창작 관련 전공자다. 이들은 장애인의 일상을 예술적 기획을 통해 전시회 또는 길거리에서 보여준다. 즐거움과 유머를 기본으로 하는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에 기여한다. 일상의 장애예술을 실현한 사례다.

라. 장애인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당위와 참여의 괴리

비장애인 개인은 장애인 문화예술이 유의미하고 관련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장애인 스스로 예술 참여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예술활동이 장애인 개인과 사회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여기고,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정책에 찬성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예술의 환경과 현실에 비판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예술에 대한 관심은 낮고(64.6%), 예술활동에서 장애인이 차별받는다(76.1%)고 인식한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과는 달리 비장애인의 장애인 예술 관람률은 높지 않다. 장애인 예술가 발표(창작) 관람률은 14.0%, 장애 소재(주제) 관람률은 15.3%다. 주변지역에 장애인 (문화예술) 학교와 시설 건립에 찬성하는 비율(85.7%, 84.9%)보다 스스로 장애인과 함께 하려는 비율(57.4%)은 상당히 낮다(2020 비장애인 설문조사).

이것의 의미는 이렇다. 첫째, 향후 장애인 예술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데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장애인 예술정책에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실과 당위의 괴리는, 장애인 예술정책의 지역화·탈시설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역화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 운동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특징

가.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장애 예술인은 수가 많지 않고, 활동 역시 활발하지 않다. 「2018 실태조사」에서 추정한 장애 예술인(장애예술 활동가 포함하여 31,694명)은 전체 장애인의 1.2% 정도다. 한편,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장애인은 1,500명 정도로 추산된다.[42] 장애 예술인의 특성과 창작활동 관련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유형별 특성: 발달 장애인이 많음

장애유형을 보면 지적장애 35.1%, 지체장애 23.1%, 자폐성장애 13.9%, 뇌병변장애 10.1%, 시각장애 8.9%다. 장애인 전체의 장애유형 비율과 다르다. 장애인 전체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53.2%), 청각장애(13.2%), 시각장애(9.8%), 뇌병변장애(9.8%), 청각장애(13.2%), 지적장애 (8.0%), 자폐성 장애(1.0%)다.

발달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 비중은 전체 장애인에서 9.0%인데, 장애 예술인에서는 49.0%에 달한다. 장애 예술인 가운데 발달 장애인 비중이 높다.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장애인 정책 일반과 다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2018~2020년 장문원 사업 수행단체 역시 발달 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50%로 가장 많다. 복지관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주된 참여자 역시 발달장애인 중심(54%)이다.[43]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발달 장애인이 예술적 소양이 많다는 것이 첫번째고, 발달장애인은 다른 경제활동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예술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두 번째다. 어떤 이유이든 관계없이 현재 장애 예술인 가운데 발달 장애인이 많기에 이에 적합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장애 예술인의 전문성 및 전문 교육체계의 부족

장애 예술인의 전문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장애 예술인 참여경로는 복지관 프

42) 2019년 9월 기준으로 전체 등록자 66,485명 가운데 장애인은 519명이다. 2017년 이전에 등록한 46,659명에는 장애여부가 표시되지 않아서 추정하면 1,500명 정도다.

43)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2018년~2019년 장문원 사업 참여 단체와 장애인 복지관 담당자 대상 조사다.

로그램을 통해 예술인이 된 경우가 68.5%, 예술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0.1%다(2018 실태조사). 또한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이 대체로 장애 예술인(창작)을 위한 게 아니라 장애인 예술향유를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장애 예술인이 전문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44]

장애 예술인(단체) 면담조사에서도, 전문교육의 부재와 필요성이 많이 언급된다. 예술단체 관계자는 복지관의 예술교육은 "성장보다는 기회"를 주는 "단발성"교육이기에 "전문 아카데미" 설립이, 그리고 "장애 예술인이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장애인 전문 예술교육 과정뿐 아니라 예술과 장애를 이해하고 교육할 만한 전문강사가 부족하다. "비장애 예술인 교육을 장애인들한테 가르치니까 습득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반면에 장애(인)을 이해하는 인력은 예술교육 관련 전문성이 없다. 교육진흥원에서는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교육을 실시하지만 교육시간이 짧아서 목표달성이 쉽지 않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장애 예술인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려 한다.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부산대학교 부설 예술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장애 학생이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술분야에 재능 있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과정의 장애학생을 발굴해 전문 예술인으로 양성하는 동시에, 장애학생 예술교육의 선도적 모형을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장애학생 예술학교로, 21학급 138명(중학교 9학급 54명, 고등학교 12학급 84명) 규모이며 전국 단위로 모집한다.[45] 또한 교육부는 장애인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계획 중이다. 전공 6개—디지털 정보, 휴먼서비스, 외식서비스, 제조유통, 농·생명산업, 공연예술—가운데 문화예술(공연예술)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공연예술 전공의 교육내용을 공예품 제작·무대 및 방송 관련 문화콘텐츠로 제작하고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46]

---

44) 「2018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장애예술인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343명의 장애예술인이 수록된 「2018 장애예술인 수첩」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학력은 대졸(50%), 대학원 이상(45%), 예술전공(80%)다. 「2018 실태조사」와 「2018 장애예술인 수첩」의 차이는 모집단 설정에서 비롯된다.

45) 〈연합뉴스〉(2000년 3월 25일), "부산대에 전국 장애학생을 위한 예술 특수학교 설립 확정,"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5070800004(2020년 6월 26일 검색)

46) 〈에이블뉴스〉(2020년 3월 12일), "장애학생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0&NewsCode=002020200312131010231775#z(2020년 6월 26일 검색)

문화예술계는 교육계의 이 같은 움직임과 연계하여, 또는 별도로 전문 장애 예술인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장애 예술인 일자리 찾기의 어려움

장애 예술인의 주된 활동은 창작과 실연(90.9%) 중심으로 이뤄진다. 9%의 장애 예술인이 다른 활동을 하는데 교육(7.3%), 기술(1.0%), 기획 및 경영(0.6%), 기타(0.3%)이다(2018 실태조사). 장애 예술인 활동의 미분화, 이것은 직업으로서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교육진흥원의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209개 시설에서 406개가 개설되고, 예술강사 193명이 활동했다. 그러나 장애인 예술강사는 6명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애인 예술강사 참여가 효과적이고 상징적 의미까지 지니지만 그렇지 못하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이기에 이동성이 높지 않은 장애 예술인이 참여하기 쉽지 않으며 장애 예술인 일자리 찾기는 이처럼 어렵다. 장애 예술인은 창작·발표 활동을 하지만 직업으로서의 예술영역에 진입하지 못한다. 장애 예술계에서는 "장애 예술인이 수급권자가 아니라, 예술을 직업으로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궁극적으로는 장애 예술인이 수급권자가 아니라, 예술을 직업으로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애인 예술단체 4)

"한빛예술단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들 생산품으로 등록이 되면서 공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품이 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공공기업에서 구매를 해서 정당하게 예술활동을 한 것에 대한 페이가 지급되기도 하고 기업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이나 문화예술 향유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사실 이 법률 안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장애인 예술단체 12)

장애인 정책에서 요사이 중요 이슈가 고용창출이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개발원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한 취업, 문화예술계 취업 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계는 적극적으로 참여·개입하지 못한다. 예술정책 측면에서 장애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4) 장애 예술인(단체)의 미분화, 장애인 예술활동의 격차

장애 예술인의 창작발표활동은 단체 중심으로 이뤄진다. 최근 3년 동안 장애 예술인의 창작발표 횟수는 10.6회인데 8.5회가 국내 단체 행사다. 단체단위 행사일 수밖에 없는 장르(연극, 무용, 공연)는 단체단위 행사가 많은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문학·미술·음악 장르에서도 개인단위 발표보다 단체 단위가 많은 것은, 실제 장애 예술인의 창작발표 활동이 장애인 예술단체 행사로 진행됨을 보여준다(2018 실태조사).

단체중심의 예술활동이 바람직한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장애인 예술은 다원화되지 않았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예술이 소통을 지향한다는 것은 창작행위 단위가 개인이든 단체이든 관계가 없다. 개인 예술가의 활동도 관객, 다른 작가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장애 예술인 활동이 어려운 것은 장애예술의 저변이 넓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장애 예술계의 격차로 현실화된다. 지역규모 그리고 단체규모에 따라 격차나 나타난다. 장애 예술인(단체)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돼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장애 예술인 관련 조례가 많지만 예술활동을 하는 장애 예술인과 단체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아쉽다고 느꼈던 것은 문화예술의 인프라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는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치우쳐있다 보니 지방에 내려가면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장애인복지관에서조차도 예술과 관련된 복지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단기적이거나 일회적인 또는 이벤트성의 프로그램밖에 실시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 예술 연구자 4)

"서울과 지방의 장애예술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장애인 예술단체 7)

장애인 예술단체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단체와 소규모의 신생 풀뿌리단체(일부는 법인 조건이 까다로워 풀뿌리로 남는 경우가 있음)로 나뉜다. 3장의 정책사업 분석에서 다시 보겠지만, 전자는 비교적 예산이 많은 사업을 공모없이 진행하며 후자는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5) 기술발전과 4차산업혁명 대비 미비

장애 예술인은 창작활동에서 보조도구의 필요성(23.3%)보다 보조인이 필요하다(65.0%)고 인식한다. 보조인의 역할로는 이동 및 신체 움직임 지원(20.2%)보다 창작활동 지원(26.3%)을 원한다(2018 실태조사). 하지만 앞으로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 환경은 상당히 변화할 것이다. 창작 보조인력의 도움 못지않게 새로운 예술활동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반면에 새로운 기기는 장애 예술인이 비장애 예술인처럼 되는 것이기에 장애(인)예술의 정체성을 질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로 연구자들의 이야기다.

장애 예술인(단체)은 4차산업혁명 또는 기술혁명이 가져올 창작환경의 변화에 아직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3차 산업혁명, IT 발달은 모든 사람의 일상과 사회구조를 바꿨지만 장애 예술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렇다고 기술혁명에 무관심할 필요는 없다. 4차산업혁명이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6) 열악한 창작환경, 부족한 지원

장애 예술인은 발표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한다(충분 20.0%, 부족 40.6%, 2018 실태조사). 비장애인의 장애 예술인 현황 인식은 이보다 더 부정적이다(충분 12.2%, 부족 87.8%, 2020 비장애인 인식조사). 이것은 장애 예술인이 자신의 요구를 충분히 드러낼 수 없는 여건에 있고, 실제 기대수준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장애 예술인의 예술정책 만족도는 50점을 넘지 못한다. 전반적 만족도가 그렇고, 8개 항목별 세부만족도가 모두 그렇다(2018 실태조사). 장애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 여건 개선, 그리고 장애 예술인이 자신의 욕구를 드러낼 수 있는 정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1) 문화예술 관람: 관람률과 만족도 상승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2000년 2.7%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6%를 상회한다. 세부 장르별 관람률은, 영화가 24.0%로 가장 높고,

다른 장르는 1.9%에서 2.5% 사이다(2017년 기준).[47] 한편, 여가문화활동 만족도는(만족한다는 응답률) 2005년 12.0%였으나 2017년에는 50.2%로 급격히 증가했다. 적어도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자체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하는지, 특히 어떤 장애인 (장애유형, 거주지, 연령, 경제수준 등)에게 그러한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문화향유의 격차: 비장애인과 격차, 장애인 간 격차

장애인의 예술향유 격차는 두 가지, 곧 ① 비장애인과 격차, ② 장애인 간 격차로 나눠볼 수 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예술행사 관람률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22% 낮다. 특히 영화 관람률 차이는 30%에 달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향유활동이 비장애인보다 활발한 경우가 있다. 전통문화 관람(장애인 18.2%, 비장애인 10.4%), 전통문화 관람의향(장애인 18.2%, 비장애인 11.6%), 주민자치센터 방문(장애인 49.8%, 비장애인 34.9%), 복지회관 방문(장애인 12.8%, 비장애인 5.7%), 문예회관 방문(장애인 7.4%, 비장애인 5.8%), 대학교 사회문화교실 방문(장애인 3.0%, 비장애인 1.5%) 등이 그렇다. 비장애인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환경 조성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특화된 지원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장애인 간 격차는 거주지역, 경제 능력, 연령, 단체(기관) 가입 여부, 장애 유형에 따라 나타난다. 지역 간 격차는 간단하지 않다. 장애인 복지관의 문화예술교육에 한정해서 보면, 비수도권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비율이 높다. 수도권에서는 직업능력 개발에 역점을 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교육포함) 여건은 수도권, 특히 서울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크다. 비수도권에는 일단 장애 예술인(단체)의 총수가 부족하기에 예술행사 자체가 활발하지 않다. 전체 장애인 인구에서 비수도권 거주자가 58%인데, 이들을 위한 강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람에서 중요한 변수는 경제력이다. 관람의 가장 어려운 점은 비용(2014년 36.8%, 2017년 36.5%)이고, 관람 결정

47) 전체 관람률 6.4%보다 영화 관람률(24.0%)이 높다. 이것은 설문항에서 관람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는 1주일, 후자는 1년 동안이다.

의 첫 번째 기준 역시 비용의 적절성(2014년 27.7%, 2017년 26.6%; 2017 장애인 실태조사)이다. 또한 장애아동, 단체가입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가 많다. 결국, 장애인 문화향유 지원정책 역시 맞춤형으로 진행돼야 한다.

3) 장애인의 소극적 기대

문화향유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요구하는 바가 많지 않은 편이다. 장애인의 공공(문화)시설의 프로그램 및 시설 만족도가 비장애인보다 높은 데서 잘 드러난다.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의 공공(문화)시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곳은 시군구민회관·문예회관·복지회관·생활문화센터·대학부설 사회문화교실·사설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다. 시설의 공간 및 환경 만족도가 높은 곳은 시군구민회관·복지회관·사설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공공(문화)시설의 프로그램뿐 아니라 공간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은 것은[48] 장애인의 문화예술 제공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참여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은 예비 예술인을 위한 교육(장애 예술인 양성)과 장애인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교육(장애인의 아마추어 창작 및 향유를 위한 교육)으로 나눠볼 수 있다. 후자, 곧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교육의 특성을 요약하며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교(급)의 예술교육: 전담교사 부족

특수학교(급)의 예술교육은 정규교과와 방과후학교로 나눠진다. 학교 정규 문화예술교과는 특수교사가 전담(46.3%)하거나 특수교사-문화예술교사 협력(20.9%), 특수교사-외부강사 협력(22.4%)으로 이뤄진다. 방과후학교는 외부강사 전담(49.2%), 특수교사-외부강사 협력(27.7%)으로 이뤄진다(방귀희, 2013). 정규 문화예술 교과의 성패는 문화예술교사(강사)가 특수교사의 역량과 경험에,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성패는 외부강사의 능력에 달려 있다.

48)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기회에 대한 인식에서 장애 예술인보다 비장애인이 더욱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문화예술 전담교사의 참여도가 낮기에 자기표현으로서 예술, 타자와 공감하는 예술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재활치료나 기능교육 중심으로 이뤄지고 기초 수준의 교육이 반복된다. 참고로 정규교육에서 문화예술 전담교사는 기간제 교사인 경우가 많고(40% 내외), 음악과 미술 전공자는 15%, 9%에 불과하다. 문화예술 전담교사의 참여가 요구된다.

2) 장애인복지관 교육: 자체교육 보완 필요

장애인복지관의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은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대표적이고, 복지관 자체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다. 전자는 예술강사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간 35시간을 진행하여 지속성이 높다. 후자는 예술치료와 기능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두 가지 사업 모두 참여자의 지속 참여가 힘든데, 학부모는 예술교육보다 치료와 재활 등의 교육에 우선순위를 둔다. 장애인복지관의 문화예술교육은 현재처럼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확대하되(장르 확대, 교육대상을 발달장애에서 다른 장애유형으로 확대), 수요자인 부모(학생)의 의견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 성인대상 문화예술교육은 대체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뤄진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복지관 자체사업(평생교육)으로 나뉜다. 복지관의 평생교육 가운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20~30%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진흥원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고, 평생교육은 대체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된다. 그래서 자기표현, 타자와 공감 같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가 실현되기 쉽지 않다. 결국 성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도 학생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진흥원 사업의 확대, 그리고 매개자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요구된다.

3)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특징

① 피교육자로서 장애인: 교육객체

장애인 예술은 다름과 다양성을 추구한다. 교육자-피교육자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장애예술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예술의 일반적 속성이다. 장애인 예술은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 예술인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은 교육주체가 되지 못한다. 자칫하면 장애예술의 전통적 모델에 한정되기 쉽다. 장애인 예술단체 담당자 말처럼 “지금의 장애인 교육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가 없는 사람의 위치에 복귀시켜 사회적 임무를 부과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② 단수가 아닌 복수로서의 복지관 예술교육

기관장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평생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은 20~30% 정도이고, 주된 교육 참여자는 발달장애인이다.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아동과 성인을 위한 교육이 많이 진행된다. 이것이 복지관 예술교육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복지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장애유형과 복지관 회원의 연령대에 따라 프로그램의 차이가 존재한다. 복지관 예술교육은 하나이면서 여러 가지다.

③ 학교 예술교육: 문화예술 전문가 부재, 다양하지 못한, 기초 수준의 반복적 교육

장애학생 부모는 자녀의 문화예술 활동 걸림돌을, 근린 문화예술시설 부재·장애인 편의시설 부족과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프로그램 부재·전문교사 부재와 같은 소프트웨어로 인식한다. 프로그램 부재는 프로그램을 운용할 전문교사의 부재를 의미한다.

〈표 2-45〉 장애아동의 문화예술활동의 걸림돌(중복응답, 2012)

방해 요인	%	방해 요인	%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다	23.4	교통수단이 없다	5.2
문화예술 전문교사가 없다	13.4	다른 치료/교육 때문에 시간 부족	4.9
비용이 부담된다	13.1	또래 비장애 아동의 차별	3.9
가까운 거리에 시설이 없다	12.3	다른 아동의 부모의 차별	3.8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7.9	예술교사의 차별	3.2
장애자녀와 동행자가 없다	7.9	기타	0.9

자료: 변경희 외(2012),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사)몸짓과소리)

장애인 예술단체 담당자의 다음과 같은 언급, 곧 “비장애 어린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통해 선택적으로 예술가들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듯, 장애 어린이들에게도 예술가 혹은 전문가들의 예술 교육이 공교육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문화예술 전담교사의 안정된 전문성으로 교육내용과 커리큘럼이 다양하지 못하고 기초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애아동 문화예술 교육실태 조사」에서는 정규 교과과정과 방과후학교를 포괄해서 음악, 미술을 중심으로 주 1~2회 수업에 그치고 있다. 주당 수업빈도를 보면 정규 교과에서 미술은 1.57회, 음악은 1.55회, 무용 0.12회 등이었고, 방과후학교에서는 음악 1.19회, 다른 예술 교과목은 1회를 밑돌았다. 교과내용도 다양하지 않고, 음악수업은 악기연주 위주, 미술수업은 만들기와 그리기 위주로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변경희 외, 2013).

〈표 2-46〉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수업 내용(2013)

	정규교과	방과후학교
미술수업 빈도	주 1.57회	주 0.98회
음악수업 빈도	주 1.55회	주 1.19회
춤수업 빈도	주 0.12회	주 0.55회
미술수업 내용	그리기(32.5%), 만들기(31.9%)	만들기(40.5%), 그리기(31.1%)
음악수업 내용	악기(36.3%), 합창(30.4%)	악기(45.7%), 사물놀이(21.4%)
춤수업 내용	댄스(53.8%), 기타(38.5%)	댄스(47.8%), 고전무용(43.5%)

자료: 변경희 외(2013), 「장애아동의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사)몸짓과소리)

④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와 사회복지사의 관점 차이

예술강사와 사회복지사 모두 예술교육의 목적이 장애인의 자기표현 능력 개발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강조점이 다소 다르다. 사회복지사는 표현능력 개발 못지않게, 치유와 기능습득에도 역점을 두지만, 예술강사 가운데 다수는 장애인의 자기표현 능력 개발을 강조한다. 따라서 복지관 교육과정 운영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복지관에서는 기능습득의 결과를 보여주고 싶어 발표회 중심의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예술강사가 계획하고 추구한 교육과정이 흐트러지기도 한다.

더욱이 장애인 복지관의 예술교육 진행여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관장이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없으면, 복지관에서의 교육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사회복

지사의 다음과 같은 말처럼 “관장님이 특별하게 여기에(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엄청 많지는 않”았을 때 예술교육을 지속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지관을 대표하시는 관장님의 마인드”를 예술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역량과 장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요한다. 복지기관 지원사업의 참여자가 개선사항으로 많이 지목한 점도 ‘연속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함께 ‘강사의 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이다. 두 가지 개선사항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기존 참여자의 반복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장애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예술강사에게 제공되는 장애 유형 및 등급 등의 형식적 정보는 현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느린 학습, 시각적 학습, 행동적 특성 등과 같은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에는 예술강사를 위한 장애 이해 연수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2013년에는 40시간 의무연수였으나 2015년부터 18시간으로 줄었고 신규강사에게만 의무사항이다. 최근 들어 연수 내용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 포용적 예술 관점에 기반한 ‘장애예술’로 변화한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표 2-47〉 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선사항(2014)

구분	명(%)	구분	명(%)
강사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향상	16(3.8)	수업 기자재의 보충	18(4.2)
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	80(18.9)	강사 및 보조 인력의 충원	51(12.0)
교육과정 운영 준비성 향상	11(2.6)	수업일정 조율	35(3.3)
부모에 대한 피드백 활성화	65(15.3)	연속적인 교육기회 보장	112(26.4)
수업환경(공간)의 개선	33(7.8)	기타	3(0.7)

자료: 이용표 외(2014).「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평가 질적 연구」

〈표 2-48〉 장애인 복지기관 예술강사 연수 내용(2015~2019)

연도	연수명	연수시간	정원
2015	장애 문화예술 교육 현장 엿보기	18	25
2016	장애 문화예술교육 현장, 새로운 시선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수업 레파토리 공유 워크숍 신규 사회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길라잡이	18 18 18	25 25 25
2017	장애 문화예술교육 현장, 새로운 시선 복지기관 교육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이해	18 18	25 25
2018	복지기관 예술강사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워크숍 장애 복지기관 예술강사 역량강화 연구 모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복지기관에서의 문화예술교육	18 25 18	25 20 25
2019	포용적 예술로 다시 보는 장애예술 교육	18	25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AA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hrd.arte.or.kr/c/goBizC0101.do

한편,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자격과정에는 8개의 선택과목(실천영역) 가운데 특수교육론이 포함되어 있다. 특수교육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표준화되지 않은 교육 욕구를 가진 사람들까지 포괄하므로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문화예술교육론은 13개의 선택과목(방법영역)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기존의 양성체계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소수다.

〈표 2-49〉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교과영역	교과목	교과영역	교과목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4주현장실습 포함)	선택1 (실천)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선택2 (방법)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홈페이지, https://lledu.nile.or.kr/system/subject/

3. 장애인 예술정책 방향 설정의 시사점

가. 담론 활성화 및 정책목표 설정

장애인 관련 연구 및 정책의 최근 동향을 보면, 장애인 예술의 핵심어는 포용예술, 장애 정체성 표현예술이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예술 인식은 다양하다. 전통·사회·치유적 관점이 혼재하지만 문화적 관점(포용성, 정체성)의 논의와 정책은 활발하지 않다. 장애인 예술(정책) 역사가 짧고 예술 환경이 미비하기에 반드시 문화적 관점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장애 연구의 발달과정에 조응하면서 포용성·정체성·다양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문화예술-사회복지-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 예술의 본질·의미과 장애인 예술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장(場) 마련이 필요하다.

이 같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지향점과 과제 도출, 장애인 정책과 문화예술정책의 연계, 그리고 시민의 장애인 예술 인식 제고의 구체적 사업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회·정책환경 변화 대응, 현실을 고려한 정책 수립

장애인 예술 담론과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외국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장애인 예술이 국가·사회·시대의 어젠다 내에서 논의되는 게 하나고, 장애예술의 범주를 고정된 게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 인식하는 게 다른 하나다. 한국에서도 장애인 예술 담론과 정책은 외국처럼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예술정책이 발전한 국가라서가 아니다. 장애인 예술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려면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조응하는 게 적절한데,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예술은 현재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시대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사안은 직업으로서의 장애 예술인, 장애인 예술의 인식 개선, 기술발전과 조응하는 장애인 예술 등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 예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영국·미국·일본은 각각 자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장애인 예술정책을 특화한다. 정보 인프라 구축(영국), 아동·청소년 장애 예술인 양성(미국), 복지와 결합하되 탈복지적 성격의 사업(일본)이 그렇다. 외국의 우수 정책사례를 좇아야겠지만,

장애인 예술 담론과 정책의 추진 단계, 장애인복지관 중심의 예술교육 같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사회·정책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그리고 세계를 추세를 따르지만, 현실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는 특정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 해당되고, 예술강사와 사회복지사 모두에 해당되고, 장애 예술인(단체)과 비장애 예술인(단체) 모두에 해당된다. '비장애인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비장애인은 장애인 예술환경의 열악함과 장애인 예술의 유의미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장애인 예술작품을 관람하거나 장애인과 함께 예술활동하는 데는 주저한다. 장애인 역시 적극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의사는 많지 않다. 예술강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사회복지사는 예술교육의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장애인 예술인(단체)은 장애인 예술의 지향성에서 합의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비장애 예술인(단체)은 장애인 예술에 관심이 많지 않다.

결국 장애인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인지하려면 장애 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요구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터, 이것은 4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라. 장애인 예술 지원정책의 유연화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여건은 열악하다. 작업공간은 없고(65.4%), 지원받은 경험이 없으며(62.0%), 발표기회는 부족하고(43점), 예술지원 정책만족도(47점)가 낮다(2018 실태조사).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예술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지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할지'는 결정하기 쉽지 않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 지원이 아니라 탄력적 지원이 필요하다.

유연화된 장애 예술인(단체) 지원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장애유형 대비, 장애 예술인은 발달 장애인이 많기에 발달 장애에 적합한 지원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장애 예술인이 예술가 직업을 지닐 수 없지만, 전문성

과 의지가 있는 장애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사업을 펼쳐야 한다. 이때는 공공영역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영역이어야 하는지, 기존 문화예술계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예술단체 중심으로 활동하는 장애 예술인, 곧 개별 예술가에는 어떤 지원이 적합한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예술단체와 소규모 예술단체 각각에게 적합한 지원내용은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장애 예술인 창작지원의 총론뿐 아니라 각론이 필요한데, 이것이 탄력적 장애 예술인 지원정책이며, 맞춤형 정책이다.

마. 장애인 예술향유 격차 해소

앞서 보았듯이 장애인의 예술향유 격차—비장애인과 격차, 장애인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 비장애인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뿐 아니라 예술향유에서 장애인이 강점을 보이는 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참여율이 높은 전통예술 분야에서 특화된 지원, 그리고 장애인이 더 많은 찾는 복지회관과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 지원에 역점을 둘 수 있다.

장애인의 거주지역, 경제력, 연령, 단체 가입여부, 장애유형에 따라 예술 향유에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간 장애인의 예술향유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내 장애인 예술 거점공간 조성, 지역 장애 예술인(단체) 특화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여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장애 예술인 창작지원의 유연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향유지원 역시 탄력적이어야 한다.

제3장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 분석

제1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전개

1. 장애인 정책과 문화예술

가. 주요 정책과 계획

현재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는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1991년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진행한 '대한민국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 사업이 2015년 제25회 시상을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장애인 정책 내 문화예술 관련 직접 사업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문화예술정책(사업)이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이처럼 장애인 정책에서 문화예술은 주된 영역이 아니다.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1976년 유엔의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 그리고 1977년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시작된다.[49] 이전의 장애인 사업은 개별적 자선에 의존했다. 장애인 관련 주된 법률은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을 대체한 〈장애인복지법〉(1989),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2007년 제정, 2008년 시행),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년 제정, 2008년 시행), 〈장애인연금법〉(2010) 등이다.

법률에서 보듯이 장애인 문화예술은 장애인 정책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정책의 주된 영역은 소득보장, 고용, 그리고 복지서비스(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바우처 사업)다. 〈장애인복지법〉(1989) 제3조에 문화가 포함되고, 2001년 전면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문화관련 내용, 곧 문

49) 아래의 내용은 김용득(2016), 「장애인복지: Inclusive Society를 위한 상상」(EM커뮤니티), 207쪽을 참조했다.

화참여 권리(2조 2항), 문화차별 금지(8조 1항), 전문인력(71조)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선언적 의미에 가깝다.

따라서 장애인 정책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사업은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소득과 고용이 장애인 정책에서 훨씬 중요하고, 특수교육과 복지서비스에 문화예술이 포함될 수 있지만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 체육정책의 상대적 활성화와 대비된다. 체육(정책)은 장애인의 신체 능력 향상·회복이란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졌다. 장애인 체육정책은 보통 4단계—① 태동기(1950~1975) 장애인스포츠 시작, ② 전개기(1975~1988) 장애인스포츠 기반구축, ③ 과도기(1989~1999) 장애인스포츠 조직 창립, ④ 발전기(2000~) 장애인스포츠 법적 근거 마련—로 나뉜다.[50] 장애인체육은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체육)에서 비롯된다. 제1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개최(국립원호병원, 1965), 텔아비브 패럴림픽 척수장애인선수단 참여(1968), 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회관 건립과 장애아동 체육수업(1975), 장애인체육대회 개최(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81), 서울 장애자올림픽대회(1988),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창립(장애인체육 전체 관장, 1989), 장애인체육대회 지역순회 개최(2000), 대한장애인체육회 창립(2005. 11. 25),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설립(2006),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1차 2007, 2차 2013, 3차 2018),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발표(2018) 등이 장애인 체육정책의 주된 역사다. 장애인 체육정책의 주무부서는 2005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부로 변경됐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문화 부분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 1996년 1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된 이후,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각 부처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문화예술 관련 항목이 포함된다. 이것은 장애인 정책에서 문화예술이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장애인의 삶을 위해 실현해야 할 정책영역임을 보여준다. 1차부터 5차 계획에 나타난 문화예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51]

---

50) 아래의 내용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역사와 비전: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성장과 최근 동향," 「월간장애인체육」(2018년 8월호)에 따른다. https://kpcsports.koreanpc.kr/2035/(2020년 5월 4일 검색)

〈표 3-1〉 장애인 종합발전계획(1차~5차) 내 문화예술 분야

차수	과제	세부 추진과제
1차	여가·문화환경 조성	문화 향수권 확대 및 문화공간의 확충
		문예프로그램 개발·보급
		예능교육 강화
		문예활동 지원
2차	장애인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문화시설별 문화교육강좌 운영 확대
		장애청소년을 위한 문화현장체험활동 지원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권장
3차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확대	문화바우처 사업 및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전국 장애인 e스포츠대회 개최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공공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대체자료 제작·보급을 통해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표준수화, 한국점자규정 보급으로 특수언어 표준화
4차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확대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
5차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기회확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장애인 영화 관람 접근권 지원 강화
		장애인 관광·여가 향수권 증진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은 '여가·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 향수권 확대 및 문화공간의 확충', '문예프로그램 개발·보급', '예능교육 강화', '문예활동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지원 중심의 사업들이 포함된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은 '장애인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시설별 문화교육강좌 운영 확대', '장애청소년을 위한 문화현장체험활동 지원',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권장' 등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계획이 제시된다.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은 특화된 구체적 사업을 제시한

51) 종합계획 명칭은 약간 바뀌었다. 제1차와 제2차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제3차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4차부터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다.

다. 첫째, 제3차 계획의 특징은 문화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업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둘째, 문화예술 장르 중 장애인의 관람률이 가장 높은 영화 영역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이다. 셋째, 장애인 문화향수 확대를 위해 문화바우처를 포함했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은 문화향수 기획 확대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확대, 영화관 접근성 강화가 주요 내용이었다. 이전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영화관 접근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으로 보인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은 문화향수, 영화관람 접근성 등은 이전 사업을 계승하지만,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논의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그림 3-1] 제5차 장애인 종합계획정책(2018~2022) 비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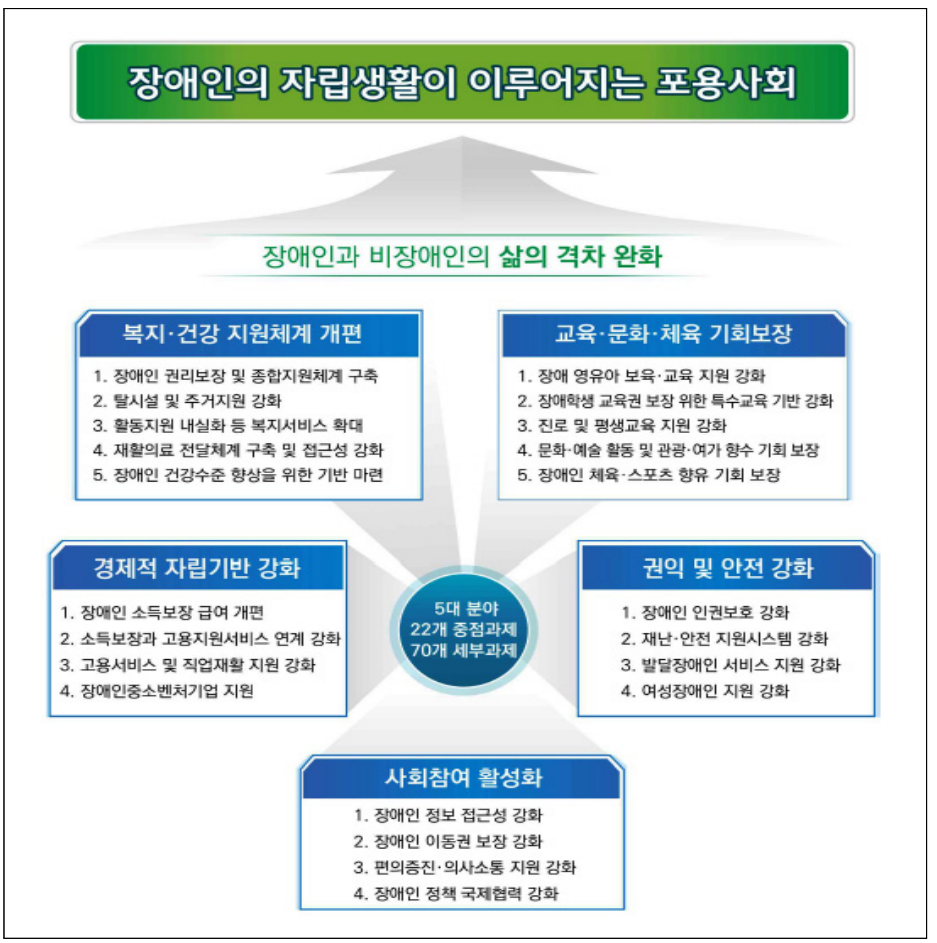

나. 관련 법률

장애인 관련 법률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률은 5개—① 장애인복지법,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③ 장애아동복지지원법, ④ 발달장애인법, ⑤ 장애인등편의법—다. 〈장애인복지법〉은 제정목적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데 있는데, 제28조(문화환경 정비)에 문화생활에 대한 정부(중앙정부, 지자체) 지원이 포함된다. 이 조항이 포함된 게 1989년이며, 장애인 문화생활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소상한 조항이 포함된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법률 제24조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를 명시한다.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시설 및 장비, 보조인력, 보조장비)을 적시하고, 편의 제공해야 할 시설을 명시한다(별표 4).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한정되지 않지만,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공공시설에 장애인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함을 규정한다. ① 공원, ②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③ 공동주택, ④ 통신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문화시설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만, 근린생활시설(공연장), 도서관 등은 다른 유형에 포함된다(시행령 별표 1).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문화시설 등에서 ① 매개시설(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② 내부시설(출입구문, 복도, 계단 및 승강기), ③ 위생시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④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설비), ⑤ 기타시설(관람석 및 열람석, 매표소·판매기·음료대)을 갖춰야 한다(시행령 별표 2). 한편,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정부가 장애아동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는 항목이 포함된다. 하지만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구체적 조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의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의 문화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두 가지 법령은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것이지, 장애 예술인의 활동을 위한 것은 아니다.

〈표 3-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법령명	내용	
장애인 복지법	제정일자/ 최근개정일자	1981.6.5 제정 / 2019. 12. 3 일부개정
	주요 내용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일자/ 최근개정일자	2007. 4.10 제정 / 2019. 12. 3 일부개정
	주요 내용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약칭: 장애아동복지법)	제정일자/ 최근개정일자	2011.8.4, 제정 / 2016. 12. 2 일부개정
	주요 내용	제26조(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예술·스포츠·교육·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제정일자/ 최근개정일자	2014.5.20. 제정 / 2020. 4. 7 일부개정
	주요 내용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일자/ 최근개정일자	1997.4.10, 제정 / 2020. 3.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법령명	내용	
(약칭: 장애인등 편의법)	주요 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문화예술정책과 장애인

가. 주요 정책과 계획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역사는 길지 않다. 노무현 정부 시기, 문화정책 비전서인 「창의한국」의 27대 추진과제 가운데 8번과제(추진과제 8.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내에 장애인이 포함된 것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창의한국」(2003)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① 장애인, ② 저소득층, ③ 이주노동자, ④ 재소자·군인·탈북이주민으로 설정했다. 장애인 문화권 신장을 위해 제시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3-3〉 「창의한국」(2003):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권 신장: 장애인 부문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문화권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방안 수립
특수언어 표준화 지원 강화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이용권 강화
문화시설의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장애인 문화체험 지원 도우미 체제 도입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문화바우처제 실시 및 할인제도 확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문화정보 접근권 확대
장애인 문화활동 핸드북 제작·보급
(가칭)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지원
장애인 문화창작기회 확대
장애인 문화체험마을 조성

[체육분야]
장애인체육의 문화관광부 이관 추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체육교실사업 확대
장애인 체육시설 조성 확대와 지원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할인제도 도입

제도적 측면에서 눈여겨 볼 점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정책이다. 장애인체육의 문화관광부 이관 추진 계획에 따라, 실제 2005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주무부처가 바뀐다. 2005년 문체부 이관 이후 장애인체육 정책의 주요 사업은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설립(2006),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1차 2007, 2차 2013, 3차 2018),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발표(2018)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 초중반, 장애인 체육정책이 제도화됐다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정책사업을 시도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이후,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몇 가지 나눠 살펴본다. 첫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예산 배분은 다음과 같이 이뤄졌다. 2005년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바우처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정책사업 시작은, 2007년 복권기금으로 진행한 문화나눔사업(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하나인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일명 신나는 예술여행)의 순회대상지역 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권기금을 활용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사업(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찾아가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창작지원까지를 포괄하면서 2013년까지 지속된다. 복권기금이 아니라 국고가 투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8년이다. 이때 시작된 함께누리지원사업(당시 예산 5억원)은 현재까지 지속된다(2020년 예산 15,582백만원). 한편, 체육진흥기금이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다.

둘째, 관련 법률 및 정책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2008년 1월 〈문예진흥법〉을 개정하여 제15조의 2항(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을 신설했다. 2008년에 함께누리지원사업(국고)이 시작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4월 10일 제정(시행은 2008년 4월 10일)되어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법률 24조), 이를 위해 또는 이 시점에서 문예진흥법 내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새로이 포함된 것이다.

문체부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체육국 장애인문화체육과에서 담당했으나, 2013년 3월부터는 예술국 예술정책과에서 담당한다.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담당자는 2명이다. 참고로 장애인체육과에는 7명이 근무한다. 한편, 2015년에는 (재)장애인문화예술원이 설립되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함께누리사업은 당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담당했으나, 2017년부터는

장문원에서 주관한다. 또한 2015년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이음센터)가 개관하여 장애 예술인에게 연습과 실연 공간을 제공한다.

셋째,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정부별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가운데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장애인 예술창작 지원센터 조성 등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77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강화)이며, 다른 하나는 '예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등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78번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이다. 전자는 이음센터 건립, 후자는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속으로 어느 정도 실현됐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42번(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장애인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가 포함된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와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사업을 시행·계획 중이다.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는 2018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진행하고, 장애예술 공연장 건립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2019).

나. 관련 법률

1) 중앙정부: 문체부

문화예술정책 법률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이 포함된 것은 2008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가 신설되면서부터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2007) 이후 〈문예진흥법〉에서도 장애인의 예술활동이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률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예술사업,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장애 예술인 지원까지를 포괄한다. 이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문예진흥법〉 제15조의2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이후 개정된 〈문예진흥법〉에서는 장애인을 (문화) 소외계층의 일부로 다룬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아니라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으로 표현된다. 〈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편의시설 제공이 포함된다.

이를 제외한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서 장애인 관련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표 3-4〉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법령명	내용	
문화예술 진흥법	제정일자/ 최근개정일자	1972. 8.14 제정 / 2019. 11. 26 일부개정
	주요 내용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2014.1.28〉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 (약칭: 문화예술 교육법)	제정일자/ 최근개정일자	2005. 12. 29 제정 / 2019. 12. 3 일부개정
	주요 내용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약칭: 문화산업법)	제정일자/ 최근개정일자	1999. 2. 8 제정 / 2019. 11. 26 일부개정
	주요 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진흥관련 조례를 2009년부터 제정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모든 광역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있으며, 39개 기초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시(市)지역 17개, 구(區)지역 17개인데 반해, 군(郡)지역 5개에 그쳐 지역별 편차를 보인다.

〈표 3-5〉 기초지자체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수(數)

기초지자체	시	군	구
39	17	5	17

〈표 3-6〉 지자체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정연도 순)

	법규명	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개정
광역 지자체 (17)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4253호	2013.07.01	제정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4787호	2014.10.2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583호 제2125호	2016.03.16 2018.11.21	제정 일부개정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4287호	2016.06.17	제정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3796호 제3813호	2016.07.11 2016.09.19	제정 일부개정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4177호 제4338호	2016.10.20 2018.02.20	제정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 943호	2016.12.20	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6393호	2017.01.05	제정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4893호	2017.04.28	제정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5574호 제5923호	2017.05.31. 2019.05.29	제정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5801호	2017.06.05	제정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816호 제2140호	2017.12.28 2020.04.09	제정 일부개정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4127호	2018.01.11	제정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4718호	2018.10.04	제정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5194호	2018.12.31	제정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4520호	2019.01.03	제정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4479호	2019.11.08	제정

	법규명	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개정
기초 지자체 (39)	영월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	조례	제1991호 제2398호	2009.05.01. 2016.10.21	제정 일부개정
	거제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제1032호 제1152호 제1212호 제1663호	2012.04.27 2014.03.14 2015.01.07 2019.06.05	제정 전문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	조례	제453호	, 2012.11.23	제정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046호	2013.12.20	제정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096호 제1479호	2013.12.30 2019.10.15	제정 일부개정
	단양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	조례	제2162호 제2189호	2014.04.11 2015.01.09	제정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010호	2014.10.02	제정
	김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229호	2015.09.30	제정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134호 제1178호	2015.12.30 2016.11.14	제정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823호	2016.11.14	제정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3365호	2016.12.30	제정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조례	제965호	2017.03.31	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345호	2017.04.18	제정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733호	2017.04.21	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972호	2017.10.17	제정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495호	2017.10.28	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344호	2017.11.15	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212호	2017.12.14	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340호	2017.12.22	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242호	2018.04.17	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302호	2018.11.14	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628호	2018.12.24	제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366호	2019.05.21	제정
	광양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661호	2019.05.29	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292호	2019.05.30	제정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2075호	2019.07.01	제정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935호	2019.07.01	제정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2264호	2019.07.19	제정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343호	2019.08.05	제정
	속초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2683호	2019.08.09	제정

	법규명	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개정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910호	2019.09.16	제정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728호	2019.09.27	제정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3293호	2019.10.21	제정
	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031호	2019.11.04	제정
	가평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2805호	2020.05.06	제정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787호	2020.05.07	제정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1997호,	2020.06.30	제정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2583호	2020.07.01	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조례	제1501호,	2020.07.09	제정

지자체별로 조례 조항은 유사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든 영월군(2009)의 경우 장애인 동호회를 강조하는 데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장애인 예술향유 지원을, 가장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서울특별시 양천구(2020)의 경우 장애인 예술단체를 개념화한 데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예술창작 지원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지만 오히려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장애인 문화예술이 생활권역 내에서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준다.

제2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사업 분석

1. 분석기준 설정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사업은 문체부 사업, 타 부처 사업, 그리고 지자체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사업은 문체부·장문원 진행사업, 문체부·교육진흥원 진행사업,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문체부·장문원 진행사업, 문체부·교육진흥원 진행사업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한다.[52] 첫째, 사업목적과 내용의 타당성이다. 사업목적의 명확성·구체성·체계성, 사업 내용이 사업목적 달성에 부합되는지를 간략히 살펴본다. 덧붙여 이 같은 사업목적과 내용을 설정하는 데 장애인 문화예술 환경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그리고 사업예산은 적절한지도 간략히 살펴본다.

둘째, 사업 이해 관계자 역량과 사업목적 부합성이다. 사업 이해 관계자는 크게 세 집단—① 사업 주관기관, ② 사업 진행기관(단체 포함), ③ 사업 참여자—으로 나눠볼 수 있다. 사업 주관기관 및 진행기관은 정책사업을 진행하기에 얼마나 전문적인지를 살펴본다. 전문성은 인력과 조직의 충분함뿐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특성 숙지여부를 포괄한다.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참여자 구성이 정책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다. 덧붙여 사업 진행기관(단체) 및 참여자 선정방식의 적합성과 사업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정도를 간략히 살펴본다.

52) 다른 사업들도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관련 자료를 구하지 못했다. 향후 장애인 예술정책 관련 사업 전체를 기준에 따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3-7〉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분석기준

분석기준	분석 주안점
사업목적과 내용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명확성·구체성·체계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목적 부합성 정책환경 분석여부 예산의 적절성
사업 이해 관계자의 역량 및 협력	사업 주관기관의 전문성 사업 진행기관의 전문성 참여자 구성의 적합성 사업진행기관 및 참여자 선정의 적절성 이해관계자의 협력

2.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문체부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사업을 장문원과 가장 많이 진행하지만, 다른 사업들도 수행한다. 교육진흥원의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각 부서에 장애인 지원사업이 있다.

문체부의 장애인 관련 사업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177,167백만원이다. 장문원을 통한 사업예산(함께누리지원사업, 체육기금사업)뿐 아니라 체육사업을 포괄한 금액이다. 문체부 내 담당부서가 다르면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가 활발하지 않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국악원은 각기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비교분석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영역은 다르지만 장애인 체육과 장애인 예술 역시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동일한 기금을 사용하지만 사업 간 비교와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업들은 장문원과 교육진흥원을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분석하지는 못했다.

〈표 3-8〉 문체부의 장애인 관련 사업예산(2017~2020)

(단위: 백만원)

회계	사 업 명	2017	2018	2019	2020
계	소계	112,388	109,639	139,894	177,167
일반 회계	*함께누리지원	7,000	6,580	8,821	10,021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3,620	3,460	3,450	3,147
	*문화예술단체운영지원(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	1,360	1,369	1,457	1,607
	청년장애인웹툰전문교육지원	-	-	1,200	1,200
	게임산업육성 (e스포츠활성화지원-장애학생e스포츠대회개최)	290	290	250	250
	저작권보호활동활성화 (온라인상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운영)	3,706	3,310	3,874	4,277
	시각 및 청각장애인 저작물 접근 지원			40	120
	국립중앙박물관운영(교육프로그램운영)	20	20	20	20
	국립중앙박물관운영 (시각장애인 대상 문화재 체험교구 개발운영)	-	-	-	265
	국립국악원 운영(교육 및 연구)	53	53	43	43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장애인 도서관운영 및 지원)	1,035	1,032	1,015	1,028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	3,965	3,967	4,562	5,082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88	108	258	235
정보화	도서관정보 서비스 구축 운영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활용 체계구축)	830	680	680	680
영화기금	영화향유권강화(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857	857	857	863
체육기금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전문인력양성-문화예술분야)	35	1,700	1,531	1,531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문화예술취약분야육성-장애인예술분야)	-	2,312	2,081	2,473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장애인형)	9,300	9,700	32,000	35,000
	장애체육인복지사업	5,189	4,919	3,987	4,607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16,412	16,660	18,610	34,167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13,045	15,445	20,494	25,669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33,691	30,895	26,178	31,57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	2,650	2,745
	주최단체 지원 (비발행대상 종목지원-장애인체육 관련)	3,085	3,075	2,802	4,144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장애인체육 관련)	8,807	3,207	3,024	6,422
문예기금	통합문화이용권(기초·차상위 문화누리카드 발급) ※ 장애인예산으로 특정불가라 합계에선 제외	(69,875)	(82,103)	(91,501)	(103,324)

2-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

가. 장문원 사업개요

2015년 3월 설립된 장문원은 재단법인(공직유관단체 지정, 2017)으로 업무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이음센터, 2015. 11) 위탁운영 및 관리업무다. 두 번째는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창작·교육·교류 협력 사업 진행 업무다. 세 번째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진행 업무다.

2020년 기준 장문원 수입예산은 15,772백만원(국고보조 15,582백만원, 자체수입 190백만원)이며, 지출예산은 국고보조금(15,582백만원)과 동일하다. 지출예산은 장문원 운영비 2,178백만원(14.0%), 함께누리지원사업비 9,400백만원(60.3%)[53],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비 4,004백만원(25.7%)이다. 일반회계(함께누리지원사업) 11,578백만원은 운영비(18.8%)와 사업비(81.2%)로 지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전액을 사업비로 지출한다.

장문원 주관사업은 예산항목에 따라 일반회계(함께누리지원사업)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국민체육기금은 형식상 각각 2개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① 장애인예술역량강화, ② 장애인공연예술단 지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①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② 문화소외계층 및 지역 대상 문화예술 활성화지원(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으로 구분된다.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53) 함께누리지원사업 예산이 9,971백만원인데, 이 가운데 571백만원은 운영비여서 장문원 운영비로 계산했다.

〈표 3-9〉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2019~2020)

(단위: 백만원)

예산 및 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및 내용		예산		비고
				2019	2020	
함께누리 지원사업 ① 장애인예술 역량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창작	창작 활성화 지원	세부 내역 미확인	1,000	공모형 (공모사업예산 내 운영비 포함 -571백만원: 소계에 포함)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300	
		향유	문화예술 향수 지원		900	
			커뮤니티 예술 활동지원		200	
		교육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		600	
		지역	지역 문화예술특성화 지원		1,200	
		소 계		4,771	4,771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300	300	기획공모형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		150	150	
		시각장애 문화예술 정보지 발행		100	100	
		소 계		550	550	
	장애인 창작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창작아카데미 운영		-	600	직접운영
		소 계		-	600	
	국제 장애예술주간	예술과 장애 국제 심포지엄		-	600	직접운영 및 운영용역
		아태지역 라운드 테이블				
		국내·외 장애예술 작품 공연				
		D-education				
		소 계		-	600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비공모)	장애인 공연공간 확충방안 연구		200	-	비공모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900	900	
		스페셜 K 경연대회		200	200	
		장애인 합창대회		150	150	
		문학상·미술상		100	100	
		잡지발간		150	150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50	50	
		장애인 청소년 예술제		50	50	
		장애인 국제무용제		300	500	
		소 계		2,100	2,100	
	① 장애인예술역량강화			7,421	8,621	
함께누리 지원사업 ② 장애인공연 예술단 지원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전통예술공연		500	500	비공모 (민간경상보조)
		대중예술공연		450	450	
		클래식 공연		400	400	
		소계		1,350	1,350	
	② 장애인공연예술단 지원			1,350	1,350	
함께누리지원사업 총합				8,771	9,971	

예산 및 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및 내용	예산		비고
			2019	2020	
국민체육 기금 ①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인력양성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800	800	비공모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무용 전문인력양성	250	250	
		장애인 문화예술 아카데미	100	100	
		시각장애인 연주자 양성	200	200	
		소계	1,350	1,350	
	청년예술가 양성	창작 워크숍	181	181	직접운영
		교류 워크숍			
		소계	181	181	
	①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인력양성		1,531	1,531	
국민체육 기금 ②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시·청각장애인 특성화 축제	장애예술 공연 외	200	200	공모 (민간경상보조)
		소계	200	200	
	소외계층 활성화 장애인문화 예술진흥	장애인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600	600	비공모 (민간경상보조)
		유망 장애인예술가 발굴, 공연 지원	200	200	
		소계	800	800	
	장애인 예술단체 해외공연개최지원	해외공연 개최지원, 국제교류 역량 강화 활동지원	600	600	공모 (민간경상보조)
		소계	600	600	
	창작공연예술 특성화 지원	공연 및 워크숍	181	220	직접운영
		소계	131	220	
	장애인 문화예술 정보시스템 운영	콘텐츠 기획·개발 외	300	500	직접운영 및 운영용역
		소계	300	500	
	발달장애인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활용	-	153	연구용역
		소계	-	153	
	② 장애인문화예술진흥		2,081	2,473	
국민체육기금 총합			3,612	4,004	
함께누리지원사업+국민체육진흥기금			12,383	13,975	

1) 함께누리지원사업(국고지원사업)[54]

함께누리지원사업은 ①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사업, ②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사업으로 나눠진다.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문예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지원)다. 사업은

54) 아래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2019), 「2020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서 따왔음을 밝힌다.

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복권기금) 문화나눔' 가운데 하나인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일부, 곧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으로 시작했다. 문체부에서 장문원에 정액을 지원하며, 장문원에서 사업 진행기관을 선정하여 재교부하는 단년도 사업이다. 2020년 예산은 9,821백만원[55]이다.

〈표 3-10〉 함께누리지원사업 예산(2019~2020)

(단위: 백만원)

구분		'19예산 (A)	'20예산안 (B)	증감 (B-A)
함께누리지원		8,821	9,821	1,000
	장애인예술역량강화	7,471	8,471	1,000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1,350	1,350	-

2)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가운데 일부는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에 사용된다. '체육·문화예술사업'은 6개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① 학교체육 활성화, ② 학교·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 ③ 심판 양성 및 지원, ④ 전문인력 양성, ⑤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⑥ 체육·문화예술 진흥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사업이 포함되는데 2020년 기준 예산은 4,004백만원으로,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예산(78,385백만원)의 5.1%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가운데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4,004백만원)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1,531백만원), 두 번째는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2,320백만원),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153백만원)이다. 첫번째는 '체육·문화예술사업' 여섯 가지 가운데 '전문인력 양성'에 포함되고, 두 번째와 세번째는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에 포함된다. 장문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묶어서 '문화소외계층 및 지역 대상 문화예술 활성화지원(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이라고 이름 붙인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위해 투입하는 목적은 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 및 취약분야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56] 국민체육진흥기금을

55) 2020년 실제 예산은 9,971백만원으로 약간 차이가 있다.

체육이 아닌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2항 제3호(라, 마, 바)에서 찾을 수 있다. 2014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으로 전환하여, 2015년부터 체육·문화예술사업에 지원을 시작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2020년 기준 4,004백만원이다(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예산의 5.1%). 사업 진행기관은 문화예술단체이며, 장문원을 통해 기금이 정액 지원된다.

〈표 3-11〉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문화예술사업 지원 예산(2019~2020)

(단위: 백만원)

구분	'19예산 (A)	'20예산안 (B)	증감 (B-A)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70,206	78,385	8,179
① 학교체육활성화	12,015	14,974	2,959
② 학교 및 직장운동 경기부 활성화	17,566	16,452	△1,114
③ 심판양성 및 지원	6,059	6,059	-
④ 전문 인력 양성	12,466	13,950	1,484
〈체육 분야〉	6,040	7,140	1,100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역량 강화		500	
장애인전문인력 양성 지원		402	
국제업무 전문인력 활동지원(장애인 체육)		315	
장애인 이용 편의 우수 체육시설 선정		80	
〈문화예술 분야〉	6,426	6,810	384
장애인 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1,531**	
⑤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13,145	15,003	1,858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2,320**	
발달장애인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153**	
점자전문인력 양성환경 개선		135	
⑥ 기타 체육문화예술의 진흥	8,955	11,947	2,992
〈체육 분야〉	7,767	10,244	2,477
대한장애인체육회 개인정보 보호강화 시스템 도입		350	
척수장애인 심폐지구력 측정방법 추가개발 및 기준마련 연구		120	
장애인체육 인터넷TV 운영		263	
2020 도쿄하계패럴림픽대회 메달포상금 지급		3,500	
〈문화예술 분야〉	1,108	1,703	515

56) 「202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는 세부사업의 사업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문원 내부자료를 활용했음을 밝힌다.

나. 사업분석

1)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① 함께누리지원사업: 장애인예술역량강화

「2020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예술 창작활성화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다양성 가치실현,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은 창조적 문화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향유·교육을 통해 창의성·문화다양성·창조적 문화사회를 실현하려는 포괄적 목표를 지닌다.

(세부)사업은 향유·교육보다 장애인 예술창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부)사업 5개—①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공모), ②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기획공모), ③ 장애인 창작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④ 국제 장애예술주간, 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비공모)—가운데 향유·교육사업은 공모형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가운데 향유·교육 프로그램 정도다. 2020년 향유·교육 프로그램 예산(1,100백만원)은 전체의 19.7%다.

2020년 예산은 8,621백만원으로 전년(7,421백만원) 대비 16.1% 증가했다. 예산증액은 바람직하다. 2020년 예산구조를 보면, 공모사업(기획공모 포함) 5,321백만원(61.7%), 직접 운영 및 용역 1,200백만원(13.9%), 비공모사업 2,100백만원(24.4%)이다. 상대적으로 예산 투입이 많은 세부사업은 창작지원 공모사업(창작활성화+유망예술 프로젝트) 1,300백만원(15.1%), 지역특성화 공모사업 1,200백만원(13.1%), 향유지원 공모사업 1,100백만원(12.7%),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900백만원(10.4%)이다. 2019년 예산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공모사업의 경우, 1개 단체 지원금액이 평균 6~7백만원인데 반하여 비공모사업은 평균 지원액이 5천만원~9억원 사이에 있다는 점이다. 한편, 비공모사업과 기획공모사업은 주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와 장예총 회원인 협·단체에서 담당한다.

〈표 3-12〉 함께누리지원사업(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공모사업 신청건수 및 선정률(2019)

(단위: 백만원, 건, %)

세부사업	예산	신청건수	신청금액	선정건수	선정률 (건수기준)	기관별 지원액
창작 활성화 지원	1,000	172	2,995	77	45%	5.8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300	20	1,964	3	15%	15.0
문화예술 향수 지원	900	131	4,197	35	27%	6.9
동호회 활동 지원	200	35	324	24	69%	5.7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600	102	3,419	27	26%	5.9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1,200			6		
계*	4,200	460	12,899	172	37%	9.1

* 운영비 571백만원을 제외하여 총액(4,771백만원) 아니라 4,200백만원임

〈표 3-13〉 함께누리지원사업(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비공모사업 수행단체 및 예산(2019)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수행단체	금액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장애인문화예술축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900
	스페셜 K-경연대회		200
	장애인 문학상, 미술대전		100
	장애인합창대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150
	잡지발간	한국장애예술인협회	150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한국장애인문화협회	50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50
	장애인 국제무용제	빛소리친구들	300
	소계*		1,900

* 장애인 공연공간 확충방안 연구 200백만원을 포함하지 않았음

〈표 3-14〉 함께누리지원사업(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기획 공모사업 추진기관 및 예산(2019)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금액	추진현황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공모, 추천을 통해 선정된 장애인 미술가들의 작품 전시 및 판매, 국내 장애인 미술가 소개 및 초대전	300	- 수행단체 공모: '19.5.8~5.31 - 선정단체: 빛소리친구들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	한·중·일 장애인 미술가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를 통한 국가별 작품 소개 및 실험적 협업 전시	150	- 수행단체 공모: '19.5.8~5.31 - 선정단체: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시각장애 문화예술 정보지 발행	시각장애인 대상의 점자 문화예술 정보 발간물 및 홍보물 발행	100	- 7월중 공모 예정 * '19년 신규 사업
계		550	

② 함께누리지원사업: 장애인공연예술단 지원

「2020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사업목적은 대표적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예술향유 기회 제공이다.

장애인 예술 창작지원에서 장르를 공연예술단체에 한정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가 개인보다는 단체를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① 첫째, 장애 예술인에서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가 많다. 「2018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연예술(서양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비중이 53.7%다. ② 둘째, 단체 지원이 개인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형평성 논란을 벗어나기 쉽고, 행정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다. ③ 셋째, 관객을 모으는 데도 공연예술이 다른 분야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세 가지 공연예술단체(전통예술, 대중예술, 클래식) 지원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 「2018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의 주된 활동분야는 서양음악(38.3%), 국악(5.3%), 무용(4.2%), 대중음악(3.3%), 연극(2.6%)이다. 따라서 향후 무용과 연극단체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공연예술단 지원사업은 공모가 아닌 지정사업으로 진행되어 장르 다원화가 쉽지 않다.

〈표 3-15〉 함께누리지원사업(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비공모사업 수행단체 및 예산(2019)

(단위: 백만원)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전통예술공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500
	대중예술공연	한국장애인공연예술단	450
	클래식공연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사회적협동조합	400
	소계		1,350

2020년 예산은 1,350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전통예술 공연단체 500백만원, 대중예술 공연단체 450백만원, 클래식 공연단체 400백만원이다. 민간 공연단체 지원, 더욱이 비공모사업이므로 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파악해야 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기금: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

사업은 두 가지—①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② 청년 장애 예술가 양성—로 나눠지는데 사업목적은 각각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장애 예술인 발굴·육성 및 안정적 예술활동과 사회참여 지원”, “창작워크숍 및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재능있는 청년 예술가 육성”이다. 2018년부터 장문원에서 직접 청년 장애 예술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회적으로 청년(문제), 문화예술계에서도 청년 예술인이 주요한 이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애 예술인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전문인력 양성의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는 (장애인 학생 등 비예술 장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가깝고, 나머지 다섯 가지 사업은 (장애 예술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자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교육에 가깝다면, 후자는 장애 예술인 창작을 위한 전문 교육에 가깝다. 예산은 향유관련 교육이 800백만원으로 전체(1,531백만원)의 52.3%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예산(1,350백만원)은 88.2%, 청년예술가 양성(181백만원)이 11.8%다.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는 국정과제로서 예산이 많은데, 사업의 성격과 성과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걸맞은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사업진행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한편, 이 같은 사업을 기획할 때, 수요조사와 장애인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연구, 곧 정책환경 분석이 수행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관련 사업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학교교육 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와 욕구, 나아가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분석이 수행되면 효율적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청년 장애 예술가 양성은 장문원에서 직접 진행하지만, 인력양성사업은 지정공모 형태로 진행되고 예산은 3년 동안 동일하다. 정책환경 분석과 성과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모가 아닌 지정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장예총 회원 협·단체이며, 함께누리사업의 비공모사업 운영단체와 동일한 특성이 있다. 비공모사업 비중이 88.2%에 달하는데, 청년 장애예술가 양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공모사업이기 때문이다.

〈표 3-16〉 국민체육진흥기금: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2018~2020)

사업 및 세부사업(내용)		지정단체	예산(백만원)		
			'18	'19	'20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800	800	800
	장애인 무용 전문인력양성	빛소리 친구들	250	250	250
	장애인 문화예술 아카데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100	100	100
	시각장애인 연주자 양성	한국장애인공연예술단	200	200	200
청년 장애예술가 양성	창작워크숍, 교류워크숍	장문원 직접운영	-	181	181

④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소외계층 및 지역 대상 문화예술 활성화지원(장애인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여섯 가지—① 시·청각 장애인 특성화 축제, ② 소외계층활성화: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③ 장애인 예술단체 해외공연 개최지원, ④ 창작공연예술특성화 지원, ⑤ 장애인 문화예술정보시스템 운영, ⑥ 발달장애인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로 나눠진다. 사업목적은 (세부)사업명에서 대체로 드러난다.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이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공통된 특성을 찾기 어렵다. 함께누리지원사업 내 사업과 관련성 있는 사업도 많다. 특성화축제는 축제이기에 장애인 문화예술축제(함께누리 비공모)와, 창작공연예술특성화 지원은 비장애인-장애인협업·국내외 전문가 협력이란 점에서 장애인 창작아카데미(함께누리 기획공모)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해외공연 개최지원은 세계화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함께누리 기획공모)-국제장애인예술주간(함께누리 장문원 진행)과 연관된다.

이처럼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은 독립된 사업범주라기보다 나머지 사업의 묶음이란 성격이 강하다. 사업군(群)을 조정하거나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군을 조정하려면 장문원 사업 간 비교는 물론,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전체의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2020년 예산은 2,473백만원으로 전년(2,081백만원) 대비 18.8% 증가했는데, 이것은 연구개발 예산(153백만원)의 신규 배정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의 증액(200백만원)에 따른 것이다. 공모사업 800백만원(32.3%), 비공모사업 800백만원(32.3%), 그리고 장문원 직접 및 용역 873백만원(35.3%)으로 고루 분포돼 있다.

2) 사업 이해관계자의 역량 및 협력

사업 주관기관인 장문원은 2015년 3월에 설립되어, 같은 해 11월에 개관한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이음센터)를 운영하고, 2017년부터 함께누리지원사업을 주관한다. 장문원은 국고사업인 함께누리지원사업 1차교부자로서 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도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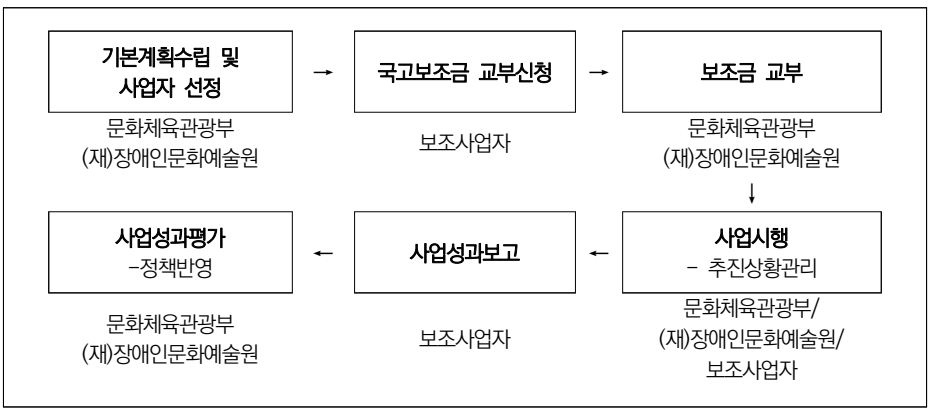

주관사업자인 장문원은 2팀(경영관리팀, 사업운영팀), 정원 20명(이사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2020년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20명이다(정원 내 현원은 12명, 계약직 8명). 설립된 지 5년이 넘었고, 지원사업이 4년차이기 때문에, 구성원은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사업에 익숙하다. 다른 기관과 달리 사업부서가 적은데, 이것은 장문원이 사업진행에 깊이 관여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장문원 설립 이전부터 활동해온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지정공모 형식으로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사업주관기관인 장문원(문체부에서 국고보조금 받음)이 보조사업자, 곧 사업진행기관(장문원에서 재교부)을 선정하는 방식은 공모(일반, 기획), 비공모(지정)로 나눠진다. 함께누리사업지원사업의 실제사업 예산(9,400백만원)[57] 가운데 공모사업 4,750백만원(50.5%), 비공모(지정)사업 3,450백만원(36.7%), 장문원 직접 및 용역 1,200백만원(12.8%)이다.

57) 위의 표에서 함께누리지원사업 예산은 9,971백만원이다. 일반공모사업 4,771백만원에는 운영비(571백만원)이 포함돼 있다. 운영비를 제외하면 사업예산은 9,400백만원이다.

[그림 3-2] 함께누리지원사업 예산구분: 공모, 지정, 자체사업(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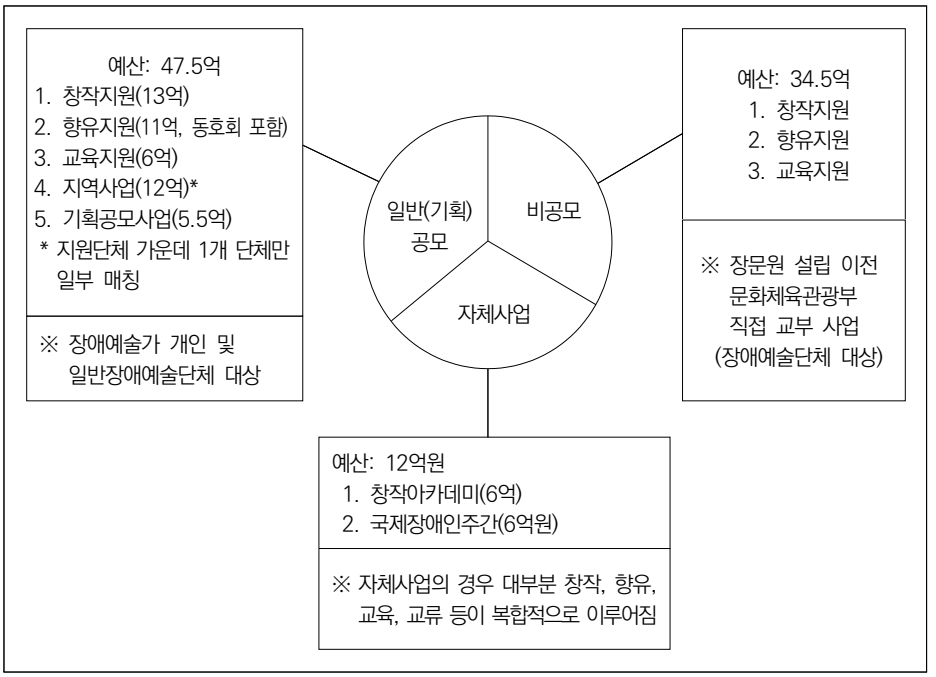

반면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 4,004백만원은 전액사업비인데, 공모사업 800백만원(20.0%), 비공모(지정)사업 2,150백만원(53.7%), 장문원 직접 및 용역 1,054백만원(26.3%)이다. 사업비 예산총액(함께누리지원사업+국민체육진흥기금) 13,404백만원은 공모사업 5,550백만원(41.4%), 비공모(지정)사업 5,600백만원(41.8%), 장문원 직접 및 용역 2,254백만원(16.8%)이다.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는 거의 장예총 회원이다. 장문원 설립 이전부터 문체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받아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경험에 따른 전문성은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사단법인 형태인데, 장애인 체육분야처럼 제도화를 통한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비공모사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지정사업의 재구조화를 꾀할 수도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장애인체육 예산은 대체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집행되는데, 이 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규정된 법정기관이다. 장문원은 재단법인이며 진행기관이 사단법인인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체계와 다르다. 장애인체육과 비교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기관인 장문원과 보조사업기관(진행기관)이 제

도적 측면에서 안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다.

장문원이 주관하는 모든 사업의 진행기관·참여자가 장애인단체·장애인은 아니다. 기획공모와 지정(비공모)사업 진행기관은 장애인 예술단체이지만, 일반공모와 장문원 자체사업에서는 장애인(단체)뿐 아니라 비장애인 단체도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표〉에서 보듯이 향유와 교육프로그램은 비장애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비장애인 단체 비율이 2017년에는 60%로 높았으나, 2018년에는 29%로 줄었다(방귀희, 2019: 47). 2019년 기준으로는 비장애인 단체 비율이 15%로 더욱 줄었다.

장애인 문화예술에서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이 장려된다는 점에서 보면, 비장애인단체를 진행기관으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협업 프로그램 등은 함께누리지원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표 3-17〉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일반공모) 예산 및 지원대상(2020)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유형	예산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비고
				단체	개인	
창작	창작 활성화 지원	1,000	- 장애인 예술가(단체)의 예술창작 및 발표 지원 - 단체 최대 4천만 원/개인 최대 1천만 원	장애	장애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300	- 장애인 예술 유망 프로젝트 집중 지원 - 장애인 예술 기획 창작 프로젝트 발굴 지원 - 최대 10천만 원	장애	-	'18년 연속 지원
향유	문화예술 향수 지원	900	-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지원 -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지원 - 최대 4천만 원	장애 비장애	-	
	커뮤니티 예술 활동지원	200	- 커뮤니티 예술 활동 프로그램 지원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및 커뮤니티 예술 활동 지원 - 최대 1천만 원	장애	-	
교육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600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연극제, 전문강사 양성 등 프로그램 지원 - 장애 분야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 - 발달장애인 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최대 4천만 원/연구개발 최대 3천만 원	장애 비장애	-	
지역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1,200	-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지자체 연계 협력		'18~'19 연속 지원
(민간경상보조) 계		4,200				

진행기관 선정 과정(일반공모 및 기획공모) 자체는 투명하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장애인 예술 전문가의 참여가 낮은 편이다. 2017년에는 14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2명(장애 예술인 1명, 장애 예술 경험자 1명), 2018년에는 26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3명(장애 예술인 1명, 장애 예술 경험자 2명)이다(방귀희, 2019: 47). 이것은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예술계 범위가 협소하여 장애 예술인 가운데 심사위원을 뽑기 어렵다는 현실의 반영, 곧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도다. 다른 하나는 장애인 예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문화예술 전문가 가운데 장애인 예술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지원)과 장애인예술계의 양적 확대가 필요한 지점이다. 진행기관 및 참여자 선정에서 장르는 구분하지만 장애유형을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심사(의) 체계가 장르별로 이뤄지는데 장애유형별 선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애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최종 수혜자, 곧 참여자는 장애(예술)인, 비장애(예술)인 모두인데 지원 체계에 따라 세 가지 집단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선정된 진행기관이 수행하는 (세부)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다. 창작 지원과 축제사업에는 장애 예술인이 창작가(발표자)로,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관객(독자)으로 참여한다. 주관기관(장문원)-진행기관(장애인 문화예술단체)-참여자(창작자: 장애 예술인, 관객: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조다.

두 번째는 비장애인 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예술)인이다. 일반 공모사업의 향수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의 진행기관은 비장애 단체일 수 있다. 주관기관(장문원)-진행기관(비장애인 단체)-참여자(장애[예술]인: 향수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구조다.

세 번째는 참여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다.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서 장애 예술인이 장문원에서 교부를 받는 형태다. 일반 공모사업의 창작지원에는 장애인 단체뿐 아니라 장애 예술인(개인)도 주관기관에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 창작자로서의 장애 예술인의 활동에 관객은 장애인일 수도 있고, 비장애인일 수도 있다. 또한 관객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창작 프로그램 지원이 항상 발표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관기관(장문원)-진행기관(창작자: 장애예술인)-참여자(특정되지 않음)의 구조다.

최종 수혜자, 참여자는 두 집단으로 볼 수 있다. ① 첫 번째는 관객으로서 참여하는 경우, ② 두 번째는 피교육자로 참여하는 경우다. 관객으로서 참여자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다. 2018년 기준으로 ① 참여자(관객)은 152,596명인데, 이들의 장애와 비장애 여부는 정확히 할 수 없다. 하지만 관객에 ② 피교육자·창작자(29,327명)를 합(合)하면 159,819명이다. 159,819명 기준으로 장애인은 29,327명(18.4%)이고, 비장애인 130,429명(81.6%)이다(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165쪽). 비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은 행사(발표회,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률(58.1%)[58]과 비교하면 높은 비율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업에 장애인 참여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비장애인의 참여율 역시 높지 않다. 장문원의 비장애인 대상조사(2020)에 따르면, 비장애인 가운데 장애 예술인 창작(발표) 작품 관람률은 14.0%, 그리고 장애 소재(주제)의 창작(발표) 작품 관람률은 15.3% 정도다.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보면, 가족이 있는 집단 관람률은 22.3%와 24.3%, 가족이 없는 집단 관람률은 11.8%와 13.0%다. 지원사업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인데, 장애인 예술의 관객으로서의 비장애인은 총수가 적고, 장애인 가족 중심이다. 사업에 관객으로 참여하는 장애인·비장애인 수 증가를 위해서는, 사업 규모의 확대뿐 아니라 홍보와 마케팅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관기관(장문원)과 진행기관(주로 장애인 단체)의 전문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장애(예술)인이 피교육자로서 참여하는 사업에서는 교육대상 집단(학교)과 교육대상자 선정방식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뒤에서 살펴볼 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피교육기관 선정 기준을 지니고 있다. 이점을 고려하면 참여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주관기관과 진행기관(단체, 개인)의 네트워크가 잘 구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정사업(비공모사업) 비중이 41.8%인데 지정사업 진행기관은 장문원 설립 이전부터 직접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스스로 경험적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주관기관-진행기관의 협력은 활발하지 않다. 일반 공모사업 진행기관(단체, 개인)과의 협력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58) 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서 비등록 및 등록 장애인의 관람률을 재구성한 것임

다. 장문원 사업 참여자의 인식 및 평가

다-1.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018년~2020년 장문원 공모사업 참여(의향)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장문원 사업 및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59] 실제조사는 ㈜글로벌리서치에서 2020년 8월에 온라인 웹조사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73명이었다.

〈표 3-18〉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구분	내용
조사 대상	2018~2020 장문원 공모사업 참여(의향)자 및 단체
표본 수	73명
표본 추출	편의표집
조사 방법	온라인 웹조사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Editing - Coding - Punching - Clean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 SPSS 13.0 for Windows로 분석함
실사기간	8월 17일(월)~8월 31일(월)
조사기관	(주)글로벌리서치
조사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주요결과

① 설문 응답자 특성 ①

2018년~2020년 장문원 공모사업 참여(의향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는 73명이다. 응답자는 예술인 36명, 예술단체 관계자 37명이었다. 응답자 활동지역은 수도권이 43명(58.9%; 서울 31명 42.5%, 인천경기 12명 16.4%), 비수도권 30명(41.1%)였다.

장애여부는 장애인(단체)이 69명(94.5%), 비장애인(단체) 4명(5.5%)이며,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27명(37.0%), 발달장애 23명(31.5%), 기타 장애 19명(26.0%), 비장

59)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은 4장에서 기술한다.

애 4명(5.5%)였다. 참여 예술장르는 미술 23명(31.5%), 음악 17명(23.3%), 문학 12명(16.4%), 공연 9명(12.3%), 기타 7명(9.6%), 사진·영화 5명(6.8%)였다. 3년 동안 장문원 사업 참여건수는 1건 40명(54.8%), 2~3건 29건(39.7%), 4건 이상 4건(5.5%)였다.

2019년 지원심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설문조사에서는 장애인(단체) 비율[94.5%]이 상대적으로 높다(공모사업 지원에서는 장애 76.6%이고 비장애 23.3%였으며, 선정에서는 장애 84.8%이고 비장애 15.1%였음).

둘째, 설문조사와 공모사업 지원단체의 예술장르는 큰 차이가 없다(공모사업 지원에서는 미술 28.4%, 음악 22.2%, 공연 15.1%, 문학 7.1% 등이었음).

셋째, 설문조사에서는 비수도권 비율[41.4%]이 상대적으로 높다(공모사업 지원에서는 수도권 62.0%이고 비수도권 37.9%였으며, 선정에서는 수도권 66.0%이고 비수도권 34.0%였음). 이점을 감안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3-19〉 3년 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 예술인(단체)(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N=73, 단위: %)

		전체		장애여부		장애유형			
		사례수	%	장애인(단체)	비장애인(단체)	비장애	지체	발달	기타
전체		(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개인/단체 여부	참여 개인	(36)	49.3	50.7	25.0	25.0	63.0	26.1	63.2
	단체	(37)	50.7	49.3	75.0	75.0	37.0	73.9	36.8
지역	수도권	(43)	58.9	60.9	25.0	25.0	55.6	56.5	73.7
	서울	(31)	42.5	44.9	0.0	0.0	37.0	30.4	73.7
	인천·경기	(12)	16.4	15.9	25.0	25.0	18.5	26.1	0.0
	비수도권	(30)	41.1	39.1	75.0	75.0	44.4	43.5	26.3
지역규모	대도시	(43)	58.9	60.9	25.0	25.0	51.9	43.5	94.7
	중소도시	(30)	41.1	39.1	75.0	75.0	48.1	56.5	5.3
참여사업 예술 분야	문학	(12)	16.4	17.4	0.0	0.0	25.9	0.0	26.3
	미술	(23)	31.5	31.9	25.0	25.0	37.0	34.8	21.1
	음악	(17)	23.3	23.2	25.0	25.0	11.1	39.1	21.1
	공연	(9)	12.3	11.6	25.0	25.0	7.4	13.0	15.8
	사진/영화	(5)	6.8	7.2	0.0	0.0	11.1	0.0	10.5
	기타	(7)	9.6	8.7	25.0	25.0	7.4	13.0	5.3

		전체		장애여부		장애유형			
		사례수	%	장애인(단체)	비장애인(단체)	비장애	지체	발달	기타
장애여부	장애인(단체)	(69)	94.5	100.0	0.0	0.0	100.0	100.0	100.0
	비장애인(단체)	(4)	5.5	0.0	100.0	100.0	0.0	0.0	0.0
장애유형	비장애	(4)	5.5	0.0	100.0	100.0	0.0	0.0	0.0
	지체	(27)	37.0	39.1	0.0	0.0	100.0	0.0	0.0
	발달	(23)	31.5	33.3	0.0	0.0	0.0	100.0	0.0
	기타	(19)	26.0	27.5	0.0	0.0	0.0	0.0	100.0
2020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빈도	없음	(12)	16.4	17.4	0.0	0.0	18.5	13.0	21.1
	1건	(17)	23.3	23.2	25.0	25.0	29.6	8.7	31.6
	2건	(18)	24.7	24.6	25.0	25.0	25.9	17.4	31.6
	3건 이상	(26)	35.6	34.8	50.0	50.0	25.9	60.9	15.8
3년간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지원 빈도	1건	(40)	54.8	52.2	100.0	100.0	55.6	52.2	47.4
	2~3건	(29)	39.7	42.0	0.0	0.0	44.4	39.1	42.1
	4건 이상	(4)	5.5	5.8	0.0	0.0	0.0	8.7	10.5

② 설문 응답자 특성 ②: 장애 예술인와 장애인 예술단체 비교

예술인 참여(의향)자(35명)는 남성 74.3%, 40대 37.1%, 장애인 97.2%,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48.6%, 발달장애 17.2%, 수급권자 비율은 22.9%, 활동(거주) 지역은 수도권 62.8%, 3년 간 장문원 사업 1건 참여가 54.3%였다.

한편, 예술단체 가운데 참여(의향)단체 구성원의 성별은 남성이 53.1%, 주된 연령층은 20대(50.0%)와 30대(38.2%)였으며, 장애단체가 91.9%였다. 주된 장애유형은 발달장애 46.0%, 지체장애 27.0%, 단체 평균 수급권자 비율 27.1% 정도이며, 활동(거주)지역은 수도권 54.0%, 3년 간 장문원 사업 1건 참여가 45.9%였다.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예술인은 남성이 많은데 반하여, 장애인 예술단체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 둘째 장애 예술인은 40대가 많은데 반하여, 장애인 예술단체 구성원은 30대 이하가 많다. 셋째, 장애 예술인은 지체 장애가 많지만 장애인 예술단체 구성은 발달장애인이 많다. 넷째, 장애 예술인이 장애인 예술단체보다 수도권에서 활동(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③ 예술활동 및 차별인식

응답자는 지난 해(201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평균적으로 7.5건 진행했다. 아예 진행하지 않은 곳 5.5%, 1건 진행한 곳 23.3%, 2건 진행한 곳 13.7%, 3~5건 진행한 곳 37.0%, 6건 이상 진행한 곳은 20.5%이다. 올해(202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건수는 평균 4.6건이었다(계획 포함). 아예 진행하지 않는 곳 16.4%, 1건 진행한 곳 23.3%, 2건 24.7%, 그리고 6건 이상 진행한 곳도 13.7% 다. 2019년과 2020년 비교해보면 예술활동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은 8개월 평균 4.6건(단 계획 포함), 12개월 평균 7.5건(2019년)을 비교해보면 그렇다. 2020년에 재정지원 없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는 32.8%인데, 결국 67.2%는 외부 지원 없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모사업에서의 장애 예술인(단체)이 차별받는다는 인식은 54.8%였으며, 5점 척도 평균 3.48점이다. 차별받는다는 인식은 단체(48.6%)보다 예술인(61.1%)에서 많았다.

[그림 3-3] 예술지원 공모사업 내 장애 예술인(단체) 차별 인식(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N=73, 단위: %,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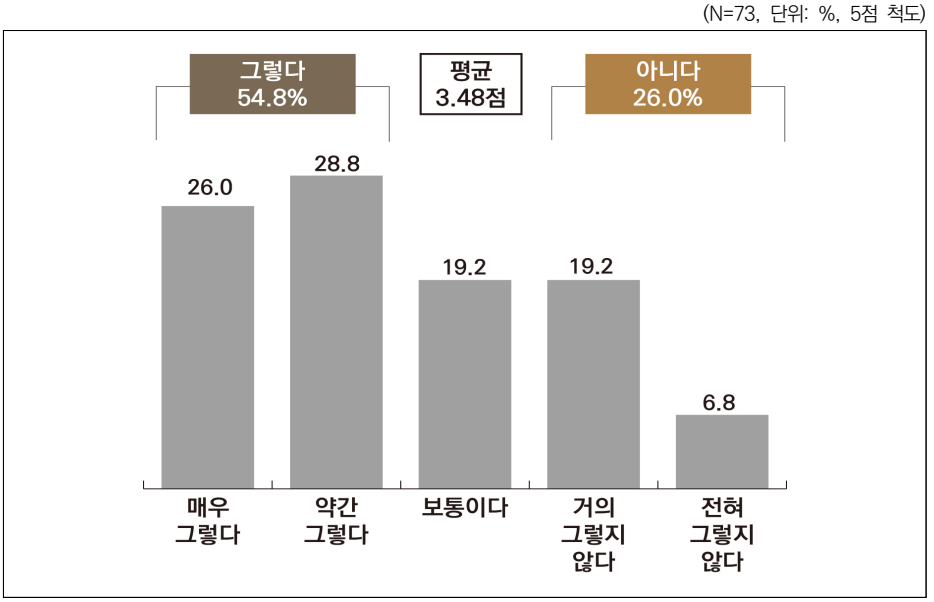

④ 장문원 사업평가 및 만족도

2018년~2020년 장문원 공모사업 참여(의향)자의 장문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장문원 지원사업 만족도(긍정응답률과 평균)는 '장문원과 담당자는 장애인 문화예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한다'(79.5%, 4.21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에 '지원금액이 충분하고 적절하다'(45.2%, 3.42점)의 만족도는 낮았다.

상대적으로 장문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비수도권과 중소도시의 장애인(단체)과 발달 장애인(단체)에서 높았고, 공연단체에서 낮은 특성을 보였다. 장애 예술인과 장애인 예술단체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또한 장문원 사업에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만족도가 더 높지는 않았다.

〈표 3-20〉 장문원 사업 참여 만족도(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N=73, 단위: 긍정응답의 %)

		사례수	심사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	지원 금액이 충분하고 적절하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모니티링 및 평가가 적절하다	장문원(담당자)은 장애인 문화예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계획서부터 실적 보고서 제출까지 과정이 체계적이다	장문원은 모든 장애 예술인(단체)을 공평하게 지원하려고 노력한다
전체		(73)	76.7	45.2	65.8	79.5	72.6	71.2
개인/단체 여부	참여 개인	(36)	75.0	41.7	69.4	77.8	72.2	72.2
	단체	(37)	78.4	48.6	62.2	81.1	73.0	70.3
지역	수도권	(43)	67.4	37.2	55.8	69.8	58.1	58.1
	서울	(31)	64.5	41.9	48.4	61.3	51.6	48.4
	인천·경기	(12)	75.0	25.0	75.0	91.7	75.0	83.3
	비수도권	(30)	90.0	56.7	80.0	93.3	93.3	90.0
지역규모	대도시	(43)	72.1	44.2	60.5	72.1	65.1	58.1
	중소도시	(30)	83.3	46.7	73.3	90.0	83.3	90.0
참여사업 예술 분야	문학	(12)	91.7	41.7	66.7	83.3	75.0	83.3
	미술	(23)	82.6	39.1	65.2	82.6	73.9	78.3
	음악	(17)	76.5	70.6	76.5	76.5	76.5	76.5
	공연	(9)	55.6	44.4	33.3	77.8	44.4	44.4
	사진/영화	(5)	60.0	0.0	80.0	60.0	80.0	40.0
	기타	(7)	71.4	42.9	71.4	85.7	85.7	71.4

		사례수	심사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	지원 금액이 충분하고 적절하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모니티링 및 평가가 적절하다	장문원(담당자)은 장애인 문화예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계획서부터 실적 보고서 제출까지 과정이 체계적이다	장문원은 모든 장애 예술인(단체)을 공평하게 지원하려고 노력한다
장애여부	장애인(단체)	(69)	76.8	43.5	65.2	78.3	71.0	69.6
	비장애인(단체)	(4)	75.0	75.0	75.0	100.0	100.0	100.0
장애유형	비장애	(4)	75.0	75.0	75.0	100.0	100.0	100.0
	지체	(27)	74.1	33.3	66.7	77.8	70.4	70.4
	발달	(23)	78.3	47.8	65.2	82.6	78.3	69.6
	기타	(19)	78.9	52.6	63.2	73.7	63.2	68.4
2020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빈도	없음	(12)	41.7	41.7	41.7	41.7	50.0	25.0
	1건	(17)	88.2	52.9	82.4	88.2	82.4	76.5
	2건	(18)	83.3	50.0	72.2	83.3	72.2	88.9
	3건 이상	(26)	80.8	38.5	61.5	88.5	76.9	76.9
3년간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지원 빈도	1건 이하	(40)	75.0	47.5	60.0	80.0	72.5	72.5
	2-3건	(29)	79.3	48.3	75.9	79.3	75.9	69.0
	4건 이상	(4)	75.0	0.0	50.0	75.0	50.0	75.0

[그림 3-4] 장문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N=73, 단위: %,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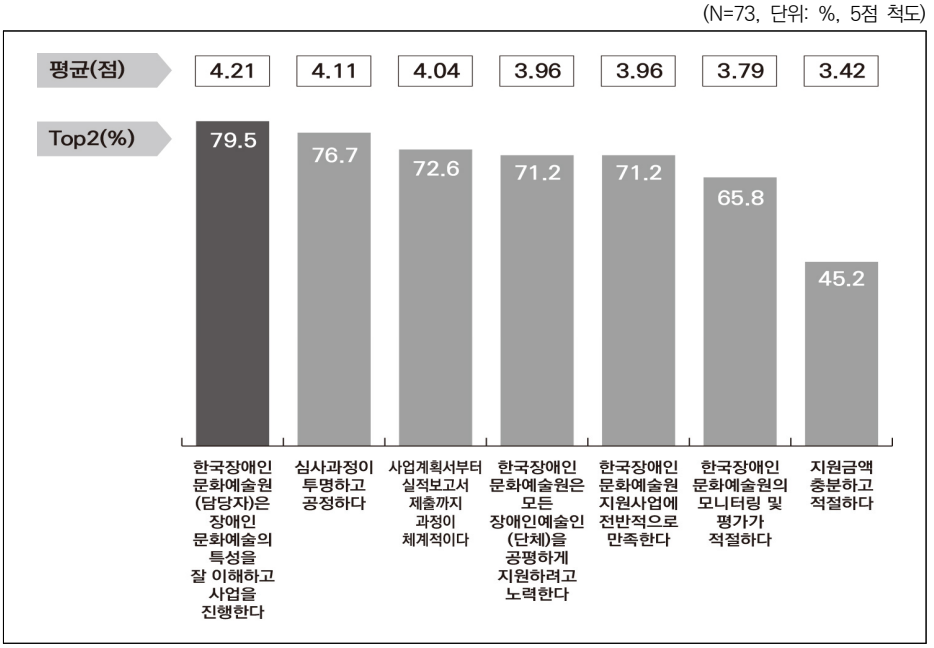

이들은 지원 금액이 같다면 '장문원 사업'에 참여하려 한다(69.9%).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참여의향은 20.5%, 민간의 지원 사업 참여의향은 9.6%였다.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장문원 사업 참여를 가장 원했으며, 상대적으로 장애 예술인보다 장애인 예술단체에서 장문원 사업 참여를 원했다. 한편, 민간지원은 상대적으로 서울의 장애 예술인(단체)과 공연예술인에서 욕구가 많았다.

[그림 3-5] 장애인 예술사업 지원기관 선호도(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N=73, 단위: %,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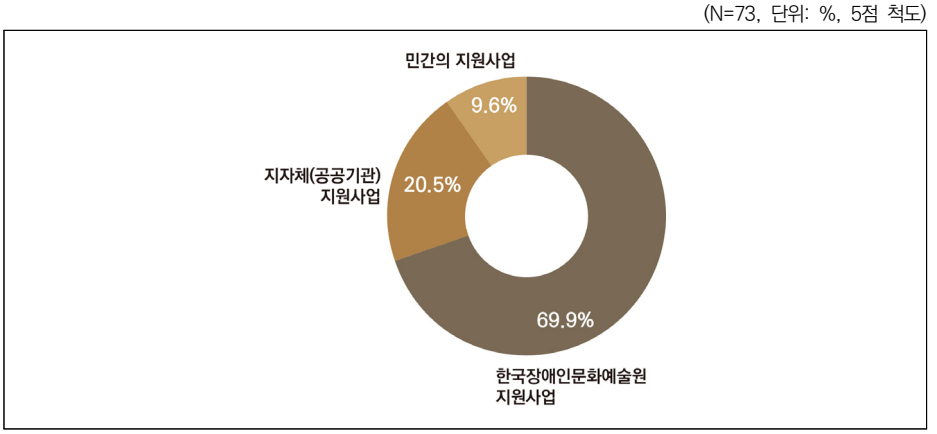

⑤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도

장문원 사업을 포함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긍정 응답, 평균)는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69.9%, 3.77점),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61.6%, 3.71점)이 60%대였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43.8%, 3.44점),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전반'(42.5%, 3.29점)은 40%대였다. 한편,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법률 및 제도'(34.2%, 3.15점)는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도는 응답자 속성에 따라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장애 예술인에 비하여 장애인 예술단체의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창작지원에 대해서는 장애 예술인의 만족도가 높은 특성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거주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장르별로 문학은 전반적(전체적) 만족도는 높은 반면, 향유와 교육에서 만족도가 낮았고, 미술은 교육에서 그리고 공연은 창작지원에서 만족도가 낮은 특성을 보였다. 장문원 사업에 많이 참여한 경우, 향유와 교육 지원을 제외하고는 만족도가 낮은 특성을 보였다.

[그림 3-6]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도(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N=73, 단위: %,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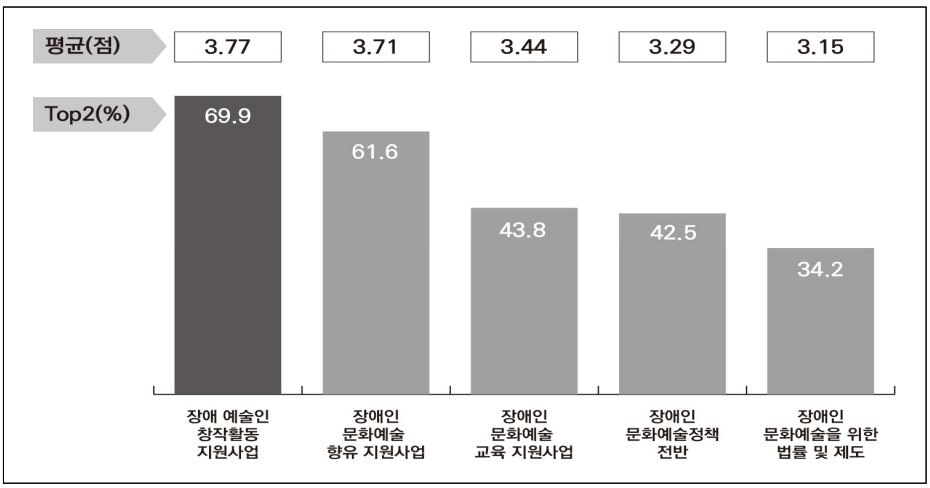

〈표 3-2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만족도(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N=73, 단위: 긍정응답의 %)

		사례수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장애인 문화 예술을 위한 법률 및 제도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전반
전체		(73)	69.9	61.6	43.8	34.2	42.5
개인/단체 여부	참여 개인	(36)	75.0	50.0	36.1	22.2	38.9
	단체	(37)	64.9	73.0	51.4	45.9	45.9
지역	수도권	(43)	62.8	51.2	41.9	32.6	37.2
	서울	(31)	58.1	45.2	35.5	25.8	32.3
	인천·경기	(12)	75.0	66.7	58.3	50.0	50.0
	비수도권	(30)	80.0	76.7	46.7	36.7	50.0
지역규모	대도시	(43)	69.8	53.5	39.5	32.6	39.5
	중소도시	(30)	70.0	73.3	50.0	36.7	46.7
참여사업 예술 분야	문학	(12)	66.7	50.0	33.3	41.7	66.7
	미술	(23)	69.6	56.5	39.1	39.1	47.8
	음악	(17)	70.6	64.7	47.1	23.5	23.5
	공연	(9)	55.6	66.7	44.4	33.3	44.4
	사진/영화	(5)	80.0	60.0	40.0	0.0	0.0
	기타	(7)	85.7	85.7	71.4	57.1	57.1
장애여부	장애인(단체)	(69)	69.6	60.9	42.0	33.3	42.0
	비장애인(단체)	(4)	75.0	75.0	75.0	50.0	50.0

		사례수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법률 및 제도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전반
장애유형	비장애	(4)	75.0	75.0	75.0	50.0	50.0
	지체	(27)	74.1	59.3	37.0	33.3	51.9
	발달	(23)	69.6	69.6	47.8	34.8	34.8
	기타	(19)	63.2	52.6	42.1	31.6	36.8
2020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빈도	없음	(12)	50.0	41.7	33.3	25.0	41.7
	1건	(17)	82.4	52.9	35.3	29.4	47.1
	2건	(18)	66.7	66.7	44.4	33.3	38.9
	3건 이상	(26)	73.1	73.1	53.8	42.3	42.3
3년간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지원 빈도	1건	(40)	65.0	57.5	45.0	40.0	50.0
	2~3건	(29)	79.3	65.5	41.4	27.6	34.5
	4건 이상	(4)	50.0	75.0	50.0	25.0	25.0

다-2. 면담조사 결과

2019년~2020년 장문원 사업 참여자는 장문원 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장문원 사업 참여 목적

장문원 사업 참여 목적은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 단체 간 차이가 크지 않다. 비공모사업 참여 단체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단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단체의 설립목적이라고 한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체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기에 장문원 사업에 참여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장문원 설립 이전부터 있던 (자신들이 만든) 사업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장문원의 직접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비공모사업일지라도 평가를 분명하게 진행하여 탄력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여긴다.

"공모이든 비공모이든 잘못하면 대안을 마련해야 해요. 한 번 했다고 계속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 예술단체 4)

비공모사업 참여단체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데 장문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참여한다. 장애인에게 문화향유와 교육 기회 제공이 단체의 주된 기능인데 재원이 부족해 장문원 사업에 공모한다는 입장이다. 비공모사업 참여 단체와 마찬가지로 장문원 사업 참여가 단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다. 결국 두 집단 모두 장문원 사업 참여는 장애인 문화예술 기회 제공과 단체의 전문성 제고라는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장문원 사업에 참여한다.

"두 가지 목적에서 참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장애인 대상자에게 교육과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서 참여한 거죠. 덧붙여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에게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해줄 예술가를 양성하고 싶었던 거죠." (장애인 예술단체 1)

"우리(장애 예술인)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예술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같은 장애인들로서 발달장애인의 문제점이 뉴스가 되는 것을 보고 장문원 지원사업에 참여했어요.……발달 장애인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적극적 사회진출(전시, 행사 등)을 도모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발달장애인의 예술작품에 대한 긍정적 소통의 기회를 주고, 그럼으로써 직업 예술인으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했어요. 우리 역시 그들에게 긍정적 모델이 되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장애인 예술단체 3)

"장문원 사업에 참여한 것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창작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고, 계속해서 이 같은 작업을 하려는 욕구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같은 예술활동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작업이기도 하지요." (장애인 예술단체 2)

차이점은 비공모사업 참여단체는 공모사업 참여단체에 비하여 다른 재원의 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 전문 예술단체도 있지만, 협회의 성격이 강한 단체도 있기 때문이다. 공모사업 참여단체는 지자체나 예술위 사업에 참여하여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을 운영하려 한다. 하지만 장문원 이외 재원 확보가 쉬운 편은 아니다.

“우리 같은 전문단체는 전문단체로서 그냥 밀어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장애인 예술단체 5)

“장문원, 예술위원회,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문원이 생기면서부터 오히려 예술위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장애인 예술단체 7)

2) 장문원 사업와 목표 달성

비공모사업 단체, 공모사업 참여 단체 모두 자신들이 진행한 사업이 장애인 예술향유 기회 제공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공모사업 참여단체는 사업이 본래 자신들의 사업이기에, 그리고 전문성이 있기에 장애인 시설이나 취약지역 비장애인 시설에서 연락이 와서 예술활동을 하면 반응이 좋다고 말한다. 한편, 단체의 전문성 제고에도 장문원 사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여긴다.

“우리가 가서 공연을 하면 반응이 아주 좋아요. 다른 공연이나 교육과 비교해서 (차원이) 다른 거죠.” (장애인 예술단체 11)

“우리는 홍보를 하기보다 이미 알려져 있어 많이 요청이 와요. 그래서 최근 하지 않았던 곳, 그리고 무대 사이즈가 나오는 곳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하려 해요. 대부분 호응이 좋아요. 우리의 수준이 높기 때문일 거예요. 장문원 사업으로 우리가 재교육을 하잖아요. 이거 역시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 (장애인 예술단체 5)

공모사업 참여단체는 장애인 관객과 소통에 성공했지만, 단체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홍보마케팅이 활발하지 못했다고 인식한다. 비공모사업에 비하여 예산이 적고, 기획인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기회 제공은 거의 달성됐다고 봐요. 장애인 기관에서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가 있지만 계획한 횟수와 프로그램을 성료했고, 장애인 기관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요. 또한 장애 예술인 양성에 관해서는 강사들이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사업의 필요성을 깨달아 전문적인 활동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봐요. 하지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어요.” (장애인 예술단체 1)

“사업참여 목적의 실현정도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1:1 멘토링 수업은 발달장애인들의 높은 집중도와 적극적 태도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아요.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 중 나름대로 다양한 홍보(방송, 언론, 관련 기관, 각 대학 관련 학과 및 교수님들) 및 메일, 전화, 펙스 등을 통해 전시 및 행사 등을 알렸으나 관심이 없었고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조차 관심이 없는 점에 무척이나 실망스러웠어요.” (장애인 예술단체 3)

3) 장문원 사업진행의 어려운 점

공모사업 참여단체는 관련 행정서류 작성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별도의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 장애인에게 그리고 예술인에게 서류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에 비공모사업 참여단체는 계속해서 해온 작업이라서 그리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있어서 이에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런데 서류 작성이 쉽지 않아요. 생각을 글로 옮기는 과정이 자신 없어요.” (장애인 예술단체 2)

“저희는 예술을 하는 예술인으로서,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서류를 작성하는 데 회원들 스스로 진행하기보다 다른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서류 작성이 쉽지 않아요.” (장애인 예술단체 3)

한편, 비공모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장문원 사업 참여단체는 모니터링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다. 모니터링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적합한 피드백(컨설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가 지속해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예술단체 13)

“모니터링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전에 장애예술이라든지 장애유형이나 이것에 대한 교육을 좀 받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봐서 너무 좋다, 감동적이다.’ 이런 것 말고요. 장애의 정도나 유형에 상관없이 전문적인 예술성을 들어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경우도 전에도 들었었고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유형의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경

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장애예술과 유형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에 나오시면 훨씬 더 저희의 피드백도 좋고 평가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예술단체 10)

4) 장문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장문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먼저 장문원 설립 이전부터 현재의 비공모사업을 진행해온 단체는 장문원과 대규모 예술단체의 역할이 구분돼야 한다고 말한다. 장문원은 정해진 예산 배정기관으로 역할을 하거나 이전처럼 문체부에서 비공모사업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장문원의 직접사업은 공모사업에 한정하고, 장애예술 간접지원의 역할(정책연구, 자료수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일부에서는 정책개발이 장문원의 역할인지 아니면 예술단체의 역할인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

"장문원은 예술단체가 아니잖아요. 예산집행기관, 곧 정부와 장애인 예술단체를 연계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자꾸 사업을 하려 해요. 이 같은 사업은 우리 같은 예술단체가 해야 하잖아요. 비공모사업은 이전부터 우리가 해온 사업이잖아요. 장문원의 역할은 예산을 (문체부에서) 받아 오는 것이고, 예술단체가 실제 사업을 많이 해야, 실적과 노하우가 누적돼서 계속 발전하는 거죠." (장애인 예술단체 13)

"문체부가 장문원 설립 이후 오히려 소극적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천천히 준비해서 과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직접사업은 예전처럼(문체부에서 직접하고), 공모는 장문원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체부에서 직접해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데, 장문원 설립 이후 행정단계가 너무 많아요. 장문원은 공모사업, 제도화, 정책연구 및 개발, 자료집약 같은 걸 하고요." (장애인 예술단체 4)

"장문원이 생겨서 정책을 누가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애인 예술단체 5)

그렇게 되면 장애인 예술단체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데, 현재 장애인 예술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인식한다. 개별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각기 활동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단체의 아픔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장애인 예술단체 4)

“시스템이 부재한 거죠. 장애문화예술단체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그래야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모르겠지만 ‘우리 단체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거 같아요. 단체 간 협의가 안 되고 자기 욕심들만 차리려 해요. 뭔가를 해도 단체들은 자기 단체가 했다고 하고 생색내기하는 거죠.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방향을 잡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장애인 예술단체 11)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장문원에서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시간 문답시스템부터 홍보체계까지 간접지원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공모사업 참여단체는 장문원 지원사업의 지속 못지않게, 장문원이 정보제공과 홍보 등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바란다. 또한 장문원이 이 같은 간접지원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연습실이나 공간이나 극장도 마찬가지이고 일일히 전화해서 ‘대기실에서 공연날까지 휠체어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모아져 있는 사업단, 팀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공연을 하는데 가능한 극장이나 가능한 연습실, 전시관이 어딥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피드백이 오면 그걸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장애인 예술단체 14)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보다는 장애예술을 알리는 하나의 플랫폼이 (필요해요), 장문원의 팔로우가 200만 정도가 되면 여기에 우리 공연을 누가 올려주면 관심을 가지고 ‘좋아요!’가 한 번에 몇 만개씩 붙고 그러면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예술단체 12)

“현재 장문원이 운용하는 지원사업비에 비하여 그것을 운용하는 관리 지원 조직이 적절한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해요. 관리 조직뿐만 아니라 장애와 예술에 대한 이해도, 그것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은 갖춰져 있는지도 봐야 한다는 거죠.” (장애인 예술단체 6)

5) 장애인 예술 연구자 의견

장문원 예산이 많아지면서, 장애 예술인(단체)보다 비장애 예술인(단체)이 실질적으로 수혜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하나는 공모사

업 가운데 '향유지원'과 '교육지원'에는 비장애인 단체가 참여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실제 장애인 예술단체 내에서도 단원교육은 비장애인이 맡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장문원 예산이 많아지면서 비장애인 예술가가 장애예술을 신청하기도 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장애 예술인이 아니라 비장애 예술인이 인건비를 더 많이 받기도 해요." (장애인 예술 연구자 2)

"오히려 비장애인 감독이 오히려 많이 받기도 해요…축제를 보면, 인건비, 회당 교육비는 비장애인이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정작 공연 참여 장애인은 적은 금액밖에 못 받아요." (장애인 예술 연구자 3)

비공모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데, 오래된 관습처럼 사업이 진행되어 복지(정책)의 측면이 있고, 지정사업이 많아지면 장문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것이다.

"비공모사업은 방만한 측면이 있어요. 예산과 사업 모두가 말이에요. 복지적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장문원은 비공모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요." (장애인 예술 연구자 3)

"비공모사업은 복지(기관)적 성격을 지닌 오래된 관습 같은 측면이 있어요." (장애인 예술 연구자 1)

장애 예술계 전체로 보면, 사업참여의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다. 목표설정을 보면, 아직까지 대부분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을 통해서 자신감과 사회 성원임을 일깨운다'라고 되어 있다는 진단이다. 차이 없는 계획서는 장애인 예술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문원 지원사업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데서도 기인한다. 예를 들어, 창작지원이든 교육지원이든 장애인 대상 발표회를 갖고, 직원을 교육하는 등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계획서를 보면, 거의 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시작해요…계획서, 제안서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쓰는 거죠. 물론 다만 몇몇 공모단체에서 가능성의 예술을 보여주는 단체가 있기도 해요." (장애인 예술 연구자 2)

“공모사업, 그러니까 창작-향수-교육지원사업이 잘 구분되지 않아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물론 수행계획서를 보면 명목상 구분이 되요. 창작은 예술인 양성, 향유는 관객중심, 교육은 단원과 장애인 교육이란 특성이 있어요. 하지만 단체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장애인 예술 연구자 3)

이들이 보기에 장애 예술단체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기획·마케팅·홍보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데 있다. 단체는 장문원 지원금을 받은 만큼만 계획서에 적어낸 정도의 사업을 하지 사업을 개선 확대하려는 노력이 없다. 사업규모를 크게 하려면 다른 재원 확보를 위해 홍보와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아는 사람만을 위한 발표회인데, 이것은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현장에서 보면, 홍보와 마케팅을 너무 못해요. 그리고 후원도 안 받아요. 후원과 홍보에 대한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도 지인뿐이에요. 심지어 지원사업 가운데 외부관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장애인 예술 연구자 3)

현재의 장문원 중심의 사업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화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지역 간 차이가 매우 큰데 장문원만으로는 지역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추진하기에 무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재단이 역할을 하고 이것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덧붙여 복지재단 그리고 문화예술기관과 연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플랫폼을 찾아야 해요, 문화재단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현재도 지역 특성화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국에 가장 많은 문예회관이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장애인 예술 연구자 3)

“복지재단과 연계하는 게 좋을 듯해요, 그리고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해야죠, 현재는 예술가 증명도 잘 안되잖아요.” (장애인 예술 연구자 2)

2-2. 장애인복지관 예술강사 지원사업[60]

문체부와 교육진흥원에서는 지역 내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역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의미한다. (사회) 예술강사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35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예술강사가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이다.

가. 사업개요

교육진흥원에서는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목표를 "지역 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문화예술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설정한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교육은 6개 장르(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이지만, 성인반과 아동반으로 구분되어 실제 교육단위는 9개다.

〈표 3-22〉 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장르

대상	교육장르	
장애인	국악: 아동·성인 무용: 지적장애아동 미술: 아동·성인 연극: 아동·성인 영화: 성인 음악: 발달장애아동-양육자(모아(母兒)수업)	6개(9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교육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과 유기적 협력을 위해 2011년부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진행한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사업 참여 복지시설을 선정하고, 개별 복지시설에 지원금을 교부한다. 개별 복지시설은 사업계획서와

60) 주요 내용은 조현성 외(2018), 「문화예술교육 통계조사 체계 구축」(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따왔음을 밝힌다.

수업일지를 작성하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사업실적정산보고서를 교육진흥원에 제출한다.

교육진흥원은 강사를 선발하여 복지시설과 매칭하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지원금을 교부한다. 교육진흥원은 별도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제출한 사업실적정산서를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와 함께) 문체부에 제출한다. 한편, 개별 강사는 교육계획서와 수업일지를 작성한다.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사업은 문화기관과 복지기관(협회)이 협력하는, 거의 유일한 사례다. 한편, 교육기관(장소)은 초기에는 장애인복지관에 한정됐으나, 2015년부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까지 확대됐다.

[그림 3-7] 복지기관(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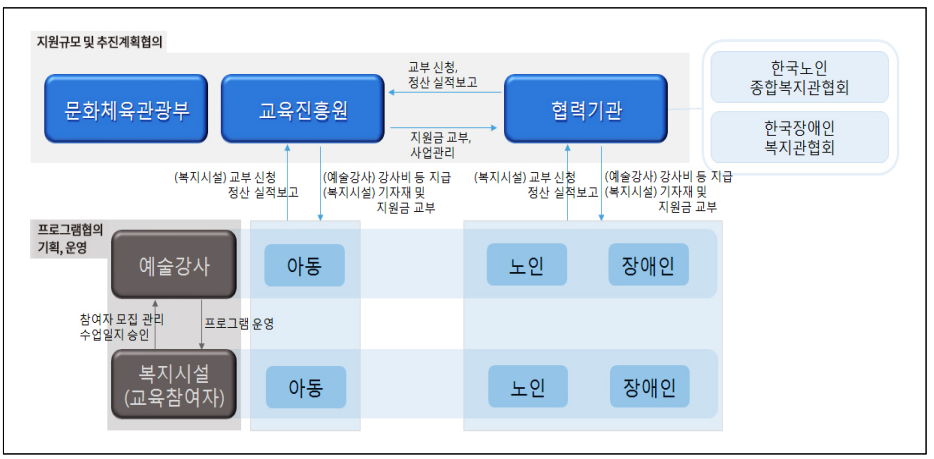

나. 사업분석[61)]

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관기관(진흥원)의 사업목표, 곧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점은 적합하다. 성과와 기능 향상에 제한되지 않고 과정, 참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장애인 참여자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려 한다. 치료·재활

61) 조현성 외(2017),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89~380쪽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따옴표를 하고, 쪽수를 밝혔다.

패러다임이 주류인 장애인 복지정책 환경에서 일회성·이벤트성, 관람 위주의 문화예술을 접했던 장애인 참여자들이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화예술,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경험이 된다."[62] 하지만 사업목표가 구체적이지는 않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삶의 질'과 문화예술교육이 관련성이 있지만 구체적 관계 설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장애문화예술인 및 장애문화예술단체가 양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체계적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와 활동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방향설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63]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 이외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장애인복지관 사업영역[64]—① 상담·사례관리, ② 기능강화 지원(운동지각향상, 의사소통 향상, 학습능력 향상, 사회적응력 향상: 음악치료, 미술치료 포함), ③ 장애인 가족지원, ④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 ⑤ 직업지원, ⑥ 지역사회 네트워크, ⑦ 평생교육지원(기초문해 및 학력보완 교육,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 시민참여교육, 기타), ⑧ 사회서비스지원(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미술·음악치료 포함, ⑨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서 문화예술교육은 '평생교육 지원'에 포함된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여전히 재활사업에 역점을 둔다. 다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와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된 복지시설 사례 등을 고려하면, 어떤 복지시설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일률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이 같은 욕구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새로이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업내용, 예술 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즐거움을 공유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고.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 역시 긍정적이다. 하지만 현장 의견처럼 6개 장르보다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가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임을 인지하여 문화예술교육 장르를 선정해야 한다.[65]

---

62) 조현성 외(2017),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92~293쪽

63) 조현성 외(2017),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93쪽

64)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장애인복지지설 사업안내」제Ⅲ권(보건복지부), 219~222쪽

65) 조현성 외(2017),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18~319쪽

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지속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1개 프로그램 876만원, 참여자 1인당 97만원(1시간 예산은 14,000원) 정도인데, 이것은 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 예산보다 많은 편이다. 문제는 예산 사용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략 살펴보면 강사비 비중이 약 30% 수준인데, 보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전문인력에 대한 예산지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 주관기관인 교육진흥원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협력기관)는 문화예술교육과 장애인 영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경험의 축적에 따라 전문성이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협력기관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입장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한 가지 사업이다. 현재 사업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경험에 따른 사업 이해정도가 누적되지 않는다. 둘째, 두 기관 간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않다. 교육진흥원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교부금을 지원하지만, 복지관협회가 제출한 사업정산실적 보고서를 기반으로 별도의 분석을 하지 않는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작성하는 정산실적보고서는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했음에 초점을 맞춰 사업의 내용분석을 하지 못한다.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해야 하는데, 그것이 활발하지 않다.

사업진행자인 예술강사의 열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사회 예술강사는 학교 예술강사 시기 장애아동 교육을 담당한 이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장애인 대상 교육은 노인(노인복지관 이용자)과 아동(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보다 쉽지 않다. 이것은 장애인 대상 교육에는 보조강사가 참여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그럼에도 예술강사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성이 열정만큼 높은(많은)지는 별개 문제다. 전문성이 있다면 지속 사업 참여에 따른 경험의 축적이다. 예술강사 연수가 있지만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시수 역시 18시간 정도이기 때문이다(2013년에는 40시간). 또한 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의 주된 참여자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그리고 뇌병변장애인데 이 같은 유형의 장애 전문가가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66] 한편, 예술강사와 짝을 이뤄 실제 교육현장을 담당하는 복지시설 담당자의 전문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복지

66) 조현성 외(2017),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34쪽

시설에서 담당하는 여러 업무 가운데 하나이기에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시간을 투입하기 쉽지 않은 까닭이다.

강사 선발은 교육진흥원에서, 교육참여 복지시설 선정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담당한다. 강사 선발을 무엇보다도 투명성을 강조하여 특히 지역별 수요(시설과 인접성)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경험과 전문성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공공기관 사업이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다년(多年) 지원 같은 형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복지시설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대체로 사업에 참여한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충실하지 못할 때도 있다.

또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모집하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읍면단위의 장애아동 수업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그리고 장애아동은 교육기간 내 중도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중도이탈 사유는 장애아동에게 문화예술교육보다는 치료와 방과후수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아동무용)와 발달장애(아동과 양육자)로 규정하지 않는 프로그램에도 발달장애인이 많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이며,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발달장애인이 문화예술교육 참여 욕구가 많기 때문이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발달장애인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관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업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복지관 이용자 전체 대비 경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기초생활수급자가 적다).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아동보다 성인의 경우 저소득층이 많은 특성을 보인다. 장애 아동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교육과 돌봄, 그리고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관기관인 교육진흥원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사업 진행자인 예술강사와 복지시설 담당자는 상대적으로 협력 정도가 높다. 매주 한 차례 이상 접촉하고, 수업일지를 작성하기에 관계가 원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지는 별개 문제다. 복지시설 담당자와 예술강사가 사업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3. 보건복지부 사업 및 복지시설 서비스[67]

가. 보건복지부 사업

앞서 살펴본 대로, 보건복지부는 2005년 '제25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을 끝으로 문화예술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몇 개 사업은 문화예술과 연관성이 있다.

첫 번째는 편의증진 모니터링 사업이다.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장애인편의시설실태 전수조사'에 문화시설이 포함된다. 조사대상 시설 수는 전국적으로 약 26만개소이며, 대상 시설은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행위가 있었던 시설, 곧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들이다. 2018년 기준 문화시설의 편의시설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3-23〉 문화시설 편의시설 실태(2019)

(단위: 개소, %)

대상시설 유형	대상시설	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전체	185,947	80.2	82.2	83.7	70.8	66.8	75.3
소계(문화시설)	8,354	82.2	81.0	84.4	84.5	74.5	83.0
공공도서관	299	84.9	87.5	88.9	80.9	76.7	82.7
공연장	613	85.3	91.7	88.4	87.4	62.8	81.4
관람장	71	88.1	93.8	90.9	91.0	67.9	84.3
집회장(예식장등)	404	81.4	82.7	83.8	73.9	87.5	-
전시장	959	85.0	86.5	85.1	82.3	73.0	-
동, 식물원	54	82.5	86.0	85.5	78.7	62.1	-
종교집회장	5,449	78.1	76.8	80.4	-	79.4	-
도서관	457	90.4	93.0	93.1	90.6	91.0	87.9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48	82.3	81.7	82.6	82.9	-	-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보건복지통계연보」(2018년 기준) 중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67) 보건복지부 사업,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는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사업개요와 분석을 분리하지 않으며, 현황을 주로 기술한다.

두 번째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 확대다(보건복지부, 2020a). 사업 초기에는 기초학력 취득 등 기초교육을 실시했으나 현재는 문화여가, 사회활동, 경제활동으로 폭을 넓히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 총괄 및 지침 시달, 국고보조금 교부를 하고, 시·도지사가 수행기관을 3년간 지정한다.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은 3대 사업(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을 수행하는데, 수행기관은 역량강화교육이나 자조모임을 문화여가 특화 프로그램으로 기획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0a)에서 제시하는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예시는 다음과 같다. 여가문화중심형 사업이 문화예술과 유사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표 3-24〉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예시

사업 내용	예시
기초교육중심형	검정고시반, 컴퓨터교육, 한글문예교육 등
건강중심형	탁구교실, 건강교양강좌, 구강증진지원사업 등
사회활동중심형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여성장애인리더십향상아카데미 등
여가문화중심형	한지공예, 민요교실, 서예교실 등
경제활동중심형	제과제빵 자격반, 바리스타 과정, 동료상담가 양성 등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2016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이 유사사업으로 통합되었고, 통합 당시 조사된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다(양숙미 외, 2015).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은 15곳인데, 여가문화중심형 세부프로그램은 28개 개설되어 있다. 1개 세부 프로그램은 연 10.3회 개설되며, 1회당 평균 3.5시간, 1개 세부 프로그램의 참여 실인원 15.6명이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 수행기관은 16곳이다. 역량강화교육 64개 세부프로그램 가운데 여가문화중심형은 21개 세부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여가문화중심형 세부프로그램은 연 29.6회 개설되며, 1회당 평균 4.0시간, 1개 세부 프로그램의 참여 실인원 27.1명이다.

〈표 3-25〉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2015)

(단위: 개, %, 회, 시간, 명)

구분	프로그램 구분	세부프로그램수		평균 횟수	회당평균 진행시간	평균 실인원
		빈도	비율			
보건 복지부	교육중심형	54	40.6	28.0	2.2	11.3
	경제활동중심형	16	12.0	29.3	1.8	9.7
	사회활동중심형	14	10.5	10.1	3.7	55.1
	건강중심형	19	14.3	12.0	1.8	18.8
	여가문화중심형	28	21.1	10.3	3.5	15.6
	기타	2	1.5	4.5	2.0	34.5
	계	133	100.0	19.7	2.5	17.7
여성 가족부	교육중심형	23	18.7	28.4	2.0	15.5
	경제활동중심형	21	17.1	34.3	2.8	17.4
	사회활동중심형	28	22.8	83.0	3.6	36.2
	건강중심형	7	5.7	14.5	2.2	13.9
	여가문화중심형	21	17.1	29.6	4.0	27.1
	기타	23	18.7	194.8	1.5	127.0
	계	123	100.0	68.3	2.8	43.5

주) 분석단위: 세부 프로그램

자료: 양숙미 외(2015),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개발 연구」(보건복지부·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89쪽

나.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 같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포함)의 여가복지사업이 포함된다.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다. 여가복지사업은 지자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장애인 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여가 프로그램(나들이, 소풍) 등을 수행하는데, 대체로 정기적으로 수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관이 9대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b).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속한다. 2017년 기준 230개의 장애인복지관에서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실인원 159,769명(개소당 704명), 연인원 1,600,370명(개소당 7,050명)이 이용했다.

〈표 3-26〉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 프로그램 실적(2017)

지역	복지관 수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			
		실인원	평균 실인원	연인원	평균 연인원
서울	48	50,510	1,052	444,132	9,253
부산	15	3,912	261	48,915	3,261
대구	6	4,551	759	42,794	7,132
인천	10	3,796	380	68,449	6,845
광주	7	6,904	986	184,826	26,404
대전·세종	9	4,463	496	34,619	3,847
울산	4	2,231	558	40,488	10,122
강원	7	2,494	356	42,614	6,088
경기	35	11,768	357	216,914	6,573
충북	12	9,585	799	88,913	7,409
충남	12	6,846	571	101,986	8,499
전북	13	3,066	236	41,588	3,199
전남	16	4,314	270	77,092	4,818
경북	16	6,173	386	76,390	4,774
경남	15	33,653	2,404	58,765	4,198
제주	5	5,503	1,101	31,885	6,377
전국	230	159,769	704	1,600,370	7,050

자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18), 「2017년 장애인복지관 편람」(2017년 기준), 30쪽.

한편,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 보조금뿐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68] 등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비정기적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시행하는 여가복지사업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재원의 성격에 따라 체계화 수준이 다르다. 둘째, 여가 향유 성격이 강하다. 셋째,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 비중이 높다.

한편, 여가복지사업은 평생교육사업, 문화예술을 매개체로 하는 재활치료사업(문학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이 혼재된 측면이 있다. 이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찾을 수 있다.

68) 앞서 언급한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곧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말한다.

첫째, 여가복지사업은 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대상 특성에 맞추어 여가 선용의 의미가 강한 사업으로, 문화예술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문화예술사업에 비해 체계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재활치료는 장애인의 기능향상을 위해 대상 특성에 맞춰 미술, 음악, 문학, 독서 등의 매개체를 활용하고 기능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평생교육에는 문화예술교육이 포함되지만, 교육부로부터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장애복지시설 현장에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많으나 실수요는 많지 않은 편이다.

제3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1. 정책과 사업의 특징

가. 장애인 정책: 문화예술은 부수적 영역

장애인 정책에서 문화예술은 주요한 영역이 아니다.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소득보장, 고용, 복지서비스이다. 이것은 장애인 욕구를 보더라도 그렇다.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이 국가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소득(41.0%), 의료(27.6%), 고용(9.2%)이다. 이에 반해 문화여가체육활동 보장은 1.4%에 불과하다.

〈표 3-27〉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2011, 2014, 2017)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소득보장	38.2	38.5	41.0
의료보장	31.5	32.8	27.6
고용보장	8.6	8.5	9.2
주거보장	8.0	6.4	5.1
이동권 보장	2.0	1.8	3.0
보육·교육 보장	2.4	1.7	1.2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6	1.6	1.4
장애인 인권보장	3.3	2.7	2.5
장애인 인식개선	1.8	2.2	2.0
정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1)	1.0	1.2	6.0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참여보장2)		0.6	0.5
재난관리보장3)	-	0.5	0.3
기타	0.4	0.3	0.2
없음	1.2	1.3	-
계	100.0	100.0	100.0

주: 1) 2014년까지(장애예방), 2017년(장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
2) 2014년에 신설된 보기 문항
3) 2014년에 신설된 보기 문항

장애인 정책에서 문화예술은 독립돼서 사업이 실현되지 않고, 다른 정책사업에 부수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에서의 편의 시설 제공이 상대적으로 구체적 법률인데 모두 문화영역에 특화된 것이 아니며, 특히 후자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를 포괄한다. 이처럼 장애인 정책에서 문화예술은 구체적 정책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정책에서 문화예술이 온전히 제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애인종합계획〉에는 문화예술활동 활성화가 항상 포함돼 있고(1차~5차), 몇 가지 법률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이 선언적이지만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가운데,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의 참여자가 많은 것은 눈에 띈다. 2017년 기준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참여자(실 인원 276,861명) 가운데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의 참여자(실인원 159,969명)는 58%에 달한다.[69] 장애인복지관이 고용·소득·의료와 관계없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이기 때문이다.[70]

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목표 미분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정책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는 정책영역이다. 2장에서 언급한대로 장애예술을 바라보는 최근의 관점은 포용적 시각, 정체성과 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화적 시각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장애인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정책의 일부로서 다뤄진다.

문화예술 관련 법률 가운데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이 포함된 세 가지 법률, 곧 〈문예진흥법〉, 〈문화예술교육법〉, 〈문화산업법〉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언급하는 정도다. 이점은 대부분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계획서 서두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는 연구자의 언급과 같다. 정책 관계자, 정책 사업 참여자 모두 장애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거나 표출하지 않는다.

포용성·다양성·정체성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을 규정하지 않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포용적 예술로서의 장애인 예술정책이 특별히 펼쳐지는 건 없다. 현정부의 〈새 예술정책〉(2019)의 여섯 번째 전략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

69)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18), 「2017년 장애인복지관 편람」에 제시된 수치를 계산한 것이다.
70)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로 구분된다.

니다'는 포용성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정책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의 다양성·정체성에 근거한 표현능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도 거의 없다. 2003년의 「창의한국」에서 제시한 장애인 예술정책은 장애인의 예술접근성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새 예술정책」(2019)에서 장애인 정책은 애매한 위치에 있다. 전략 6의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의 12개 대표사업은 가운데 11개가 장애인 예술정책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을 장애인 예술(정책)이라 명명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 예술정책에 문화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장애인 예술관련 법률이 2020년에 비로소 제정된 것은 문화예술정책 내에서 장애인 예술의 위상을 말해준다.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지자체에서 장애인 예술관련 법률(조례)을 일찍이 제정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지자체에서 장애인 예술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한 데서 보듯이, 중앙정부의 정책 대응이 빠르지 않은 것이다.

문화예술정책 내 장애인을 포함한 정책, 장애인 예술정책의 포용적이고 문화적 관점의 부족, 그리고 지자체보다 늦은 관련 법률 제정은 아직까지 장애(인) 예술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며 이것은 장애인 예술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 문체부의 장애인 예술정책 사업 간 연계 부족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서, 문체부와 소속기관의 담당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만 연계되지 않는다. 장르와 기능별 연계를 시도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소속기관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사업도 소속기관별로 진행된다. 문체부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요구된다.

라. 장문원 진행사업의 특징

1) 사업분류체계의 모호함

장문원 예산은 국고(함께누리지원사업)와 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그리고 기관 운영비로 구분된다. 국고사업은 ①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공모사업, 기획공모, 직접사업, 비공모사업)와 ②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비공모사업)으로 구분된다. 기금사업은 ③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비공모, 직접사업)과 ④ 장애인 문화예술진흥(공모, 비공모, 직접운영)으로 나눠진다. 4개의 사업군(群)이 차별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국고사업의 두 번째인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장문원 사업이 연역적으로 기획되어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비공모사업은 문체부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사업을 이관받기 이전부터 진행된 사업이다. 해당 단체의 노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사업 간 중복이 있어도 예전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셋째, 장문원의 현재 조직과 인력으로 이 같은 중복·유사사업을 조정하기 어렵다.

한편, 장문원 사업의 유사·중복성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첫 번째는 재원이 다름에도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다.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국고)’ 내의 축제와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진흥(기금)’ 내의 축제는 중복될 수 있다. 더욱이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국고)’ 내에서도 축제가 중복될 수 있다. 축제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을 분류하여 진행하지 않고, 세부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재원이 생기면 진행하는 것이다.

② 두 번째는 공모사업 내에서 세세부 사업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가장 대규모 세부사업인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은 ⓐ 창작(활성화) 지원, ⓑ (문화예술) 향수 지원, ⓒ 커뮤니티(동호회)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국제교류활동 지원, ⓕ 국외 리서치활동 지원으로 구분된다. 창작-향유지원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 계획서를 보면 창작지원 사업이든 향유지원 사업이든, 단원의 연습-단원교육-발표가 일반적 사업내용이다. 분야별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체(개인)가 복수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술인(단체)이 한정되어 창작지원, 향유지원, 국제교류 활동 지원의 구분이 모호하다. 창작 지원사

업의 발표회는 향유지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창작 지원사업으로 외국에서 발표회를 한다면 이것은 국제교류 활동과 차이가 크지 않기도 하다.

"3개까지 지원해서 2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창작-교육-향수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쓸 때도 혼돈스러울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장문원에서 전체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예술단체 15)

축제지원에서도 참여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장애 예술인 경연인 '스페셜 K 경연'과 '장애청소년 예술제'는 참여자가 일반인과 청소년으로 나눠지지만, 청소년은 두 대회에 모두 참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장애 예술발표회에서는 동일한 사람이 여러 발표회에, 그리고 계속해서 참여하기도 한다.

"A경연에서 금상 받은 분이 B경연에서는 은상을 받기도 해요. 계속해서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장애 예술인이 많지 않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을 받기도 하고요." (장애인 예술단체 15)

③ 세 번째는 비공모사업의 상당수는 세부사업명이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먼저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사업'(국고)은 대체로 단원연습-발표회-외국 공연-일부 단원교육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기금)은 장애인 예술교육-발표회-외국공연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 내 '장애인 문화아카데미'와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는 각기 지역 내 조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다. 두 세세부 사업은 교육대상이 다를 수 있지만, 교육장르는 중복된다.

〈표 3-28〉 장문원 세부사업의 내용비교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사업(국고)	단원 연습 단원 교육	발표회(외국공연)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기금)	단원 연습 단원 교육	발표회(외국공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교육지원(기금)		발표회	장애인 문화예교육

2) 자체 성과지표 부재와 관련 통계체계 미구축

장문원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는다. 현재 장문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예산관리상 설정한 것이다. 2016년부터 함께누리지원사업의 성과지표[71]는 2016년~2017년에는 '프로그램 참여자 수', 2018년부터는 '공모사업 지원건수'다.

〈표 3-29〉 함께누리지원사업 성과지표(2016~2020)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장애인문화예술 향수(축제포함)사업 지원프로그램별 참여자 수(단위: 명)	목표	137,370	148,360	-	-	-
	실적	149,334	153,370	-	-	-
	달성도	108.7	103.4	-	-	-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공모 사업 지원건수(단위: 건)	목표		신규	161	166	171
	실적		153	132	-	-
	달성도		100	81.9		-

2016년~2017년 성과지표(프로그램 참여자 수)의 달성률은 103.4%였다(153,370명). 장애인 축제 참여자를 포함하여 15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장애인 예술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주로 창작지원이기에, 참여자 수(향유자를 포함)로 사업 목표달성을 측정하기 어렵다. 2018년부터 성과지표는 공모사업 지원건수다. 2018년 기준으로 지원건수는 132건이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지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지표는 단기간 내에 산출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성과지표는 '지원건수'가 아니라 '창작·향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직접 지원받은 인원 수', '수혜자 수', '1인당 수혜금액' 등으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관련 통계의 부족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사업의 계획이나 평가가 어려웠던 것은 장애인 예술활동 실태는 물론 장애 예술인(단체) 총수(總數)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문원은 「2018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 예술인의 규모와 활동현황을 제시했다.[72]

71) 체육진흥기금 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에 한정된 성과지표가 없다. 다만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성과지표(2020)가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참가자 만족도'일 따름이다.

72)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은 5,972명, 장애예술 활동가는 25,722명 정도로 추산된다. 두 집단을 합하면 장애 예술인(활동가)은 31,694명이다.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 정도인데, 장애 예술인(활동가)은 장애인 인구(2,582,876명)의 1.2% 정도다.

하지만 복지관을 통해 조사대상자 모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의 적합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장애인 예술단체에 대한 통계조사는 수행되지 못했다. 통계조사가 없거나, 포괄적이지 못해서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구성하기 힘들다.

두 번째는 장문원 사업의 관리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목표설정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모사업이든 비공모사업이든 장문원 사업 참여단체는 참여자 수, 수혜자 수, 관련 예산을 계획서와 실적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사업 참여단체가 기입한 참여자 수 같은 수치를 장문원을 검토하거나 분석하는 작업을 하지 못한다. 실적보고서의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덧붙여 장문원이 꼭 파악해야 할 통계가 무엇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달리 말해서 지표의 부재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지 못한 탓이다.

3) 장문원 사업과 타 사업의 연계 부족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장문원, 교육진흥원, 장애인복지관이 모두 진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연계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교육진흥원과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이란 공간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하지만, 장문원사업 주관 협·단체는 자신의 지역단위를 통해 교육을 진행한다. 참여단체가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했기에, 지역단위의 문화예술교육은 자의성이 높다.

3개 기관(장문원-진흥원-복지관협회)이 협력하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진흥원-복지관협회는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진흥원은 예산을 부담하고, 전문강사를 복지관에 파견한다. 복지관협회는 복지관을 선정하고 예술강사가 복지관 현장에서 원활하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많이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및 인문교육'보다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이 높다.

하지만 장문원은 아직까지 이 같은 협력을 하지 못한다. 교육뿐 아니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문화재단 또는 지자체와 협력이 많지 않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장문원의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 장문원의 주된 역할이 (비)공모사업 참여단체에 예산 교부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문체

부)과 타부처의 장애인 정책이 협력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문원은 문체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집행기관인데,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없어, 장문원 단독으로 네트워크 구축은 어렵다.

4)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 참여단체의 간격

장문원 사업비 예산 13,404만원 가운데, 공모사업 41.4%, 비공모(지정)사업 41.8%, 장문원 직접 및 용역사업 16.8%다.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 예산이 비슷하지만, 사업참여 단체 수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 사업별 예산차이가 크다.

공모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예산 최고액은 40백만원(창작활성화, 향유활성화)~50백만원(국제교류)이다. 반면에 비공모사업은 400백만원이 넘는 사업도 있다(공연예술단 지원 400백만원~500백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800백만원, 장애인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600백만원). 이처럼 비공모사업 참여단체는 세부사업 1건으로 공모사업보다 10배 넘는 예산을 지원받기도 한다. 비공모사업 참여단체는 대체로 장예총 회원 협회·단체다. 장문원 개원 이전부터 협회(단체)가 동일한 사업을 문체부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진행했기에 경험에 따른 전문성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사업계획 단계에서 환경분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가 양성교육이라면, 장문원 유사사업에 대한 분석, 장문원 이외 예술교육사업, 정규 학교교육 내에서 장애인 예술교육 사업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다른 사업과 구분되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둘째, 사업계획과 진행이 더욱 자세히 기록돼야 한다. 실제 계획서와 실적보고서 양식은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이 구분되지 않은데, 사업결과 보고가 소략하다. 정확한 참여자 수(관객)를 파악해야 하고, 행사별로 자세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셋째, 단체(협회)의 지역 조직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리고 단체 내 단원교육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더욱 명확한 자료작성이 필요하다. 넷째, 전년도와 비교하여 새로운 시도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장애인 예술 연구자가 언급한, “오래된 관습 같은 측면”과 “복지적 측면”을 벗어나 새로운(발전하는)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비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 관계자의 말처럼 “공모이든 비공모이든 잘못하면 대안을 마련해야 해요. 한 번 했다고 계속 똑같이 할 수는 없다.”

반면 공모단체는 창작-향유-교육-국제교류 등의 사업에 중복지원하기도 한다.

단체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장애인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한다. 중복지원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장애 예술인(단체)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장애인 예술단체 입장에서 보면, 장문원이 지원받기 가장 적합한 기관일 터다. 장애인 예술단체 개체 수가 많지 않아서,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으면 공모사업(예산)을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공모사업 신청대비 선정률(36%)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다. 상당수의 사업 신청단체(인)가 장애인 예술사업에 참여할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장문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문성이 높지 않은 장애인 (예술)단체, 예술 관련성이 높지 않은 단체가 지원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전문성과 기획력이 있으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공모사업 신청단체의 전문성과 관계없이 장문원에서 세세부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것이다. 창작-향유-교육-국제교류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사업목적이 불분명하여 중복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공모-비공모-자체사업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사업 전체의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5) 참여단체 행정·기획·마케팅 능력 부족

공모사업 참여단체는 계획서와 실적보고서 쓰는 것을 어려워한다. 서류작성의 어려움은 단체의 행정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 성격이 있어 행정인력이 별도로 근무하는 비공모사업 참여단체와 달리, 공모사업 참여단체는 예술인이 기획·예술활동·행정업무를 도맡아 처리한다. 규모가 크지 않기에 별도 인력을 구성하기 힘들다. 이것은 인력구성의 문제이면서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장애인 예술 연구자의 말처럼 발표회에 “지원 사업 가운데 외부관객이 없는 경우”는 장문원 사업 참여가 단체 구성원(만)을 위한 것일 수 있다. 참여단체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장애인 대상자에게 교육과 문화생활의 기회” 제공은 장애예술인이 타자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다. 따라서 예술단체의 전문성 제고는 예술능력뿐 아니라 단체운영 능력 개발까지를 포괄해야 한다.

6) 장애인 예술단체의 네트워크 부재

현재 장애인 예술단체는 구심점이 없다. 각자 공공에서 지원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예술활동을 한다. 공식조직인 장예총 회원인 협·단체도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도다. 장애인 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 예술단체들 간의, 장애인 예술단체와 장애 예술인의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한다. 장애인 예술단체 담당자 말대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네트워크 참여자는 지금보다 개체 수가 훨씬 많아져야 한다.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개인)가 185개(명)인데, 이들은 상호 소통이 거의 없다. 민간단체 스스로 소통과 논의의 장(場)을 만들 수 있지만, 각자 (예술)활동에 바빠서 공론장(場) 형성이 어렵다. 장문원에서 소통 공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 예술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구성하면 자연스럽게 관련 단체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시사점

가. 장애인 체육정책 전개과정 벤치마킹

장애인 정책에서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사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체육이 장애인의 재활, 곧 신체능력 향상과 관련되지만 장애인 체육정책은 2000년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2005)와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2006) 설립, 그리고 주무부처의 (보건복지부에서 문체부) 변경(2005)을 통해 장애인 체육정책은 활성화됐다.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 세 차례 수립(2007, 2013, 2018),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 방안 발표〉(2018)에서 보듯이 장애인 체육정책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더욱이 2018년 평창패럴림픽 이후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정책이 본격화된다. 문체부는 2018년 8월 14일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유산(legacy)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전을 '장애인 체육,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①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③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 8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목표를 수

치로 보자면,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30% 달성이다(2017년 20.1%). 장애인 체육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된 지 15년이 됐는데, 초기 10여 년 동안은 엘리트 장애인 체육 중심이었다가, 2018년부터는 생활체육까지 강조하게 된 것이다. 문체부의 장애인 체육관련 조직은 2005년 신설된 장애인체육과(課)로 현재까지 장애인 체육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73] 장애인 체육정책이 빠른 시간 내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는 정책집행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역할이다. 2005년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되고(7.9),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됐다(11.25). 현재 체육회는 1실 1센터 3본부 9부로 구성되며, 128명이 근무한다.[74] 2020년 예산은 89,128백만원이다. 17개 시도(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지부가 있으며, 가맹단체 30개, 장애유형별 단체 2개, 인정단체 12개가 활동 중이다.[75]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업무는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장애인 선수양성(국가대표, 이천훈련원), 생활체육, 장애인스포츠지도사(실기 및 구술검정) 관련 업무를 포괄한다.

두 번째는 장애인체육과(課)가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체육과의 업무를 보면, 장애인 체육정책 모두를 포괄한다. 계획수립, 전문 체육인 경기, 전문인력 양성, 생활체육, 그리고 실제 체육정책 집행기관 관련 업무까지 포괄한다. 현재 7명이 근무하면서 장애인 체육정책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표 3-3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애인체육과

⑦ 장애인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8.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9.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10.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및 원활한 대회 준비 및 운영을 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73) 장애인 예술정책을 담당했을 때는 명칭이 장애인문화체육과였다.
74) 알리오 홈페이지 중 대한장애인체육회,
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apbaId=C0315&reportFormRootNo=2020#toc-123
75)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https://www.koreanpc.kr/ibuilder.do?per_menu_idx=118&tabCnt=2&menu_idx=12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체육정책과 다른 측면이 많지만, 적어도 정책체계 구축, 곧 문체부 관련부서의 포괄적 업무·집행기관 역할·전문가체육과 생활체육 조화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나. 장애인 예술(정책) 담론 및 목표 설정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 예술정책의 분명한 목표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다. 관련 정책사업은 장애인 예술의 사회적 관점·평생교육으로서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혼재되어 있고, 포용적·문화적 시각이 사업에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장애인 예술정책의 담론 활성화 및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 장애인 스스로가 문화예술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비장애인 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이 낮다(14%~15%). 이점을 고려하면 일단 장애인 문화예술이 사회적 어젠다가 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장애인-비장애인-문화예술관계자-복지관계자-교육관계자의 의견교환의 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장애인 예술정책의 목표를 단계적이지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사업 진행에서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선행돼야 장문원 사업(구조) 개선도 가능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지속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장문원 사업 개선

1) 장문원의 핵심사업: 간접지원

현재 장문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공모사업 참여단체 선정과 예산교부, 비공모사업 예산 교부, 자체 사업 진행, 공모 및 비공모사업 모니터링, 연구사업, 통합시스템 개발운영—구분할 수 있다. 장문원은 일부의 직접사업을 제외하고는 간접지원, 곧 장애 문화예술계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간접지원 사업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① 조사통계업무 강화

현재 진행 중 조사사업은 위탁용역이 아닌 직접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떤 외부기관도 장문원만큼, 곧 예산을 교부하는 기관만큼 현장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실제조사 자체는 리서치사에 위탁하지만 기획단계부터 장문원이 담당해야 한다.

덧붙여 현재 제출된 실적보고서의 통계수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비)공모사업 진행단체에게 실적보고서의 통계자료 기입의 정확성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계산출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참여자가 실인원인지, 연인원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취합된 자료를 독립변인에 따라 분석하고 비교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② 통합정보 제공

많은 장애인 예술단체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예술단체는 전체 장애인예술계의 동향을 파악하기보다 각자 예술활동을 하기에 바쁘다. 면담조사를 해보면 지난 6월 제정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다. 온-오프라인 통합정보를 제공하여 장애 예술인(단체)가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기획·홍보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장애인 예술단체가 아직 필요성을 잘 느끼지는 않지만 장애예술의 지속 발전에 필요한 게 기획·홍보·마케팅 능력 제고다. 이것은 개별 예술단체의 사례에서 개선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모니터링 사업의 확대를 통해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모니터링 주체의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장애 정책관계자-문화예술 관계자-정책사업 연구자의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서 기획·홍보에 대한 구체적 컨설팅업무까지 수행해야 한다.

2) 장문원 사업체계 분석 및 개편

장문원의 핵심역할은 장애 예술인(단체)의 간접지원이 될 것이다. 조사·정보제공·컨설팅 업무가 그것이다. 이 같은 지원효과가 최대화 되려면 현재의 지원사업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의 구분, 사업군(群) 간 중복사업, 세세부사업 내 중복 등이 발견된다. 장문원 지원사업 전체를 펼쳐놓고 사업 간 중복성을 검토하는 일, 그리고 이것을 장문원 지원사업의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분류하는 일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점은 장문원 지원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한편, 장문원 사업체계 분석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장문원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조직 개편(확대)과 전문인력 충원이 요구된다.

제4장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

제1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비전과 목표

1. 비전과 목표 설정

가. 비전: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장애인의 일상'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된 2020년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이 포함된 〈문예진흥법〉이 개정된 2008년에 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과 지원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 예술인(단체)의 창작 환경이 열악하며, 창작활동은 비장애인과 격차가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경험은 비장애인보다 낮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시설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불편하고, 장애인 간 편차도 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과 예술을 함께 할 의사가 많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예술)인은 문화예술지원정책에 기대수준 역시 높지 않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저변 확대가 원활하지 못한 결과다. 거주지(또는 직장이나 학교) 인근에 장애 예술인(단체)이 많지 않으므로 장애인 예술을 쉽게 접할 수가 없다. 이처럼 장애인의 예술활동은 일상적이지 않다. 일상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것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창작활동을 원하는 장애인은 관련 교육을 받아서 예술활동을 하고, 공연이 보고 싶은 장애인은 이동의 어려움이 없이 공연장에 가서, 장애(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관람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 활동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이 장애인 문화예술이 실현됐을 때의 모습이다. 그래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비전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장애인의 일상'으로 설정한다. 이때 문화예술은 '예술을 매개로 한 자기표현의 과정이자 결과'를 의미한다. 하지만 문화예술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 예술을 매개로 한, 장애인의 삶에 즐거움·성취감·감동을 주는 제반 행위가 문화예술 활동이다. 장애인이 함께하는 문

화예술은 장애(인) 예술에 한정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즐기는 모든 예술을 뜻하기에 당연히 비장애인 예술을 포괄한다.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함께 할 수 있음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됐음을 의미한다. 예술활동 공간의 편재성(遍在性), 이동의 편리함,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 함께 할 사람, 예술활동에 대한 긍정적 시각, 시간과 경제의 여유, 예술활동에 대한 의지 등이 그것이다.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장애인의 일상'이란 비전은 이 같은 전제조건이 해결됐을 때 가능하다. 향후 5년 내에 이 같은 비전이 온전히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바라는 것, 그게 말 그대로 비전이다.

나. 목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체계 구축(소통과 공감)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비전에 다다르기 위한,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체계 구축: 소통과 공감'이다. 2020년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본격화된다. 시행령(규칙) 제정,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제6조) 등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정책이 구체화될 것이다. 하지만 장애 예술인 활동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곧 향유와 교육까지 포괄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포괄적 지원정책 체계가 구축돼야 비로소 장애인 예술은 지속발전하고 심화될 수 있다. 목표는 정책체계 구축 자체가 아니다. 정책체계 구축은 결과이자 과정이다. 장애인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조건이다. 장애인-비장애인 협력, 장애인-장애 예술인 협력, 장애인 정책-예술정책의 협력, 기존 장애인 예술단체-신규단체의 협력, 장애인 예술단체-정책기관의 협력, 중앙-지역의 협력이 선행돼야, 비로소 온전한 정책체계가 구축된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소통해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 공감해야 정책 추진력이 생기고,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도약할 수 있다. 정책목표는 그래서 '소통과 공감: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체계 구축'이다.

비전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장애인의 일상
목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체계 구축: 공감과 소통

2. 추진전략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네 가지—① 목표 지향적 구상, ② 단계적·현실적 기획, ③ 협력과 공존의 과정, ④ 당사자 중심의 정책구현—로 설정한다.

가. 목표지향적 정책구상(정책구상의 목표지향성)

목표지향적 정책구상은 두 가지로 접근 가능하다. 첫째, 장애인 예술의 포용성, 그리고 장애의 미학적 (자기)표현이란 최근 담론을 정책사업 구상단계부터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해야 한다. 2장 3절, 3장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같은 공론장을 시민사회와 함께 구성하고, 다양한 논의를 토대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 예술정책의 목표가 '포용성'과 '정체성'에 한정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개별 정책사업에서는 물리적 접근성 제고 같은 사회적 관점, 장애 예술인의 전문성 제고 같은 전통적 관점이 중요할 수 있다. 다양한 관점이 정책목표 설정에 활용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핵심은 어떤 정책사업을 구상하든지 간에, '포용성'과 '장애 정체성 표현'이란 시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이 장애인 예술의 독자성과 지속성 확보에 중요한 까닭이다.

둘째, 정책사업 구상단계에서 정책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행 중인 사업분석과 사업 간 비교가 필수다. 3장 3절에서 언급한 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분류체계는 기준이 모호하여 사업 간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 재분류를 통해 정책사업의 목표를 인식해야, 신규사업이든 개선사업이든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사업 간 연계가 가능하다.

나. 단계적·현실적 정책기획(정책기획의 현실성)

지금까지 진행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사회적 맥락과 역사를 인식하고 정책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문원 비공모사업 진행단체는 장문원 설립 이전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어느 정도 진행단체의 개별 노력에 따라 재원이 마련된 점도 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일은 공공재원이 투입된 사업의 투명성·효과성 분석이다. 비공모사업 진행단체 담당자의 말처럼 비공모사업도 평가를 해서 적합한 대

응을 취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실태를 5년 내에 비장애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맞춤형 프로그램 형성, 장애 친화적 문화시설 확충,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5년 내에 모두 완비하는 것은 어렵다. 결국은 순차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2018 실태조사」는 장애예술인 모집단을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파악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것은 수정·보완돼야 하지만 2018년까지 장애 예술인 현황을 보여주는 실태조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실제 실태조사의 자료(통계)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이처럼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지금까지 구현되지 못한 또는 원활히 작동되지 못한 정책사업을 시도해야 한다.

다. 협력과 공존의 정책과정(정책과정의 협력)

정책목표(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체계 구축: 소통과 공감)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정책영역이 복합적이다. 장애인예술계는, 장애인 정책-문화예술정책, 장애 예술인-비장애 예술인, 문화부처의 예술교육-복지부처의 예술교육, 장애인 예술단체-장문원, 장예예술단체-장애인 단체-장애 운동단체, 유형별·장르별 장애예술 참여자가 혼재한다. 예를 들어, 문화부처의 예술교육은 장애인의 표현능력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복지부처(지자체)의 예술교육은 치유와 여가활동에 초점을 둔다. 장애인 예술단체는 매개자(장문원)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는데, 장문원은 장애예술 정책사업 관리를 총괄한다.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없으면 정책의 기대효과를 낳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정책추진 자체가 어렵다. 교육진흥원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교육진흥원(문화영역)과 장애인복지관협회(복지영역)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교육진흥원은 사업예산을 모두 부담하지만 교육의 지속성·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복지관(협회)은 행정업무가 늘어나지만 양질의 교육을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장애인예술계 현황이 복잡하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정책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 정책기획이다.

라. 당사자 중심의 정책구현(장애인 수요 맞춤형 정책)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당사자는 장애 예술인(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장애인)과 비예술 장애인(예술 창작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주로 비장애인 (정책) 담당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일부 장애 예술인(단체)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단체 미가입 또는 소규모 단체 가입 장애 예술인은 의사결정 과정에 많이 참여하지 못한다. 더욱이 비예술 장애인은 의사결정 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한다. 두 집단(창작활동하는 장애인, 창작활동 하지 않은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으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

먼저 창작활동을 하는 장애인의 토론과 협의가 필요한데,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대규모단체에 가입한 장애 예술인뿐 아니라 소규모단체 가입 장애 예술인, 그리고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창작활동을 하는 장애인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단체 가입 장애 예술인과 단체 미가입 장애 예술인이 공론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책 관련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2018 실태조사」와 구분되는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 지원사업 참여 장애인 리스트 작성 이후, 이들의 수요와 욕구에 걸맞은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편, 비예술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여가 및 문화활동을 조사하지만, 이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렵다면 장애유형·지역·연령·경제수준·시설 등을 고려하여 초점집단면담조사 등을 실시해볼 수 있다. 관람률·선호장르를 넘어서 장애인이 생각하는 문화예술의 의미, 세부적인 선호장르와 향유(교육) 방법 등을 최대한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두 집단에서 파악한 문화예술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것이 장애인 수요맞춤형 정책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현재까지 거주시설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술정책사업은 많이 진행된 바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 시설별 욕구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장애인의 수요파악에서 아동·청소년, 그리고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학부모 의견까지 포괄하는 게 바람직하다.

3. 전략과제

전략과제는 세 가지—①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 ② 장애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활성화, ③ 장애 문화예술 발전 기반 구축—로 설정한다.

첫 번째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따라 창작 장애 예술인 지원 확대와 다원화 관련 과제다. 두 번째는 전문 예술이 아니라 장애인 일반의 예술향유(교육포함) 기회 제공을 위한 과제이다. 2장과 3장에서 향유와 교육을 각기 분석했지만 교육을 향유에 포함시켰다. 세 번째는 정책의 제도화, 장애인 예술의 인식 개선, 그리고 예술행사의 방향성 관련 과제다. 세 가지 전략과제는 여러 세부과제로 나뉘는데 이것은 2절~4절에서 다룬다.

[그림 4-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비전·목표·추진전략·전략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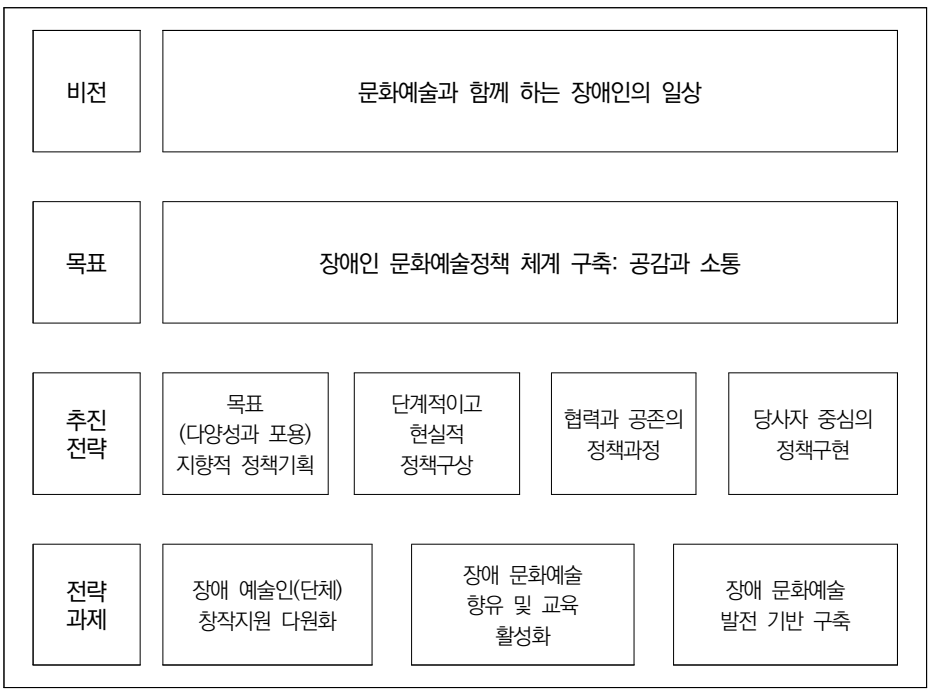

[그림 4-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전략과제·세부과제

비전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장애인의 일상		
목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체계 구축: 공감과 소통		
추진 과제	전략과제	세부과제(세부사업)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	1. 장애 예술인 일자리 창출 2. 장애인 예술시장 및 마케팅 지원 3.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 3-1. 장애 예술인 전용(대표) 문화공간 건립 3-2. 장애 예술인의 문화시설 및 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3-3.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 4. 장애 예술인(단체) 전문성 심화 4-1. 장애 예술인 전문공연단체 육성 4-2. 장애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4-3. 장애 예술인(단체)과 국·공립기관(단체) 협업 5. 장애 예술인 교육체계 구축 5-1. 장애 아동·청소년 전문교육 5-2. 예술전공 장애 대학생 지원 5-3. 장애 예술인 역량 강화(재교육) 프로그램 6. 장애인예술계의 주변부 지원 확대 6-1. 청년·지역·단체 비소속 장애 예술인 지원 6-2. 풀뿌리·지역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활성화	1. 장애인 문화예술바우처 도입 및 확대 2.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 3. 참여형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확대 3-1.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3-2.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재구조화 4-1. 특수학교(급)-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개선 4-2.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확대·개선 5.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 친화적 문화시설 조성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구축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고도화 1-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담당 부서 및 기관의 역할 정립 1-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단위)사업 연계성 및 공정성 강화 1-3.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계 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과학기술(4차 산업혁명) 연계 3.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및 확대 3-1. 장애인 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3-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도서 발간 4.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지역화 및 세계화 4-1. 지역 간 장애인 예술 격차 해소: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 운영 4-2. 장애인 예술의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활성화 5. 장애인 예술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	

제2절 장애 예술인(단체)의 창작지원 다원화

1. 장애 예술인 일자리 창출

가. 사업 개요

장애인 문화예술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 예술인(단체)이 일자리를 찾아 자족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순수)예술은 경쟁력이 없어 시장에서 적응할 수 없지만 사회적 가치창출이란 외부효과가 있기에 공공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다. 장애인 예술은 비장애인 예술에 비하여 시장에서 적응하기가 훨씬 어렵다. 이 논리에 따르면 장애인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논리는 비장애인 예술에 비하여 타당하다. 하지만 장애예술이든 비장애예술이든, 공공의 지원만으로 지속 발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느 정도 시장에 적응하면서, 곧 장애 예술인이 직업(일자리)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장 3절에서 보듯이 장애 예술계도 이점에 동의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 예술인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반하여 장애 예술계에서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구체적 행위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 일반 일자리(전일제 8시간 근무, 행정 도우미)
② 복지일자리(일 5시간 이내,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이내, 최저임금, 약 48만원),
③ 특화형 일자리(주간 25시간, 현재는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장애 예술인 일자리: 한국장애인개발원〉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파악하는 예술활동 관련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복지일자리(구체적으로는 장애인식개선 보조강사)다.
10개 단체(기관)—서울 4개, 경기 3개, 경남 창원 3개—에서 50여명이 활동 중이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36개 직무 가운데 하나인 '보조강사'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공연(연주) 활동을 한다.
하지만 복지일자리이기에 보수가 월간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장애인 예술활동을 특화형 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제안한 바 있다.

〈장애 예술인 일자리 창출사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하트하트재단(사회복지법인)-혜원의료재단은, 2019년 협약을 통해 병원에서 장애 예술인 10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공연(연주)을 하는데, 출퇴근은 재단으로 한다(병원은 스케줄 관리와 근태관리를 한다). 2020년에는 15명으로 채용직원이 늘고, 일반 일자리(전일제 일자리)가 된다.

가구회사 ㈜시우는 사회적 협동조합(아르브뤼코리아)의 발달장애인 3명을 직접 채용해서 가구에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담당하여, 아트퍼니처를 생산한다.
가구회사와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하는데, 고용공단의 경기북부지사가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자료: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635(2020년 6월 15일 검색)

장애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장애 예술인 일자리는 두 가지 기준—① 고용주체의 민관여부, ② 직장의 문화예술 관련여부—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1〉 장애 예술인 일자리 영역

	공공영역	민간영역
문화예술계 내	A 국공립 예술단체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시설	B 장애인 예술단체 민간예술단체 취업
문화예술계 밖	C 학교/체육시설/주민센터/복지회관/ 지역 재생사업과 예술연계사업	D 병원 내 장애인 오케스트라/ 가구회사의 장애미술인 고용

A 영역은 장애 예술인이 국공립 예술단체 입단, 지역 문화재단(시설) 취업의 경우다. 현재까지 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B 영역은 장애 예술인(단체)이 자족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민간 예술단체·민간문화시설에 취업하는 경우다. 장애 예술인(단체)이 지원 없이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많지 않다. 발달장애인 음악가 사회적 협동조합인 '드림위드앙상블'은 2015년 설립됐는데, 정단원은 정규직

이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

C 영역은 공공이지만 비문화시설(장애인체육시설, 주민센터, 복지회관)에서 문화예술 강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다. 또는 공공 정책사업에 장애 예술인이 참여하는 경우다. 교육진흥원의 장애인 예술강사가 여기에 속한다. 공공영역의 장애인식 개선교육 참여도 여기에 속하지만 복지일자리(월 48만원)다. D 영역은 앞서 살펴본 사례(병원 내 오케스트라 활동, 가구회사의 장애 미술인 고용)다.

장애 예술인 고용창출의 네 가지 유형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 첫째, A 유형(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의 장애 예술인 고용)은 두 가지로 진행할 수 있다. ① 첫 번째는 예술단체 내 장애 예술인 고용으로 주로 공연단체에 해당한다. 뒤에서 살펴볼 '장애 예술인(단체)과 국공립기관(단체) 협업' 이후,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정단원 또는 객원단원으로 장애 예술인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객원단원 형식을 취하면서 점차 정단원을 고용한다. ② 두 번째는 예술단이 없는 국공립문화시설에서 장애 예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예술행사의 기획·홍보·마케팅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뒤에서 살펴볼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장애 예술인 레지던시', '장애 예술인(단체)과 국공립단체 협력', '지역 간 장애인 문화예술 격차 해소' 등은 공공 문화영역에서 담당할 일인데, 이러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장애 예술인이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장애 예술인의 직업 범주를 실연(實演)에서 기획·경영으로 넓힌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둘째, B 유형(장애인 예술단체, 민간 예술단체 취업)은 민간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것이기에 공공에서는 간접지원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민간 예술단체의 장애인 고용은 국공립단체와 마찬가지로 객원 단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정단원이 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공에서는 장애 예술인을 고용한 민간 예술단체에 대해서 공모사업 진행 시, 일정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장애인 예술단체에서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대체로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된다(드림위드 앙상블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며, 핸드스피크는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적 지원을 받지만, 장애인 예술정책에서는 이 같은 단체에 대해서 별도의 공모사업군을 설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셋째, C 유형(비문화 공공영역 내 장애인 예술)은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① 첫 번째는 장애인 예술강사 고용을 늘리는 일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장애인 강사의 비율은 1%(특수학교), 3%(장애인복지관)에 미치지 못한다. 교육진흥원 사업이 아닐지라도 학교와 복지관 프로그램 내 장애인 강사 쿼터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장애 예술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장애 예술인이 예술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② 두 번째는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내에서 장애인 예술인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반다비체육센터'는 2025년까지 150개소(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별 특화형) 건립예정이다. 장애인 체육과 장애인 예술의 연계를 꾀한다. 에를 들어 장애인 무용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 무용강사를 고용하는 것, 또는 체육센터 내 기획·운영인력으로 장애 예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체육과 예술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세 번째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센터'의 협의체의 구성원인 주민자지체·복지관 등에서 장애 예술인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지만 사업범위가 확대되면 정규직 고용을 검토할 수 있다. ④ 네 번째는 지역 단위에서 많이 수행되는 지역재생사업에 장애 예술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장애 예술인이 직접 예술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장애 예술인의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D 유형(비문화 민간영역 내 장애인 예술)은 현재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형태, 일자리 수량으로 보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형태다.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제도(장애인 고용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분담금 감면)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별도의 장애인 예술단체를 구성하는 형태라면 B 유형에 가깝다. 그렇지 않고 별도 장애인 예술단체 구성이 아니라면 D 유형으로 볼 수 있다.

D 영역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살펴본 것처럼 가구회사의 발달 장애 예술인 채용, 병원의 장애 예술인 채용 같은 형태다. 장애 예술인이 일반 사업체에서 활동하면서 사업체와 장애 예술인 모두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와 자료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지역별로 사업체의 수요와 장애 예술인 현황 등을 파악해야 실제 고용이 가능하다. 장애 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장애 예술인 인력시장 지원(활성화)인데, 4장 4절의 '장애인 문화예술정보시스템'이 인력시장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네 가지 유형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되, 현실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은 1년 단위로 수행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내에서 문화예술 직무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개발원의 노력처럼 특화형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1년차에는 네 가지 유형별 일자리 창출 여건을 파악한다. 특히 공공문화기관, 비문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하는데, 수요가 없다면 인센티브 제공방법을 제안한다. 2년차에는 공공영역(A 유형과 C유형)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 객원단원 형식으로 국공립 예술단 참여, 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지원사업 내 장애 예술강사 확대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3년차에는 민간영역(B 유형과 D유형)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예술단체(사회적 기업)의 별도 공모사업군 신설, 지역 내 사업체 내 장애 예술인 고용 수요 파악 같은 일은 진행한다. 4~5년차에는 2~3년차에 네 가지 유형에서 진행되지 않은 고용방안을 도입해본다. 5년차 이후에는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고용 지속 및 양질의 일자리를 탐색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립 장애인 예술단, 지자체의 장애인 예술단도 검토해볼 수는 있다. 한편, 1~2년차에는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직무개발, 특화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다. 사업추진기관

사업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문체부-장문원은 물론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협력한다. 문체부(장문원)는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와 공동으로 장애 예술인 일자리 직무를 개발하고 지역단위 사업체의 장애 예술인 고용 수요를 파악한다. 공공 문화기관은 문체부(장문원)가 개별시설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비문화 공공영역은 문체부(장문원)가 다른 부서, 학교(예술강사 사업) 등과 협의한다. 민간영역은 문체부(장문원)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2. 장애인 예술시장 및 마케팅 지원

가. 사업개요

'장애 예술인 일자리 창출'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인 예술 역시 시장에 적응해야 지속발전이 가능하다. 현재 장애인예술계는 공공지원이 없으면 지속되기 힘들 정도다. 그리고 일부 복지재단의 지원(예를 들어, 하트-하트재단의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일부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 예술단체는 영리활동을 하기도 한다. 장애 예술인(단체)에 대한 공공지원은 지속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시장을 형성해야 장애인 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다.

장애인 예술시장은 작품시장과 인력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다. 장애인 예술의 인력시장은 '일자리 창출'에서 제시한 것을 의미한다. 작품시장은 장애 예술인(단체)의 창작품(재화와 용역)의 매매를 의미한다. 장애인 미술가의 회화 작품을 구매하는 것, 장애 예술인(단체)의 공연을 유료로 관람하는 것이다. 작품시장의 공급자는 장애 예술인(단체)이며, 수요자는 장애인-비장애인, 민간-공공 등 다양하다. 일단은 수요자가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 곧 공간으로서의 시장이 필요하다. 공연작품은 공연장에서, 미술작품은 화랑과 전시관에서, 문학작품은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의 문학작품은 비장애인 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 서점에서 판매하는 데 물리적 제약은 없다. 장애인의 미술작품 역시 화랑이나 미술관에 전시된다면 구매와 관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 여부를 크게 따지지 않는 서점과 다르게 화랑과 미술관에서 장애 미술인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공연 역시 미술과 마찬가지다.

장애 예술인의 작품의 매매가 이뤄지려면 장애인 예술행사 자체가 많아져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예술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인 예술작품 쿼터제를 주장해왔다. 쿼터제는 시장화를 위한 첫 번째 정책지원이라 할 수 있다. 민간 문화시설에서 장애 예술인(단체) 작품이 상당한 정도로 공연·전시된다면, 민간 문화시설에 세제혜택을 검토할 수 있다.

장애인 예술작품이 거래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장애 예술인 아트마켓을 열 수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 정책지원이다.

세 번째는 공공영역이 장애인 예술작품의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장애인 미술작품이나 도서 같은 유형의 것을 구매하여 공공기관에 대여 또는 기증하는 형식이다.

네 번째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국립 또는 공립 장애인 예술단을 구성하여 예술시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방식이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 예술작품 아카이빙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항시적으로 판매 가능하도록 한다. 아카이빙은 온-오프라인에서 갖춰야 한다. 온라인은 4장 4절의 '장애인 문화예술정보시스템'과 연동하며, 오프라인은 '장애 예술인 전용(대표) 문화공간'을 활용한다.

여섯 번째는 장애 예술인(단체)의 작품 판매 능력 제고를 위해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4장 4절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담당부서 및 기관의 역할 정립'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장애예술 정책 담당기관에서 컨설팅 역할을 담당한다.

일곱 번째는 장애인 예술작품 시장 온라인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인데, 4장 4절의 '장애인 문화예술정보시스템'과 연관된다.

여덟 번째는 장애인 예술의 범위를 문화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 예술은 음악·미술·공연·영화 같은 범주에 머물러 있는데,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장애인 예술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아홉 번째, 공공지원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지원(후원)을 통해 장애인예술계(시장)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국메세나협회와 협력하는 게 현실적이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1~2년차에는 공공 문화시설의 장애 예술인(단체) 쿼터제, 공공에서 장애인 예술작품을 구매하여 공공기관 대여(기증)를 실시한다. 3년~4년차에는 장애인 아트마켓 개최, 장애인 예술작품 아카이빙, 장애 예술인(단체) 마케팅 능력제고를 위한 컨설팅, 장애인 예술 범주를 문화산업으로 확장, 한국메세나협의회와 협력 등을 실시한다. 5년차 이후 장기적으로는 장애 예술인 작품시장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고, 국립 및 공립 장애인 예술단 설립 검토작업을 수행한다.

다. 사업추진기관

문체부에서는 공공문화시설 쿼터제, 아트마켓, 아카이빙, 예술범주의 문화산업 확장, 메세나협의회 협력, 국립 장애인 예술단 설립 검토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장문원, 한국예술위원회)에서는 작품구매 후 공공기관 대여, 장애 예술인(단체)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담당한다.

3.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

장애 예술인은 창작·발표공간뿐 아니라 작업공간도 부족하다. 관람자로서의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왔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된 현재는 관람자로서의 장애인뿐 아니라 예술인으로서의 장애인을 위한 예술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세 개의 사업—장애 예술인 전용(대표) 문화공간 조성, 장애 예술인의 문화시설 및 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그리고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 사업—을 제안한다.

3-1. 장애 예술인 전용(대표) 문화공간 건립

가. 사업개요

현재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관련 주된 정책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시설 물리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관련 정책이며, 더욱이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의 시설접근을 위한 최소기준이다. 이 같은 정책은 장애 예술인의 창작·발표 활동과는 관련성이 높지 않다. 예를 들어, 공연장 입구와 객석 출입문에 경사로를 설치하면 장애인의 공연관람에는 효과적이지만, 무대와 연결된 경사로가 없다면 장애 예술인은 예술활동 자체가 불가하다.

장애 예술인이 물리적 어려움 없이 창작·발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은 장애인예술계의 숙원사업이다. 100대 국정과제 과제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내 '42-6 장애인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의 세부과제가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및 장애예술 공연장 건립'이다. 장애 예술인의 창작·발표공간이 공연

장에 한정되지 않지만, 먼저 공연장부터 건립하여 운영한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이 장애 예술인의 접근성인데, 그것은 물리적 접근성, 작품활동 접근성, 그리고 정보 접근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을 가장 좁게 해석하여 이동성과 예술관련 제반 자료·동향·소식의 습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품활동 또는 예술활동 접근성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예를 들어, 무대 경사로는 물리적 접근성, 장애인 예술의 해외소식은 정보 접근성, 창작활동을 위한 조명, 음향 등은 작품활동 접근성으로 이해한다.76)

장문원은 2019년 「장애예술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위탁용역으로 수행했다. '모두의 극장'을 비전으로, 목표 세 가지—'장애예술의 정체성 확립', '포용성 기반으로 문화적 다양성 확대', '장애-비장애, 장애 간 구분없는 협력과 소통'의 장애예술 전문 공연장—를 지향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 전용공연장이 빠르면 2023년에 건립된다. 장애 예술인 전용공연장 건립은 하나의 공연장 건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 예술의 대표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장애인 예술의 전반적 발전을 추구하는 상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연장은 대학로에 지상 5층 지하 2층(건축면적 1,033평방미터)으로 건립한다(객석수 225~300석). 공연장은 공연장·출연자 대기실·응급처치실·리허설룸·드레스룸·연습실·스튜디오·사무공간·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운영조직은 콘텐츠·브랜딩, 서비스디자인, 경영·공간운영으로 나눠진다.

이것은 연구보고서의 내용인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어떤 형식으로 어떤 공연장이 건립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려사항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용(대표)공간은 공연예술뿐 아니라 다른 장르까지 포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곧, 복합문화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단일 건축물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장애인 예술 진흥이란 상징성을 가져야 한다. 건물 형태가 장애인 예술의 정체성과 미래 지향성을 드러내고, 장애 예술인의 최고의 편의성

76) 영국 박물관·도서관 및 아카이브협의회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의 접근성을 물리적 접근, 감각적 접근, 지적 접근, 경제적 접근, 정서적·태도적 접근,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 정보에 대한 접근, 문화적 접근 등으로 구분한다. 이것을 장애인 박물관·미술관 접근성에 적용한 연구에서는 물리적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프로그램 접근성, 문화적 접근성으로 재분류한다. 김현경(2020),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17쪽, 22쪽 참조

을 갖춰야 하며,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의 소통·장애 예술인과 비예술 장애인의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셋째, 향후 지역에 설립될 장애인 문화예술공간, 곧 장애 예술인 대표문화공간(광역),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기초)의 모델로서 기능해야 한다. 넷째, 공간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다섯째, 공간을 넘어서 장애예술 작품과 행사를 기획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여섯째, 장애인 예술작품 오프라인 아카이브로서 기능한다. 일곱째, 현재 운영 중인 '이음센터'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연구보고서에서는 빠르면 2023년 개관을 목표로 하지만,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준공시기는 2025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1년차는 공연장의 기능설정에 역점을 두고 2년차에는 설계작업을 실시한다. 3~4년 동안 건립공사를 실시하여 2025년에 준공한다. 이것은 새로이 착공하는 형태이며, 다른 공간의 리모델링 또는 임대 사용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다. 사업추진기관

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한다. 장애인 예술정책 관련기관은 전용공연장과 관계 설정 이전에는 구체적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렵다. 공연장 운영방식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사업에 관여할 수 있다.

3-2. 장애 예술인의 문화시설 및 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가. 사업개요

장애 예술인 전용(대표) 문화공간은 장애 예술계에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장애 예술인이 불편함 없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가 아니라 훨씬 많아져야 한다. 서울뿐 아니라 적어도 광역지자체 단위, 나아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이 같은 공간이 운영돼야 한다. 모든 장애 예술인이 대표 문화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문화예술공간의 집적지인 대학로를 보더라도 장애 예술인이 접근 가능한 시설은 제한적이다. 대학로의 공공 문화시설 3군데(이음센터 공연장, 아르코 예술극장, 대학로 예술극장) 이외에, 장애 예술인이 창작·발표할 수 있는 공간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있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주로 미술분야 장애 예술인의 창작공간으로 활용된다. 2020년 대관사업을 보면 주로 워크숍으로 대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문화)시설은 이러하고, 민간에서는 장애 예술인이 창작·발표활동을 위한 공간이 거의 없다. 따라서 장애 예술인이 창작·발표활동을 불편함 없이 하기 위한, 곧 물리적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 전용(대표) 문화공간에 언급한 것처럼 무대 경사로 등이 설치돼야 한다.

극단 0set이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대학로 공연장 및 거리 접근성 워크숍〉(2018) 결과

'대학로 공연장 안내도'에 표시된 약 120개 공연장 가운데 휠체어 이용 예술인이 활동 보조인 없이 입장할 수 있는 공연장은 14곳이다. 14개 공연장은 엘리베이터가 운행되고, 매표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 객석까지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거나 휠체어 객석이 마련돼 있다.
장애인 공연 관람자 편의성에 비해서, 장애 예술인의 편의성은 훨씬 낮다. 휠체어 이용 창작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은 3곳(이음센터 공연장, 아르코 예술극장, 대학로 예술극장)에 불과하다.
이들은 음향 및 조명 조정실에도 접근할 수 없다. 수어 통역, 문자 통역, 화면 해설 등의 배리어프리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은 없다(0set 프로젝트, 2018).

앞서 살펴 본대로, 협의의 물리적 접근성이 이동 접근성이라면, 장애 예술인의 창작·발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품(예술) 활동의 접근성과 관련 정보 (취득) 접근성이 갖춰져야 한다. 장애 예술인의 원활한 예술활동을 위해서는 장르와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설비와 기기가 필요하다. 장애 유형에 따라 수어 통역, 문자 통역, 화면 해설이 필요하기도 하고, 공연과 미술 분야에서는 적합한 무대 장치, 조명, 음향 조정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완비돼야 장애 예술인은 물리적 접근성과 예술(작품) 활동 접근성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장애 예술인의 이동성이 보장되고, 관련 기기와 설비를 갖춘 문화시설을 전국 단위에서 운영해야 한다. 장애 예술인의 물리적 접근성 및 예술활동 접근성 제고는 몇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장애 예술인의 발표기회 확대, 두

번째는 발표기회 확대에 따른 작품 수준 제고, 세 번째는 예술활동을 하는 장애인 증가(장애 예술인의 수 증가), 네 번째는 장애인의 예술향유율 제고다.

이를 위해서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기존 문화시설(공연장·미술관·박물관·도서관·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가운데 2개 이상을 리모델링하여 장애 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후에는 서울의 장애인 대표문화공간처럼, 광역단위에서도 대표 문화공간(시설)을 지정하며, 신규 건립되는 공공문화시설(일부 민간 포함)을 대상으로 '장애 예술인 친화공간'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장애 예술인의 자유로운 정보 취득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은 4장 4절의 '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부분에서 언급한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1~2년 동안은 전국 공공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장애 예술인의 물리적·예술활동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다. 장애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장애 예술인에게 필요한 항목을 목록화(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작성)한 이후, 공공문화시설 내 현황을 조사한다. 3~4년 동안에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기존 문화시설 가운데 2개 이상을 리모델링하여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5년차 정도에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지자체 내 장애인 대표 문화공간을 지정, '장애 예술인 친화공간'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장애인 대표 문화공간을 지정한다.

다. 사업추진기관

1~2년차의 장애 예술인 대상 조사와 체크리스트 작성은 문체부에서 담당하고, 문화시설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다. 지자체 내 장애인 대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예산은 지자체와 공동부담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장애 예술인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된 문화시설(공공이든 민간이든)의 경우, 각종 문화예술사업 진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선정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3-3.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

가. 사업개요

장애 예술인은 실제 연습·작업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2018 실태조사」에서 작업공간 보유율은 11.0%, 장애 예술인이 가장 원하는 공간은 연습공간(55.6%)이었다.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주로 공연단체) 역시 강당 형태의 공간에서 연습하는 정도다.

장애 예술인은 자체 작업공간, 특히 연습공간이 없으며(작업공간 없음 89.0%), 장애인 예술단체의 연습공간은 기자재가 부족한, 사무실 옆의 빈공간인 경우가 많다. 실제 발표장소와 유사한 공간을 갖춘 곳은 거의 없다. 실연(實演)을 위해서는 공연장을 대여해야 하는데, 장애 친화적 공간이 많지 않고, 대여가 쉽지 않다.

장애 예술인(단체)에게 작업공간은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예술행위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장(場)으로서의 역할이다. 두 번째는 (장애) 예술인이 모여서 예술 관련 정보공유는 물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이다. 세 번째는 장애 예술인(단체)이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교육공간의 역할이다. 장애 예술인(단체)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예술역량을 나눌 수 있다.

장애 예술인(단체)의 작업공간은, 먼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한 '장애 예술인의 문화시설 및 예술활동 접근성 제고'에서 지역별 대표 문화시설 조성은 광역지자체 단위로 진행된다. 반면에 작업공간(특히 연습실)은 장애 예술인이 창작·발표시설보다 더 자주 찾는 공간이기에, 생활권 내에 위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작업공간은 중장기적으로는 장애 유형과 예술 장르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시설로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초기에는 장애 유형이나 예술 장르 가운데 하나를 특화하는 게 현실적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시설)이란 측면에서 보면, 새롭게 조성하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설은 다섯 개—① 장애인 전용(대표) 문화공간, ② 광역지자체 내 장애인 대표 문화공간, ③ 기초지자체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④ 장애 예술인 레지던시 기관, ⑤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다. 이 가운데 신규 건립하는 시설(공간)은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과 장애 예술인 전용(대표) 문화공간이다.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은 기초지자체 단위의 연습공간이면서 교육공간으로서 새롭게 건립한다. 광역지자체 내 장애인 대표 문화공간, 레지던시 공간은 기존 문화시설

을 활용한다. 한편,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은 장기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로 활용될 수 있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1~2년 동안은 시범사업으로 대도시(서울·광역시) 구(區)지역, 일반 시(市)지역, 군(郡)지역에서 각각 몇 개씩 작업공간 건립·운영지역을 선정한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장애 유형과 예술 장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3~4년 동안은 시범사업 지역 내 작업공간을 건립·운영한다. 작업공간에서는 연습뿐 아니라 동호회와 교육활동이 진행되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대략적 평가를 시도한다. 5년차 정도에는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 하나는 시범사업에서 장애 유형(또는 예술장르)에 특화된 시설을 종합시설로 확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시범사업 이외 지역에서 작업공간을 설립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부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 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 사업추진기관

1~2년차의 시범사업 지역 선정은 문체부에서 주관하고, 관련 실무는 장문원에서 담당한다. 3~4년차의 작업공간 조성 관련 지출비용은 지자체와 공동부담한다. 작업공간 운영주체는 기초지자체의 문화재단이 되는 게 현실적이며, 문화재단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4. 장애 예술인(단체) 전문성 심화

장애인 예술은 관점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지만, 수준 높은 작품활동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예술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 장애 예술인(단체) 전문성 심화는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한다. ‘장애 예술인 전문 공연단체 육성’, ‘장애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애 예술인(단체)과 국공립단체 협업’이 그것이다.

4-1. 장애 예술인 전문공연단체 육성

가. 사업개요

「2018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 활동 분야는 서양음악이 38.3%로 가장 많다. 다음이 문학(18.0%), 미술(17.2%)의 순서다. 이밖에 국악 5.3%, 무용 4.2%, 대중음악 3.3%, 연극 2.2%다. 이처럼 공연 분야 장애 예술인 비율이 53.3%다(서양음악, 국악, 무용, 대중음악, 연극). 장애 예술인 비율이 높은 공연예술분야의 창작·발표는 단체(공연단)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개인 연주자와 성악가가 활동하지만,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예술은 많지 않고, 지원 역시 예술단체 중심이다. 외국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에서 공연단체 지원이 많고 일반적이다.

현재 장문원의 '함께누리지원사업' 세부사업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이다. 2020년 기준으로 3개 공연단체에 모두 1,350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함께누리지원사업' 전체 예산의 13.5%다. 3개 단체에 1,350백만원 지원(1개 단체 평균 450백원)은 세세부사업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중요한 사업인 전문 공연단체 육성은 선행연구에서 몇 가지 방안이 검토됐다(전병태, 2017). 선행연구는 대표 공연예술 단체 육성을 위해 두 가지 방안—① 기존 단체 가운데서 선정, ② 신규단체 설립하여 지속 지원—을 제시한다. 대표 공연예술단체는 국공립단체가 아닌 비영리 공연예술 전문단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형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전문공연단체 육성은 하나의 대표 단체를 선정·설립하는 방안보다 복수(複數)의 단체를 지원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공연 유형에 따라 특성이 있기에 하나의 단체보다는 장르와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여러 단체를 육성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다. 다만 현재 장애인 공연예술단체의 총수(總數)를 파악하기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

'함께누리사업-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사업의 3개 단체는 시각 장애인이 활동하는 공연단이다. 전통공연예술(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대중예술(한국장애인공연예술단/한빛예술단), 클래식(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분야에서 규모와 수준을 갖추고 있다.

장문원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규모가 큰 공연단은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있다.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다.

4개 공연단체는 해외공연과 정기공연을 실시할 정도로 조직(기관)이 안정적이다.

이외에도 풀뿌리 장애인 공연단이 연극, 무용, 음악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전문공연단체 육성 방안 가운데 예산 지원체계 개선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공연예술단 지원사업(연간 단체당 평균 450백만원) 평가 강화와 다년간 지원체계 구축이다. 공모가 아닌 지정사업 진행은 지속하더라도 사업평가를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차등 지원· 다년 간 지원을 검토한다. 둘째, 현재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높이는 방식이다.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의 최대 지원 예산은 40백만원인데 이것을 100백만원 정도 수준까지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단위예산의 증액을 전제로 한다. 현재보다 지원금이 많아진 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세부사업 예산 자체를 증액하면 수혜기관의 총수가 감소하지 않는다. 셋째, 4장 4절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단위) 사업 연계성 및 공정성 강화'에서 언급하겠지만, 현재의 공모-비공모사업의 틀을 벗어나 예술적 수준·장애인 예술의 정체성·발전가능성을 고려한 별도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직접 예산지원 이외에 간접 지원을 진행할 수 있다. ① 장애 예술인 재교육, ② 국공립 예술단체 공동작업, ③ 장애인 문화예술의 산업화(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융합), ④ 장애인 문화예술 세계화 및 남북교류 관련 지원사업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첫해에는 장문원 지원을 받은 공연단체뿐 아니라 지원받은 적 없는 단체 대상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현재 장문원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평가 모니터링' 지표와 달

리 공연단체에 특화된 지표형성 이후 성과분석을 진행한다. 분석에서는 직간접 지원을 했을 때, 발전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게 바람직하다. 2년~3년차에는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진행 중인 공연예술단 지원사업의 차등지원, 공모사업 참여단체 특화지원을 실시한다. 차등지원 및 특화지원은 지원예산 증액뿐 아니라 간접지원(재교육, 국공립단체 협력, 공연단체 시장 형성, 공연단 세계화)을 포함한다. 차등지원 및 특화지원 실현 과정에서 장애유형별로 일종의 쿼터를 주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4년차에는 공모-지정으로 구성된 현재 형태를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공모사업을 검토할 수 있으며, 5년차 이후에도 차등 및 특화지원을 지속 실시하는데, 이때는 예산지원보다 간접지원, 그 가운데서도 공연단체 시장 형성에 역점을 둔다. 장기적으로는 간접지원의 비중을 더욱 높여간다.

다. 사업추진기관

1~2년차 성과분석은 문체부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용역하여 담당하고, 특화지원 및 차등지원에서 직접지원(예산지원)은 문체부와 협의하여 장문원에서 진행한다. 간접지원 경우에는 장문원 예산뿐 아니라 문체부 일반 예술정책 및 문화예술교육 예산(재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곧 '함께누리지원사업'-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이외의 재원을 발굴한다.

4-2. 장애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가. 사업개요

예술인 레지던시는 세 가지 정도의 효과를 갖는다. 첫 번째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하여 양질의 작품을 생산한다. 두 번째는 거주 예술인 간 교류협력을 통해 협업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참여 예술인과 지역 주민이 예술을 매개로 마을(지역) 단위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장애 예술인의 경우에도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히 분석되지 않는다.

장애 예술인 레지던시는 운영하기부터 쉽지 않다.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서 보듯이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 예술인 창작스튜디오는 서울문화재단이 2007년부터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잠실창작스튜디오' 그리고 장애인부모연대(경기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및 양평지부)-한화리조트(양평)-경기도-양평군이 협력하여 2020년 7월 개소한 '한화리조트 양평 발달장애 창작스튜디오 틈'을 들 수 있다. 전자는 공공문화기관이 운영하며, 후자는 자자체 후원(경기도, 양평군)과 민간기업의 장소 제공(한화리조트)을 통해 운영된다. 장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공공의 개입 없이 실현되기는 어렵다. 장애인 예술전문 공간인 '잠실창작스튜디오' 지원자격은 19세 이상의 시각예술 분야 장애 예술인으로, 스튜디오 사용의 어려움이 없거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실 내 숙식·취사는 불가하다.

현재보다 발전된 형태의 장애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곧, 장르를 한정하지 않고, 숙식이 가능한 형태, 그리고 활동보조인이 상주하는 형태의 공간이 이상적이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려면 새롭게 레지던스 공간을 신축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대규모 레지던시 공간 내에 장애 예술인이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고,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첫째, 레지던시 공간은 기존 레지던시 공간 내에 장애 예술인이 입주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 내 편의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울리는 세부사업을 고안해야 한다. 기존 레지던시 공간 내에 여러 장르의 예술인이 입주해 있다면 장애 예술인의 탈(脫)장르 창작이 가능하다.

둘째, 기존 문화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문예회관·공연장·미술관·문학관 등에서 장애 예술인 레시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셋째, 숙박 가능 레지던스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 창작스튜디오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레지던시 참여 예술인은 거주자와 예술을 매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한편, 장애인복지관 내 유휴공간을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비거주 레지던시). 이 경우, 예술인은 장애인복지관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한다.

넷째, 어떤 형태의 레지던시든지 공간 거주·이용자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행사에 공동 참여한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1~2년 동안은 시범사업으로 문화시설별 장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각예술(미술관, 문예회관), 공연예술(공연장, 문예회관), 문학(문학관)을 중심으로 대도시 지역 2개, 중소도시 지역 2개, 읍면지역 2개 시설을 공모 선정한 다음, 장애 예술인을 모집·선정한다.

3~4년 동안은 장애인복지관·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레지던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년차 이후,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레지던스 전용공간 설립을 검토한다. 나아가 전용공간 사업이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장애 예술인마을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다. 사업추진기관

문화시설 시범사업은 문체부·지자체에서 담당하고, 복지기관 대상 사업은 문체부·지자체에서 담당하지만, 복지부와 협력한다. 장애 예술인 전용 레지던시 공간 조성은 문체부의 역할이다.

4-3. 장애 예술인(단체)과 국·공립기관(단체) 협업

가. 사업개요

전문 장애 예술인(단체)의 예술 성취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문 단체의 담당자는 (자신이 속한) 단체 수준이 전국 최고 수준이기에 다른 기관과 콜라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 *"국내 최고라고 생각해요. 다른 예술단과 달리 전문적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대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것이고, 다른 기관과 콜라보가 현재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 중요하지요." (장애인 예술단체 5)*

실제 몇몇 단체와 개인은 외국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한다. 예술단체 소속 단원이 국내외 유수의 대학 예술전공학과에 진학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을 극소수이며, 전

문단체라 해도 예술 수준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한편, 풀뿌리 예술단체는 수월성보다 참여 장애인이 자신과 새로움을 찾아가는 과정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 예술은 새로운 이슈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이들의 예술활동을 통한 표현은 다양하고 의미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진입이 다른 분야보다 어렵지 않지만, 이들의 표현은 다양하고 의미 있어요. 일반적 의미에서 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장애인 예술에서 그게 중요한지는…" (장애인 예술단체 7)

장애인 예술이 예술적 수월성을 추구하든 그렇지 않든, 비장애인과 협업은 의미 있다. 현재도 장애인 예술단체에서는 비장애 예술인과 협업을 하기도 한다. 장애 예술인 단체의 행사, 장애 예술인 축제 등에서는 비장애 예술인이 참여(협업)한다. 장문원 사업에서도 비장애 예술인(단체)과 장애 예술인(단체)의 협업을 강조한다. 장애 예술인(단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립기관과 협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국립단체와 협업은 장애 예술인(단체)에게 수월성은 물론 다양성 측면에서도 자극이 된다. 반대로 국립단체 입장에서는 다양성을 접하는 기회가 된다.

국립단체와 협업하는 장애 예술인(단체) 선정방식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예술제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수월성 있는 장애 예술인(단체)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협업을 원하는 장애 예술인(단체) 가운데 추첨하는 것으로 장애 예술인(단체)의 경력이나 유명도와 관계없이 선정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국립단체에서 기획공모를 하고 장애 예술인(단체)이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협업 내용은 기획공모(세번째)의 경우에는 공모내용에 맞춰서, 첫 번째(수상자)는 수상작품의 심화를, 두 번째(추첨제)는 장애 예술인(단체)의 기존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장애 예술인(단체)과 협업할 수 있는 국립단체는 국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합창단, 국립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같은 공연단체다. 공연 이외의 장르에서는 국립단체가 아니라 국내 유명 작가(문인, 화가, 사진가, 영화인)와 장애 예술인(단체)이 협력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경우에는 장애 예술인 멘토링일 수도 있고, 하나의 작품을 공동제작하는 형태일 수도 있다. 국립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내 '국공립예

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 또는 기관 평가에서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1년차에는 참여할 국립단체를 선정한다. 2년차에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유명작가를 모집하고, 국공립예술단체와 함께 할 장애 예술인(단체)을 모집·선정하여 공동작업을 수행한다. 3년차에는 유명작가와 장애 예술인의 협력작업을 시작하며, 국립예술단체 협력작업을 지속한다. 4~5년차에는 지역 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립예술단, 예를 들어, 시·군 오케스트라, 시·군 합창단 단체와 협력을 시도한다.

다. 사업추진기관

국립단체와 협력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예산은 장문원을 통해 집행한다. 점차 사업규모가 확대되면 장문원에서 별도의 사업 단위로 진행한다. 국립단체가 없는 장르는 유수의 예술단체(협회)와, 공립예술단은 지자체와 협력한다.

5. 장애 예술인 교육체계 구축

장애 예술인(단체)의 작품이 예술적 수준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4장 2절에서 '장애 예술인(단체) 전문성 심화'로 이름 붙였다. 전문성 심화를 위해서는 예비 장애 예술인의 교육체계 그리고 재교육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장애 예술인 교육체계 구축에서는 세 가지 사업, 곧 장애 아동·청소년 전문교육, 예술전공 장애 대학생 지원, 그리고 장애 예술인 역량강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5-1. 장애 아동·청소년 전문교육

가. 사업개요

장애인이 처음 예술을 접하는 시기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아동기다. 학교와 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예술을 접한다.

학교 정규수업을 통해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접하지만, 학교(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장애인 특화 문화예술교육은 거의 없다. 모든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장애인복지관에 가는 것은 아니기에, 학교 내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다. 장애아동의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참여는 학교수업(43.4%)이 복지관 프로그램(29.5%)보다 높다(변경희 외, 2012). 장애 아동은 치료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관 또는 치료센터에서 음악과 미술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복지관이 장애 예술인 양성의 주된 코스가 된다. 시기는 아동기일 수도 있고, 훨씬 이후일 수도 있다. 「2018 실태조사」에 따르면 '복지관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68.5%이다(장애인 예술활동가 94.1%).

장애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 예술인 양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실현한다. 하나는 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의 예술교육 활성화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복지관 예술교육 특화다. 학교·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확대는 전문 예술인 양성뿐 아니라 장애인 예술향유 활성화와도 모두 관련된다. 여기서는 전자에 한정하여 다루고, 후자는 뒤에서(4장 3절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재구조화') 다시 언급한다. 전문 예술인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예술 특성화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학급·특수학급에서 문화예술 심화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현재 예술 특성화 특수학교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다. 2장 3절에서 언급한 대로 '특성화 특수학교' 내 문화예술 전공(공주대 부설), '문화예술 특수학교'(부산대 부설)는 장애인 전문 예술인 양성을 위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전문 또는 직업 예술인을 꿈꾸는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교육부 진행 사업이지만, 문체부는 전문강사 풀(pool) 제공, 국립 예술계 학교(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의 사례 제공을 통해 협력한다.

교육부 〈2020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르면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교육기

관[77] 확대(1인 1기, 문화체험활동 및 예술동아리 지원),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체험기회 제공 및 문화향유권 확대(지역 문화시설 활용, 유관기관 및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연계)가 계획·시행 중이다.

문체부에서는 이와 독립적으로 또는 연계하여 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182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형식의 시범사업인 '문화예술 특화교실'을 운영한다. '문화예술 특화교실'은 장애-비장애 전문 예술인이 주 1회 2시간씩 1년간 수업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소질이 있고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광역 단위에서 별도로 교육, '○○ 문화예술 특화교실'(○○은 광역지자체 이름)을 진행한다. 특수(일반)학급에서는 교육진흥원이 진행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단년이 아닌 다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질과 관심 있는 아동·청소년을 선발하여 '○○ 문화예술 특화교실'에 참여하도록 한다.

장애인 복지관 문화예술교육은 ① 복지관 대상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 특화교실'을 운영(특수학교 사례), ②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특수학급·일반학급 사례)의 지속 실시이다. 후자에서 전문 예술교육 참여 의향자는 '○○ 문화예술 특화교실'에 지원한다.

※ 세계 최초 예술 특수학교(스웨덴)[78]

스웨덴의 리니아 예술학교는 지적장애인 전문 예술교육기관으로 중앙정부에서 운영비의 50%를 지원받는다.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 국립 스톡홀름대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졸업생 중 전문예술가로 활동을 희망할 경우 스톡홀름예술재단년 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77)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문화예술 및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특수교육기관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제1항 참조.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 등이 운영 중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208&ccfNo=3&cciNo=2&cnpClsNo=1(2020년 8월 2일 검색)

78) 〈동아일보〉(2019년 3월 12일), "부산대 부설 장애학생 예술중·고 2021년 개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311/94478757/1 (2020년 6월 26일 검색)

장기적으로는 예술중고교 내에 특수학급을 설치한다. 장애 청소년이 예술중고교에 장학생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비장애학생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어 학습과 적응이 쉽지 않다. 예술중고등학교 내에 장애인 특수학급을 설치하면, 장애 아동·청소년의 예술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에서는 별도의 장애인 예술특수 중고등학교 설립을 검토할 수도 있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1년차에는 특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와 복지관의 문화예술교육 실태를 조사한다. 지금까지 특수학급·일반학급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이 파악된 적이 없기에 조사부터 진행한다.[79] 2년~3년차에는 특수학교와 복지관 '문화예술 특화교실' 시범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단년도에서 다년도 지원으로 진행한다. 4년차에는 '광역단위 문화예술 특화교실'을 운영한다.

5년차 이상 또는 장기적으로는 국내 예술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문체부에서도 교육부(부산, 공주)와 별도로 예술계 특수학교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

다. 사업추진기관

예술계 특수학교 개교까지 특수학교 업무는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문체부(교육진흥원)는 전문강사 풀 제공, 국립예술중고교 사례 공유, 매개인력 인턴십 등을 통해 참여한다. 특수학교·장애인복지관의 시범사업(문화예술 특화교실)은 교육진흥원이 주도하지만 각급 교육청·지자체·복지관협회와 협력한다. 학교와 복지관 내 '문화예술 특화교실'은 문체부의 문화예술교육예산을 활용하지만, 광역단위 '문화예술 특화교실'은 지자체와 예산을 분담한다.

79) 방귀희 외(2013),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국립특수교육원)의 연구(조사)대상은 특수학교에 한정됐다.

5-2. 예술전공 장애 대학생 지원

가. 사업개요

예술전공 장애인의 대학생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 첫째, 특수학교 전공과(2년 과정 인정)에서 예술전공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는 한빛맹학교의 음악과 3개반 운영이 전부다. 예술전공과를 신설하여 국내외 예술단체 협업 등을 지원한다.

한빛맹학교 전문 예술인 양성 교육체계

「특수교육통계」(2019)에 따르면 특수학교 전공과는 전국 147개의 특수학교에 641개 학급이 있는데, 문화예술 관련 전공과는 음악과가 설치된 한빛맹학교가 유일하다.
한빛맹학교는 고등부에 음악과(3학급)를 설치한 이후 한빛예술단과 연계하여 2004년에 음악전공과(기악, 성악, 작곡, 실용음악)를 개설했다.
음악전공과는 2005년에 학점은행제 실시기관으로 2년 과정의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받는 전문예술학사 취득과정이다.

둘째, 장애인의 예술대학 입학이 현재보다 수월해져야 한다. 현재까지 대학 예술계 전공학생 가운데 장애인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장애인 대학생 수로 추산해보면, 전체 예술 전공대학생의 0.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80] 예술전공학과에 장애인 입학생 확대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의 대학진학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진다.

1995년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등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이 실시된 이래,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대학생 역시 늘었다.
1995년 8개 대학 113명이었던 특별전형 실시 대학 수와 장애학생 수는 2018년도 116개 대학 944명으로 증가했다. '특별전형'뿐 아니라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장애대학생의 수는 더욱 많아져서 2018년도 기준 462개 대학에 9,345명이 재학 중이다. 이는 2008년(3,837명)보다 2.8배 증가한 수치다.
초창기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한 대학에서는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장애(뇌성마비 포함) 등 3가지 유형의 장애로 국한했으나, 최근 장애의 유형이 다양해졌다. 예를 들어, 사렛대학교는 재활자립학과(현 휴먼브릿지학부)라는 발달장애인 전담 전공과를 이와 함께 서울대를 비롯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신여대 등도 장애인 특례전형제도를 도입했다. 참고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정원 외 특별정원으로 모집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80)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대학생(3,378,393명) 가운데 장애인은 9,345명으로 전체의 0.28%다.

‘예술 전공학과’에서 장애인 ‘특별전형’ 학생 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예술전공학과에서 특별전형을 늘리면 다른 과에서 특별전형 입학생이 줄어들어, 대학 입장에는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예술전공학과 특별전형 입학생을 늘리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립예술단체와 협력(협업), 외국 장애인단체와 협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전형’의 실기시험에서는 장애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보조기기 활용을 허락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입학 이후 장애 대학생의 예술활동 지원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 20~22〉에 따라 대학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예술전공 장애 대학생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에 따라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일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 의무설치, 10명 미만인 경우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 배치 규정이 있다. 대학 알리미 공시(2018)를 보면, 장애 대학생 관련 행정인력의 77.5%가 겸직이며, 전담직원은 22.5%에 불과하다. 장애학생지원센터 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직원의 근속연수가 짧아 장애대학생을 위한 전문성·지속성을 갖춘 체계적 지원을 담당하기 어렵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 20~22〉
2020년 2월 18일,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 20~22〉를 발표했다. 장애대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수준이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기보호역량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장애 대학생의 지원기반 조성,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이들에 대한 편의 제공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등이다.

예술대학은 전공의 특성상 실기 수업이 많고, 공연 및 전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술분야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공연장·전시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공연장·전시장 이동편의, 점자, 수어통역, 문자통역, 화면해설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 대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도우미 사업[81]의 세분화를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장애 대학생 도우미는 일반 도우미, 전문 도우미, 원격교육 도우미가 있는데, 예술전공 장애인 대학생에게는 예술 도우미가 요구된다. 예술 도우미는 예술적 기능을 지닌 인력이 아니라 장애인 예술의 개념을 이해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81) 교육부의 〈2020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르면 도우미는 교육지원 인력으로 명칭이 바뀐다.

장애인의 예술전공 대학입학과 예술전공 장애인 대학생 지원은 지속하되,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예술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아무리 장애인에 대한 문호를 넓힌다고 해도,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방법과 과정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1~2년 동안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다. 대학에게 장애인 등 특별전형에 예술 전공학과가 참여할 때, 가능한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한다. 덧붙여 특수학교에서 예술전공과를 늘리는 경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3~4년 동안은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예술전공 장애인 학생에 적합한 지원 활동(예를 들어, 예술 도우미)을 한다. 지속적으로 예술학과에서 장애 대학생에게 문호를 더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5년차 이후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예술대학 설립을 검토한다.

다. 사업추진기관

예술계 특수학교 개교와 마찬가지로 장애 학생의 입시는 교육부 업무영역이다. 문체부는 예술 전공학과에서 장애인 충원이 많을 경우, 국립단체와 협력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장애 대학생을 위한 예술공간 및 시설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설립될 장애인 예술대학은 현재의 예술종합학교처럼 문체부의 업무 영역이다.

5-3. 장애 예술인 역량 강화(재교육) 프로그램

가. 사업개요

전문 예술인 양성을 위한 장애아동·청소년 교육과 장애 대학생 교육과 마찬가지로, 장애 예술인의 역량강화(재교육) 프로그램은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활동 중인 장애 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술 능력 고양이며, 다른 하나는 주체적인 예술가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 제고다. 현재 장문원의 비공모사업 일부에서는 단원 (재)교육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때 교육은 예

술능력 개발에 가깝지, 자기표현 및 사회참여 능력 개발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

장애 예술인(단체) 역량강화 교육은 몇 가지로 진행한다. 첫 번째는 현재 장문원 사업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분석한 다음, 별도 사업군(群)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때는 사업진행 단체의 소속원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두 번째는 교육진흥원 예술강사 대상 교육, 기존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과정에 장애 예술인(단체)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 참여를 통해 장애 예술인은 예술능력뿐 아니라 기획능력까지 갖출 수 있다. 문화예술 매개인력 과정 참여는 4장 3절의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서 언급할 내용과 같다.

세 번째는 비장애인 예술단체와 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술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앞서 언급한 '장애 예술인(단체)의 국공립단체 협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국공립단체는 아닐지라도 비장애인 예술단체와 협업을 시도할 경우, 예술정책 차원에서 비장애인 예술단체를 지원한다(장애 예술인과 장애인 예술단체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협업에 참여한다).

장애 예술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새로운 사업군[群] 형성, 비장애단체 협업)에서도 장애예술의 정체성 관련 교육내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 예술가의 정체성 관련 내용이 많지 않을 수도 그리고 교육방식이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식을 도입해볼 수 있다. 따라서 네 번째는 장애 예술인과 장애인 예술단체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논의하는 형식 도입, 곧 토론회 또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장애예술의 공론장 형성은 4장 4절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과학기술 연계', '장애인 문화예술 인식개선 사업'의 토론회와 연계하여 실행할 수 있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1~2년 동안에는 장애 예술인 역량강화(재교육) 사업군을 새로이 형성하여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장애 예술인은 예술강사 대상 교육 및 문화예술 매개자 교육에 참여하여 기획능력까지 개발한다. 3~4년 동안에는 장애인 예술단체와 장애인 시민

단체 주관 토론회(가칭 장애예술을 묻고 답하다)를 진행하고 비장애인 단체와 협업을 시도한다. 5년차 이후부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에서 관련사업을 기획 및 진행한다.

다. 사업추진기관

신규 공모사업군(群) 형성은 장문원에서, 그리고 국립기관 연계와 문화예술 매개자 교육 참여는 문체부가 국립예술단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장애 예술 관련 토론회는 민간 (장애)예술단체-연구단체-지역 장애인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장애 예술인의 예술강사 대상 교육 및 매개자 교육참여는 교육진흥원과 문체부 유관기관에서 협력한다.

6. 장애인예술계의 주변부 지원 확대

장애인 예술은 장애인 정책이나 문화예술정책에서 주변부에 있(었)다. 현재 장애인 예술의 주변부에는 청년 장애 예술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장애 예술인, 비수도권 지역의 장애 예술인(단체), 풀뿌리라고 부르는 소규모·신생 장애인 예술단체가 있다. 일부 풀뿌리 예술단체는 법인 조건이 까다로워 풀뿌리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예술의 지속 발전은 중심부(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은 받은 예술인과 단체)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단체의 역량, 비수도권 지역의 장애 예술인(단체), 그리고 단체 비소속 장애 예술인의 역량이 강화될 때 가능하다.

6-1. 청년·지역·단체 비소속 장애 예술인 지원

가. 사업개요

2017년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의 연령별 분포는 30대(38.7%)와 20대(21.8%)가 가장 많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청년 담론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도 활발히 진행된다.

장애 예술인 연령분포를 보면 청년층이 많다. 「부산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18)를 보면, 연령분포는 10대 18.0%, 20대 28.5%. 30대 10.2%, 40대 11.1% 등으로 30대 이하 청년 비율이 56.7%다.[82] 하지만 장애 예술인 지원사업에서 청년층은 선정방법 때문에 유리하지 않다. 장문원 지원사업에서 소규모 동호회 지원을 제외하면, 최근 2년 간 실적을 요구한다. 대학을 갓 졸업한 또는 관련 예술 경력이 없는 경우는 지원 자체가 안 된다. 서울문화재단의 '장애 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도 장애인 예술단체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증빙을 요구하며, 지원대상이 창작 작품 발표이기에 청년 장애 예술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덧붙여 청년 장애 예술인이 기존 장애 예술인과 활동양태가 다르기에 불리하다. 청년 장애 예술인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활동하지만 단체(협회)에 속하지 않고 개인 또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활동한다. 또한 전업으로 창작에 매진하기보다 자발성에 기반하여 취미 또는 부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주윤정 외, 2018).

예술활동을 하는 청년 장애인이 예술계로 진입하지 않는다면 장애 예술계는 재생산되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청년 장애인이 진로·직업으로 예술 분야를 선택해야 장애 예술계는 확장될 수 있다. 외국의 장애인 예술단체는 일찍이 후속세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년 장애 예술인에게 많은 지원을 한다(주윤정 외, 2018).

■ 영국의 장애예술 단체
여러 장르 및 장애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육성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youth company'라는 이름으로 미래 예술인력을 스스로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후속세대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와 조응하는 혁신이 이루어진다.

■ 미국의 케네디 공연예술센터
VSA는 아동 및 청소년, 청년 등 젊은 장애예술인을 양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장애학생을 위한 국제 미술 프로그램', '신진예술가 프로그램', '극작가 발견 프로그램', '국제 청년 솔리스트 어워드' 등 VSA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예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장애 예술인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 이들이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제공하고, 젊은 예술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도 동시에 제공한다.

청년 장애 예술인에게 불리한 현행 지원사업의 규정을 수정·보완한다. 현재 지원사업 체계에서 청년 장애인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학력·경

82) 강영심 외(2018), 「부산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부산문화재단)

력·수상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대체로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의 청년 장애 예술인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애 예술인은 비장애 예술인보다 창작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기에 청년을 만39세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리고 청년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기획 사업군(群)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문체부(유관기관)와 지자체의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에서 일종의 쿼터를 부여하도록 협의하여 '장애 청년'을 지원한다. 덧붙여 청년 장애 예술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예술 분야 인턴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청년 장애 예술인의 직접 지원이 아니라 인턴으로 활동하는 단체(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문화예술 기관(단체)에서 인턴경험은 청년 장애 예술인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장애 예술인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현재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지만, 장애인 예술단체의 지역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데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장애인 예술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인식한다. 전체 장애인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가 41.9%임을 감안하면 지역에도 잠재적 장애 예술인이 많을 것이다. 이들을 예술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장 4절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를 다루지만, 지역 거주 장애 예술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중앙단위에서는 현재의 공모사업에서 지역(비수도권 및 읍면지역) 거주 예술인에게 쿼터를 주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고, 지자체 단위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장애 예술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편, 장애인 예술지원정책은 단체 중심으로 진행되어, 혼자서 활동하는 장애 예술인은 상대적으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일부 뛰어한 실력을 지닌 장애 예술인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모든 예술이 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소속 장애 예술인에게 적합한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관련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장문원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에서 개인 장애 예술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공모사업에서 개인과 단체를 구분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

나. 단계별 사업 내용

청년 장애 예술인 관련해서는 1~2년 동안에는 지원사업에서 청년 지원사업군(群)을 형성하는 등 청년 장애 예술인 지원을 제도화한다. 3~4년 동안에는 문체부와

지자체의 청년 예술 지원사업에서 청년 장애인 쿼터제를 도입한다. 5년차에는 청년 장애 예술인 인턴제를 시행한다. 장기적으로 청년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청년 예술인이 공동으로, 그리고 청년 장애 예술인과 중장년 장애 예술인이 협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장기적 사업이 가능한 시점은 청년 장애 예술인이 더 이상 주변부에 있지 않을 때다.

비수도권·읍면 지역 거주 장애 예술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지방 거주 장애 예술인 쿼터제를 지속 실시하고(1년차), 지역의 장애인 예술 발전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 운영지원을 실시한다(3년차 이후). 단체 비소속 장애 예술인을 위해서는 공모사업에서 개인과 단체를 구분한 평가를 지속하고(2년차 이후), 단체 지원사업에서 자신의 단체가 아닌 개인 장애 예술인과 협업을 독려한다(3년차 이후).

다. 사업추진기관

청년 장애인을 위한 사업군(群) 형성은 장문원의 역할이고,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의 '장애 청년' 쿼터제는 문체부(한국예술위원회 같은 유관 기관 포함), 자자체(지역 문화재단 포함)의 역할이다. 지역 거주 장애 예술인과 단체 비소속 장애 예술인 활동을 위한 쿼터제 기준 설정은 문체부에서, 실행은 장문원에서 담당한다. 현재의 장문원 지원사업 구조 내에서 지역 거주 장애 예술인, 그리고 단체 비소속 단체 예술인에 대한 지원(일종의 쿼터제)을 실시한다. 이것은 문체부와 장문원이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여 진행한다.

6-2. 풀뿌리·지역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가. 사업개요

장애인 예술단체 총수는 파악하기 어려운데, 장문원 공모사업으로 추산해볼 수 있다. 2019년 장문원 공모사업 지원(선정) 예술인·단체는 510개(185개)이다. 비장애 예술인·단체가 119개(28개), 장애 예술인·단체가 391개(157개)다. 공모사업에 지원한 장애 예술인·단체 391개가 전문 예술인(단체)인지는 알 수 없다. 선정된

157개는 적어도 전문 예술인(단체)으로 볼 수 있다. 선정된 157개는 예술인과 단체로 구분되기에 풀뿌리단체는 적어도 100개는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소 100개가 넘는 예술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장문원, 한국예술위원회, 일부 지자체와 문화재단이다. 장문원 공모사업에 참여하는데, 장문원 사업비 예산에서 공모사업 비중은 41.4%(5,550백만원)로 비공모사업(41.8%)과 거의 차이가 없다. 지원금액은 최고액이 국제교류지원의 50백만원이며, 1개 사업당 평균 지원액은 30백만원 정도다. 일부 단체는 이밖에 예술위원회(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음), 지자체(장애인 대상), 문화재단(장애인 대상)의 사업에 참여한다.

풀뿌리 장애인 예술단체는 대규모 단체에 비해 몇 가지 강점이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상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가 가능하다. 현장에서 보면 서울에서도 풀뿌리단체는 참여자가 구(區)단위를 넘지 않는데 반해, 대규모단체는 서울과 수도권을 포괄한다. 풀뿌리단체는 장애예술의 지역화 및 일상화에 유리한 조건이 있다. 지역화, 일상화, 실험성,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풀뿌리 단체의 지원체계 개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장애 예술인 지원에서 언급한 것처럼 풀뿌리단체를 위한 별도의 기획 사업군(群)을 형성할 수 있다. 현재 공모사업에서 신규단체와 소규모 단체만이 참여가능한 사업군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업군 형성이 어렵다면 현재의 공모사업 예산을 늘리고 일종의 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다. 신규와 소규모의 기준은 장애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다만 신생·소규모 장애인 예술단체 선정에서 주요기준은 활동경력이나 조직현황이 아니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참신성이어야 한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통해 사업능력을 제고한다. 현재 모니터링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비공모사업 수행단체와 공동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비공모사업 진행절차의 변경을 전제한다. 일부 비공모사업을 대규모단체와 소규모단체의 컨소시엄을 조건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비공모를 유지하되 사업 일부를 소규모단체와 함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두 가지 모두 비공모사업를 지속해 온 단체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셋째, 지자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장문원에서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을 광역시의 문화재단과 함께 진행된다. 지역 장애 문화예술 공간 마련, 지역 내 창작지원 등의 사업이다. 풀뿌리단체 지원은 광역단위가 아니라 기초단

위에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문원과 기초지자체과 협력하여 풀뿌리단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작업공간 지원은 앞서 언급한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창작활동 지원은 '장애 예술인(단체)와 국공립단체 협업'과 연계할 수 있다.

한편, '청년·지역·단체 비소속 장애 예술인 지원'에서 비수도권·읍면지역 장애 예술인 지원을 언급한 것처럼 지역 쿼터제를 실시하여 지역 장애인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꾀한다.

나. 단계별 사업 내용

1~2년 동안에는 풀뿌리단체 지원 사업군(群) 형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비공모사업의 일부 변경(풀뿌리단체와 협력)을 논의한다. 3~4년 동안에는 기존단체와 풀뿌리단체의 협력 비공모사업을 진행한다. 기초지자체 연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5년차 이후 장기적으로는 공모·비공모사업 사업구조 전반을 재구성한다. 한편, 비수도권·읍면지역 장애인 예술단체 쿼터제(1년차 이후)와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 운영지원을 실시한다(3년차 이후).

다. 사업추진기관

공모사업 내 사업군(群) 형성과 평가기준 조성은 문체부의 역할이다. 비공모사업에서 기존단체와 풀뿌리단체의 협력은 장애인 예술단체를 포함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기초지자체 협력사업에서는 지역 내 문화재단은 물론 장애인복지관 등도 참여한다. 비수도권·읍면지역의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은 문체부와 장문원의 역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단위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7. 세부사업: 요약 및 관계자 의견

가. 세부사업 요약

〈표 4-2〉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 세부과제: 주요내용

세부사업	주요 내용
1. 장애 예술인 일자리 창출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의 장애 예술인 고용: 예술단체 내 장애 예술인(객원→정단원) 고용, 국공립 문화시설 내 장애 예술인 고용(기획자 역할)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사회적 기업 유도 및 별도의 공모사업 실시 민간 예술단체 장애 예술인 고용: 공모사업 진행 시, 가점 부여 비문화 공공영역 내 장애 예술인 고용: 예술강사 지원사업 내 장애인 강사 쿼터제,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및 공공시설 내 장애 예술인 고용, 도시재생사업 내 장애 예술인 참여 비문화 민간영역 내 장애 예술인 고용: 대규모사업장 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작업장제도, 장애 예술인의 일반사업체 고용 소개 현실적으로 복지부 일자리 사업 연계: 장애인일자리사업 내 문화예술 직무개발, 특화형 일자리 개발 장기적으로는 국립 또는 공립 장애인 예술단 설립 검토할 수 있음
2. 장애 예술시장 및 마케팅 지원	공공 문화시설 쿼터제 장애인 아트마켓 공공에서 구매하여 공공기관 대여(기증) 국·공립 장애인 예술단 구성 및 활동 지원 장애인 예술작품 아카이빙 장애 예술인(단체) 마케팅 능력 컨설팅 장애인 예술작품 시장 온라인플랫폼 장애인 예술 범주를 문화산업으로 확장 한국메세나협의회 협력 장기적으로 국립 및 공립 장애인 예술단 설립 검토
3.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	
3-1. 장애 예술인 전용(대표) 문화공간 건립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신규건립을 목표로 진행(리모델링 및 대여까지 고려함) 기준: 공연예술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 예술장르 포괄, 장애인 예술진흥의 상징성, 향후 지역 내 관련시설의 모델, 공간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 공간 개념을 넘어서 작품(행사) 기획까지 포괄, 장애인 예술작품 오프라인 아카이브 역할 담당, 이음센터과 공존
3-2. 장애 예술인의 문화시설 및 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광역단위 문화시설 중 2개 이상 리모델링 → 모든 광역지자체에 장애인 대표 문화공간 지정

세부사업	주요 내용
3-3.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	기초단위에서 진행 구지역-시지역-군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작업공간 건립(장르, 유형고려) → 장애 예술인 종합시설 건립
4. 장애 예술인(단체) 전문성 심화	
4-1. 장애 예술인 전문공연단체 육성	공연단체 특화 성과지표를 통한 분석 비공모사업 단체 차등지원: 평가 강화 및 다년지원 공모사업 특화지원: 예산 증액(40백만원→100백만원) 공모-비공모사업 틀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공모사업 검토 간접지원 중심(타 사업 참여 유선 선발)
4-2. 장애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비)장애인 기존 레지던시 참여(탈장르 실현) 문화시설별 레지던시(미술관, 공연장, 문예회관, 문학관) 공모사업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거주시설 레지던시(숙박 가능 레지던시, 레지던트는 예술강사 역할) 장애 예술인 레지던시 전용공간 설립
4-3. 장애 예술인(단체)과 국·공립기관(단체) 협업	국립단체 및 유명 예술가 모집선정 참여단체 선정(우수단체 인센티브: 수상작품 심화 1년, 희망단체 추첨제: 기존 작품 중심 1년, 국립기관의 기획공모) 공동창작 및 멘토링
5. 장애 예술인 교육체계 구축	
5-1. 장애 아동·청소년 전문교육	교육부의 특성화 특수학교(부산대 부설, 공주대 부설) 협력: 전문강사 풀, 국립 예술계중고교 사례 제공 특수학교: 공모사업 '문화예술 특화교실': 주 2회 1년 → 광역단위 '문화예술 특화교실' 특수학급/일반학급: 예술강사 지원사업 단년에서 다년 시행, 일부학생 광역단위 '문화예술 특화교실' 참여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처럼 공모사업, 특수학급(일반학급)처럼 예술강사 지원 다년사업, 의향자 광역단위 '문화예술 특화교실' 참여
5-2. 예술전공 장애 대학생 지원	특수학교 예술전공 전공과(2년제) 증대: 간접지원 대학 예술전공학과 특별전형 확대: 국립예술단체 협력, 외국장애단체 협업 같은 인센티브 제공 대학생 예술활동 지원: 편의시설 설치, 예술 교육지원인력(도우미), 예술도우미 관련 예산지원 장기적으로 장애인 예술대학 설립 검토
5-3. 장애 예술인 역량 강화(재교육) 프로그램	예술역량 강화 장문원 내 역량강화 사업군(群)신설 장애 예술인의 예술강사 대상 교육 및 문화 매개자 교육 참여 비장애인 예술단체 협력: 국공립기관 협력과 유사 장애인 예술정체성 고양: 교육 사업이 아니라 토론회 및 포럼 형식(장기적으로 지역단위에서 교육사업 진행)

세부사업	주요 내용
6. 장애인예술계의 주변부 지원 확대	
6-1. 청년·지역·단체 비소속 장애 예술인 지원	장문원 지원사업 규정 개선 청년 장애인 지원사업 신설: 청년 연령은 만39세까지 타 기관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 내 장애인 쿼터제 청년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기관 인턴제 지역거주(비수도권, 읍면지역) 장애 예술인, 단체 비소속 장애 예술인 쿼터제 지역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 진행
6-2. 풀뿌리·지역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장문원 풀뿌리 단체 지원사업 신설 또는 쿼터제: 사회계획의 참신성 위주로 선정, 비선정 단체 대상 컨설팅 비공모사업 수행단체(대규모 단체)와 공동작업 지자체 공동사업 진행 대규모단체-풀뿌리 단체 컨소시엄의 공모사업 비공모사업 유지하되, 지원 조건에 협력 포함 비수도권·읍면지역의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지역 쿼터제)

나. 세부사업에 대한 관계자 의견[83)]

1) 장문원 사업 참여 예술인(단체): 장애 예술인 공간 필요성

4장 2절의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에서 제시한 세부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한 의견은 이렇다.

사업 중요도에 대한 긍정 답변(%)은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 및 확대'(95.9%), '장애 예술인 일자리 개발'(95.9%), '청년 장애 예술인 창작 및 발표기회 확대'(95.9%)가 가장 높았다. 중요도를 평균(점)으로 비교해도 '장애 예술인 일자리 개발'(4.78점)이 가장 높았다. 비교적 긍정 정도가 낮은 사업은 '풀뿌리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확대'(84.9%)였다.

83)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인식조사는 세부사업을 확정짓기 전에, 곧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을 질문했기에, 보고서에 제시된 세부사업 이름과 약간 다르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는 '장애 예술인의 문화시설 및 예술활동 접근성 제고'(세부사업)인데, 설문조사시에는 '문화시설 내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편의성 제고'였다. 이점은 3절과 4절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림 4-3]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 세부사업 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N=73, 단위: %(긍정답변), 점(5점 만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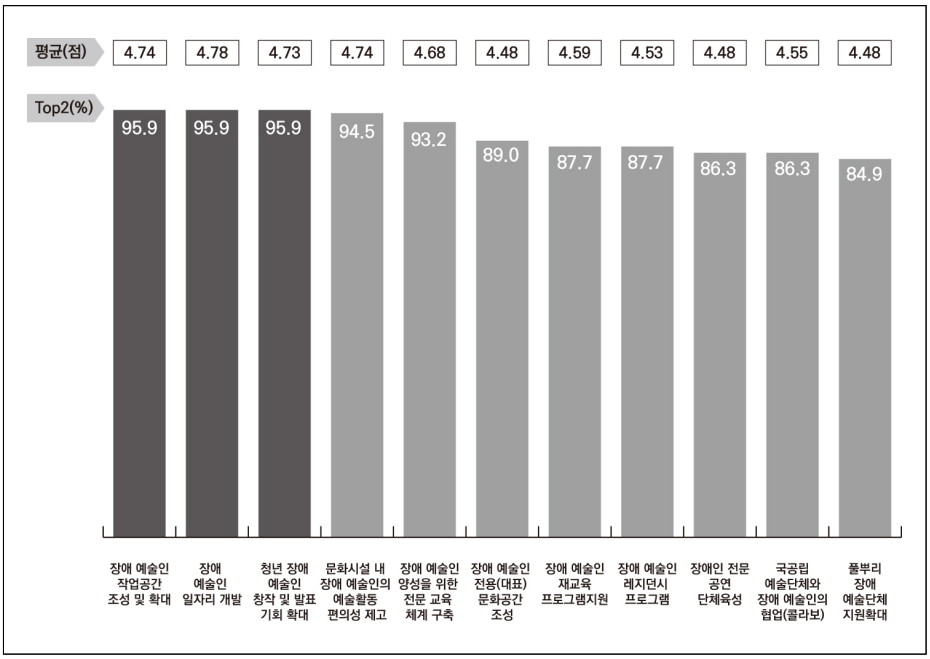

사업 시급성에 대한 긍정 답변(%)은 '문화시설 내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편의성 제고'(97.3%),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 및 확대'(95.9%), '장애 예술인 일자리 개발'(94.5%), '청년 장애 예술인 창작 및 발표기회 확대'(93.2%)에서 많았다. 한편, 긍정 답변이 낮은 세부 사업은 '풀뿌리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확대'(82.1%), '장애 예술인 전용(대표) 문화공간 조성'(83.6%)이었다.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한 의견을 비교해보면,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한 평가가 유사했다. 곧, '문화시설 내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편의성 제고',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 및 확대', '장애 예술인 일자리 개발', '청년 장애 예술인 창작 및 발표기회 확대'가 중요하면서 시급한 사업으로 인식했다.

결국, 장애 예술인에게 적합한 문화공간, 장애 예술인의 작업공간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반면에 장애 예술인 전용(대표)문화공간에 대한 호응(시급성)은 많지 않았다. 이것은 대표 공간 하나가 자신의 예술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청년 장애 예술인 지원은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풀뿌

리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은 상대적으로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인식한다. 조사 대상자가 이미 공모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많기에, 자신을 풀뿌리 단체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인식하여, 고용문제가 장애인예술계에서도 현재적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 세부사업(중요도와 시급성):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N=73, 단위: %(긍정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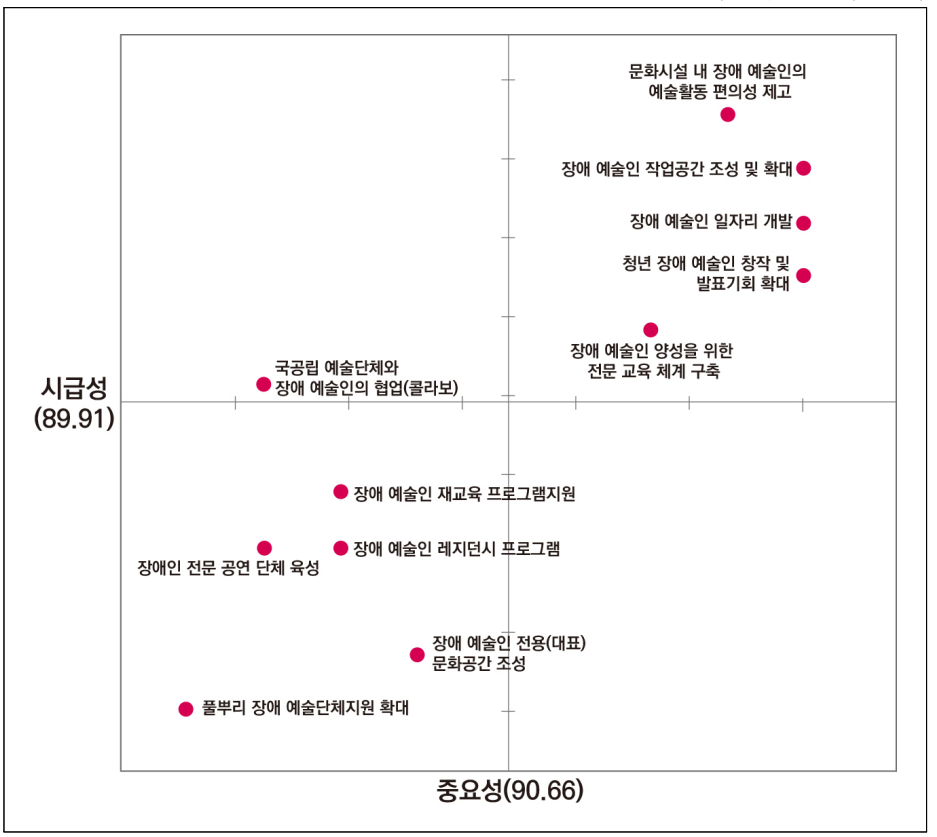

2)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전문 교육체계의 필요성

사업 중요도에 대한 긍정 답변(%)은 '장애 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체계 구축'(90.0%), '문화시설 내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편의성 제고'(88.8%), '청년 장애 예술인 창작 및 발표기회 확대'(88.8%)에서 많았다. 반면에 '풀뿌리 장애인 예술

단체 지원 확대'(72.5%), '장애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72.5%)에서 긍정 답변이 적었다.

한편, 사업 중요성에 대한 장애인복지관 담당자의 의견과 장문원 사업 관계자 의견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문화시설 내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편의성'과 '청년 장애 예술인 지원'이 중요하고, '풀뿌리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차이점은 장애인복지관 담당자는 '전문 장애 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관 현장에서 보면 전문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항목에서 복지관 담당자의 긍정 비율이 낮다. 사회복지사가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곧 장애 예술관계자보다 장애인 예술정책에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직업과 전문분야에서 보면 자연스런 결과다.

[그림 4-5]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 세부사업(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vs. 장애인복지관 담당자(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N=73, 80, 단위: %(긍정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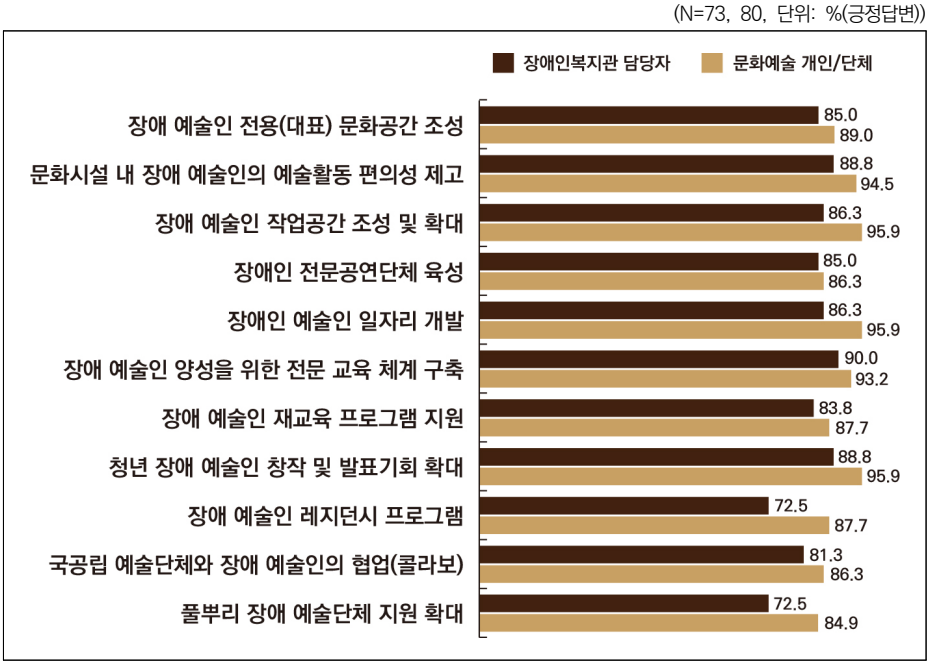

제3절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활성화

1. 장애인 문화예술바우처 도입 및 확대

가. 사업개요

문화예술 향유 활성화를 위한 대표 문화정책 사업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9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예술관람(공연·영화·전시), 여행, 프로스포츠 관람(축구·농구·야구·배구)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 수준에 따라 지원되기에, 모든 장애인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내 장애인(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가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정책의 첫 번째 기준이 경제수준이란 점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4.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하지만 장애인 예술향유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검토·고려할 점이 있다. 첫째, 6세 미만 장애 아동은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장애인에 한정되지 않고 저소득층(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대상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다. 다만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많음을 고려하면 장애인에게 연령 제한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현재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장애아동에게는 불편한 점이다. 둘째,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의 걸림돌이 경제적 어려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문화예술 관람에서 중요한 변수는 경제력이다. 관람의 가장 어려운 점은 비용(2014년 36.8%, 2017년 36.5%)이고, 관람 결정의 중요한 기준 역시 비용의 적절성(2014년 27.7%, 2017년 26.6%; 2017 장애인 실태조사)이다. 이것은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장애인의 문화활동은 비장애인과 구분되는 다른 점이 고려돼야 한다. 문화·여가활동 불만족 이유가 '건강과 체력 부족(29.4%)'과 '경제적 부담'(28.0%)(2017 장애인 실태조사)인 데서 보듯이 장애인을 경제수준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셋째, 통합문화이용권은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장애인 문화예술향유는 경제적 지원(통합문화이용권)이 있더라도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장애인 예술향유의 특성인 ① 장애아동의 문화예술교육 수요, ② 경제수준이 아닌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③ 장애인의 문화시설(행사)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하면, 현재의 통합문화이용권은 장애인 맞춤형 문화예술바우처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점을 고려하면 몇 가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문화예술향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부모이든 활동보조인이든)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장애아동을 포함해서 모든 장애인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을 '찾아가는' 또는 '모셔오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또는 장애인 교육 지원사업에서 이미 실현하고 있는(실현했던) 것이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는 부모와 장애아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평생교육바우처(19세 이상 저소득층 8,000여명에게 최대 35만원을 지원하여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와 스포츠강좌이용권(5세~18세 저소득층에게 월 8만원 스포츠강좌 지원, 연간 약 8개월 지원) 등은 장애인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교육 바우처 역할을 한다.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의 5개 주관기관에는 지역 장애인단체가 포함됐고, 2010년대 중반에는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찾아가는, 모셔

오는)이 있었다.

현재의 통합문화이용권과 결합된, 새로운 바우처(장애인 문화예술바우처) 사업을 실행한다.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저소득층이 아닌 장애인, 4~5세 장애인 포함)에게 통합문화이용권 금액(2020년 9만원, 2021년 10만원)의 장애인 문화예술바우처를 지급한다. 현재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인 장애인에게는 지원금액의 50%를 문화예술바우처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2021년 기준으로 모든 장애인은 15만원, 또는 10만원의 문화예술바우처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에서 장애인 문화예술바우처를 별도 운영하도록 한다. 장애인 스스로 문화시설을 찾아가(또는 온라인으로) 장애인 문화예술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역주관처는 예전의 기획사업처럼 특정 문화행사에 장애인을 '모셔가는' 서비스를 재개하고, 지역복지관 및 문화시설과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현재의 통합문화이용권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와 예술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 맞춤형 문화예술바우처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1~2년 동안은 문화누리카드 비대상 장애인이 문화예술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과 연계하되 장애인 문화예술바우처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모셔가는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사용처 확대) 역점을 둔다. 3~4년 동안은 현재 통합문화이용권 대상 장애인의 지원액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둔다(기준연도 대비 1.5배). 5년차 이후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바우처 지원액 증액을 위해 노력한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바우처를 장애인 사회서비스 내 운영할지 아니면 독립운영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 사업추진기관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연계되므로 실행체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전에 시행됐으나 중단된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을 장애인에 한정해 재개하기 위해서는 복권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 문체부가 복권위원회

와 협의할 사안이다. 한편, 사업 진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원확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복권기금인데,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와 장애인 대상 증액을 위해서는 문체부-복권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하다.

2.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가. 사업개요

문화예술 매개 전문인력은 예술가와 향유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 예술 매개인력은 예술가와 향유자 가운데 장애인이 포함됐을 때 활동한다. 장애 예술인-장애인 관객, 장애 예술인-비장애인 관객, 비장애 예술인-장애인 관객, 장애 예술인-장애인 관객 사이에서 창작자와 향유자를 모두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 장애인 예술 매개인력은 예술강사와 기획·홍보 전문가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전문강사 부족이다. 장애인 예술단체는 기획·홍보 인력이 부족하여 관객을 모으지 못한다.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 예술행사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참여할 기회를 놓친다. 장애인 예술 향유와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개인력이 많고 전문성이 높아야 한다.

지금까지 장애인 예술 매개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거의 활성화되지 못했다. 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대상 교육(장애인, 장애인 예술 이해)이 제도화된 사례이다. 한편, 장애인 대상 예술강사가 아닌 장애인 예술 매개자 양성은 충북문화재단이 2019년부터 장문원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예술 매개자 양성 과정'이 눈에 띈다. 참여모집 대상이 장애인 유관기관 종사자, 문화기획자,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 활동 의향자다.

2019 충북 장애인 예술매개자 양성과정: 〈렛잇비: Let it be〉

- 특강, 이론과정, 멘토과정, 현장탐방, 실천연구 등의 과정으로 구성
- 참여자는 장애인 예술 관계자·경험자, 문화기획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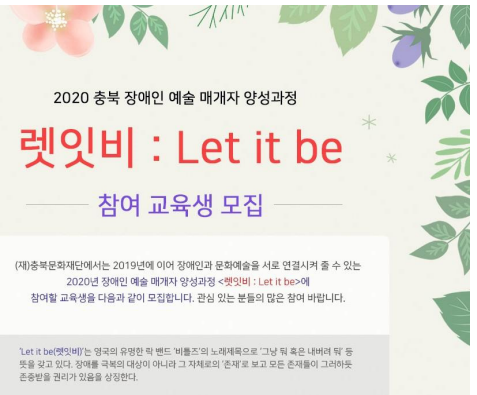

자료: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cbfc.or.kr/

장애인 예술교육 전문강사 양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첫째, 교육진흥원이 신규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 이해교육의 시간 수 확대, 기존 예술강사를 위한 심화과정 개설 등이 필요하다. 교육진흥원에서는 특수학교(급)와 복지관 담당자 대상 문화예술 이해교육을 의무화한다. 둘째, 국가공인 자격인 '문화

예술교육사',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 '장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장애예술에 대한 내용'을 새로 포함시키거나 추가한다.

장애인 예술의 기획·홍보 인력 양성 역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① 하나는 기존의 예술매개인력 양성과정에 장애 예술인(단체)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2절에서 제시한 사업, 곧 '장애 예술인 역량 강화(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② 다른 하나는 장문원-장애인 예술단체-예술경영지원센터과 협력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전자는 장애인예술계 종사자들이 예술경영의 일반적 지식을 쌓는 거라면, 후자는 장애인 예술에 관심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그리고 장애인 예술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는 것이다. 한편, 후자는 교육과정을 기초-중급-심화 과정으로 구성하여 단계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며, 심화과정을 이수한 다음에는 실무경험을 제도화한다. 일종의 인턴십으로 장애인 예술단체와 장애인 예술정책사업 기관에서 몇 개월 동안 관련 실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1~2년 동안은 예술강사 및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대상 교육 의무화 및 확대(강사의 장애인 이해교육, 학교와 복지관 담당자의 장애인 예술 이해교육)를 시행한다. 덧붙여 문화예술 매개자교육에 장애 예술인(단체)이 참여하도록 한다.

3~4년 동안은 문화예술교육사·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서 장애인 (예술)관련 교육 실시, 장문원-장애인 예술단체-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기획·홍보·마케팅 인력 교육을 실시한다. 5년차 이후부터 두 가지 작업을 실시한다. 하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의 일자리 창출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 예술인 매개인력 교육 전담부서 설치 검토다. 전담부서는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문화예술 공공기관 내 하나의 부서로 설치한다.

다. 사업추진기관

예술강사 및 장애인복지관-학교 담당자 대상 교육은 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교육청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이 협력한다.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과정 내 장

애 예술인(단체) 참여는 문체부가 유관기관과 협의한다. 기획·홍보인력 교육은 장문원-장애인 예술단체-예술경영지원센터의 협력으로 진행한다. 교육 전담부서는 문화예술 공공기관 내에 설치한다.

3. 참여형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확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은 현재보다 실제적이어야 한다. 장애인이 주체로서 참여하기 그리고 장애인의 감각 활용하기가 필요하다. 이것은 두 가지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와 '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된다.

3-1.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가. 사업개요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는 지역문화재단 또는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조직·육성된다. 지역문화재단은 장문원과 관련 사업을 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예술교육 참여자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동호회가 형성되기도 한다. 학령기 장애인의 동아리 활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학교나 복지관이나 동일한 교육을 몇 년씩 참여하면서 동호회로 발전하는 게 일반적 형태다.

장문원은 공모사업으로 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015년에는 35개 단체가 신청하여 24개가 지원됐다(선정률 26%). 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리고 사업결과 발표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동호회가 많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떤 동호회의 활동은 강사초빙교육-발표회 중심이다. 이점에서 보면 교육진흥원의 장애인복지관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동호회 지원사업은 동호회에서 시작하여 예술단체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계속돼야 한다. 다만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에서 전제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지역단위(기초 또는 광역)에서 동호회 간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장애인 동호회만으로 구성하지 않고, 되도록 장애인 동호회와 비장애인 동호회가 모두 참여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공동 예술행사를 진행하도록 독려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는 간접지원이 효과적이다.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정책에서 자주 제안된 것처럼 공간 및 시설, 전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 장애인 예술단체도 작업공간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동호회에 배타적 공간 제공은 어렵다. 4장 2절에서 언급한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을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에도 개방해야 한다. 네트워크(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지역 내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는 앞서 언급한 '장애인 예술 매개인력'이 기획 및 홍보 업무를 지원한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첫해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지원 기준을 재조정하여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전제조건으로 설정한다. 2~4년 동안은 변경된 선정 기준에 따라 동호회를 선정하고, 네트워크 활동 시에는 '장애인 예술 매개인력'을 파견하여 도움을 주도록 한다. 그리고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년차 이후 또는 장기적으로는 동호회 가운데 전문단체로 전환하려는 동호회가 있을 경우, '장애인 예술 매개인력'이 1년 정도 기획 및 행정업무에 참여한다.

다. 사업추진기관

현재 동호회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장문원과 지자체가 관련사업을 진행한다. 공간 공유에서는 지자체와 지자체 공공문화시설이,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장애인 예술단체와 지역 내 (비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가 협력한다. '장애인 예술 매개인력' 활용 예산은 문체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

3-2.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가. 사업개요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는 대체로 관람에 한정된다. 공연, 전시, 영화, 행사 관람이 주된 향유양태인데 이것은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예술향유에서 최근에는 체험

형 프로그램 참여를 강조하는데, 문화예술 체험형 공간(온라인, 오프라인)을 구축하고, 장애인이 참여하는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 장애인 체험형 문화예술기관은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실행한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만져보는 문화재', 서울역사박물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작품 설명', 국립극단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있는 3D 연극 상영관'을 운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 체험형이란 장애인의 작품 감상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뒤에서 살펴볼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확대: 장애 친화적 문화시설 조성'과도 연계된다. 체험형 프로그램은 가능하다면 온라인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돼야 한다. 국공립시설은 서울 중심이기에, 비서울 지역,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물리적 접근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되 지역순회 형태, 또는 모셔오는 프로그램을 통해 비서울과 비수도권 거주 장애인의 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지역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공연관람이라면 공연 전·후로 장애인이 무대에 올라 '공연 따라하기', 미술관이라면 실물과 유사한 모조작품을 손으로 만져보고 실제 '만들어보기'를 하는 것이다. 공공문화시설이나 민간시설 모두 이 같은 실감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적어도 광역지자체 내에서는 2~3개의 장애인 실감형 문화공간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한편,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한 다음 '장애인 문화예술 종합체험관'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첫해에는 장애인의 작품관람 접근성,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실태를 파악한다. 2년차에는 국공립 문화기관의 장애인 작품관람 접근성 제고 콘텐츠를 오프라인(온라인)에서 시범 시행한다. 3~4년차에는 장르별로 1개 이상의 국공립기관에서 장애인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순회 또는 모셔오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지역문화시설)에서 장애인이 실감할 수 있는 사업(무대에 올라 공연따라하기 같은)을 진행한다. 5년차 이후에는 광역지자체 내 장애인 문화예술 실감 공간을 2~3개 운영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 종합체험관을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

다. 사업추진기관

국공립기관의 콘텐츠 개발은 문체부와 유관기관이 담당한다. 지역 단위의 장애인 실감형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지만 지자체와 예산을 분담한다. 모셔오는 또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장애인 문화예술바우처'를 활용하기에 한국예술위원회-지역 주관처와 협력이 필요하다. 장기적 검토사항인 '장애인 문화예술 종합체험관'은 비서울지역에 건립하기에 지자체와 협의한다.

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재구조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에 두려움 없이 참여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그리고 삶을 즐겁게 해주는 교육으로 나뉜다. 전자는 4장 2절의 '장애 예술인 교육체계 구축' 사업방안에서 다뤘고 이제는 후자의 과제를 제시한다. 특수학교(급)-장애인복지관 예술교육 개선이 하나이고,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 개선이 다른 하나다.

4-1. 특수학교(급)-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개선

가. 사업개요

장애인복지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진흥원의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이다. 자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약 30% 정도이며, 복지관에서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설 목적은 장애 정체성의 표현이나 삶의질 제고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여가생활, 재활과 치료인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들이 생각하는 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 강사의 부족이다. 최근 장애인예술계의 흐름을 감안하면 장애 정체성을 표현하는 예술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강사 풀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복지관 내

문화예술교육보다 수준이 높고, 교육환경이 좋은 편이다. 2019년 기준으로 209개 복지관에서 406개 수업반(班)이 개설돼, 193명 강사와 3,670명 수강생이 참여했다(2019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84] 전체 장애인복지관의 약 86%가 참여한 데서 보듯이 교육진흥원 사업에 대한 호응은 좋은 편이다. 복지관 내 자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강사의 전문성 확대가 그리고 복지관 담당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덧붙여 장애인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참여자 가운데 비중이 높은 발달장애인, 초등생,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 수준을 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 정도로 끌어 올린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목표 설정과 강사 풀 확보 등에서 복지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다. 현재처럼 흥미로운 여가생활도 가능하지만, 장애의 표현이란 측면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강사의 전문성이 제고돼야 한다. 이때 강사의 전문성은 예술능력이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한다. 설문조사에서도 복지관 담당자는 강사의 문화예술 전문성(12.5%)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37.5%)가 훨씬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넷째, 복지관 담당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교육진흥원 사업에서 보듯이, 복지관 담당자와 예술강사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강사뿐 아니라 복지관 담당자의 전문성이 높아야 한다. 다섯째, 장애유형과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이 같은 다섯 가지 개선사항을 요약하자면 장애인 예술 매개인력의 전문성 제고다. 덧붙여 장애인복지관 예술강사 가운데 장애인 강사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관 예술강사 가운데 장애인 강사는 5명으로 전체 강사의 3%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수학교(급)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 학생은 비로소 문화예술을 접하게 된다. 2장 2절의 초점집단면담 결과에서 보듯이, 학교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특수학교(급)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정규교과와 방과후학교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교육진흥원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수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학교 정

84) 2020년 계획 기준으로 277개 복지관, 367개 반(班), 강사는 172명이다.

규교과는 문화예술교사보다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방과후학교는 외부강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수교사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는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 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비교적 예술강사의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이때 전문성은 예술교육의 전문성이지 장애인 예술교육의 전문성까지는 아니다.

따라서 특수학교(급)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예술교사(강사)의 참여확대, 예술교사의 장애 이해도 제고, 그리고 특수교사의 문화예술의 이해도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 전문성 제고는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에서 언급된 바와 같다. 덧붙여 특수학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1%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강사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복지관 문화예술교육이든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이든 4장 2절의 '장애 아동·청소년 전문교육'에서 언급한 바와 '문화예술 특화교실'을 통한 전문예술인 육성이외에도 1인 1기, 지역문화시설 활용 체험교육을 등을 실시한다. 1인 1기는 예술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지니게 하며, 지역문화시설 활용 체험교육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 감상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에서 대상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교육을 통해 예술을 즐기는 게 중요하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복지관 예술교육 강화를 위해서 1~2년 동안은 복지관 자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향상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교육진흥원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이 협력하여 강사풀을 만들고 이를 활용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사의 장애 이해교육, 복지관 담당자의 장애인 예술이해 교육의 의무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 3~4년차에는 복지관 내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프로그램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실행한다(전문예술인 양성 과정, 장애 정체성 표현 과정, 예술감상 교육 과정 등).

특수학교 예술교육 강화의 단계별 사업은 복지관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 1~2년 동안은 예술교사(강사)의 장애 이해교육, 특수교사의 장애인 예술이해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3~4년차에는 복지관 문화예술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눠 실행한다. 한편, 장애인복지관이든 특수학교이든, 장애 예술인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 특화교실'은 3~4년차부터 수행한다(4장 2절 참조). 5년차 이후에는 그때까지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의 심화를 위해 노력한다.

다. 사업추진기관

예술강사교육은 복지관 자체 교육강사, 특수학교 교사를 포함해서 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한다. 복지관 담당자 및 특수교사 교육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특수학교와 협력하여 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다. 한편, 감상교육은 교육진흥원이 지역 내 문화시설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4-2.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확대·개선

가. 사업개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일부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있다. 전자는 특수학교와 복지관 자체 그리고 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이다. 후자는 장문원의 비공모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장애인 문화아카데미,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 영화제 등)이다. 이 같은 사업들은 주관단체가 강사진을 꾸려서 지역 단위에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형태인데,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관의 문화예술교육과 차별성을 지니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관은 학생과 복지관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면, 비공모사업의 교육은 교육을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두 가지 사업 모두 특수학교·복지관·특정 교육장소에서 교육한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곧, 어느 정도 이동성이 확보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향유(교육)에서 비어 있는 공간(집단)은 장애인 거주시설(생활자)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장애영유아생활시설·장애인단기보호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을 말한다. 이 같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과 특수학교 이용자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이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장애인, 곧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자까지를 포괄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역뿐 아니라 장애인 간 차이에 따른 문화예술향유(교육) 기회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예술교육 체계에서 시설 생활자를 찾아가는 교육은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보육원) 교육이 있다.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현재와 같은 체계뿐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의 전문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현재 찾아가는 교육은 교육 의향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거주시설 생활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욕구는 적극적 의향에서부터 무관심까지 다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자의 특성을 이해하여 지금과는 다른 교육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예술감상 교육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 예술감상 교육은 1회성 관람(향유)이 아니라 거주시설 장애인이 향후 지속적으로 예술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비공모사업 참여단체의 1회성 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는 1회성 공연(신나는 예술여행)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이것은 강사의 전문성 제고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교육진흥원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주체가 되어, 현재 프로그램을 수행 중인(향후 수행하고자 하는) 예술단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곧,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개선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미한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1~2년 동안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거주시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이 기간에는 장문원에서 실시하는 기존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 실시한다. 3~4년 동안은 거주시설 유형에 맞춰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5년차 이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통합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다. 사업추진기관

특수학교·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대표사업이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문화예술교육 역시 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수학교·장애인복지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시설의 생활자이므로, 교육진흥원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장문원,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5.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 친화적 문화시설 조성

가. 사업개요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대는 장애인이 문화생활을 하는 데 전제 조건이다. 〈장애인등편의법〉이 도입 이후 문화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문화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구비)는 다른 시설과 비교하여 평균 정도다.[85] 하지만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는 설치 기준은 최저 기준이기에 장애인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접근성의 제약을 받는다. 편의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구분되며,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의 시설접근을 위한 최소기준이다.[86]

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는 공원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특화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 BF 인증)를 운영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도서관·공연장 및 관람장·집회장·전시장·동(식)물원[87]

---

85) 문화 및 집회시설로 구분(표기)된다.

86)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http://www.welfarenews.net 참조
- 매개시설: 건축물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를 포함한 공간
-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포함한 내부 공간
- 위생시설: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등
-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등
- 기타시설: 객실 및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87)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된다.

은 2019년 7월 2일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이다. 2017년 말 기준 전국 1,874개 문화기반시설 중 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2.1%(39개소)다(문화체육관광부, 2019a).

참고로 BF 인증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9)이 제시한 BF 인증 사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세부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예를 들어, 레버형 손잡이·경사로, 단을 없앤 이동로, 무대·오해없는 안내도 등이 그것이다. 또한 BF인증은 편의시설에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공연장은 출입구나 탈출구에 가까운 곳에 좌석을 2곳 분산 배치하면 최우수, 1곳이 있으면 우수로 구분된다.

〈표 4-3〉 시설유형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 건)

전체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39	24	8	2	2	2	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현황통계 분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BF 인증)

〈장애인편의법등〉의 설치 기준(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보다 범주와 항목이 자세하다. 예를 들어, 내부시설 복도의 경우, 유효폭(3점), 단차(3점), 바닥마감(2점), 보행장해물(2점), 연속손잡이(2점) 등으로 구성된다. 인증을 신청한 소유자 등은 인증기관에 인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인증이 결정되면 인증명판 등을 발급받아 홍보에 활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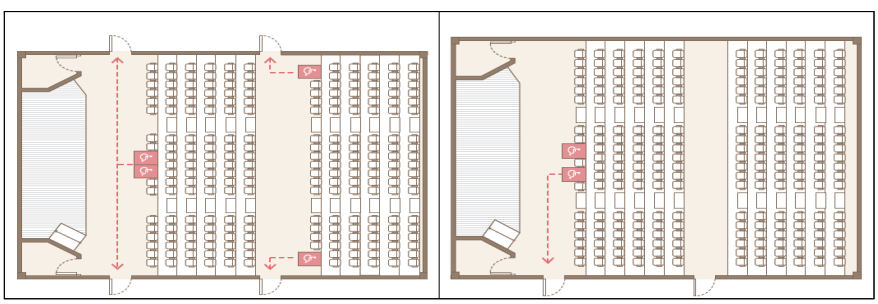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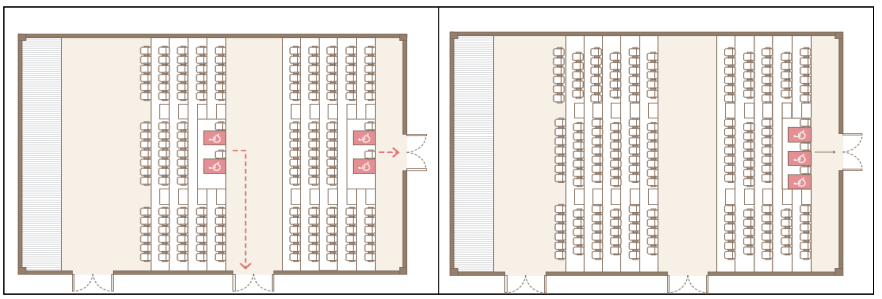

(a) 최우수: 2곳 분산 배치 (b) 우수: 1곳 설치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BF 인증을 위한 상세표준도(공연장)

(a) 점자 표시된 무인발급기 (b) 측면 점자표지판 설치된 레버형 손잡이

(c) 문폭크기의 점형블록과 자동출입문 (d) 휠체어 접근이 가능토록 낮은 무대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BF 인증 우수 사례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제고는, 문화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시설과 환경에 적용된다. 하지만 문화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은 장애인이 예술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BF 인증을 넘어선다. 장문원 사업 진행 시, 참여 단체는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시설 접근성과 작품 접근성을 기재해야 한다. 시설 접근성의 기타 관람 보조장치(진동스피커, 스마트캡션 안경 등), 작품 접근성의 항목들(터치투어, 수어지원, 점자안내서 등)은 BF인증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항목들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온전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는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작품관람 접근성을 갖춰야 한다. 2절에서 장애 예술인의 접근성을 물리적 접근성, 작품활동 접근성, 그리고 정보 접근성으로 구분했는데, 예술 향유에서는 작품활동 접근성이 작품관람 접근성으로 대치된다.

장문원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 양식에서 '작품 접근성'이라고 표현된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예술행사에 참여한 장애인이 온전한 예술향유를 할 수 없다. 현재의 결과보고서 양식의 '작품 접근성'은 장애유형별로 훨씬 다양해져야 한다. 문화시설 BF인증(물리적 접근성)은 물론, 작품 (관람) 접근성이 개선돼야 장애인의 문화향유의 넓이와 폭이 넓어진다.

장문원 공모 및 비공모사업 결과보고서 양식: 접근성 관련

작품 접근성 공연물, 전시물 등 예술작품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향유 가능한 정도		시설 접근성 주차장, 출입구, 좌석 등 공연장/전시장 시설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정도	
□	터치투어	□	휠체어석
□	자막(문자) 지원	□	보호자 동반 객석
□	수어 지원	□	이동 슬로프
□	쉽게 읽히는 안내서	□	안내원 배치
□	릴렉스 퍼포먼스	□	기타 이동 편의시설
□	음성해설 지원	□	전동 휠체어 충전
□	점자 안내서	기타 관람 보조장치 (진동스피커, 음성 해설 리시버, 스마트 캡션 안경 등 해당사항 기재)	
□	큰 글자 안내서		
□	보이스아이 안내서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확대 관련 세부사업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BF 인증의 실제적 의무화', 둘째는 문화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실현이고, 셋째는 '장애유형별·예술장르별 작품관람 접근성 제고'다.

먼저 'BF 인증의 실제적 의무화'를 위해서는 인증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별시설 인증비용(수수료)은 예비인증 286만원, 본인증 403만원(부가세 별도)이며, 연장비용(수수료)은 50%다. 한시적으로(약 5년 정도) 민간 문화시설에 한하여 인증비용의 50% 정도를 지원한다.[88] 인증비용 지원을 통해 민간의 많은 문화시설에서 BF에 관심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공공영역(전문공연장, 문예회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대표도서관 같은 대규모 시설)에서는 BF 인증 시설에 한해서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및 보조금 지급에서 가산점(加算點)을 준다.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점차 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가산점 비중을 높이면, BF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시설)은 실질적으로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워진다. 소규모 공공영역의 시설(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생활문화센터)에서는 가점제 없이 몇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점차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사업진행에 따라 BF 인증된 문화시설(전시장·공연장)의 대관료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대규모 문화시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건축물이 구조적인 문제로 BF인증을 받기 어렵다면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점은 유예기간을 연장하면서 해결한다.

BF 인증 관련 지표는 문화시설 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문화시설 특수성을 고려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관련 가이드라인이 19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고,[89] 문화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외에도 서비스, 프로그램 접근성 등을 모니터링하는 보고서도 정기 발간된다. 분야별 문화시설 장애인 이용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되면, 문화시설(운영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 스스로는 문화서비스의 주체적 이용자임을 실감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개발 이후 이에 따라 운영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나

88) 국공립 문화시설과 대학(도서관 및 박물관)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민간에 한정한다.

89) 미국 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에서 1994년 발간한 Design for Accessibility: A Cultural Administrator's Handbook을 시작으로 영미권을 중심으로 문화시설의 장애인 가이드라인이 발간되고 있다.

는 기존 문화시설 건립(운영) 인증제도에 장애인 접근성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예를 들어, 박물관·미술관 인증제도 내에 필수지표로 포함)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의 서비스 현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식(도서관은 2007년 이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현황조사를 2년 주기로 수행)이다. 대상 문화시설은 공연장, 미술관·박물관, 문학관, 생활문화시설이며 국공립시설에 한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작품 관람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장애 유형별, 예술장르별로 접근성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 박물관·미술관에 가면 작품과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작품 관람이 쉽지 않다. 시각 장애인이 전시장에 가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음성해설, 촉감 자료를 제공하면 시각 장애인도 미술관의 작품을 즐길 수 있다. 후천적 시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어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박물관 작품에 일일이 QR코드 작업을 했다. 농인들이 핸드폰으로 QR만 찍으면 그것에 대한 수어영상을 볼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에 한정해도, 장애 유형에 따라 작품관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은 다양하다. 작품관람 접근성 관련해서는 앞서 제시한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과도 연계된다. 다른 장르에서도 장애유형별로 작품관람 접근성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장문원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에 적시된 항목을 포함해서 작품관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목록화 작업 이후,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문화시설 장애인 이용 모니터링과 다른 점은, 작품관람 접근성 사업은 장문원 진행사업에 적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두 가지 사업은 일부 중복될 수 있으며, 4절에서 살펴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과학기술 연계'와 관련된다. 한편, 장애인 문화예술향유의 정보 접근성은 4절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보시스템'에서 다룬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물리적 접근성(BF 인증)과 관련해서는 1~2년차에는 민간 문화시설 인증비용 일부 지원, 3~4년차에는 공공 문화시설 가산점 부여를 실시하고, 지속 확대한다. 모

니터링 관련해서는 1~2년차에는 문화시설별 장애인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가인드라인을 개발한다. 3년차에 국립시설을 중심으로 시범적용을 해보고, 4년차 이후는 1년에 한 개 분야(미술관·박물관, 공연장, 문학관 등)의 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한편, 작품관람 접근성 제고를 위해 1~2년차에 연구사업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연구사업은 장문원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거나 위탁용역을 실시한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장문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3~4년차에는 연구사업과 선정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성과를 분석한다. 5년차 이후에는 장문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작품관람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한다.

다. 사업추진기관

BF 인증 지원은 문체부에서 담당하되 실무는 장문원 또는 장애인 예술단체에서 담당한다. 인증기관이 인증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사업추진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같은 기관과 MOU를 맺는 게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BF인증 희망기관에 대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화시설 장애인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문체부와 문화시설별 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모니터링은 문체부가 주관한다. 작품관람 접근성 제고는 장문원의 사업에서 활용되지만, 모니터링은 일종의 평가사업이기에 문체부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작품관람 접근성 확보는 문체부에서 총괄하되, 개별 문화시설 관계자-장애인복지관 담당자-장애 예술인(단체)이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BF 인증기관

인증기관	개시 연도	개별시설					지역	인증 실적
		건축물	교통 수단	도로	공원,	여객 시설		
한국장애인개발원	2008	√	√	√	√	√	√	1,612건
한국토지주택공사	2008	√	√	√	√	√	√	380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						222건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2016	√						274건
한국감정원	2017	√						53건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2017	√						25건
한국환경건축연구원	2017	√						23건

인증실적은 업무 개시연도부터 2017년까지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합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0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및 인증기관 제출자료 (2018.2.)를 재구성함

6. 세부사업: 요약 및 관계자 의견

가. 세부사업 요약

〈표 4-4〉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활성화 세부과제: 주요 내용

세부사업	주요 내용
1. 장애인 문화예술바우처 도입 및 확대	통합문화이용권과 연계된 장애인 문화예술바우처 사업 진행: ① 현재 문화누리카드 비대상자에게 장애인문화예술바우처 지급(문화누리카드와 동일금액), ② 장애인대상 모셔오는 사업 추진(예전 기획사업)
2.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예술강사 및 학교-복지관 담당자 전문성: 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심화과정, 학교-복지관 관계자 의무과정, 문화예술교육사 및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 내 장애인 예술 이해 포함 기획 및 홍보인력: ① 장애 예술계 종사자 대상: 기존(비장애인) 매개인력교육에 장애 예술인(단체) 참여, ② 문화예술 관계자 대상: 장문원-장애인 예술단체-예술경영지원센터의 별도 교육과정 개설(기초-초급-심화-인턴제도), 인턴은 비공모사업과 문화예술기관에서 수행 장기적으로는 양성교육 이수자의 일자리 창출, 장애 예술인 매개자 교육 전담부서 설치

세부사업	주요 내용
3. 참여형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확대	
3-1.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장문원 지원사업에서 네트워크 구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장애인 동호회 간, 장애인-비장애인 동호회 간) 동호회 공간 지원(2절의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이용) 네트워크 구성 시, 장애인 예술 매개인력 활동지원 전문단체 전환 시, 장애 예술인 매개자의 1년 동안 지원
3-2.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작품관람 접근성 제고: 국공립기관의 장애인 대상 특화 프로그램(온-오프라인), 지역 순회 및 모셔오는 프로그램 진행 장애인 실감형 예술 프로그램: 문화시설에서 작품을 만져보고 스스로 만들기, 무대에서 공연 따라하기
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재구조화	
4-1. 특수학교(급)-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개선	예술강사-복지관 및 특수학교 관계자 전문성 제고: 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심화과정, 특수학교 및 복지관 관계자 의무과정 운영 학교 및 복지관 예술교육 프로그램 분화(전문예술인과정, 장애 정체성 표현과정, 예술감상교육 과정 등) 학교 및 복지관 내 '문화예술 특화교실' 운영(전문 장애 예술인 양성과정임)
4-2,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 확대·개선	장애인 거주시설 내 문화예술교육 실시(감상교육 포함), 장기적으로 교육전문성이 높은 교육진흥원에서 담당
5.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확대: 장애 친화적 문화시설 조성	물리적 접근성: 민간 문화시설 BF 인증 지원, 공공문화시설은 지원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실질적 의무화 문화시설별 장애인 이용 가이드라인 제작 및 모니터링: 공연장, 미술관·박물관, 문학관, 생활문화시설별로 접근성 모니터링 실시 장애 유형별·장르별 작품관람 접근성: 연구사업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선사업, 장문원 지원사업 선정기준으로 작품관람 접근성 우선시

나. 세부사업에 대한 관계자 의견

1) 장문원 사업 참여 예술인(단체):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활성화'에서 제시한 세부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한 의견은 이렇다.

사업 중요도에 대한 긍정 답변(%)은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94.5%), '체험형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93.2%),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전문

성 제고'(91.8%)가 많았다. 중요도를 평균(점)으로 비교해도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4.79점)가 가장 높았다. 비교적 긍정 정도가 낮은 사업은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제고'(86.3%),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86.3%), '비대면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83.6%)이었다. 설문 응답자가 문화예술 창작자인 경우가 많아서인지 교육과 동호회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그림 4-6]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활성화 세부사업 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N=73, 단위: %(긍정답변), 점(5점 만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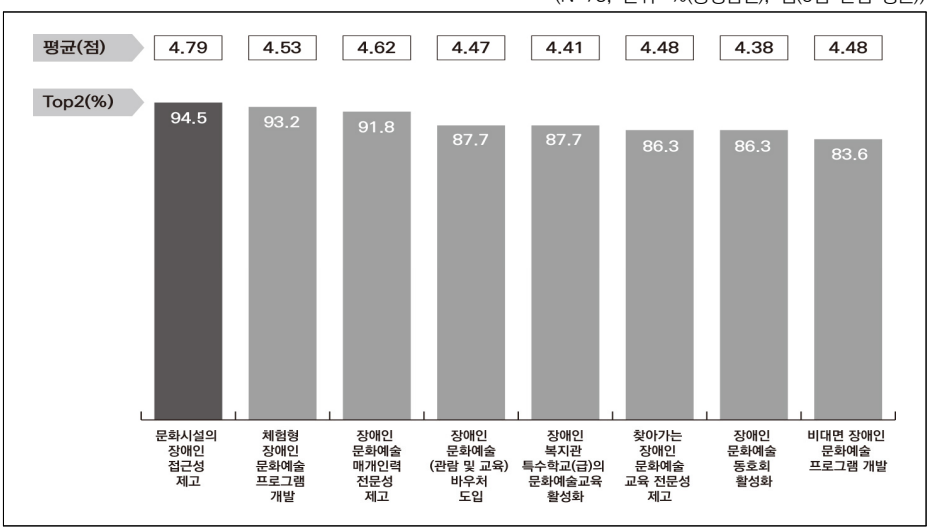

사업 시급성에 대한 긍정 답변(%)은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전문성 제고'(94.5%), '체험형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91.8%), '비대면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90.4%)에서 많았다. 한편, 긍정 답변이 낮은 세부 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80.8%)였다.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한 의견을 비교해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전문성 제고',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체험형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중요하면서 시급한 사업으로 인식했다. 반면에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는 중요도와 시급성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의견이 적었다. 특이한 항목은 '비대면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인데 중요도는 83.6%로 가장 응답이 적었으나, 시급성은 90.4%로 네 번째로 응답이 많았다.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결과다.

[그림 4-7]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활성화 세부사업(중요도와 시급성):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Base: 전체, n=73, 단위: %, TOP2(긍정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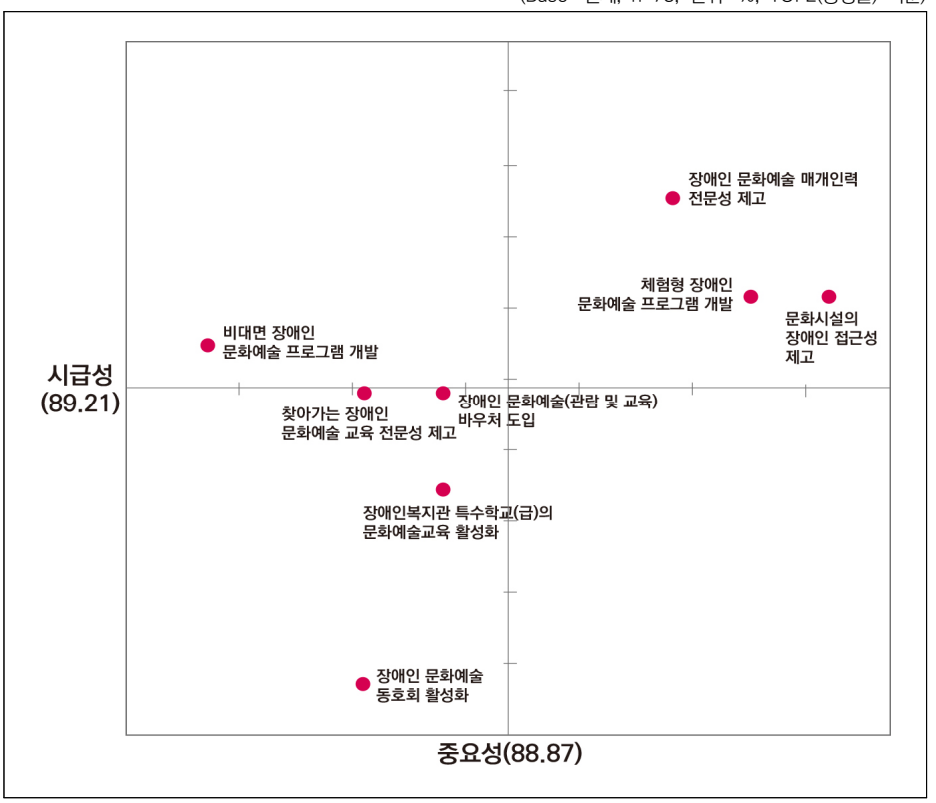

2)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사업 중요도에 대한 긍정 답변(%)은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95.0%)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제고'(90.0%)와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전문성 제고'(90.0%)의 순서였다. 반면에 '비대면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77.5%), '장애인복지관 및 특수학교(급) 문화예술교육 활성화'(82.5%)의 긍정 응답이 적었다.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은 시급할지는 몰라도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한 장문원 사업 관계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장애인복지관 및 특수학교(급)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긍정 응답이 적은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복지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지 않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요도를 미래 시점에서 응답했다면, 반대로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표현이다.

한편, 사업 중요성에 대한 장애인복지관 담당자의 의견과 장문원 사업 관계자 의견을 비교해보면 약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장애 예술인 창작지원 활성화'(2절), '장애인 문화예술 기반 구축'(4절)과 비교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활성화'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장문원 사업 관계자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의 관심은 창작과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과 향유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림 4-8]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활성화 세부사업(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vs. 장애인복지관 담당자(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N=73, 80, 단위: %(긍정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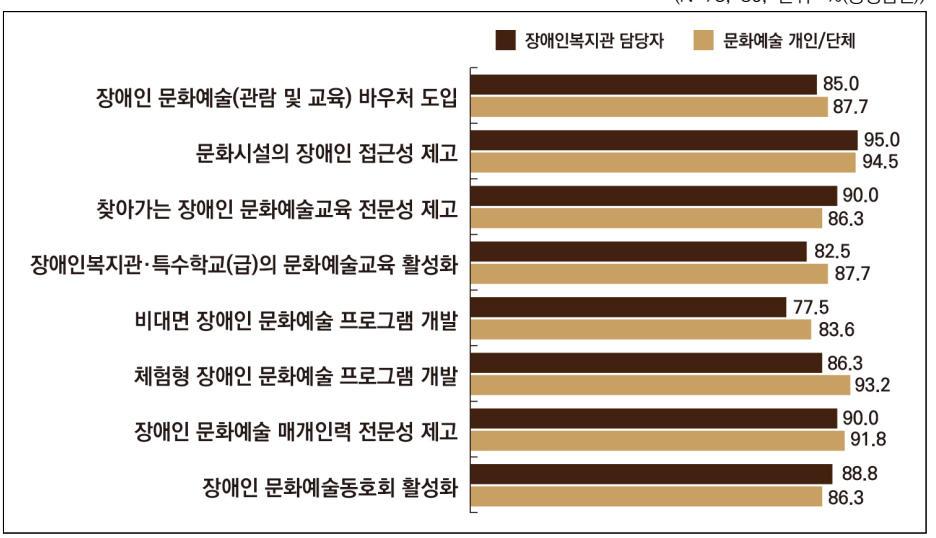

제4절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 구축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고도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체계화 및 고도화가 되어야 장애인 문화예술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사업을 제안한다. 장애인 예술정책 담당부서 및 기관의 역할 정립, 부처 내 장애인 예술정책 단위사업의 유기적 구성 및 공정성 확보, 그리고 복지정책과 예술정책의 연계다.

1-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담당 부서 및 기관의 역할 정립

가. 사업개요

장애 예술계에서는 정책 담당자 수 증대 또는 별도의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한다. 특히 일정한 규모를 지닌 장애인 예술단체에서 이 같은 요구가 많다. 이 같은 단체들은 장문원뿐 아니라 문체부와 직접 사업을 진행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때 문체부와 장문원 가운데 어디와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로서는 그래서 문체부에서 과(課)를 만들었으면 해요." (장애인 예술단체 13)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해서는 문체부와 장애인 예술단체가 협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문체부 조직에서 과(課)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예술단체 11)

반면에 소규모 단체와 연구자들은 문체부 조직 규모보다는 장문원이 다양한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 소규모 단체는 문체부와 직접 소통할 기회가 없으며, 이들에게 문화예술지원 통로는 장문원이기 때문이다.

"지정사업에서 장문원이 통제하는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예전 방식으로 고수하면서 진행하는 데 이것은 복지적 관점이지 않을까 싶어요…그리고 사업을 보면 홍보마케팅이 안되어 있어요. 관객도 지인뿐이에요, 지원사업 가운데 외부관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기획, 연구, 그리고 홍보가 중요한데, 이것을 장문원이 체계적으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 예술 연구자 3)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장문원에서 되게 단순하지만 SNS 팔로우를 엄청나게 늘려줘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예술 단체 12)

이처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넓어지고 깊어지려면, 문체부 내 담당인력의 증원, 그리고 장문원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넘어서 장애인 예술의 기획·홍보·마케팅에 참여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 체계화 및 관련 기관 역할 강화는 '장애인 체육정책'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체육정책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일대일로 대응되지는 않는다.

장애인 체육정책과 장애인 예술정책의 다른 점

첫 번째로 예산의 차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2020년 예산은 89,128백만원으로 장문원 예산(15,772백만원)의 5.6배에 달한다.

두 번째는 얼마나 세계화·표준화되었는지의 문제인데, 국제대회인 패럴림픽은 1960년부터 시작됐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훈련원에서 합숙훈련도 하여 국제대회에서 외국과 경쟁한다.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장애인 체육(정책) 역사가 훨씬 길다. 예를 들어,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981년에 시작됐다.

네 번째는 정책이 포괄하는 영역으로, 장애인체육은 광역시도에 모두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부를 두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 예술은 지역단위에서 관련 사업을 하기 힘들다.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은 장르별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지만 지역 조직은 없다. 몇몇 장애인 예술단체에서는 지역 조직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는 광역단위의 협회, 기초단위의 지부가 있다. 국장협은 전국 60여개 시도구군 협회와 부설기관 2곳이 운영된다고 한다. 〈국민일보〉(2019년 4월 9일), "특별기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미래를 여는 희망(최공열)," (2020년 8월 18일 검색)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장애인 체육은 재활과 연계되어 상대적으로 장애인(부모)의 관심이 많다.

결국 장애인 체육정책처럼 체계화된 문화예술정책을 펼치되, 단계적이고 탄력적으로 계획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문체부에서 당장 과(課)단위 정책체계를 갖추거나, 이것이 쉽지 않으면 장애인 예술정책을 포괄하는 팀 조직을 운영하다가 과를 신설한다. 새로운 조직, 예를 들어 (가칭)장애인예술과(課) 설치의 적절성과 시급성

을 여러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체육정책에서 보듯이 담당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팀이든 과(課)이든, 업무영역은 장애 예술인 창작, 장애인 예술향유 및 교육, 그리고 장애 예술인 정책 관련 제도 등 적어도 세 가지를 포괄해야 한다. 한편, 〈장애예술인지원법〉 제7조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장애 예술인 지원뿐 아니라 장애인의 예술향유와 교육 관련 정책사업을 심의한다.

장문원의 현재 가장 큰 역할은 공모사업과 비공모(지정)사업 시행·관리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달리, 장문원은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체육회 업무는 경기개최(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국제대회 참가, 국가대표 육성, 체육지도자 검정운영, 생활체육(장애인체육지도사 배치,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정책기획, 홍보업무를 포괄한다.

장문원은 장애 예술인(단체) 대표단체가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장문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업무로 본다면 마지막 두 가지, 곧 정책기획과 홍보(특히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덧붙여 장애인 예술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연구 및 조사통계 기능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처럼 공모 및 비공모사업의 행정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장문원의 법적 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문원은 재단법인인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규정된 법정기관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장문원이 관련 법률 내에 포함되는 게, 곧 법정기관화 되는 게 바람직하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첫해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체부와 장문원은 특히 장애 예술인(단체)의 기획·마케팅·홍보 능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한다. 연구는 현재의 위탁용역과 국외 리서치활동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되, 관련 연구자 모임 지원을 통해 매년 '작은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장문원의 업무 영역을 분명히 정하고, 2년차 정도부터는 기능별 업무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1~2년 내에 장애인 예술정책

과(課), 과 신설이 쉽지 않으면 장애인 예술정책팀을 조직하고, 〈장애예술인지원법〉 제7조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

3~4년차에는 지속적으로 업무의 고도화를 꾀한다. 이 시기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가 운영되면 이에 대한 지원업무이다. 이 시기에, 장문원은 법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법정기관화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특히 간접지원)의 체계성을 제고한다. 5년차 이후 또는 장기적으로 문체부는 장애인 문화·예술·여가·관광·체육을 포괄하는 부서를 구성할 수도 있다.

다. 사업추진기관

문체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체부 조직 및 인력구성의 사안이며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장문원 기능 조정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문체부와 장문원은 유기적 협력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중요하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일은 장문원이 기획·마케팅·연구·조사·정보시스템에서 전문성을 갖는 것이다.

1-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단위)사업 연계성 및 공정성 강화

가. 사업개요

현재 장애인 예술정책은 문체부 예술정책과(課)와 장문원이 주로 담당한다. 장문원은 장애 예술인 창작은 물론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 3장에서 보았듯이 장애인 일반의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지원정책은 장문원 이외 기관에서도 많이 진행한다. 일반회계(장애인복지관 예술강사 지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청년장애인웹툰전문교육지원[한국영상만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기금(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영화진흥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위사업 간 연계성이 강화돼야 한다. 예를 들어, 장문원에서 진행 중인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800백만원)는 "서울, 부평, 제주 등 전국 14개시도 1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생은 500여명에 이

르고, 음악과 미술 교육을 하여 앙상블과 오케스트라의 정기공연과 전시회"[90]로 구성된다. '(발달장애인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과 '장애인복지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형식이 유사하다. 하지만 두 가지 사업을 비교한 자료는 없다. 전자는 장문원에서 후자는 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사사업 간 비교를 통해 중복되지 않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사업을 구성해야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중복·유사성을 벗어나 체계성을 지니려면 문체부 차원, 그리고 장문원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앞서 '장애인 문화예술 담당부서 역할정립'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체부에서 장애인 업무를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과(課)단위 부서이든 아니든 장애인 예술정책의 세 가지—장애 예술인 창작, 장애인 예술향유 및 교육, 그리고 장애 예술인 관련 제도—내용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체부 개별 부서·소속기관·산하기관에서 각기 진행하는 사업을 파악·분석해야 한다. 문체부(소속, 산하기관)에서 수행 중인 단위사업을 새로이 형성한 분석기준에 따라 비교한다. 분석기준은 사업목표, 사업유형, 예산, 진행단체의 속성, 진행방식, 진행지역,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등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의 재조정 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문체부 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한 눈에 조망하면서 자세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문체부 입장에서는 유사중복사업 조정, 신규사업 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적합한 정책사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인 장애 예술인(단체)과 장애인은, 이것을 보고 어떤 문화예술 사업에 자신이 참여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정책제언을 할 수 있다.

한편, 장문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첫 번째는 장문원에서 진행하는 세 가지 사업(공모사업, 비공모사업, 자체사업)을 비교분석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분석기준에 따라 정교한 비교분석을, 그리고 효과성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문원 자체적으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의 재조정 방안을 도출한다. 그것은 장문원 사업(공모이든 지정이든)의 창작-향유-교육의 연계성을 높이는 일, 그리고 단계(수준)를 다양화하는 일이다. 교육을 받은 참여자가 창작영역에 진입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하고, 이전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90) 〈국민일보〉(2019년 4월 9일), "특별기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미래를 여는 희망(최공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215147&code=61221111&cp=nv (2020년 8월 18일 검색)

두 번째는 공모사업, 비공모사업, 자체사업에서 세부사업을 재분류하는 것이다.

① 공모사업은 창작-향유-국제교류 활동을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국외 리서치활동 지원은 장문원 내 연구기능(예를 들어, 연구 작은모임) 강화를 통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② 비공모사업은 예전부터 사업을 진행해 온 단체의 노력을 존중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유사·중복성 분석은 물론이고, 사업 효과, 사업 전체의 진행과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비공모사업의 재구조화(조정·공모사업 전환) 방안을 도출한다. 예를 들어, 2절의 '풀뿌리 예술단체 지원'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규모 단체와 협력사업 등을 시도할 수 있다. 물론 비공모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일이다.

③ 한편, 장문원이 직접 진행하는 사업 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0년 기준 장문원 직접사업은 '장애인 창작아카데미', '국제장애예술주간', '청년 예술가 양성', '창작공연예술 특성화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분석기준에 따라 살펴봐야 하겠지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눠보면 직접지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3장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문원은 사업분류와 성과지표가 모호하고, 관련 통계(사업별 통계)가 많지 않다. 장문원은 장애인 예술진흥 직접사업보다는 통계생산, 성과지표 설정, 사업재분류 같은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장문원 사업 참여기관의 부족한 부분(행정, 기획, 마케팅, 홍보)을 지원하고 사업 참여기관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 곧 간접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첫해에는 최근 5년 동안 수행된 문체부의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사업의 세부자료를 분석하여 사업 간 연계방안을 도출한다. 장문원 역시 지정·공모사업의 세부자료를 분석하는데, 지정사업은 사업 간 공통성을 중심으로, 공모사업은 창작-향유-국제교류 사업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2~3년 동안은 문체부 사업에서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고, 사업 간 연계를 실현한다. 장문원에서는 공모사업을 재구조화(창작-향유-교류의 통합 및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비공모사업의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한다.

4~5년 동안은 장문원 공모사업 내 단계별 연계(프로그램 수준별 연계)를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정책 고도화'의 사업내용(문체부 내 장애인 문화예술·여가·관광·체육 포괄부서 구성, 장문원 법정기관화)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체계를 재구조화한다.

다. 사업추진기관

문체부 역할이 중요하며, 그리고 문체부-장문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덧붙일 점은 장문원의 공모·비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특히 비공모사업 참여단체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문원 사업의 재구조화에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계

가. 사업개요

보건복지부에서 마지막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펼친 것은 2015년이다.[91] 〈장애인종합정책계획〉에 문화예술이 포함되지만 구체적 사업은 없다. 다만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는 예술을 매개로 한 일자리(고용)창출에 관심이 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다. 2007년 복지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사업의 큰 틀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받는다.

장애인 복지 정책사업 가운데 문화예술정책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 첫째, 장애인복지관 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장애인복지관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진흥원은 장애인복지관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교육진흥원 사업이 강사-예산-프로그램에서 상대적 강점이 있다. 장애인복지관 자체의 예술교육 사업에 교육진흥원(예술강사 포함)이 컨설팅을 담당할 수 있다.

둘째, 장애 예술인 일자리 창출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장애인 일자리 직무에 예술을 포함시킨다. 민간에서 장애 예술인을 고용하

91) 앞서 보았듯이 2005년부터 문체부에서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다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던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이 2015년 제25회 사업을 끝으로 문체부로 이관됐다.

면, 문체부 차원에서 고용기관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찾아가는 예술행사'의 우선순위 배정, 고용기관 직원의 국립시설 관람료 할인 등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셋째,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일정 기준을 정하여 제외한다. 저소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데,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수급권이 박탈되기에 예술활동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예술활동 수입액 자체가 크지 않지만 이를 통해 예술활동 수입 때문에 예술참여를 회피하는 경향은 피할 수 있다.

넷째,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에서 '예술인 활동지원' 기능을 연계한다. 문체부에서 별도의 예술지원인 제도를 두고,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와 결합하는 것이다. 기존 활동지원 내용에 문화예술을 포함하는 것이고, 월 한도액이 넘어갈 경우에는 '예술인 활동지원'에서 추가분을 지원하여 행복e음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다.

다섯째, 예술활동 보조기기를 보조기기센터를 통해 보급·수리·대여하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에 보조기기센터·수리센터가 운영된다. 예술활동 보조기기 개발은 문체부 영역이지만, 보급·수리·대여·관리업무는 보조기기센터에서 담당한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부처 간 협력사업은 단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복지(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 법률이나 제도 개선 없이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위에 언급한 협력사업 가운데는 첫 번째(협업사업)와 두 번째(일자리 창출)를 1~2년 내에 실시한다. 나머지 사업(장애 예술인 소득인정액 관련, 장애 예술인 활동지원, 예술활동 보조기기)들은 3년 이후 시도한다.

다. 사업추진기관

문체부(장문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교육진흥원·대한장애인체육회·국립예술기관)-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자자체(문화재단·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문체부가 협의체를

주도하고 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민간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협의체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총련(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장예총(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풀뿌리단체 연합기구 등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과학기술(4차 산업혁명) 연계

가. 사업개요

비장애인 문화예술과 비교하여 기술혁명은 장애인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문화예술이며, 다른 하나는 장애인 문화예술 보조기기 개발이다.

4차 산업혁명은 장애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자동주행차, 지능형 보행로봇 등의 등장에 따른 이동 편의성 개선이다. 또한 사물을 인식하고 글을 읽어주는 기술은 시각장애인의 정보획득에,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은 뇌병변장애인의 편의 개선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하지만 구매력이 취약한 장애인이 첨단보조기기를 구매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덧붙여 4차산업 기술들은 신체적 장애인에게 국한되어 정신적 장애인의 소외가 증가할 수도 있다.

4차산업 기술은 일반적으로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 편의성, 그리고 공간 압축·새로운 공간 창출로 장애인의 향유 및 교육참여의 편리성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정리해야 할 논점이 있다. 장애 예술인(단체)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창작활동에서 불편했던 점이 없어진다고 가정해 본다. 이때의 작품은 어떤 의미에서 장애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 2장 1절에서 장애인 예술을 세 가지—① 창작 주체로서의 장애인, ② 내용으로서의 장애, ③ 다름(다양성)을 보여주는 장애—로 구분했다. 장애인이 첨단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창작한 작품이 다름(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 예술을 새롭게 개념화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장애인 예술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 '장애 예술인 고용이 늘어날 것인가? 늘어난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유형의 장애 예술인에게 더욱 많은 도움을 줄 것인가? 정신적 장애

예술인에게도 기술혁명은 유효한가?'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한 토론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의 삶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진행됐을 뿐, 장애인 예술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예술계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예술계에서 문화예술계-장애인계-과학기술계와 협력하여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단순히 기술적용을 넘어서, 장애인 예술의 특성을 살려서 과학기술계에 요구할 사항을 추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삶의질 제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한편, 장애인 예술의 공론장 형성은 4장 2절의 '장애 예술인 역량 강화(재교육) 프로그램'과 뒤에서 언급할 '장애인 문화예술 인식개선 사업'의 토론회와 연계하여 실행할 수 있다.

한편 기술발전은 장애인 예술 보조기기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장애인 예술 보조기기는 예술 창작뿐 아니라 향유(관람)에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의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마우스피스(창작), 장애인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단원이 활용하는 진동벨(창작, 교육), 시각 장애인이 미술관에서 활용하는 촉감 작품과 오디오 기기(관람)가 그렇다. 아직 예술영역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활용은 활발하지 못하다.

〈장애인 보조기기 배부〉

현재 장애인 보조기기 배부는 5개 부처-9개 사업-7개 전달체계에 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주로 의료용을, 고용노동부는 직업수행용을, 교육부는 교육용 보조기기를 교부한다.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에서 문화예술 영역은 빠져 있다.

보조기기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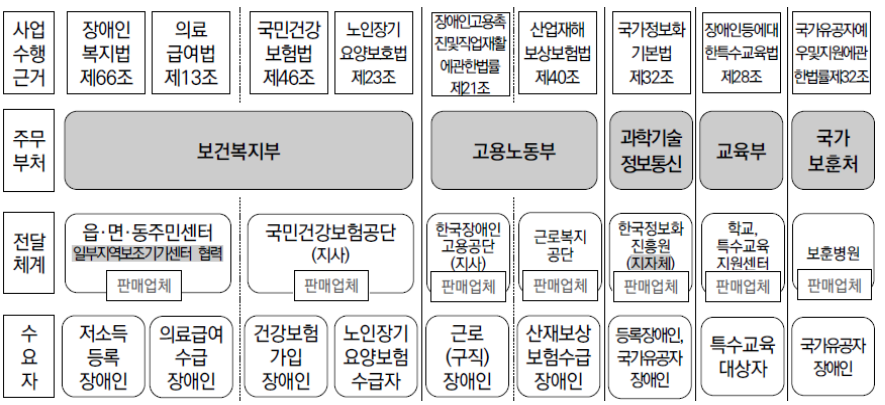

자료: 국립재활원·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에서 문화예술이 주요 정책영역이 아니기에 보조기기 전달체계에 문화예술 영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술영역에서도 보조기기는 예전부터 활용됐고 앞으로는 쓸모가 많을 것이다. 구족화가를 위한 특별한 마우스피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진동벨과 독서확대기의 역할은 크다. 또한 만화가나 합창단에게는 책장넘기는 도구(page turners)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특별 제작 마우스피스는 예술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사용되지만, 나머지 세 개(진동벨, 독서확대기, 책장넘기기)는 비예술영역에서도 활용된다. 이처럼 장애인 예술 보조기기는 예술영역에 한정되기도 하고, 장애인의 생활 자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전자이든 후자든 다양한 보조기기 개발과 생산을 통해 장애인 예술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과 품목별 분류체계를 고시한다. 고시는 ISO9999: 2011에 기반한다(최신판은 ISO9999: 2016). 창작-향유-교육에 사용되는 장애인 예술활동 보조기기에 대한 위성 분류가 필요하다. 아래의 표는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서 예술 관련 항목을 추출해 본 것이다.

〈표 4-5〉 장애인보조기구 품목 중 범용 문화예술보조기기

1단위 분류	2단위 분류
22 의사소통·정보전달용	시각, 청각, 발성용, 그리기·쓰기, 계산용, 시청각 정보의 기록·재생·표시용, 대면 의사소통용, 전화·무선 정보 전달용, 경보·표시·기억·신호전달용, 읽기용, 컴퓨터 입력, 컴퓨터 출력
24 물건·기구 조작용	용기 조작용, 작동·조종 기구용, 원격 조종, 팔·손·손가락·다른 복합기능 대체용, 길게 뻗기용, 위치 조정용, 고정용, 운반·운송용
28 고용·직업 훈련용	작업장내 가구·비품, 작업장내 사물 운반용, 작업장내 사물 이송·재배치용, 작업장내 사물고정·뻗기·움켜 쥐기용, 작업장내 기계·공구류, 사무행정·정보보관·관리용, 작업장내 건강보호·안전용, 직업 평가·직업 훈련용
30 레크리에이션용	연주·작곡, 사진·영화·비디오 제작용, 수공예 공구·재료·장비, 원예·농작용

자료: 보건복지부(2019),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나. 단계별 사업내용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단계별 사업내용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논의가 필요한데 문화예술계-과학기술계-장애인 일반-장애 예술인(단체)-정책관계자의 집중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4차 산

업혁명과 장애인 예술에 대한 토론회를 1~2년 정도 지속하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3~4년차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장애 예술인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창작·발표가 수월해진 장애 예술인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보조기기 개발'은 하나의 부분에 포함된다.

보조기구 개발을 위해 첫해는 장애인 예술활동에 사용하는 보조기기에 무엇이 있는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장애인 대상 다양한 형태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장애 유형별 예술인, 그리고 문화예술 현장을 찾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한다. 2년차에는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도출하여 실용화를 준비한다. 제안요청서는 기본형을 중심으로 한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제작돼야 하기에 기성품화가 어렵다. 기본형이 제안되면 확장성이 확보될 수 있다.

3년~4년 동안은 문화예술 보조기기 활용 사례를 추가 발굴하고, 사용법을 유튜브로 제작하여 문화예술 보조기기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수요를 토대로 기술개발(R&D)사업을 지속하는데, 이때 역점을 두는 것은 장애 예술인이 교육생에서 예술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맞는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일이다. 단계별로 맞춤형 보조기기 컨설팅과 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 사업추진기관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예술 관련 논의는 장애 예술인(단체)-장애인(운동)단체 같은 시민단체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관련 연구사업과 포럼·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연구사업은 문체부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용역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전문가 포럼은 시민단체-문체부 유관기관(장문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복지부 관련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학기술계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보조기기 사업은 문체부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지만, 장애인예술계 인사-장애인복지시설과 함께 한다. 실제 보조기기 제작작업은 전문성 있는 기관(국립재활원이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담당하는 게 현실적이다.

3.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및 확대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및 확대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온라인 기반의 장애인 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이라면, 다른 하나는 관련 책자 발간이다.

3-1. 장애인 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가. 사업개요

장애인은 예술인이든 아니든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쉽지 않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지금까지 물리적 접근성을 중심으로 언급해 왔다. 장애인의 예술행사 관람에서 '시간과 비용' 문제를 제외하면, 물리적 접근성은 매우 중요하다. 예술 관람의 어려운 점에서, 시간(36.5%) 비용(18.4%)이 가장 빈도가 많다. 물리적 접근성에 해당하는 항목은 20.5%(교통불편 3.9%, 편의시설 부족 6.2%, 가까운데 시설 없음 10.4%) 정도다. 반면에 관람정보 부족은 4.6%이다(2017 장애인 실태조사; 362). 장애 예술인의 예술(작품)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예술활동의 어려움은 발표공간 부족(29.9%), 작업공간 부족(21.6%), 관련 시설 부족(13.7%)이 대부분이다. 관련 정보부족은 5.1%, 정보시스템 부족은 2.9%다(2018 실태조사). 이처럼 정보 접근성 관련 수요는 많지 않아 보인다. 4장 2절과 3절에서 장애 예술인의 물리적 접근성·예술활동 접근성, 그리고 장애인의 문화시설 물리적 접근성·작품관람 접근성을 살펴봤다. 물리적·작품(활동, 관람) 접근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보 접근성이다.

물리적·작품(활동, 관람) 접근성은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창작이든 향유든)를 전제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정보 제공, 곧 정보 접근성 확보는 물질적·작품(활동, 관람) 접근성 제고보다 중요하다. 정보는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욕구)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예술관련 정보 접근성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효과가 많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공공의 '문화포털'과 민간의 '문화예술네트워크 위드'에 장애인 접근은 쉽지 않다. 2020년부터 장문원은 '장애예술의 지식정보 플랫폼'(www.ieum.or.kr)'(이하 플랫폼)을 운영한다. 공연·전시 정보, 알림(해외동향, 웹진이음), 채널(채널이슈, 아카이브, 팟캐스트, 공연영

상), 블로그로 구성돼 있다. 공연·전시는 주로 장애인 예술을 중심으로 소개하며 작품관람 접근성(음성해설, 수어해설, 큰활자, 자막, 쉬운내용, 대본)을 표시한다. 2018년 연구(장애인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연구)와 2019년 용역사업(장애인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로소 이 같은 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된 것이다. '모두가 장애예술과 쉽게 만날 수 있는 정보 및 콘텐츠 제공을 통해 포괄적인 예술 경험 확산'을 목적으로 주된 이용자를 장애 예술인(단체), 장애인 예술 향유자, 전문예술인으로 설정한다.

지금까지 장애예술 관련 포털사이트가 없었기에 '플랫폼' 운영은 적절한 사업진행이다. 향후 과제는 콘텐츠 심화, 그리고 비장애인 문화예술 정보시스템과 연계다. 장애 예술인(단체)은 '플랫폼'의 채널이슈-해외동향-아카이브 등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예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장애인 예술 관련 공모사업과 일자리 관련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예술인이 아닌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예술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예술교육과 예술행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덧붙여 지역문화시설의 정보 접근성을 점검하고 소규모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때는 지원금액의 30% 가량을 문화시설 자부담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보통 장애인 정보 접근성 확보의 주된 고려사항은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페이지를 구성하지 않고 통합적인 환경에서 누구나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데' 있다. 현재 '플랫폼'이 장애인 중심인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통합성을 고려하면, 현재 포털을 다른 문화예술 시스템과 연동하여, 더욱 많은 문화예술을 장애 예술인과 장애인에게 소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예술작품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오프라인 아카이브와 협력한다.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장애인 예술작품이 거래되는 '장애인 예술시장'을 형성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의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도록 하고, 큐레이터와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이다. 상품시장뿐 아니라 고용시장을 형성할 수도 있다. 플랫폼은 장애인 예술인력이 필요한 수요자와 장애 예술인(단체)이 만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시장이 활성화되면 해외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한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에서는 두 가지 점이 고려돼야 한다. 하나

는 정보 제공 과정에서 작품(활동, 관람) 접근성을 확보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플랫폼' 뿐 아니라 개별 문화시설과 예술행사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전자는 장애 유형에 따라 최적화된 방법을 개발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작품(활동, 관람) 접근성과 유사할 수 있다. 후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규모 문화시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1~2년 동안은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의 안정화를 꾀한다. 일단 관련 자료 수량을 늘리고 질 관리에 역점을 둔다. 장애인 예술 관련 가이드북·백서·연구서 등을 서비스하고, 비장애인 문화예술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장애 (예술)인에게 국내외 예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 예술인은 이를 통해 장애인 예술뿐 아니라 비장애인 예술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장문원과 문체부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3~4년 동안은 지역 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를 독려한다. 그것의 일환으로 지역 문화시설의 장애인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며, 장애인 예술작품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한편, 시범사업으로 일자리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예술인력시장). 5년차 또는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이 장애인 예술시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 사업추진기관

장문원의 고유사업으로 진행한다. '정책 고도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문원은 기획·홍보·연구·정보시스템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지역문화시설의 장애인 정보 접근성 제고는 지자체와 협력한다. '플랫폼'에서 작품거래를 실현하려면 장문원-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장애인 예술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시장의 역할을 하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참여가 필요하다.

3-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도서 발간

가. 사업개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책자가 많지 않다. 관련 책자를 발간해야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장애예술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가이드북), 다른 하나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분석 책자다.

먼저 안내서(가이드북)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 예술인(단체)으로 활동하려 해도, 장애인 문화예술을 이해하려 해도 구체적 정보가 없다. 앞서 말한 '플랫폼'이 처음부터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창작-향유-교육)에 접할 수 있는 절차·방법·내용을 포괄하기는 어렵다. 결국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전반을 다루는 안내 책자(가이드북) 제작이 필요하다. 가이드북은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 유발부터 비장애인의 장애인 예술 이해까지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포괄한다. 가이드북은 기본서 성격을 지니기에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기본서가 완성되면 발달장애인용 쉬운 도서로 번역한다. 가이드북은 크게 세 부분—① 장애 예술인 인터뷰: 직업의 세계와 전망·절차·방법, ② 장애인 예술동향: 지원사업 가운데 특기할 만한 프로그램, ③ 장르별 예술교육체계—으로 구성한다. 가이드북은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배포한다. 이 같은 1차 가이드북이 소정의 효과를 거두면, 예술장르별 상세 안내 책자(2차 가이드북)를 기획·출판한다

두 번째 책자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자, 그리고 단위사업의 개요(특히 진행과정)를 알 수 있는 책자 발간이다. 현재 장애인 예술지원정책과 관련된 책자는 장문원에서 매년 평가모니터링 및 설문조사(관객 및 참여자)를 토대로 발간하는 「평가보고서」 정도다. 책자는 장문원 단위사업의 사업개요를 밝히기보다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의 장단점을 제시하여, 장문원 지원사업 구조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다.

결국,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백서 형태의 책자 발간이 요구된다. 이것은 몇 가지 효과를 지닌다. 첫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백서는 비교적 지원사업의 진행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기에, 어떤 단체(개인)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 문화

예술 지원정책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서는 장문원의 지원사업뿐 아니라 문체부 다른 부서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도 포함되기에 종합적 이해가 가능하다. 셋째, 장애인예술계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책자가 발간되면, 장애인예술계뿐 아니라 문화예술(정책) 관련 종사자와 장애인(정책) 관련 종사자는 문화예술 정책의 시각 그리고 장애인 정책의 시각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예술에 관심을 지닌 전문가 집단이 증가한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안내서(가이드북)의 경우, 초기에는 (가칭)「알기 쉬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이란 이름으로 발간한다. 3~4년차에는 2차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백서의 경우, 1~2년 동안은 장문원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발간한다. 또한 백서는 분석적 책자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모사업(교육지원)에서 참여자의 장애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동호회 지원사업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3~4년 동안은 장문원뿐 아니라 문체부의 장애인 예술 지원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백서를 작성한다. 또한 장문원의 지원사업 가운데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소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안내서와 백서는 물론 장애 친화적으로 제작한다. 곧, 점자도서, 녹음도서, 촉각도서, 확대도서, 쉬운도서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한다.

5년차 이후 또는 장기적으로는 책자 형태뿐 아니라, 책자 내용을 다양한 예술형태로 구현해 본다. 예를 들어, 안내서(가이드북)를 그림·사진·영화로 제작해보고, 백서 내 우수사례를 공연이나 미술로 재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책자가 장애인 문화예술의 원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다. 사업추진기관

안내서(가이드북)와 백서 제작의 주관처는 장문원이다. 장문원은 책자 발간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특수교육, 장애인복지, 교육 컨설팅 분야의 전문가로 준비단을 구성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밝은 이론가, 이론을 겸비한 현장 전문가의 참여다.

4.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지역화 및 세계화

다른 예술정책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예술정책에서도 지역화는 향후 주요방향이며, 세계화는 한국의 장애인 예술의 다양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가지 사업, '지역 간 장애인 예술격차 해소: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 운영'와 '장애인 예술의 국제 및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을 제안한다.

4-1. 지역 간 장애인 예술 격차 해소: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 운영

가. 사업개요

지역 간 격차는 장애인 예술에 한정된 건 아니다. 비장애인 예술에도 그렇다. 예술 관람률에서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차이가 12.7%p다(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하지만 교육경험과 문화시설 이용에서는 오히려 읍면지역 거주자의 참여율이 높다. 대도시가 문화예술 관람을 위한 환경(대규모 문화시설의 수와 문화예술행사의 빈도)이 좋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읍면지역에서도 문화예술교육 및 행사의 수준은 알 수 없지만 교육·행사가 많이 개최된다. 두 번째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의 결과일 수 있다. 예술정책 일반에서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상당한 정도로 사업이 이뤄진다.

반면에 장애인 예술정책은 아직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 지자체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실제 구체적 사업은 이뤄지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장애인 예술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눈여겨 볼 점은 장애인 체육정책, 그 가운데서 지역단위 조직의 활동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광역지자체(시도)지부가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역 조직(시도 지부)과 종목 조직(종목협회)으로 구성되는데, 지역 조직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모두를 담당한다. 장애인 체육의 지역조직 역할을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장애인체육회의 시도지부

지역	조직구조	직원 수		비고 (운영유형)
		직원 수	지도자 수	
서울특별시	1처4팀	18	77	
부산광역시	1처3부	11	45	단체장 겸직
대구광역시	1처1부3팀	13	22	
인천광역시	1처4팀	21	22	
광주광역시	1처4팀	13	28	
대전광역시	1처3팀	11	25	단체장 겸직
울산광역시	1처1부2과2팀	9	30	독립운영
세종특별자치시	1처2팀	7	9	
경기도	1처1본부3과	18	8	독립운영
강원도	1처4부1팀	17	10	
충청북도	1처3부	13	28	
충청남도	1처4팀	13	4	
전라북도	1처3과	10	27	단체장 겸직
전라남도	1처3팀	10	26	단체장 겸직
경상북도	1처3팀	9	1	단체장 겸직
경상남도	1처1부1과3팀	13	24	
제주특별자치도	1처4부	13	21	단체장 겸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체육백서」 재구성

하지만 장애인 체육과 다르게 장애인 예술은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기는 쉽지 않다. 대한장애인체육회처럼 중앙-지역을 포괄하는 장애인 예술조직(단체)은 없고,[92] 단시간 내에 지자체 장애인체육회처럼 공간(체육활동공간)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를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하고, 지역센터에서 지자체 내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사업을 담당하도록 한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지자체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구체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 조직과 예산 모두가 충분하지 않다. 현재 조례를 제정한 지역 가운데, 수도권 3개[서울·인천 구(區)지역 1개, 경기도의 시(市)지역 1개, 경기도의 군(郡)지역 1개], 비수도권 7개[광역시 구지역 2개, 기초시의 동(洞)지역 3개,

92) 몇몇 장애인 예술 관련 단체는 지방조직이 있지만 지역의 장애인 예술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읍면지역 2개]의 지역센터를 지정한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장애인 문화예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과 다른 지역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 부모님을 만나 뵈면 우리 아이는 너무나 음악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는데 끌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끌어줘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하소연 비슷한 것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지방에는 그런 아동들이 재능과 적성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있어도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분들을 굉장히 찾는 것도 어렵고 어디가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장애인 예술 연구자 4)

지역센터는 별도 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문화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문화기관 가운데서도 단일 문화시설이 아니라 정책기능을 수행하기에 문화예술을 포괄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적합하다. 다만 문화재단이 없는 지역에서는 개별 문화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센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능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제1항),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제2항)에 근거한 사업을 수행한다. 지역 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역할인데, 이것은 〈장애예술인지원법〉(시행 2020.12.10.)에 제시된 지자체의 여러 시책의 집행과 관련된다. 지자체 내 문화기관, 복지기관의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유사성· 중복성을 검토하여, 지역 단위에서 교육-향유-창작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센터에서는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문화기관-복지기관) 담당자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지역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이다. 복지기관 중심으로 전개되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문화기관이 협력하여,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둘째,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 제공이다. 지자체 내 문화기관(시설)이나 복지기관 가운데 하나를 지역 내 대표 장애인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시설 건립운영 또는 장애인 체육시설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4장 2절의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신규 건립된 작업공간을 지역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1년차에는 지역 내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지역단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 문화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정도 등을 조사하고, 지역센터 운영방안(안)을 도출한다.

2~4년차에는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센터' 운영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때는 반다비체육센터(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93] 선정기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수도권 3개, 비수도권 7개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때 장문원은 지역센터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5년차에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 확대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장애인 체육시설과 연계방안, 혹은 별도의 공간 조성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지자체를 넘어서 광역지자체 단위의 거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인근 지자체 몇 개를 묶어서 사업을 진행한다.

다. 사업추진기관

지역센터 사업 운영모델 개발은 문체부-장문원-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협력하여 담당한다. 지역센터는 문화재단(혹은 공공문화시설)에서 운영하지만, 의사결정은 지역 내 공공기관(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협의체에서 하도록 한다. 예산은 온전히 중앙정부 예산만으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지자체에서 분담하도록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담당부서 및 기관의 역할 정립'에서 보았듯이 지역센터 지원은 장문원의 주요 역할이다.

4-2. 장애인 예술의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활성화

가. 사업개요

현재 장애인 예술의 국제교류는 몇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번째는 장문원의 공모사업 가운데 하나인 '국제교류활동 지원'(최고 지원액 50백만원)이며, 두 번째

93) 〈2018 평창동계 패럴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반다비체육센터'는 2025년까지 150개소(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별 특화형) 건립예정인데, 1개소당 30억원~40억원 정액 지원한다.

는 기획공모형 사업인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 세 번째는 '국제 장애인 예술주간' 내 국제행사(예술과 장애 국제 심포지엄, 아태지역 라운드테이블), 네 번째는 비공모사업인 '장애인 국제무용제' 등이다. 이밖에도 비공모사업인 장애인공연예술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공연단체는 해외공연을 수행하고, 비공모사업 참여단체 일부는 해외공연을 실시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을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런던올림픽과 패럴림픽(2012)에서 '문화올림피아드', 그리고 '언리미티드 페스티벌'을 통해 영국이 장애예술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한 것,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서울어젠다'를 채택하여 한국이 문화예술교육에서 주요 국가가 된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장애인 예술 국제교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예술 국제교류 사업과는 별도로,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도약)을 위한 계기를 국제행사에서 찾는 방식이다. 이 같은 국제행사를 위해서는 국내 장애인 예술 기반 구축과 장애인 예술 활성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행사를 준비하면서 장애인 예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장애인 예술주간' 행사를 확대하여 세계적 대회로 개최한다. 서울어젠다 채택이 2010년인데, 이때 실무를 담당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 설립됐다. 장문원이 2015년에 설립됐기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충분히 국제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2025년 국제대회를 목표로 현재 장문원 사업 가운데 국제교류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준비한다.

한편, 남북 장애인 예술교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2020년 현재 남북관계는 교류협력을 시도할 환경이 아니다.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서 보듯이 남북 사이에 교류는 불가하다. 현재로서 가능한 교류는 인도적 지원 정도가 될 터인데, 이때 남북 장애예술인 교류 등을 시도해 볼 수는 있다. 북한에서 장애인(정책)은 다음과 같다. 6.25전쟁 이후 영예군인(상이군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지속되지만, 이를 제외한 장애인 정책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장애인의 날 지정(6월 18일), 2013년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등을 통해 장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장애인 복지사업이 진행된다(예를 들어,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무장애건축 설계기준 도입 등).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에 대한 대응이라 할지라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더욱

이 북한은 당-국가 중심의 예술정책을 펼치는데, 장애인 예술단이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장애자예술협회를 중심으로 예술활동을 하는데 장애인 예술단체는 국제교류활동까지 한다.

> "장애인의 날(6.18)에 즈음해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예술소조원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18일부터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시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
> "선글라스를 낀 네 명의 남녀 청년과 휠체어에 앉은 소년이 화음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 〈북한 장애자예술협회 예술소조공연 / 조선중앙TV〉 "행복은 넘쳐라 인민의 조국."
> 북한 장애자예술협회에 소속된 장애인 청소년들의 공연 모습입니다.
> 북한이 작년부터 장애인들을 TV에 등장시켰지만, 장애인들의 예술공연 모습을 공개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청각 장애인의 마술 공연도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피아노 연주와 가야금 연주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청각 장애 청소년들이 출연하는 외국동화무용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공연도 이어졌는데, 이들의 연기와 춤 솜씨는 연극배우 뺨치는 수준입니다. 이 무용은 장애 청소년들의 영국·프랑스 순회공연 때 선보였던 작품입니다"

자료: 〈매일경제 MBN〉(2019년 6월 22일), "북한단신: 장애인예술협회 음악무용 공연,"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6/446438/(2020년 9월 1일 검색)
〈연합뉴스〉(2016년 4월 5일), "북한 장애인 예술공연 영상공개...인권압박 대응,"
https://www.yna.co.kr/view/MYH20160405019800038 (2020년 9월 1일 검색)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면서, 남한의 장애인 예술단체가 방문하여 북한 장애인 공연단체와 협연 등을 시도할 수 있다. 현재 같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남북 장애 예술인 교류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2025년의 국제행사에 남북 장애인 예술단의 협력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한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장애인 국제행사를 위해 1~2년 동안은 현재 장애인 국제교류 사업을 점검하고, 장문원에서 수행 중인 '국제 장애인 예술 주간행사'를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제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3~4년차에는 국제행사 준비작업을 하고, 5년차에 국제행사를 개최한다.

남북 장애 예술인 교류를 위해 1년차에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장애 예술인 교류사업 연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2년차부터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사회문화교류협

력사업을 위해 북한 단체 접촉 및 방북, 통일부 승인신청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다. 구체적 사업 수행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교류사업을 진행하면서 2025년 국제대회에 북한 장애인 예술단과 공동사업을 논의하고 준비한다.

다. 사업추진기관

국제행사는 장문원이 준비하여 진행한다. 남북 장애인 예술교류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장예총 또는 전문 장애인 예술단이 사업을 주관하도록 하고, 인도적 지원과 연계하는 일은 전문 매개기관(예를 들어,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또는 북민협[대북 민간단체협의회])에서 담당한다.

5. 장애인 예술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

가. 사업개요

장애인 문화예술 인식개선 사업은 세 가지로 진행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비장애인 대상 사업으로, 현재 직장의 의무교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장애 예술인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다. 2018년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연 1회, 1시간 이상)에 참여해야 한다.[94] 교육 내용은 네 가지—① 장애 정의 및 유형, ② 직장 내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 ③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도, ④ 직장 내 인식개선—다.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강사초빙, 교육기관 위탁, 무료강사 초빙 등이 있다. 이 같은 교육의 일환으로 장애 예술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한빛예술단은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직장 내 교육에 참여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장애 예술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교육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현재도 관객(피교육자)의 호응도가 높지만,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그리고 비장애 예술인 협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장애 예술인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와 협력하여 (장애인 예술단체

94)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교육자료 배포(게지, 이메일 포함)로 대신할 수 있음

의) 교육기관 지정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예술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의 대상은 비장애인에 한정되지 않고, 장애인을 포괄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교육은 장애인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관람 작품은 창작자·발표자가 장애인인 작품뿐 아니라 장애와 장애인 예술의 정체성을 지닌 작품, 그리고 수준 높은 작품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장애인 예술에 대한 공론장 구성이다.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반드시 교육형태 또는 관람형태로만 구성될 필요는 없다. 장애인 예술에 대한 공론장 형성을 통한 인식개선도 가능하다. 장애인 예술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문원 '플랫폼'에 게재된 작품·해외사례를 가지고 장애인-비장애인-문화예술계 인사-일반인들이 온라인 토론하는 방식을 실현할 수 있다. 장애예술 관련 발간 책자를 주제로 한 토론도 가능하다. 이 같은 공론의 장은 문화기관·복지기관·특수학교에서 마련한다. 개별 기관 또는 지역에서 개최하는 토론회는 주제를 정하여 진행하고, 연말에 중앙과 지역단위에서 종합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덧붙여 4장 2절의 '장애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4장 4절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과학기술 연계'에서 제시한 토론회 및 포럼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방송국과 협력하여 '장애인 예술의 이해'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프로그램은 장애인 예술작품의 소개와 지역 및 중앙단위의 토론회 중계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과 형식이 될 수 있다.

나. 단계별 사업내용

1~2년 동안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에 장애인 예술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4년 동안은 장애인 대상 장애인 예술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공공시설과 지역단위에서 장애인 예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5년차에는 방송국 협력하여 장애예술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다. 사업추진기관

비장애인 대상 교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 내 장애인 예술단체 참여)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장애인 대상 교육은 장애인 예술단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인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장애인 예술에 대한 공론장은 지자체(문화재단, 장애인 문화예술 센터)와 지역 내 장애인 단체가 기획하고 문화시설·복지시설에서 수행한다. 한편, 언론기관 협력은 문체부가 진행한다.

6. 세부사업: 요약 및 관계자 의견

가. 세부사업 요약

〈표 4-6〉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구축 세부과제: 주요 내용

세부사업	주요 내용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고도화	
1-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담당 부서 및 기관의 역할 정립	문체부 장애인 예술정책과(課) 또는 장애인 예술정책팀 설치, 장애인 예술정책 총괄업무 수행,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장문원: 정책기획 및 홍보(정보시스템), 조사통계 기능 강화, 인력(기획, 마케팅, 홍보) 충원, '작은 연구' 수행, 장애인 문화예술(거점)센터 지원, 장문원 법정기관화 검토
1-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단위)사업 연계성 및 공정성 강화	문체부: 장문원 사업과 비장문원 사업(본무 및 소속기관 사업) 조정, 유사중복 사업 통합 및 사업 간 연계 장문원: 공모사업-비공모사업-자체사업 분석기준에 따른 분석과 사업 간 비교를 통해 중복·유사사업 조정 창작-향유-교육사업의 연계성 제고 및 단계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창작-향유-국제교류 통합, 국외 리서치는 장문원 내 연구기능과 연계 비공모사업: 유사중복성, 사업진행 과정 및 효과분석을 통해 비공모사업 재구조화(조정, 공모사업 전환) 고려 자체사업: 직접 사업→기회업무(성과지표 설정, 사업재분류, 통계생산) 중심, 참여단체 간접지원(행정, 기획, 홍보, 마케팅) 중심
1-3.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장애인 복지 정책 연계	복지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진흥원의 컨설팅 장애 예술인 일자리: 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장애인 일자리' 직무에 예술포함, 민간에서 장애 예술인 고용 시 고용기관 인센티브(찾아가는 예술행사 개최, 고용기관 직원 국립기관 관람료 할인)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 소득 인정액에서 일부 제외.

세부사업	주요 내용
	수급권 제외로 예술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 예술인 지속 활동 보장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 내용에 예술활동지원 포함(월한도액 초과하면 추가지원) 광역단위 보조기기센터 및 수리센터: 장애예술 보조기기 보급·수리·대여 등 업무
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과학기술(4차 산업혁명) 연계	4차 산업혁명과 장애예술의 관계-미래에 대한 공론장 마련, 연구수행 장애인 예술보조기기 개발 및 실용화, 생애주기에 따른 보조기기 개발
3.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및 확대	
3-1. 장애인 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장애 예술인 프로그램 및 공간에 대한 정보 제공 장문원 플랫폼 활용: 공모사업과 일자리 관련 콘텐츠 제공, 문화예술행사정보 제공, 소규모 지역 문화시설의 장애인 정보 접근성 확대 지원, 다른 문화예술 플랫폼과 연계하여 장애인 수요층 확대, 장애인 예술작품 온라인 아카이브 중정기적으로 장애인 예술시장 플랫폼으로 확대
3-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도서 발간	장애인 예술 안내책자 및 가이드북 간행(장애인시설 배포)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백서 간행: 장문원 사업 한정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포괄, 백서를 장애예술 콘텐츠로 활용
4.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지역화 및 세계화	
4-1. 지역 간 장애인 예술 격차 해소: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 운영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 참조: 기초지자체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센터 설치(수도권 3개, 비수도권 7개 비수도권 우선), 지역센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 지역센터: 지역 내 문화기관-복지기관 협의체 구성(특히 문화예술교육 역점), 장애인 문화예술공간 제공(2절의 장애예술인 작업공간 조성과 연계) 장기적으로 광역지역센터, 기초지자체 연합 지원센터 운영
4-2. 장애인 예술의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활성화	'국제 장애인 예술주간 행사'를 세계적 대회로 육성(2025년), 대북 인도지원과 장애 예술인 남북 교류사업 연계(남한 내 장애인 예술단체-북한의 조선장애자예술협회)
5. 장애인 예술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	비장애인 대상: 직장의 의무교육(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내 장애 예술인 참여 확대 장애인 대상: 비장애인 단체 협력하여 수준 높은 작품, 장애인 예술의 정체성(다양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통한 인식개선 장애인 예술에 대한 공론장 마련: 지역단위 토론형식, 장애예술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문화기관 및 복지기관 교육 프로그램 연계) 2절 '장애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4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과학기술 연계'에서 제시한 토론회와 연계 언론기관 협력하여 TV 프로그램 제작

나. 세부사업에 대한 관계자 의견

1) 장문원 사업 참여 예술인(단체): 정책 체계화에 관심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구축’에서 제시한 세부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한 장애 예술인(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사업 중요도에 대한 긍정 답변(%)은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정책 사업 내 연계성 강화’(97.3%,)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체계화(관련 정책기관 역할 강화)’(95.9%), ‘장애인 복지정책과 문화예술정책의 협력’(95.9%) 순서로 나타났다. 중요도를 평균(점)으로 비교해도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체계화(관련 정책기관 역할 강화)’(4.75점),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정책 사업 내 연계성 강화’(4.75점)가 가장 높았다. 반면에 ‘장애인 문화예술교류 세계화와 남북교류’는 긍정답변이 76.7%로 낮았다(평균 4.26점).

[그림 4-9]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구축 세부사업 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N=73, 단위: %(긍정답변), 점(5점 만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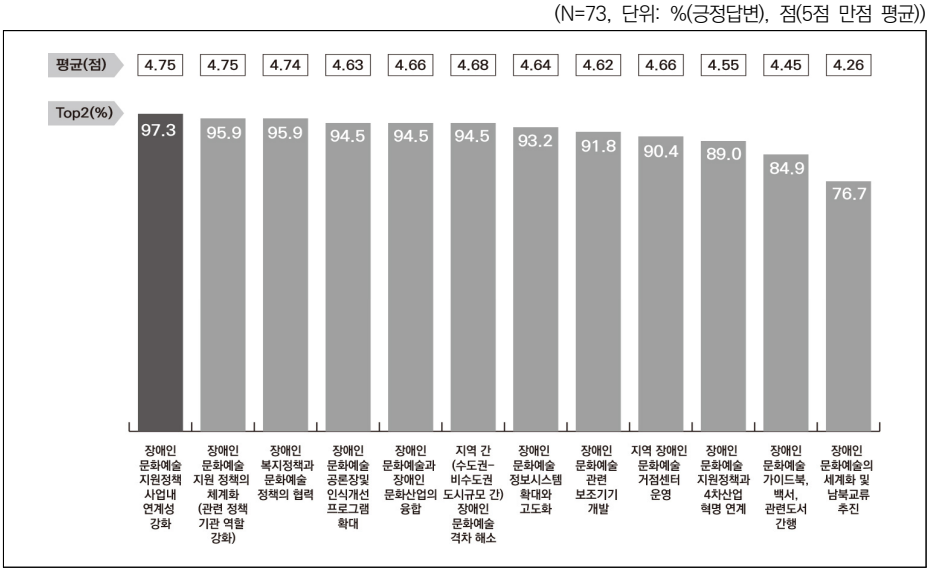

사업 시급성에 대한 긍정 답변(%)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체계화’(95.4%), ‘장애인 복지정책과 문화예술 정책의 협력’(94.5%)로 가장 많았다. 한편, 긍정 답변이 낮은 세부 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교류 세계화와 남북교류’였다(75.3%).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한 의견을 비교해보면,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한 평가가 유사했다. 곧, '장애인 복지정책과 문화예술정책의 협력',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체계화(관련 정책기관 역할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정책 사업 내 연계성 강화'를 중요하면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인식했다. 반면에 '장애인 문화예술의 세계화 및 남북교류추진'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낮았다. 결국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의견이다.

[그림 4-10]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구축 세부사업(중요도와 시급성):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N=73, 단위: %(긍정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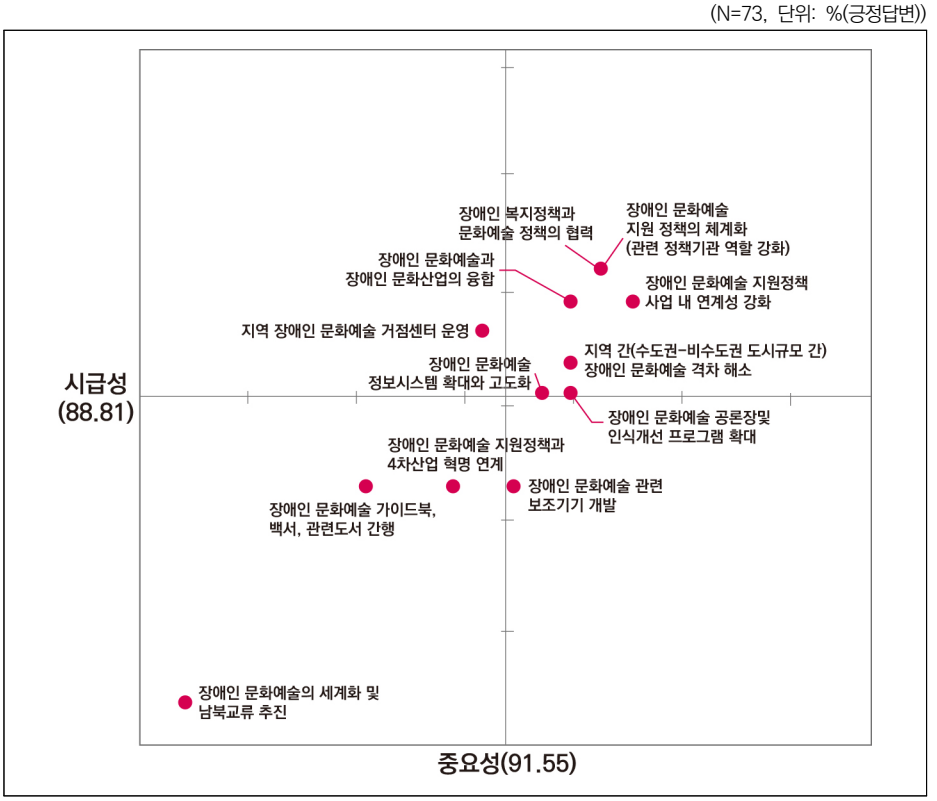

2)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정책 체계화에 관심

사업 중요도에 대한 긍정 답변(%)은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체계화(관련 정책기관 역할 강화)'(91.3%)와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정책 사업 내 연계성 강화'(91.3%)가 가장 많았다. 반면에 '장애인 문화예술교류 세계화와 남북교류'는 긍정답변이 50.0%에 불과했다. 장애인복지관 담당자의 의견과 장문원 사업 관계자의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복지관 담당자의 긍정 비율이 낮다는 데 있다. 복지관 담당자가 상대적으로 장애인 예술정책사업에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1]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구축 세부사업(중요도): 장문원 사업 참여[의향]자 vs. 장애인복지관 담당자(2020 장애 예술인·단체 조사)

(N=73, 80, 단위: %(긍정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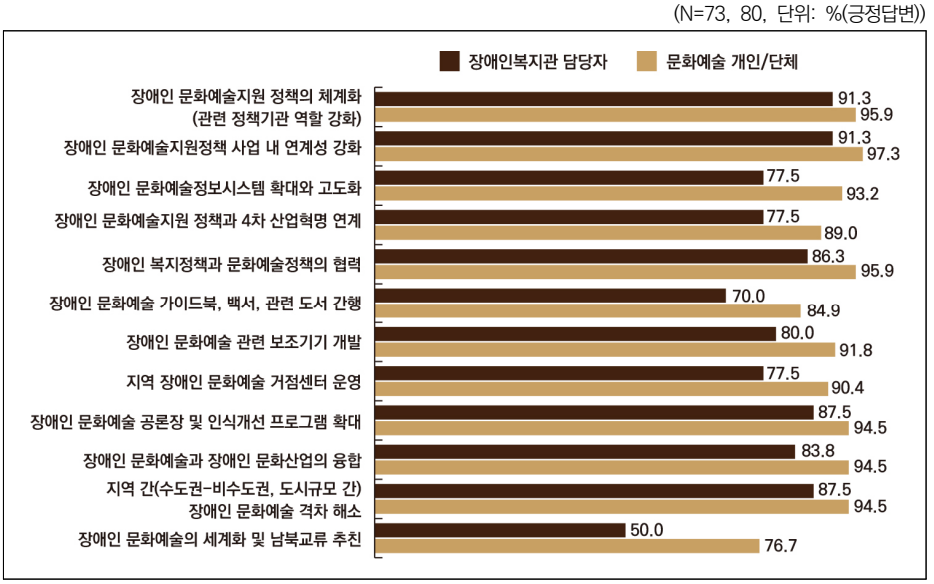

제5장

맺음말

제1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추진과제 요약

1. 단계별 세부과제 내용

4장에서, 세 가지 전략과제—①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 ② 장애 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활성화, ③ 장애 문화예술 발전 기반 구축—를 구성하는 29개의 세부과제(사업)를 제안했다. 전략과제 ① '장애 예술인(단체) 창작지원 다원화'의 세부사업 13개, ②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활성화'의 세부사업 7개, 그리고 ③ '장애 문화예술 발전 기반 구축'의 세부사업 9개다.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은 장애 예술인(단체)의 활발한 창작·발표활동과 장애인의 예술향유(교육 포함)의 적극적 참여를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전자(장애 예술인 창작 및 발표)의 세부과제가 많은 것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창작·발표 관련 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29개 세부과제의 연차별 사업 내용과 사업 추진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세부과제 주요 내용과 사업추진기관

전략과제	세부사업	주요내용			추진기관
		1~2년	3~4년	5년차 이상	
	1. 장애 예술인 일자리 창출	네 가지 유형 일자리 관련 여건 파악 공공영역 일자리사업 문화예술 직무개발 및 특화형 일자리 창출	민간영역 일자리 사업 신규 일자리 사업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속을 위한 사업 양질의 일자리 탐색 장기적으로 국립 및 공립 장애인 예술단 설립 검토	문체부-장문원이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협력, 지자체-학교-공공기관 협력
	2. 장애인 예술 시장 및 마케팅 지원	공공 문화 시설 쿼터제, 공공에서 구매하여 공공기관 대여(기증)	장애인 아트마켓 장애인 예술작품 아카이빙 장애 예술인(단체) 마케팅 능력 컨설팅	장기적으로 국립 및 공립 장애인 예술단 설립 검토, 장애 예술인 작품 시장 온라인플랫폼	문체부: 공공문화시설 쿼터제, 아트마켓, 아카이빙, 예술범주의 문화산업 확장, 메세나협의회 협력, 국립 장애인

전략과제	세부사업	주요내용			추진기관
		1~2년	3~4년	5년차 이상	
장애예술인 및 단체 창작 지원 다원화			장애인 예술 범주를 문화산업으로 확장 한국메세나협의회 협력		예술단 설립 검토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장문원, 한국예술위원회): 작품구매 후 공공기관 대여, 장애 예술인(단체)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운영
	3-1. 장애 예술인 전용(대표) 문화공간 건립	공연장 기능설정 및 공연장 설계	공연장 건립공사	준공 및 개관 장애인 예술작품 오프라인 아카이빙 역할 담당	문체부가 담당하며, 장애인 예술정책 관련 기관은 운영방식 설정 이후 참여할 수 있음
	3-2. 장애 예술인의 문화시설 및 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전국문화시설 내 장애 예술인 편의성 조사	광역지자체 단위 기존 문화시설 2개 이상 리모델링	모든 광역지자체에 장애인 대표 문화공간 조성	문체부에서 조사 및 체크리스트 작성 시설 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협력
	3-3.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	기초지자체 단위 작업공간 건립지역 선정	시범사업으로 작업공간 건립·운영·평가	시범사업 시설의 종합시설화 신규 사업 진행 장기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지역(거점) 센터의 공간으로 활용	문체부에서 시범사업 지역 선정 작업공간 예산은 지자체 공동부담 작업공간 운영주체는 기초지자체 문화재단
	4-1. 장애 예술인 전문공연단체 육성	장문원 지원 및 비지원단체 성과분석(1년차)	공연예술단 지원 사업 차등지원, 공모사업 참여단체 특화지원(2~3년차) 새로운 형태의 공모사업 진행 검토(4년차)	간접지원 중심의 차등지원 및 특화지원 지속	문체부: 성과분석 문체부-장문원: 차등지원 및 특화지원
	4-2. 장애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문화시설별 장애인 레지던시(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각 2개)	장애인복지관-장애인 거주시설 레지던시 시범사업	장애인 레지던시 전용공간 설립검토	문화시설 레지던시: 문체부와 지자체 복지기관 레지던시: 문체부와 지자체, 복지부 협력 전용레지던시 공간: 문체부
	4-3. 장애 예술인과(단체) 국공립기관(단체) 협업	국립단체 선정 국립예술단체-장애예술인 협업(2년차) 유명 예술작가 모집 선정	유명작가-장애예술인 협업(3년차) 지역 내 공립단체 협력(4년차)	지역 내 공립예술단체협력	국립단체는 문체부에서 사업기획 유명작가 및 공립예술단 협력은 예술단체(협회) 및 지자체 협력

전략과제	세부사업	주요내용			추진기관
		1~2년	3~4년	5년차 이상	
	5-1. 장애 아동·청소년 전문 교육	특수학교(급)의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1년) 특수학교-복지관 내 '문화예술 특화교실' 시범공모사업 (2-3년)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다년도 지원 변경 (2-3년) 광역단위 '문화예술 특화교실' (4년)	국내 예술중고교 내 특수학급 설치 검토, 예술계 특수학교 설치 검토	예술계 특수학교(교육부) 운영에 도움(문체부) 특화교실은 교육진흥원 주도(교육청-지자체-복지관협회 협력)
	5-2. 예술전공 장애 대학생 지원	예술대학 재학 장애인 실태 및 인식 파악 대학에 장애 예술인 특별전형 홍보 특수학교 전공과 지원 (국내외 예술단체 협업)	대학 장애학생 지원 센터에서 예술전공 대학생 지원	장애인 예술대학 설립 검토	현재 대학은 교육부 업무임 문체부는 대학 예술전공학과 장애인 학생 충원 시 국립단체 협력, 장애 대학생을 위한 예술공간 및 시설 정비사업 실시
	5-3. 장애 예술인 역량 강화 (재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내 새로운 사업군(群) 신설: 역량강화 교육 예술강사 대상 교육 및 문화예술 매개자 교육에 장애 예술인 (단체) 참여	비장애인 예술단체 협업 장애인 예술 관련 포럼 진행	지역(거점)센터에서 관련 사업 진행	장문원 공모사업 신규 사업군 형성 비장애인 예술단체 협업 및 문화예술 매개자교육 참여는 문체부가 역할 담당 토론회는 민간(장애)예술단체-장애인 시민단체-연구단체에서 진행
	6-1. 청년·지역·단체 비소속 장애 예술인 지원	청년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군(群) 마련 비수도권 및 읍면지역 장애 예술인 쿼터제 지원 사업에서 단체와 개인 구분	문체부(지자체)의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내 장애인 쿼터제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 운영 지원 단체지원사업에서 비소속 예술인 협업 유도	청년 장애 예술인 인턴제	장문원에서 공모사업 신규사업 진행 장애 청년 예술인 쿼터 및 인턴제는 문체부-유관기관-지자체 협력으로 진행 지역-단체 비소속 장애 예술인 쿼터제 기준은 문체부에서, 실행은 장문원
	6-2. 풀뿌리·지역 장애인 예술 단체 지원	풀뿌리단체 지원 사업군(群)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공모사업 비수도권 및 읍면 지역 장애인 예술 단체 쿼터제	기존단체와 풀뿌리 단체 협력 비공모 사업 지자체 연계 시범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거점)센터 운영 지원	공모사업 및 비공모 사업 재구조화	문체부에서 공모사업 신규사업 기획 기존단체-풀뿌리단체 협력 비공모사업을 위한 논의는 시민단체에서 주관 지자체협력사업에는 문화재단과 장애인복지관 참여 지역 단체 지원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담당

전략과제	세부사업	주요내용			추진기관
		1~2년	3~4년	5년차 이상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활성화	1. 장애인 문화예술 바우처 도입 및 확대	현재 문화누리카드 비대상 장애인(4~5세, 비저소득층) 바우처 이용 모셔가는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사용	현재 문화누리카드 이용 장애인 지원액 증액	장애인 문화예술 바우처 지원액 증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 복권위원회 협의
	2.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예술강사-복지관 및 학교 담당자의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이해 교육 의무화 및 확대, 문화예술 매개자교육에 장애 예술인(단체) 참여	문화예술교육사 및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내 장애인 예술 관련 내용 포함 장애인 기획홍보 마케팅 인력 교육 실시	교육과정 이수자 일자리 창출 교육 전담 기관 설립 검토	예술강사-학교 및 복지관 담당자 교육은 교육진흥원 담당(교육청 및 복지관 협회 협력) 기획홍보 인력 교육은 장문원-장애인 예술 단체-예술경영지원센터 협력
	3-1.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파악 및 지원 기준 변경: 네트워크 활동 전제조건(1년차)	네트워크 활동 장애인 예술동호회에 '매개인력'의 도움 장애 예술인 작업 공간 활용(2~4년)	전문단체 전환 시, '장애인 예술 매개인력' 1년 정도 업무 지원	장문원-지자체 관련 사업 진행 네트워크는 장애인 예술 단체 및 (비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협력 장애인 예술 매개인력 지원예산은 장문원과 지자체 분담
	3-2.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의 참여형 프로그램 욕구파악 국공립기관 장애인 작품관람 접근성 제고 시범사업 진행	예술 장르별로 1개 이상 국공립기관에서 체험 프로그램 진행. 지역순회 또는 모셔오는 프로그램 진행 지역문화시설에서 장애인 실감형 예술 프로그램 진행	광역지자체 단위 실감형 예술 공간 2~3개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 종합체험관 건립 검토	국공립기관 콘텐츠 개발은 문체부와 유관기관 담당 모셔오는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애인 실감형 예술 프로그램은 문체부와 지자체(문화시설) 협의
	4-1. 특수학교(급)-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개선	복지관 자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향상 예술강사-특수학교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강화	복지관 및 특수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 분화(전문가형, 표현과정, 감상과정 등) 복지관-학교 문화예술 특화교실 진행	교육 프로그램 심화	강사교육 및 문화예술 특화교실은 교육진흥원에서 진행 감상교육은 지역 내 문화시설과 협력하여 교육진흥원이 진행
	4-2.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 확대·개선	장애인 거주시설 프로그램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기존 찾아가는 사업 진행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걸맞은 시범사업 진행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통합 논의	교육진흥원에서 담당 장문원 및 지자체와 협력

전략과제	세부사업	주요내용			추진기관
		1~2년	3~4년	5년차 이상	
	5.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친화적 문화시설 조성	민간문화시설 BF 인증비용 일부 지원 문화시설별 장애인 이용자 실태조사 및 장애인 이용 가이드라인 개발 작품관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구사업와 아이디어 공모전	공공 문화기관 BF 인증 가산점 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른 모니터링사업 진행(국립시설) 연구사업 및 아이디어 공모전 이후 장애유형 및 예술장르별 개선사업 실시	장문원 사업자 선정 시, 작품관람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	BF 인증(지원)은 문체부에서 담당하되 실무는 장문원 또는 장애인 예술단체 담당. 한국장애인개발원 같은 기관과 업무협약 모니터링은 문체부에서 평가단 구성하여 진행 작품관람 접근성 제고 사업은 문체부에서 총괄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기반 구축	1-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담당 부서 및 기관의 역할 정립	문체부와 장문원 업무영역 명확화 문체부 내 장애인 예술정책과(課) 또는 장애인 예술정책팀 신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위원회' 설치 장문원은 특히 장애 예술인(단체)의 기획·마케팅·홍보 능력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	지역의 장애인 문화예술(거점)센터지원 장문원 법정기관화 및 조직개편	장애인 문화·예술·여가·관광·체육을 포괄하는 부서 검토(문체부 내)	문체부-장문원 유기적 협력관계, 장문원의 전문성 확보 (기획·마케팅·연구·조사·정보시스템)
	1-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단위) 사업 연계성 및 공정성 강화	문체부의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 사업의 세부자료 분석 장문원의 지정 및 공모사업 세부분석(지정사업은 공통점, 공모사업은 창작-향유-국제교류의 차이점 중심 분석)	문체부 관련 사업의 유사·중복사업 통합 및 사업 간 연계(2~3년차) 장문원 공모사업 재구조화(창작-향유-국제교류의 통합 및 연계), 비공모사업 재구조화(조정, 공모사업 전환 등)	장문원 공모사업의 단계별 연계(4~5년차)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체계 전면 재구조화(문체부 장애인 관련 포괄 조직신설, 장문원 법정기관화 연계)	문체부-장문원 협력, 지정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현재 참여단체와 논의
	1-3.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계	교육진흥원의 장애인 복지관 자체 예술교육 컨설팅 민간에서 장애 예술인 고용 시, 문체부 차원에서 문화예술 인센티브 제공(찾아가는 예술행사, 국립기관 관람료 할인)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소득 인정액에서 제외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시, 예술인 활동지원 연계 예술활동 보조기기 보급·수리·대여	관련 정책사업 지속	문체부(유관기관)-교육부(유관기관)-복지부(유관기관)-자지체 협의체 구성 민간 협의체 구성(복지관협회, 장총련, 장예총, 풀뿌리단체 연합기구)

전략과제	세부사업	주요내용			추진기관
		1~2년	3~4년	5년차 이상	
	2. 장애인 문화 예술정책과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 연계	4차산업혁명과 장애인 예술에 관련 토론회 장애 예술인 보조기기 국내외 사례분석 및 수요조사, 제안요청서 도출하여 실용화 준비	4차 산업혁명 관련 장애 예술인 정책 실현 보조기기 활용사례 추가발굴, 사용법 유투드 공개, R&D 지속	관련 정책사업 지속	4차산업혁명과 장애인 예술의 공론화는 시민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담당 보조기기 기획은 문체부가 장애인예술계 인사 및 장애인복지기관 협력, 제작은 국립재활원 및 보건사업진흥원 담당
	3-1. 장애인 문화 예술정보 시스템 구축	현재 운영중 플랫폼 안정화 및 질 관리 (관련 서적 서비스, 문화예술정보시스템 연계), 비장애 문화 예술정보시스템 연동	지역생활권 단위 문화예술 프로그램 소개(지역문화시설 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 시범사업으로 일자리연계(예술 인력시장) 장애인 예술작품 온라인 아카이브 역할	플랫폼 고도화 장애인 예술시장 역할	장문원 고유사업 지역문화시설 관련해서는 지자체(문화시설)협력 작품거래 및 예술시장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장애인 예술단체, 장애인고용공단 협력
	3-2. 장애인 문화 예술 관련 도서 발간	장애인 예술 가이드북 (안내서) 발간, 장문원 지원사업 백서 발간	장문원 지원사업뿐 아니라 문체부 장애인 정책사업 백서 발간 우수사례 소책자 발간	가이드북(안내서)과 백서 내 우수사례를 예술로 재현	장문원 고유사업 책자발간을 위해 전문가 준비단 구성
	4-1. 지역 간 장애인 예술 격차 해소: 장애인 문화 예술 지역 (거점)센터 운영	지역 내 장애인 문화 예술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장애인 문화 예술 지역(거점)센터 운영안 도출	시범사업(장애인 문화예술 지역센터 운영): 수도권 3개, 비수도권 7개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확대방안 제시 장기적으로 광역 지역센터, 기초지자체 연합 지원센터 운영	지역센터 사업운영모델 개발은 문체부-장문원-장애인 예술단체 협력 지역센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 의사결정은 지역 내 공공기관 협의체에서 담당 장문원은 지역센터 지원 역할 담당
	4-2. 장애인 예술의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활성화	'국제 장애인 예술 주간행사'를 통해 국제네트워크를 강화 남북교류 계획수립 및 북한단체 접촉 및 통일부 승인신청	2025년 국제행사 준비 북한단체 접속 및 승인신청 지속	2025년 국제행사 개최 2025년 국제행사에 북한과 공동사업	국제행사는 장문원 담당, 남북교류는 장예총 또는 전문 장애인 예술단이 주관
	5. 장애인 예술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내 장애인 예술단체 참여	장애인 대상 장애인 예술 인식개선 사업, 공공시설과 지역 단위에서 장애인 예술 관련 토론회 개최	방송국 협력하여 장애인 예술관련 프로그램 제작 방영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대상 교육: 장애인 예술단체, 장애인시민 단체 협력 장애예술공론장: 지자체 및 지역 장애인 단체

연차별 계획의 특징을 보면, 1~2년차에는 현황 및 실태파악, 기존사업 강화 등이 많다. 이것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펼치기에 충분한 분석 자료가 없다는 점, 그리고 지속해서 수행할 사업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3~4년차에는 시범사업이 상대적으로 많다. 1~2년차의 분석을 바탕으로 무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5년차 또는 장기적으로는 3~4년차 사업의 지속·심화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 검토가 많다. 장기적으로 사업체계 개편을 통해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업추진 기관을 보면 여러 사업에 장문원이 참여한다. 4장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문원의 주된 역할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간접지원이다. 직접사업보다 간접지원에 역점을 두기에, 그리고 현재의 사업을 지속하기에 장문원이 많은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장문원이 사업을 주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는 게 적합하고, 지역단위 사업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게 효과적이다.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기획은 문체부의 몫이다. 문체부는 다른 부처(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교육부, 복권위원회)와 협력하면서, 그리고 유관기관(국립예술단체, 교육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문체부에서는 장애인 예술업무를 담당하는 예술정책과 이외의 부서와 소속기관에서 장애인 예술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이 같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조정하면서 장애인 예술정책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문체부-장문원-문체부 산하기관-장애인 예술단체-장애인복지관-복지부 유관기관-지자체-지자체 문화시설과 협력하면서 정책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문체부의 장애인 예술정책 사업에서 장문원이 수행단체, 특히 간접지원 단체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문원의 법적 성격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나타난 세부사업의 중요도·시급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진행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장애 예술인(단체)은 장애 예술인 지원사업 가운데 '문화시설 내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 '장애 예술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면서도 시급하게 시행될 과제라고 인식한다. 장애 예술인 당사자에게는 공간과 시설의 접근성과 일자리가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 장애 예술인(단체)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 지원사

업 가운데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전문성 제고',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체험형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하면서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다. 직접지원보다 인력·시설·프로그램 관련 정책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장애 예술인(단체)은,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가운데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사업이 '장애인 복지정책과 문화예술정책의 협력',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체계화(관련 정책기관 역할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정책 사업 내 연계성 강화'라고 인식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기반을 튼튼해야 해야 할 시점이란 의미다.

2. 세부과제 진행과 고려사항

전략과제 내의 세부과제가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사업 진행 이전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첫 번째는 보편성과 개별성의 조화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향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별 세부사업은 목표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 장애 예술정책의 공통점(국가사회 어젠다 연계, 장애예술의 범주 확대)은 수용하되, 사회환경의 다름을 인식하고 특성에 걸맞은 사업을 진행한다.

두 번째는 현재성과 미래 지향성이다.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세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추진전략에서 언급했듯이 현재를 구성하는 경험을 존중하되, 미래에도 지속·심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진행한다. 장애예술의 시대적 요구는 일자리, 기술혁명과 연관성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 진행과정은 지속 가능성과 심화 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 번째는 참여와 자발성이다. 장애예술계의 이해관계자는 많지만, 장애인은 자신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내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장애 예술인은 장애인이 예술의 장(場)에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 예술인(단체) 역시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비장애인 그리고 비장애 예술인의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교육)라서 듣는 게 아니라, 타자의 정체성과 교호하는 과정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자세 같은 걸 말한다. 세부과제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가 이 같은 의식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연계성과 포괄성이다. 다양한 개별사업은 창작과 향유 과정에서 다른 사업들과 체계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개별사업 간 연계는 장애예술의 범주가 포괄적이어야 한다. 장애예술의 의미를 공유하고 장애예술의 범위를 개방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일상과 지역이다. 비전에서 보듯이 장애예술은 장애인의 삶과 유리되지 않아야 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참여 가능한 일상이어야 한다. 세부사업은 이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돼야 한다.

제2절 연구의 의미와 향후 연구과제

연구는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2008년 〈문예진흥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법제화, 2015년 장문원 개원 등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사업)은 발전해 왔다. 2020년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구체화를 요구한다. 문화영역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실시된 지 15년(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을 점검하고 새로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제시해야 시점이다.

연구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의미 파악, 기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분석,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책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29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세부과제는 연차별 사업내용과 추진기관을 제시하여 정책현장에서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95] 29개의 세부과제는 장애예술계에서 논의됐던 내용,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새로운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미 제안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발전계획의 형태, 곧 체계적 형태로 제시한 것이 의미 있다는 말이다. 한편,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의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연구 가운데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사업은 기본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9가지가 이번 연구에 대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95) 2017년 문화관광부의 연구가 있었다. 곧 정갑영 외(2017),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문화관광부)가 그것이다. 2007년 연구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문화복지를 지향한다는 점, 그리고 제시된 단위사업의 사업내용이 추상적이란 점에서 이번 연구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 · 전시 · 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 · 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진행했지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조사를 수행하여,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현황과 정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것은 유의미하다. 장문원에서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서 비장애인 대상 설문조사(1,000명), 초점집단면담(22명), 자문회의(6회)를 진행했다. 5장 1절에서 보듯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사업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행해야 할 일이 많다.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기관 간 협력은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수행하는데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한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기에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첫째, 5개년 계획이지만 관련 예산을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 사업에 대한 예산 산출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고, 실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사업과 내용이 확정된 이후 소요예산을 산출할 수 있다.

둘째, 관련 법률 제(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은 현재의 문화예술관련 법률·장애인복지관련 법률·특수교육관련 법률·지자체 관련 조례 등과 연동돼야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률 사이의 관계 설정, 그리고 독립된 형태의 법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포용적 예술(정책), 소수자 문화예술 활동(정책),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관계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했다. 실제 제시된 세부사업들은 위와 같은 담론(정책)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지만, 구체적으로 관련성을 제시하지 않

았다.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광의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예술장르별·장애유형별로 구체적 세부사업을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 기본계획이 아닌 개별 보고서를 통해 예술장르와 장애유형의 맞춤형 정책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결국,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한 이번 연구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되, 법률·예산·타 정책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예술장르와 장애유형별로 매우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인다.

참고문헌

- 강영심 외(2018), 「부산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부산문화재단).
- 관계부처합동(1997),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1998~2002」.
- 관계부처합동(2003),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2003~2007」.
- 관계부처합동(2008),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2008~2012」.
- 관계부처합동(2013), 「제4차 장애인종합계획 2013~2017」.
- 관계부처합동(2018),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 2018~2022」.
- 국립재활원·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보건복지부).
- 국립특수교육원(2020), 「특수교육통계」(교육부).
- 김도현(2012), "문화적 장애모델의 생성," 「솟대문학」 88호.
- 김두영 외(2013),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3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김두영 외(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부모의 인식," 「특수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 김두영 외(2017),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 현황 및 패턴 분석 – 2011~2015 평생교육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통합교육연구」.
- 김선형(2019), "'모두'를 위한 예술 환경," 「웹진 이음」 12호.
- 김성희 외(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외(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외(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득 편(2012). 「장애와 사회복지」(EM커뮤니티).
- 김용득(2016), 「장애인복지: Inclusive Society를 위한 상상」(EM커뮤니티).
- 김현경(2020),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홍규 외(2012), 「장애인 문화예술실태 및 센터 건립타당성 조사」(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장애인체육회, “역사와 비전: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성장과 최근 동향,”「월간 장애인체육」 2018년 8월호.
- 문화체육관광부(2018),「2018 예술인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8),「2018 체육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19),「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현황통계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2019),「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9),「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19),「2020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사업설명자료」.
- 박근화 외(2019),「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박신의 외(2018),「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박신의 외(2018), “‘포용적 예술’을 통한 장애예술의 개념적 연구,”「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11권 2호.
- 방귀희(2014),「장애인문화예술의 이해」(도서출판 솟대).
- 방귀희(2019),「장애인예술론」(도서출판 솟대).
- 방귀희 외(2012), “한일 장애인예술 발전 과정에 관한 고찰,”「장애인복지 연구」 제3권 제2호.
- 방귀희 외(2013),「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국립특수교육원).
- 배재현(2020),「현안분석 154호: 안전체험관 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국회입법조사처).
- 변경희 외(2012),「장애아동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사)몸짓과소리).
- 변경희 외(2013),「장애아동의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사)몸짓과소리).
- 변용찬 외(2001),「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 외(2006),「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 외(2009),「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19),「2019년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2020),「2020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0),「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 소현지(2013), “예술로 힐링하기: 예술치료,” 「월간 창조산업과 콘텐츠」 4월호.
- 양숙미 외(2015),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개발 연구」(보건복지부·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윤점룡 외(2010),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모형 연구」(국립특수교육원).
- 윤지현 외(2016), “발달장애 자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만족도에 대한 부모 인식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51권 1호.
- 이영주(2013), “예술과 치유: 예술 치유의 새로운 인식과 역할,” 「예술과 치유: ‘치유’의 예술학의 모색」(한국예술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 이용표 외(201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평가 질적 연구」.
- 이행봉(1994), “신사회운동과 시민사회,” 「지역사회연구」 제2집.
-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2014), 「장애청년예술정책: 욕망과 표현을 위한 실천과 정책론」(서울시청년허브 연구공모사업).
- 전병태(2010),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병태(2014), 「장애인 예술 장르별 지원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병태(2015),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병태(2017), 「장애인 대표 공연예술단체 육성 지원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병태 외(2007),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갑영 외(2007),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문화관광부).
- 정갑영 외(2007),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문화관광부).
- 정종은(2018), “영국 장애인 예술정책 및 사례: 다양성과 창조성, 혁신의 자산으로,” 「웹진 이음」.
- 조돈문(1995),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이해-구미와 중남미의 신사회운동 비교,” 「경제와사회」 제28권.
- 조현성 외(2017),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조현성 외(2018), 「문화예술교육 통계조사 체계 구축」(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주윤정(2006), “장애 예술 운동의 역사와 이론, ”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엮음, 「에이블아트: 차이와 소통의 예술」(사회평론).
- 주윤정(2007), “에이블 아트, 장애와 예술의 만남,” 「문화예술」.

- 주윤정(2016), “에이블아트(Ableart), 차이와 소통의 예술,” 「SNUAC」.
- 주윤정 외(2014), 「장애문화예술교육 연구: 정형과 비정형의 교차」(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윤정 외(2018),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연구」(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최보연 외(201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2006), 「에이블아트: 차이와 소통의 예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9), 「한 눈에 보는 2019 장애인통계」.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0), 「장애인의 문화활동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비장애인 대상」.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18), 「2017년 장애인복지관 편람」.
- 한지연 외(2016),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역량강화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 ACE(2020), *Let's Create: Strategy 2020-2030*(Arts Council England).
- Arts Access Victoria(2015), *Beyond Access: the Creative Case for Inclusive Arts Practice: Literature Review.*
- Fox, A. & Macpherson, H.(2015), *Inclusive Arts Practice and Research: A Critical Manifesto* (Routledge).
- Hall, C. and Thomson, P.(2007), *“Creative partnerships? Cultural policy and inclusive arts practice in one primary school,”*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3(3).
- 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1994), *Design for Accessibility: A Cultural Administrator's Handbook.*
- Shakespeare, Tom(2013), Disability rights and wrongs revisited(Routledge).
- Williams, Raymond(1983),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Oxford University Press), 김성기·유리 옮김(2010), 「키워드」(민음사).

- Arts Council England https://www.artscouncil.org.uk
- NEA https://www.arts.gov
- NPO 법인 스윙 http://www.swing-npo.com
- The National Disability Arts Collection & Archive https://the-ndaca.org

- UN 디지털 라이브러리 https://digitallibrary.un.org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https://lledu.nile.or.kr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
- 대한장애인체육회 https://www.koreanpc.kr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
- 로사이트 http://rawside.kr
- 미국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 https://www.kennedy-center.org
- 사회복지용어백과사전 https://www.welfare24.net
- 알리오 http://www.alio.go.kr
- 야마나미 공방 http://a-yamanami.jp/
-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영국 국립 장애예술 콜렉션 및 아카이브 https://the-ndaca.org
- 영국 언리미티드 https://weareunlimited.org.uk
- 영국예술위원회(ACE) https://www.artscouncil.org.uk
- 영국문화원 https://www.britishcouncil.kr
- 월간장애인체육 https://kpcsports.koreanpc.kr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
- 정부24 https://www.gov.kr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
- 충북문화재단 http://www.cbfc.or.kr
- 케네디 센터 https://www.kennedy-center.org
- 케네디 센터 VSA 및 접근성 부서 홍보 https://vsainternational.wordpress.com
- 트렌드리포트 http://ieumzine.kr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AA아카데미 https://hrd.arte.or.kr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https://acei.arte.or.kr

ABSTRACT

Mid-to-long Term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of the Disabled

This study seeks to map out a policy direction and tasks systematically for arts of the disabled, which can serve as the basis to formulate a master plan in the field. In providing the policy direction and tasks, the focus is on making them well-structured and continuous.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utilized to develop specific programs as well as a master plan for arts of the disabled.

The study sets the vision of arts of the disabled policies as creating everyday life with culture and a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ulture and art here refer to both process and result of self-expression using art. However, there is no need to strictly define them. Any activity using art as its means can be culture and art if it gives joy and sense of achievement to and touches the heart of the disabled.

The policy goal to work to achieve for five years in pursuing the set vision is to build the policy system for arts of the disabled. Only when a comprehensive policy system is established, arts for the disabled can move forward and develop further. The goal should not be building a policy system itself. Process matters as much as the outcome. For the development of arts for the disabled, cooperation between stake holders is indispensable. Four major strategies to accomplish the vision and goal are explored in the study: ① goal-oriented policy conception, ② phased and practical policy making, ③ cooperation and coexistence in the process, and ④ policy implementation to the needs of the disabled.

This study also identifies three strategic tasks: ① to provide more diverse support for creation of artists (or artist groups) with disabilities, ② to improve arts engagement and education for the disabled, and ③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rts of the disabled. The first task is related to th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support for artist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Support Act. The second task is about providing opportunities for arts engagement (including education)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in general, not limited to professional artists. The third task involves institutionalizing policies, raising awareness about arts of the disabled, and providing a direction for art events. Under the three strategic tasks are 29 sub tasks (policy projects). Not only new projects but also what was discussed in the disability art sector and in previous studies is included. For each sub task, main contents of the project and what to be done and how in phases are described.

Keywords

Arts of the Disabled, Comprehensive Policy System, Goal-oriented Policy Conception, Cooperation and Coexistence, Artists with Disabilities Support Act

집필내역

연구책임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1장, 2장 3절, 3장 2절의 1~2, 3장 3절, 4장 1절, 4장 2절~4절 일부, 5장

공동연구

최보연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2장 1절의 4

정병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2장 1절의 2, 2장 2절의 3, 3장 1절의 2, 4장 2절~4절 일부

전동일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2장 1절의 1, 2장 2절의 2, 3장 1절의 1, 3장 2절의 3, 4장 2절~4절 일부

김윤경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2장 1절의 3, 2장 2절의 1, 4장 2절~4절 일부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발행인 김 대 관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0년 10월 19일

발행일 2020년 10월 19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SBN 978-89-6035-819-5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12

www.kcti.re.kr

Mid-to-long Term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of the Disabled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12

Jo Hyeonseong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ISBN 978-89-6035-819-5